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 www.seoul.go.kr

제2973호 2010. 04. 22.(목)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Hi Seoul
SOUL OF ASIA


**HAECHI
SEOUL**



봄기운을 머금은 북서울꿈의숲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서울특별시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 731-6847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4961호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496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4963호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4964호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496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4966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12
제4967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496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496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17
제4970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497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4972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59
제4973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4974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4975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4976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63
제4977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497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4979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4980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4981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4982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4983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4984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2
제4985호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4986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입법예고]

제2010-795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94
제2010-812호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94
제2010-81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5
제2010-834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96

◆ 고 시

제2010-137호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98
제2010-141호	아현 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01
제2010-139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112
제2010-14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35
제2010-1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58
제2010-144호	도시계획시설(중랑생태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160
제2010-145호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2
제2010-147호	도시관리계획(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64
제2010-148호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80
제2010-149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220
제2010-150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공람,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234

◆ 공 고

제2010-780호	마을버스 노선변경 운행계통기준 공고 253
제2010-78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계획 공고 257
제2010-797호	경제진흥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259
제2010-79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259
제2010-80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260
제2010-804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260
제2010-80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334
제2010-811호	남태령근린공원 조성계획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334
제2010-8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고 335
제2010-823호	2010년도 제6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336
제2010-833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38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0-6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 342
----------	--------------------------

◆ 구 고 시

제2010-2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 계획 인가 정정 고시(중구) 344
제2010-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용산구) 344
제2010-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348
제2010-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광진구) 349
제2010-2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대문구) 350
제2010-2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은평구) 352
제2010-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은평구) ... 353

제2010-18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 인가 고시(마포구)	355
제2010-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구로구)	356
제2010-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구로구)	360
제2010-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영등포구)	362
제2010-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동작구)	366
제2010-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동작구)	367
제2010-30호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경미한변경)(관악구)	370
제2010-31호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공원 조성 계획 결정(관악구)	376
제2010-2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강남구)	384
제2010-2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남구)	386

◆ 구 공 고

제2010-27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중랑구)	389
제2010-3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은평구)	390
제2010-292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 · 공고(서대문구)	393
제2010-2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양천구) · 393	
제2010-2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구로구)	401
제2010-3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영등포구)	402
제2010-4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관악구)	405
제2010-4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409

◆ 사업소고시

제2010-82호 하천점용허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414
-------------------------------------	-----

◆ 사업소공고

제2010-8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광진소방서)	415
제2010-8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마포소방서)	415
제2010-10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구로소방서)	416
제2010-9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서초소방서)	416
제2010-10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서초소방서)	416

◆ 기 타

제2010-86, 87, 88, 89, 90, 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18
제2010-92, 9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421

◆ 정 정	423
-------------	-----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1호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27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의회운영의 기본인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원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활동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기능을 회복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활동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33인 이하에서 27인 이하로 조정함(안 제10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2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3
입 양	본인	14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경우 관습에 맞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규정되어 있는 현실상황을 고려하고, 우리 민족 고유관습인 관혼상제시 관례상 참여하는 기간을 감안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재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본인 결혼”은 ‘5일’을 ‘7일’로 조정하고, 사망의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2일’로 함 (별표 3)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3호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공무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및 변경
2.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의2를 제5조로 하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견제시) 위원회는 도로·교량·터널·램프·지하보도·공원·광장·지하철역 등의 시설명과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구역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울특별시 내의 지명·시설명 및 구역명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시·도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

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의 근거규정을 「측량법」에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4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중앙지명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지명위원회로 변경된 사항을「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제4항)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4호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운영비의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제5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회단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약정) 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관장하는 사회단체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등) ① 시장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단체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홈페이지 상호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지원사업의 평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정)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안 제11조제1항).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5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6호 중 "시장이 지정한"을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용도폐지 공공시설 양도 시 관리청 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정비사업 시행·인가,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구청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매각대금 중 시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비율이 용도폐지되는 전체 재산의 가액 중 용도폐지되는 시유재산의 가액의 비율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제3절의 절 제목 "신탁"을 "신탁, 위탁관리 및 개발"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재무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종전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매각대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세외수입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과, 시유일반재산의 위탁관리·위탁개발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관리 비용을 감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대부료를 100분의 30까지 대부료 감면(안 제30조제4항).
-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매각대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재산매각 세외수입의 형평성 회복(안 제38조의2).
- 공유재산 위탁관리·위탁개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설치(안 제39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6호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3호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제4의2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부터 9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제4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5호를 삭제한다.

4. 지방소득세 소득분
7. 지방소비세

제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소비세

제2장제3절의 제목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서울)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 4,800원

나. 시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0,000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장에 제3절의2(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지방소득세 소득분

제27조(서울)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장제5절의 제목 “농업소득세”를 “지방소비세”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지방소비세 납입확인) 시장은 매월 법 제159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2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3조제3호의 과세표준란 중 “주민세 균등할”을 “주민세 균등분”으로 한다.

조례 제4802호 서울특별시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이어서 금년도 재산세 과세 기준일(6.1) 이전 공포가 불투명하므로 현행 시세조례의 '09년도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세율인하의 한시적 적용규정을 '10년도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함.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 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함.
- 조례 제4802호로 '09.5.28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7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의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수입증지로 납부한다”를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시민고객이 수수료 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이용등 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등에게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안 제4조)
-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확대하는 것임(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시 행”을 “시행”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및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건강관리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9호 신설)
 - 가족친화프로그램운영, 건강관리프로그램운영 및 현장체험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10호부터 제12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4969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경관 담당관	1.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사무 중 다음 사무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 나.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구청장 (해당 교통수단의 본사소재지 구청장)

☐ 여성가족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소년 담당관	1.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아동복지법」 제10조 ○ 「아동복지법」 제21조	구청장 구청장
보건정책 담당관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이하 "병원 등"이라 함)의 개설 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정책 담당관	1. 병원 등의 변경 허가 2.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른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 신고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33조제5항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 「약사법」 제45조 ○ 같은법 제4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 같은법 제69조 ○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 제71조 ○ 같은법 제74조 ○ 같은법 제76조, 제77조 ○ 같은법 제80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 ○ 같은법 제81조 ○ 같은법 제98조	구청장
	4. 마약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아. 출입·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리 명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8조 ○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 같은법 제13조 ○ 같은법 제27조, 제29조 ○ 같은법 제41조 ○ 같은법 제42조, 제43조 ○ 같은법 제4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정책 담당관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법 제45조 ○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 같은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보건정책 담당관	5.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 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약사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법 제69조 ○ 같은법 제71조 ○ 같은법 제73조 ○ 같은법 제74조 ○ 같은법 제76조 ○ 같은법 제81조 ○ 같은법 제98조	구청장
	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 「의료법」 제38조제1항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구청장
	7.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	○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부 터 제4항까지, 같은법 시 행규칙 제21조 ○ 같은법 제40조제2항	구청장
	8.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정책 담당관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구청장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51조	
	타.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9.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1항	
	나. 변경허가	○ 같은법 제51조제3항	
	다. 변경신고	○ 같은법 제51조제4항	
	라. 휴·폐업, 재개업신고	○ 같은법 제53조	
	마. 지위승계 신고	○ 같은법 제54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2조제2항	

☐ 감 사 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감사담당관	1.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조사한 사항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 나. 6급이하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권 (징계의결권 제외)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상수도 사업본부장

☐ 경영기획실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직담당관	1.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임용 (다만, 정직, 해임, 파면은 제외)	○ 「교 육 공 무 원 법」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서울시립 대학교 총 장

☐ 경쟁력강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산업 담 당 관	1. 음반·음악영상물의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변경신고 및 신고증의 교부 나. 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다.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의 정지 라. 폐쇄 및 수거 마. 청 문 바. 수수료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0조, 제21조(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제11조) ○ 같은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같은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6조 (시행령 제17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업지원 담당관	1.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구청장
	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고시	○ 같은법 제33조	
	다. 개발토지의 양수 및 가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6조	
	라. 공동부담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37조제2항	
	2.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3. 전기안전관리 개인대행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제1항제3호, 같은조제2항	구청장
	나. 신고필증 발급	○ 같은법 제73조의 5제3항	
	다. 취소	○ 같은법 제73조의 6	
	4. 일반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기술수준에의 적합 명령	○ 「전기사업법」 제71조	구청장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108조	
	5. 「전기공사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정명령 등	○ 「전기공사사업법」 제27조	구청장
	나. 영업정지(세금체납에 따른 영업정지 포함)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다.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 요구에 대한 조치	○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업지원 담당관	6.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또는 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품질시험소장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6조	품질시험소장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2)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품질시험소장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수리) 검사	○ 같은법 제32조	
	(1) 10톤미만 계량기 정기 검사		구청장
	(2) 10톤이상 계량기 및 눈새김 탱크로리의 정기검사		품질시험소장
	(3) 수시(수리)검사		품질시험소장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 같은법 제33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바.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법 제34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사. 개선명령	○ 같은법 제35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 같은법 제37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자. 청 문	○ 같은법 제41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차.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 같은법 제38조	
	(1) 제작업		품질시험소장
	(2) 수입업 및 계량증명업		구청장
	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법 제51조	품질시험소장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산업지원 담당관	7.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및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구청장
	8.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보고·검사 또는 질문 나. 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3	구청장
	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공산품의 개선, 수거, 파기명령 등 나. 공산품의 보고 및 검사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 같은법 제32조	구청장
	10. 염 또는 함유제조의 허가·허가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등	○ 「염관리법」제3조제1항, 제23조, 제24조	구청장
생활경제 담당관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축산법」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 록 나. 시설변경 다. 등록증 재발급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 같은법 제8조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 같은법 제2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활경제 담당관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바. 업무감독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아. 승계신고 자. 폐기 등의 조치 차. 청문 3. 동물용 의약품도매상허가 및 변경허가 4. 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 같은법 제26조 및 제36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8조제4항 ○ 같은법 제9조제3항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30조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구청장
금융도시 담당관	1. 대부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등록갱신, 등록증의 반납, 변경등록 등 나. 분실신고 및 폐업신고 다. 검사 등 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마. 실태조사 등 바. 등록수수료 등 징수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대부업자 영업행위 지도·감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5조 ○ 같은법 제3조의3, 제5조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3조 ○ 같은법 제16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구청장

☐ 맑은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녹색환경 정책담당관	1.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특정 가스 사용시설 사 용자 포함)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구청장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의 기준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라.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마.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바. 액화석유가스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 및 청문, 과태료의 부 과·징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제3조 ○ 같은법 제4조 ○ 같은법 제7조 ○ 같은법 제8조 ○ 같은법 제9조 및 제10조 ○ 같은법 제38조 및 제40조, 제52조	구청장
	3. 석유판매업 등록(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통판매업 제외)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신고 및 변경등록 신고수리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 수리 라.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마. 과징금 부과·징수 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사. 보고 및 검사 아. 청 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제10조 ○ 같은법 제11조 ○ 같은법 제12조 ○ 같은법 제13조제3항 ○ 같은법 제14조제1항 제3호 ○ 같은법 제30조 ○ 같은법 제38조제1항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49조제3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녹색환경정 책담당관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제외) 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부과·징수 라. 보고 및 검사 마. 청 문 바. 과태료 부과·징수	○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사업법」 제33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5조 제1항 ○ 같은법 제38조 제1항 ○ 같은법 제40조 ○ 같은법 제49조	구청장
	5.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말소 또는 시공업 전부 또 는 일부의 정지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다. 에너지관리 대상자,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검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1) 제31조제1항·제39조제7항,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 제38조 ○ 같은법 제40조 제4항 ○ 같은법 제66조 제1항 ○ 같은법 제78조 제4항제9호 ○ 같은법 제75조, 같은 법 제78조제4항제12 호 ○ 같은법 제7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 환경협력· 클린도시 담당관 물관리국 (물재생 시설과)	6. 환경기술인 교육 대상자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7조, 「수질 및 수생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하수도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구청장
대기관리· 클린도시 담당관	1.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황함유 기준초과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 조치명령 및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의 사용 승인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필요조치명령 및 연료사용 승인 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 억제시설의 설치 조치 이행,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시설의 신고수리, 배출 시설 또는 배출의 억제·방지시설 개선 등 필요조치 명령 마. 법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승인 바. 법 제82조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사. 청 문	○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 같은법 제42조 ○ 같은법 제43조 ○ 같은법 제44조 ○ 같은법 제45조제4항 ○ 같은법 제82조 ○ 같은법 제8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대기관리 담당관	1.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같은법 제70조 ○ 같은법 제94조	구청장
	2.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 「소음·진동규제법」 제36조 ○ 같은법 제38조	구청장
	3. 소음·진동규제의 벌칙 중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0조	구청장
환경협력 담당관	1.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항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39조 ○ 같은법 제48조 ○ 같은법 제68조	구청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수집·운반업에 한함) 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 취소,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제25조 및 제3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협력 담당관	나. 건설폐기물의 재위탁승인	○ 같은법 제23조	
	다. 과징금의 처분 등	○ 같은법 제26조	
	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완료 및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중지 명령 등	○ 같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마.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처리이행보증, 처리 명령, 처리책임의 승계 및 조치 등	○ 같은법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같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사.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 같은법 제31조	
	아. 청문의 실시	○ 같은법 제57조	
	자.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법 제66조	
	3. 측정대행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측정대행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나.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같은법 제28조	
	다. 등록취소시 청문	○ 같은법 제29조	
	라. 과태료 부과	○ 같은법 제35조	구청장
	4. 방지시설업 등록과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방지시설업 등록 및 변경,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9조	
	나. 시공감리자의 지정	○ 같은법 제16조	
	다. 자료제출요구 및 출입검사	○ 같은법 제28조	
	라. 등록취소시 청문	○ 같은법 제30조	
	마. 과태료 부과	○ 같은법 제37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협력· 자원순환· 클린도시 담당관	5.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지시 및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처분 및 이에 따르는 청문 다. 휴업·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수리 라. 보고·검사 등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제25조 ○ 같은법 제27조, 제28 조, 제60조, 제61조 ○ 같은법 제37조 ○ 같은법 제39조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68조	구청장
	6. 관할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68조	한강사업 본부장, 녹지사업소장
	7.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 「폐기물관리법」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 조	구청장
자원순환 담당관	1.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시 입지선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다만, 서울특별시 전역을 처리권역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입지선정 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전문연구기관에의 의뢰 다. 입지타당성조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에의 공개 및 공개에 필요한 지원 라.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결과와 입지 선정 사유에 대한 인접하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협의 및 중앙환경분쟁조 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폐기물관리법」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클린도시 담당관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 등 필요 조치의 명령, 개선기간의 연장, 개선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명령, 이행 확인 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다.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 같은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 복 지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법인의 업무 및 자산운용에 관한 지도·감독 등 나.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등 2. 기증물품의 용도증명 발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같은법 제51조 ○ 「관세법」 제91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구청장
식품안전과	1. 축산물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허가 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사항 다. 영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항 라. 허가의 취소 마. 과징금 처분 바. 감독 (1) 생산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압류·폐기 또는 회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 제29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4조 ○ 같은법 제36조	구청장
원산지관리과	1.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2. 농산물 원산지표시관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 또는 조사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구청장 구청장

☐ 문 화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예술과	1. 전통사찰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폐지 나. 전통사찰의 동산이나 부동산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 다.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라. 전통사찰의 경내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제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마. 「산지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구청장
	3. 정기간행물 중 잡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잡지의 등록 및 변경 등록 나. 폐업 및 직권 말소 다. 등록 및 폐업신고 내용의 보고 라. 외국자금의 출자 서류제출 마. 영업의 승계신고 바. 최초 간행물의 제출 사.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 명령 등 아. 직권취소 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차. 청문의 실시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8조 ○ 같은법 제21조 ○ 같은법 제22조 ○ 같은법 제23조 ○ 같은법 제24조 ○ 같은법 제25조 ○ 같은법 제26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33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대중골프장의 병설 다. 회원모집계획서 접수·처리 라. 등록·변경등록 및 조건부등록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소관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통보 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법 제14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제27조 ○ 같은법 제28조 ○ 같은법 제31조부터 제33조 까지 ○ 같은법 제36조 ○ 같은법 제40조	구청장
☐ 푸른도시국			
조 경 과	1. 도로구역 내 녹지대(이하 이 란에서 “녹지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단, 세종로·시청앞의 녹지대 설치 및 관리, 노폭20m 이상 도로 신설시의 녹지대 설치의 제외) 2. 녹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설치 및 관리(서울 특별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할 수 있다) 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점용허가 다.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원상회복 라.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매수청구 마. 도시계획시설(녹지)의 점용료징수	○ 도로법 제23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같은법 제38조제1항, 제2항 ○ 같은법 제38조제5항 ○ 같은법 제29조 ○ 같은법 제41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조 경 과	3. 세종로, 시청앞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중부 푸른도시 사업소장
	4.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의 설치·관리	○ 도로법 제23조	도시기반 시설본부장
	5. 보호수의 관리(지정, 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구청장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7조제2항의 관할 공원 내 다음의 사무		관할 푸른도시 사업소장
	가. 녹지활용계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녹화계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3조	
	7. 제6호를 제외한 지역의 관할 공원 내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녹지활용계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녹화계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에 관한 법률」제13조	
자연생태과	1.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조치 명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2조제3항	구청장
	2. 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관리(지정·해제 및 그 고시는 제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제2항	구청장
	3. 입목등록(변경) 및 관리	○ 「입목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4.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방사업의 시행(산림청 소관 제외)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다.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라. 공무원의 조사행위 등 마. 손실보상 및 보상금 결정 바. 수익의 교부 등 사. 원인자 부담비용 부과 및 징수 아. 사방사업의 공부 비치 및 열람	○ 「사방사업법」 제5조 ○ 같은법 제7조의2 ○ 같은법 제7조의3 ○ 같은법 제9조 ○ 같은법 제10조·제11조 ○ 같은법 제17조 ○ 같은법 제19조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21조	구청장
	5.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야생동물의 전문 구조·치료 기관 지정 등 나. 지정서 교부 다. 지정 취소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1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구청장
☐ 행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1. 시의회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임용권 가. 의회내 전보 나. 휴직에따른 복직 다. 1개월 이내의 교육 파견명령 라. 호봉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제63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시의회 사무처장
	2. 시의회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시의회 사무처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인사과	<p>3.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보조기관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공무원과「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기관내 전보(4급이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 포함)내 전보당해 보조기관의 장</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4. 3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 포함)·기능직 공무원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2 제2호다목·제3호나목 및 별표2의2 제2호다목·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지도관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5.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속 6급 이하 일반직(연구사·지도사포함)·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임용권</p> <p>가. 당해 기관내 전보</p> <p>나. 1개월 이내의 교육파견 명령</p> <p>다. 호봉 승급</p>	<p>○ 「지방공무원법」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의2·제27조</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0조의4·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제27조의2</p> <p>○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제16조</p>	<p>당해 보조기관의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장</p> <p>당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의장</p>

☐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교통정책 담당관	1.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손실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시철도법」 제4조의6	구청장
버스정책 담당관	1.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구청장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 사항(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 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접수·수리 나. 마을버스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 적합여부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라.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증의 교부 및 등록대장의 작성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6조, 제10조(같은법 시행령 제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제32조)	구청장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 등 신고접수·수리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구청장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처리(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구청장
	5.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구청장
	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과(마을버스 노선 연장·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사업개선 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의 신고 수리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구청장
	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및 신고의 처리(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구청장
	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법인 합병신고의 수리(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 담당관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구청장
	1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구청장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또는 면허의 취소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한정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령을 위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의 위반 내용란 중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30호·제31호·제34호·제40호·제41호 및 제5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제외한 처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5.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노선폐지·감차 등을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명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16.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	구청장
운수물류 담당관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사용정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 수리 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반환 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받은 운송사업자의당해 자동차에 대한 봉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구청장
	2. 「자동차관리법」규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그 멸실된 경우의 조치와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 「자동차관리법」제7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운수물류 담당관	나. 자동차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재교부	○ 같은법 제8조, 제18조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2항	
	다. 등록의 거부	○ 같은법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6항	
	라. 자동차등록번호판과 봉인의 부착 및 떼는 허가	○ 같은법 제10조	
	마. 변경등록의 처리	○ 같은법 제11조	
	바. 이전등록의 처리	○ 같은법 제12조	
	사.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및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반납 등의 처리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 같은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6항제7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아. 직권에 의한 자동차 말소 등록, 직권말소시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자동차 등록증,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의 영치 또는 폐기	○ 같은법 제13조제6항	
	자.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수리 처리	○ 같은법 제13조제8항	
	차. 압류등록의 처리	○ 같은법 제14조	
	카.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및 변경부여	○ 같은법 제16조	
	타.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회수	○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항·제4항	
	파.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같은법 제28조	
	하.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법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18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	○ 같은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4호	
	3.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구청장
	4.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을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구청장
	5. 일반·개인 택시운송사업자에 관한 보고, 명령, 검사에 관한 사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운수물류 담 당 관	6. 자동차관리업무의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2조	구청장
	7.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3조	구청장
	8.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의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76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제33호	구청장
	9. 청문(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로 한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75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 3항제34호	구청장
	10.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 3항제35호	구청장
	11.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구청장
	12. 무등록자동차 관리사업 영업행위 단속 (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	구청장
	13.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사용신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5조	구청장
	나. 임대허가	○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다.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1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청장
	15.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 및 개서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시행규칙 제37조	구청장
	16. 일반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운수물류 담당관	1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5,000대 미만업체) 가. 등록 나. 등록의 취소 등 다.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라. 자동차 대여약관의 신고 등 마. 사업개선명령 바.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사. 법인의 합병인가 아. 양도·양수의 신고 자. 상속의 신고 차. 청문 카. 과징금의 부과·징수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휴업폐업의 신고 하. 보고·검사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 같은법 제85조 ○ 같은법 제35조 ○ 같은법 제31조 ○ 같은법 제33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4조, 제35조 ○ 같은법 제15조, 제35조 ○ 같은법 제86조 ○ 같은법 제88조 ○ 같은법 제94조 ○ 같은법 제16조제3항, 제35조 ○ 같은법 제79조	구청장
주차계획 담당관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터미널공사시행의 인가·변경인가 및 공사 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나. 터미널공사 완료시의 시설 확인 다. 터미널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라. 터미널 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중지 명령 및 터미널의 유지·관리에 대한 시정 명령 마. 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인가(위치 및 규모의 변경에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바. 운송사업자에 대한 터미널 사용명령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 ○ 같은법 제38조제4항 ○ 같은법 제39조 ○ 같은법 제42조 제3항 ○ 같은법 제43조 제1항 ○ 같은법 제45조 제1항 ○ 같은법 제94조 제2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구청장
도로교통 시설담당관	1. 도로표지 설치 및 관리	○ 「도로법」 제57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계획· 도로관리 담당관	1.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 「도로법」제24조 ○ 「도로법」제48조	구청장 구청장
도로계획 담당관	3.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 「도로법」제34조	구청장
교통지도 담당관	1. 자치구 관할구역내 버스전용차로 구간 통행 위반차에 대한 인력에 의한 도보단속 및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 「도로교통법」제143조, 제161조 ○ 「도로교통법」제147조 제 2항,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구청장 직속기관장 , 사업소장
도로행정 담당관	1.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규등록 나. 등록사항 변경 신고 수리 다. 등록의 갱정 라. 등록의 말소 마. 건설기계등록 원부의 보관 등 바. 건설기계 저장권 설정등록 및 변경·말소신고의 수리 사. 저장건설기계에 대한 압류 등의 등록 아. 등록증의 재교부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 같은법 제5조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같은법 제6조 ○ 같은법 제7조 ○ 「건설기계저당법」제5조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5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행정 담당관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 등의 통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다. 등록번호표의 반납 수리	○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라. 건설기계등록번호의 새김명령	○ 같은법 제11조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지정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나.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4. 건설기계조종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면 허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나. 면허의 취소·정지	○ 같은법 제28조	
	다. 신상변동신고의 수리	○ 같은법 제30조	
	라. 면허증의 재교부	○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	
	마. 면허대장관리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의 지정	○ 같은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	
	5.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사업의 신고 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나.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수리 등	○ 같은법 제24조	
	다. 매매용 건설기계 관리 등	○ 같은법 제25조	
	라. 사업신고 등의 통보	○ 같은법 시행규칙 제68조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행정 담당관	6. 건설기계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수시 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 같은법 제13조 제5항	
	다.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 같은법 제13조 제7항	
	라. 기간연장	○ 같은법 제13조 제8항	
	7. 보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	
	나. 건설기계 폐기 등	○ 같은법 제34조의3	
	다. 보고·검사 등	○ 같은법 제35조	
	라. 청문 등	○ 같은법 제36조	
	8. 벌칙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벌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	○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9.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구청장
	가.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법」제38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41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94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101조	

☐ 도시계획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시관리과	1.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의 행위허가	○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구청장
시설계획과	1. 사도개설허가	○ 「사도법」 제4조	구청장
	2. 사도 통행제한 또는 금지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3.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 「사도법」 제7조	구청장
토지관리과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장인 경우 도로사업 등의 손실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	구청장

☐ 주 택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택공급과	1.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 「주택법」 제16조	구청장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 「주택법」 제24조	구청장
	3.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관한 사무 가.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 및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나.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	○ 「주택법」 제56조제1항·제2항 ○ 「주택법」 제57조제1항	구청장
	4.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주택법」 제91조	구청장
	5.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익사업자 지정	○ 「임대주택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구청장
	6.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및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안에서의 미매각 토지의 사용 등 허가와 토지관리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기획과	<p>1.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다음의 사무</p> <p>가. 승강기 운행정지명령</p> <p>나. 검 사</p> <p>다.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공항 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p>	<p>○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p> <p>○ 같은법 제21조</p> <p>○ 같은법 제28조</p> <p>○ 「항공법」 제107조제3항</p>	<p>구청장</p> <p>구청장</p>

☐ 물관리국[illegible]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관리과	<p>1. 국가하천 및 청계천 제외지를 제외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하천법」제5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 접수 수리</p> <p>나.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보관 등본의 교부·열람, 그 밖에 필요한 조치사항</p> <p>다. 하천시설의 관리·점용 사항 등의 점검, 유지보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 조치</p>	<p>○ 「하천법」제5조</p> <p>○ 같은법 제15조</p> <p>○ 같은법 제14조</p>	구청장
하천관리과	<p>라. 하천수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p> <p>마.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유지·관리의 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의뢰 등 조치</p> <p>사. 하천의 점용허가 및 고시 등 이에 따른 조치</p> <p>아.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p> <p>자. 고시된 하천예정지와 연안 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차. 과오납된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카.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타.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이에 따르는 조치</p> <p>파. 하천관리원의 임명. 하천법 및 하천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p> <p>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사업장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물건 및 서류 등의 검사</p> <p>거. 하천의 사용금지·제한 및 이에 따른 공고 등</p>	<p>○ 같은법 제52조</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0조</p> <p>○ 같은법 제33조</p> <p>○ 같은법 제36조</p> <p>○ 같은법 제38조</p> <p>○ 같은법 제68조</p> <p>○ 같은법 제69조</p> <p>○ 같은법 제70조</p> <p>○ 같은법 제72조</p> <p>○ 같은법 제90조</p> <p>○ 같은법 제47조</p>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하천관리과	너. 원상회복의무 조치, 면제, 면제통보, 비용의 예치 및 당해 공작물 등의 국유화 조치	○ 같은법 제48조	구청장(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더. 하천구역 등의 지정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그에 관한 협의	○ 같은법 제76조	
	러.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같은법 제77조	
	머. 하천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및 이에 따르는 조치	○ 같은법 제78조	
	버. 폐천부지(국유지 제외) 등의 교환 및 양여	○ 같은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서. 허가수수료의 징수·감면	○ 같은법 제89조	
	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	○ 같은법 제91조	
	저. 「하천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에 따르는 처분	○ 같은법 제98조	
	2. 국가하천을 포함한 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다만, 청계천 제외되는 제외한다)		
	가.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 같은법 제27조	
	나. 하천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 같은법 제37조	
	다. 점용료 등의 감면	○ 같은법 제37조	
	라. 하천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변상금 및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 같은법 제67조	
	마. 하천에서의 야영·취사 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 같은법 제46조	
	3. 하천 국유화에 따른 조치 (지목변경, 등기말소의 촉탁 관리청 명칭 첨가)	○ 같은법 부칙 제2조	구청장

☐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법 제6조	
	다. 지위승계 신고	○ 같은법 제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같은법 제9조, 제32조	
	마.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10조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법 제31조	
	다. 지위승계 신고	○ 같은법 제32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청문 등	○ 같은법 제34조, 제44조	
	마.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35조	
	3.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소방서장
	가. 등 록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법 제16조	
	다. 지위승계 신고	○ 같은법 제17조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같은법 제19조	
	마. 과징금 처분	○ 같은법 제35조	
	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소방서장
	가. 등 록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p>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p> <p>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p> <p>5.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p> <p>가.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정지, 제한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p> <p>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 및 내용 변경 명령</p> <p>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퇴직 신고 수리</p> <p>라. 안전성 확인 및 완성 검사</p> <p>마.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p> <p>바.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p> <p>사.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허가관청 등의 조치</p> <p>아.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보고·검사 등</p> <p>자.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청문</p> <p>차. 가스안전관리업무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p>	<p>○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제9조 및 제10조</p> <p>○ 같은법 제12조</p> <p>○ 같은법 제16조</p> <p>○ 같은법 제18조</p> <p>○ 같은법 제19조</p> <p>○ 같은법 제21조</p> <p>○ 같은법 제29조</p> <p>○ 같은법 제38조</p> <p>○ 같은법 제40조</p> <p>○ 같은법 제52조</p>	구청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 또는 공단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주관부서와 위임 근거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별표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사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별표의 관련 사무를 삭제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별표의 관련 사무를 삭제함
- 「의료법」전부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의무’가 소멸되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별표의 관련 사무를 삭제함
- 「약사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령」, 「소음·진동규제법」이 개정되어 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0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절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제2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사장) 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되, 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종전의 제11조) 및 제13조(종전의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종전의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정관으로 정한다.

제4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사 업

종전의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4. 도매시장법인 등이 납부한 보증금 및 담보물의 관리
5. 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
6.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7. 정관이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제17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제2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종전의 제17조부터 21조까지를 각각 제18조(종전의 제17조)부터 제22조(종전의 제21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배당(시 일반회계에 납입)
4. 정관에서 정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종전의 제21조의2를 제23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사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2조를 제2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차입금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 등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감 독

총전의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6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조직·인력에 관한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장 장 번호 및 제목 삭제한다.

제8장을 제7장으로 하며,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경영목표,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34조를 제31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과태료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

른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8조).
-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둠(안 제11조).
- 공사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3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1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 기능직공무원 중 구분란에 “5급”란을 신설하며, 비율란 중 5급을 “1%이내”로, 6급을 “14%이내”로, 8급을 “61%이내”로, 9급·10급을 “2%이상”으로 한다.

별표 3의 일반직 계란 중 계 “6,531”을 “6,541”로, 5급 이하 소계란 중 계 “6,284”를 “6,294”로, 별정직 계란 중 계 “117”을 “107”로, 5급상당 이하 소계란 중 계 “116”을 “10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별정직 인력운용 효율화 계획에 따라 기능최퇴 직무 등 별정직 정원10명을 감축하여, 주요 시책사업 추진 등 신규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일반직 정원으로 상계조정하며, 기능5급 신설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2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그동안 시 방침으로 시행해 온 서울시 홍보대사 및 서울시민 홍보대사와 각 부서(기관)별로 위촉·활용하고 있는 특정임무 홍보대사를 포함하는 홍보대사의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 홍보대사의 위촉대상과 임기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홍보대사의 위촉절차 및 임기와 해촉사유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3호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자연장의 방법 등) ① 시립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화장한 골분은 흙과 섞어 묻는다.

② 시립자연장지 내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립 자연장지 내에서는 공동 표지만 허용하고 있으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표지 또는 개인표지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4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및 제9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의 지원 제외대상 중 일부조항을 삭제하여 무공수훈자들도 매월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5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용 도	구 조	면 적	기 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미늄새시	30제곱미터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다만,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 하는 것
제품 야적장	철골조립조	500제곱미터이하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조	300제곱미터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조 또는 알루미늄새시	5제곱미터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매표소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함. (안 제1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6호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특별지원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의거하여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전액
2.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 일부
3.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일부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수급권자,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을 중심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생활경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면서 입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나 관리비에 대한 부담 역시 가중되어 서울시 차원에서 특별지원책을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소득수준과 계절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영구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7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하게 하여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역사주변의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한 다양한 시설의 이용편익 증진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안 제26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건축물의 높이)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 안에서 공공 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제1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공공보

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1.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건폐면적 / 대지면적) 이내
2.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하철출입구 및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여 보행불편 해소와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역사주변의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한 다양한 시설의 이용편익 증진 등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 안에서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5호)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에도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를 건물 또는 대지 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산식에 따라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제18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979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시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 ③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전동차의 조립·제작, 전동차·신호설비·전기설비·궤도토목 및 철도장비용품의 부품제작·조립,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제작검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전동차 제작을 새로이 사업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 및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안 제10조 등)
- 비상임이사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등의 실비 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근거 규정 마련(안 제16조)
- 공사의 사업범위로 전동차의 조립·제작, 철도장비용품의 부품제작,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제작 검사 등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980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제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에스에이치(SH)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기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종전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0조의2를 제12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4조(종전의 제11조)부터 제20조(종전의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5조(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사 업

총전의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5.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시장의 승인을 얻은 해외건설사업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22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총전의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2를 제25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

로 본다.

총전의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비 중 영 제63조제2항제4호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별표에 의한다.

제28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시 일반회계에 납입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금에서 보전
2. 이익준비금에서 보전
3. 차기 결손금으로 이월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 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공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채를 발행 또는 외국차관 도입 등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를 각각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감 독

종전의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감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장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한다.

제7장을 제6장으로 하고,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 칙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42조(업무상황 공표)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의 대행(수탁)에 따른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제27조제3항 관련)

대행(수탁) 사업명	대행수수료 산정기준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제외)	공사비	수수료의 요율의 기준 (공사비에 대한 비율)	참 고
	100억원 이하	9.0% 이내	1.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 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 장기사업일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 에 의하여 수수료를 연도별로 배분 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 수탁사업의 범위에 토지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 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기준표 상의 공사비로 본다.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8.0% 이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7.5% 이내	
	500억원 초과	7.0% 이내	
건설사업대행 (재개발 및 재건축 임대주택)	공사비의 4.5% 이내		
택지매각사업	택지매각대금 중 대행계약체결기한 내에 수납된 매각원금의 0.5%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인건비와 일반경비 합계액의 3%		
기타 관리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변경함(안 제8조)
- 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
- 이사회의 의장은 사장에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안 제16조 제3항)
-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981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환승교통체계의 개선

제3조제2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동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주요내용인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재정지원 사항이 규정되지 않았던바 이를 동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사항에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환승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7호)
- 재정지원 대상에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신설(안 제3조제2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982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7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괴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의 제2호 중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컷타기”를 “절단기”로 하고, 제3호 나목 중 “타일류”를 “화강석류”로 한다.

별표 2의 보도의 적용단면란 중 “소형고압블록 표층 : 7cm”를 “소형고압블록 표층 : 6cm”로 하고, 보도의 부호란 중 “오나멘트타일”을 “화강석”으로 하며, 보도의 적용단면란 중 “오나멘트타일 표층 : 4.5cm”를 “표 층 : 3~5cm”로, “몰탈(1:3) : 3cm”를 “몰탈 : 4cm”로, “콘크리트기초 : 5cm”를 “콘크리트 기초 : 10cm”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 조례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그 동안 동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가지조항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도로복구공사가 완료 되었더라도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부담 의무를 지우게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굴착된 토사를 즉시 반출하고 모래로 되메우기 하도록 한 규정에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안 별표 3)
-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하도록 한 규정에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계굴착이 가능하도록 추가(안 별표 3)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조례 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롤러, 콤팩터, 소형램머 등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층(200mm이하)마다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4-8 굴착 및 복구공사” 참고
3.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포장 층을 직선으로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행 공간 확보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계굴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굴착으로 인한 굴착부분 이외의 보도블록 파손이나 침하 등 시설물 손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괴발생 시 굴착 원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에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로굴착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고, 손괴시에는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4983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시장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감안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 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기관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사항

2. 운수종사자 교육운영 사항

②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

2. 교육시간 준수여부

3. 교육 후 교육과정 및 강사 평가 실시여부

4. 미교육 이수자 조치 등 학사관리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배정을 감축할 수 있다.

1. 교육장 수용인원보다 많은 교육생을 등록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교육평가 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학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수기관이 운영비에 대해 허위 보고를 한 경우

2.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교육받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3. 연수기관이 문서에 의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포기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4984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체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2조(총전의 제11조)부터 제17조(총전의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 ④ 의장은 이사회 회의의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에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⑦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사 업

총전의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자체사업)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
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

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공단은 대행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4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재무회계

총전의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0조(총전의 제19조)부터 제26조(총전의 제25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시 일반회계에 납입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의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5장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감 독

총전의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제27조 및 제28조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장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한다.

제7장을 제6장으로 하며,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제29조(총전의 제36조)부터 제33조(총전의 제40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31조(공단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특혜가 될 수 있고, 향후에 과다한 월정액 지급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임

◆ 서울특별시조례 제4985호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7조5,000억원”을 “9조 5,000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이 지정하는 시 공무원 2명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또는 시민대표

③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⑦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메트로의 수권자본금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메트로 납입자본금이 7조 2000여억원으로 수권자본금 7조 5000억원의 96.4%에 도달하여 수권자본금을 9조 5000억원으로 확대(안 제4조)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연임기준에 대해 명시(안 제7조 및 제7조의2)
-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당연직이사의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음을 명시(안 제10조)
-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이사회 의장의 선임방식을 변경하고,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활동경비 월정액 지급 가능 규정 신설(안 제16조)
-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4986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인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 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2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TV방송”이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2. “뉴미디어”란 인터넷, 디지털 방송 및 지하철 TV시스템 등을 말한다.
3. “방송제작진(스태프)”이란 방송제작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문진행자(전문MC)”란 뉴스 또는 전문분야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리포터”란 방송제작을 보조하거나 지정된 위치에서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방송통신원”이란 주요도로 등 교통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교통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방송심의”란 방송물(방송원고, 방송소재, 방송가요, 녹화, 녹음 등)에 대한 방송적합여부, 방송의 진행 또는 송출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모니터”란 방송운행의 내용, 진행 등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평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법 등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는 제1항의 방송기본편성표에 따라 일일운행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일운행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방송운행 : 프로그램 및 스테이션브레이크(Station Break :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공백으로 협찬캠페인·방송광고 및 방송안내시간 등을 말한다)를 단위로 한 하루분의 방송
2. 프로그램운행 : 단위 프로그램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프로그램 내의 모든 운행
- ③ 방송운행은 제2항의 일일운행표에 따라 정확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방송운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에 대한 책임)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 및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방송운행에 대한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방송제작비 등 지급) ① 시장은 방송의 제작 또는 진행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원고료·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고료·출연료 등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다른 방송사의 예와 현장 생방송을 위주로 하는 교통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2를 제7조로 하고, 종전의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프로그램의 외주제작) 시장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주할 수 있다.

제8조(방송제작진 등) ① 시장은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송제작진·전문진행자·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이하 “방송제작진등”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각 지정된 위치 또는 주요도로 등의 교통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② 방송제작진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방송모니터) 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주제 설정의 적합성과 소재선택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 입장에서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② 방송모니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법 제86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자체 심의를 위하여 방송심의기구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기구는 가요 등 전문분야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방송심의 기준 등) ① 방송에 대한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기구는 제1항의 심의사항 외에 방송진행, 녹음·녹화 편집, 운행, 송출과정 등에서의 방송사고 유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5조의 방송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의 심의절차 및 심의결과 사고 유발자에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협찬방송)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방송에 대한 협찬내역은 방송내용·방송시간 및 협찬고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협찬방송금 단가는 별표1과 같다.

③ 시장은 협찬방송의 협찬자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방송 모집업무를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3조로 하고, 종전의 제11조의3부터 제14조까지를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종전의 제15조는 삭제한다.

제13조(방송광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외에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방송광고의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광고 모집업무를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모집금액의 16.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광고료 단가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① 시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제공
2. 프로그램의 민간공동제작
3. 프로그램의 수탁제작 등

② 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 및 공공성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과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습득
2.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3. 프로그램 보급의 확대를 위한 시장진출
4. 그 밖에 방송기술·업무와 관련한 제휴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방송제작진 등·방송모니터 및 방송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찬방송금 단가(제12조 관련)

협찬명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 : 시)	멘트 횟수	단가(원)
캠페인	A	07 ~ 08, 18 ~ 20	1회	200,000
		09 ~ 17	〃	150,000
	B	06, 21 ~ 23	〃	130,000
	C	00 ~ 05	〃	100,000
1분 교통정보 수시교통정보	A	07 ~ 08, 18 ~ 20	전·후 각 1회	170,000
		09 ~ 17	〃	140,000
	B	06, 21 ~ 23	〃	120,000
	C	00 ~ 05	〃	100,000
50분 교통정보 기상정보 기 타	A	07 ~ 08, 18 ~ 20	전·후 각 1회	160,000
		09 ~ 17	〃	130,000
	B	06, 21 ~ 23	〃	110,000
	C	00 ~ 05	〃	100,000
교통 특별방송 (설날, 추석)	전일	00 ~ 23	회사별 매시간 2회	40,000,000
공개방송 및 공익 행사 안내	〃	00 ~ 23	1회	200,000

비 고

1. 단가규정 이외의 협찬방송금은 본 단가표를 기준으로 산정
2. DMB 라디오 단가는 협찬방송금 총액의 10퍼센트로 함.
3. 시급적용 기준 (라디오방송·DMB 라디오)

06시 07시 21시 24시

<u>C</u>	<u>B</u>	<u>A</u>	<u>B</u>	<u>C</u>
----------	----------	----------	----------	----------

[별표 2]

방송광고료 단가(제13조 관련)

구 분	시급	방송시간대 (단위 : 시)	방영 횟수	단가(원)
프로그램광고 (캠페인 등) 30초	SA	10 ~ 18	각 1회	90,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7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60,000
중간광고 20초	SA	10 ~ 18	각 1회	120,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10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90,000
자막광고 10초	SA	10 ~ 18	각 1회	12,000
	A	00 ~ 01, 06 ~ 09, 22 ~ 23	각 1회	10,000
	B	02 ~ 05, 19 ~ 21	각 1회	9,000

<비 고>

- 30초 이상 되는 광고 중 45초를 초과하는 경우 할인 단가 적용.
(30초는 기준단가 적용, 초과되는 시간은 30초 단위로 50퍼센트 할인된 단가 적용)
- 단가규정 이외의 광고는 본 단가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02시 06시 10시 19시 22시

<u>A</u>	<u>B</u>	<u>A</u>	<u>SA</u>	<u>B</u>	<u>A</u>
----------	----------	----------	-----------	----------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95호****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식품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사업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추진사항을 규정함.

나. 식품안전기반의 구축을 위한 "식품안전통합인증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복지국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전화 : 6361-3873, FAX : 6361-3864, e-mail : mary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12호**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정원규칙과 임용자격기준 규칙간의 직무분야 불일치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원은 있으나 자격기준이 없는 임상병리 직무를 신설함(안 별표 8)
- 나. 위험물취급관리업무, 속기업무, 회의록편집업무에 대한 6급상당계급의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11, 별표 19 및 별표 20)
- 다. 민방위·화생방업무,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임용자격기준 등을 완화함(안 별표 21 및 별표 24)
- 라. 그 밖에 자격증 명칭 변경 사항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02)731-6622, FAX : 02)731-6503, E-mail : superman7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1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관리제도의 적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구역 지정의 필수요건으로 함
- 나.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기준을 준용함
- 다.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등에 관계없이 특정한 날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로 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주택세입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토록 함
- 마.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하되, 소규모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제외함
- 바. 구청장은 정비구역지정 고시한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총회에서 시공사 선정한 때까지 공공관리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 사.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시공사등의 선정기준을 정함
- 아.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자. 공공관리를 받고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동안 지원한 공공관리의 비용환수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정비과(전화 : 02)3707-8496, FAX : 02)3707-8249, E-mail : hongj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34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연구용역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검사·시험 수수료를 전자로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검사·시험 수수료 현금납부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결제 납부방식”을 도입함.

다. “검사·시험성적서 및 그 외국어 번역문”을 “국문 또는 영문 검사·시험성적서”로 변경하여 검사·시험성적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원에서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다른 기관명에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및 기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등”을 추가함.

마.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하여 서울시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복지국 위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전화: 3707-9111, FAX: 3707-9129, E-Mail: hanse023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7호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4호(1979.11.22)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공고 제723호(1983.12.30)로 제6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19호(2008.3.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정비사업의 명칭 : 중구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일대
3.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
가. 정비구역(지구)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비고
				소계	정비기반시설	
기정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3,846.1	3,518.8		327.3	· 중구고시 제2008-19호 (2008.3.27)
변경		3,846.1	3,518.8		기정:327.3 추가:건물-299.09 토지지분30.52	· 추가기반시설 부담은 완료지구내 건축물 신축시 기준에 따라“공연 장+대지지분으로함.

나. 정비계획 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3,846.1		3,846.1	100.0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정비 기반 시설	소계	327.3	-	327.3	8.51	°기정 327.3㎡는 서울시공고 제1983-723호로 사업완료공고시 관리청 무상귀속됨
	도로	327.3	-	327.3	7.66	
	공연장	-	증)299.09	299.09		°금회 기부채납 시설인 공연장 공유지분과 공연장 대지지분은 사업완료 공고시 관리청 으로 무상귀속
	공연장 대지지분	-	증) 30.52	30.52		
택지	소계	3,518.8	-	3,518.8	91.49	
	대지	3,518.8	-	3,518.8	91.49	

2)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가) 도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3	122	83	집산 도로	일반 도로	83	을지로1가 53	을지로1가 38-1	-	78.09.26	
기정	중로	3	124	6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60	을지로1가 98	을지로1가 95-1	-	78.09.26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추가기 반시설	공연장	중구 을지로1가 101-1번지 지하1층	-	증)299.09	299.09	• 완료지구 내 건축물신축기준에 따른 추가 정비기반시설 신설

4) 건축시설계획 변경조서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3,518.8	-	-	을지로1가 101-1 일대	34,188.93	업무	36.37	686.73	(85.76) 지상20층/ 지하4층	리모델링 (경미한 변경)
변경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3,518.8	-	-	을지로1가 101-1 일대	49,836.13	업무	49.65	849.50	(116.7이하) 지상22층/ 지하7층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비 고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용도별 시설면적 계획			◦ 업무시설 : 94.57% ◦ 근린생활시설 : 5.43%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① 기준높이 : 90m + 20m = 110m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10 × 3% = 3.3 ③ 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110 × (571.81-351.88)/2/3,518.8 = 3.43 ④ 최고높이 = 110 + 3.3 + 3.43 = 116.73m ⑤ 계획높이 : 116.7m 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을지로변 건축한계선 3m ◦ 남대문로변 건축한계선 3m								

□ 관계도면 : 붙임참조

#1. 을지로1가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 도시재정비팀(☎02-2171-2686), 중구청 도시관리과(☎02-2260-1907)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승인

1) 정비구역의 명칭 : 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아현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22,101	-

3) 정비계획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22,101	-	22,101	-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430	감)11,430	-	
	제3종일반주거지역	9,690	증)12,411	22,101	
	준주거지역	981	감)981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2,101.0	10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759.5	17.01	-
	도 로	2,229.5	10.09	
	어린이공원	1,423.0	6.44	
	녹 지	107.0	0.48	
획 지	소 계	18,341.5	82.70	-
	획 지 ①	17,906.5	81.02	공동주택용지
	획 지 ②	435.0	1.97	보류지(사회복지시설)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2	43	40 (현황40~50)	주간선	일반 도로	1,520	경기공전앞 (광로42)	공덕로타리 (광로27)	-	건교부고시 137호 (77.07.09)	
변경	광로	2	43	40 (현황40~50)	주간선	일반 도로	1,520	경기공전앞 (광로42)	공덕로타리 (광로27)	-		완화차로 설치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4	아현동 378-78	아현동 372-2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변경	소로	2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4 (70)	아현동 378-78	아현동 372-2	-		도로 확폭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6	소로3-5	소로3-4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6	소로3-5	소로3-4	-		노선 폐지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0	광로2-43	소로3-1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변경	소로	3	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6	광로2-43	아현동 85-726	-		노선연장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6	소로4-22	소로3-13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폐지	소로	3	1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6	소로4-22	소로3-13	-		노선 폐지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1	소로3-1	소로3-12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변경	소로	3	1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0	아현동 372-56	아현동 742-4	-		노선연장 도로확폭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5	소로3-1	소로3-12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폐지	소로	3	1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5	소로3-1	소로3-12	-		노선 폐지
기정	소로	4	19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0	소로2-1	소로4-44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변경	소로	4	19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6 (50)	소로2-1	소로4-44	-		노선 변경
기정	소로	4	21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2	소로3-12	소로2-1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변경	소로	4	21	4~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4 (72)	아현동740	소로3-1	-		노선변경 도로확폭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4	22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5	소로3-14	소로4-19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폐지	소로	4	22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5	소로3-14	소로4-19	-		노선 폐지
기정	소로	4	48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0	소로3-12	소로2-1	-	건교부고시 470호 (73.12.01)	
폐지	소로	4	48	4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0	소로3-12	소로2-1	-		노선 폐지

※ (괄호)는 구역내임

(2) 공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아현동 85-14번지 일대	-	증)1,423.0	1,423.0	-

(3) 녹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녹지	경관녹지	아현동 85-428번지 일대	-	증)107.0	107.0	-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2,101	마포구 아현동 85-17번지 일대	249	-	-	249	-	철거건물 249동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아현1-3 구역주택 재개발	22,101	획지 ①	17,906.5	아현동85-17 번지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50% 이하	33층 이하
			획지 ②	435.0	아현동85-240 번지일대	보류지	관련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24세대 ▶ 건립규모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전용면적85㎡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340세대 (80.19%)		
			전용면적85㎡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84세대 (19.81%)		
			계		-		424세대 (100.00%)		
			▶ 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 세대수의 17%이상 - 73세대(17.22%)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40㎡이하		임대주택의 40~50%		31세대(42.47%)		
			40㎡초과 ~ 50㎡이하		임대주택의 40~50%		31세대(42.47%)		
			50㎡초과 ~ 60㎡이하		임대주택의 10~20%		11세대(15.07%)		
			계		-		73세대(100.00%)		
심의완화 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확정 받고자 하는 사항 - 인센티브 항목(친환경계획)으로 인센티브 5%를 부여하여 허용용적률 215%까지 완화 ▶ 용도지역 변경(상향)관련 공공시설부지 제공(기부채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준용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변경(상향)		최소부담기준		실제순부담면적(설계)		
			변경	구분	비율	면적(㎡)	비율	면적(㎡)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2단계상향)	20%이상 (구역면적대비 10.34%이상)	11,430×0.2 = 2,286㎡	20.57% (구역면적대비 10.64%)	2,351.5	
			※ 향후 사업시행시 측량성과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마포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함						

▣ 개발가능용적률

○ 산정내용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획 지 (공동주택용지, 보류지)	계획 정비기반시설
	22,101㎡	18,341.5㎡	3,759.5㎡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759.5㎡ - 1,408㎡ = 2,351.5㎡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 α) = 215% + (210 × 1.3 × 0.1282) = 250.0%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 대지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비 = 2,351.5 / 18,341.5 = 0.1282		
	▶ 건축계획용적률 = 249.12%		

※ 공공시설부지 제공 관련, 심의를 통해 완화받는 사항(용도지역변경, 용적률완화)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는 것을 전제로 완화(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지 않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양도시 완화받을 수 없음)

○ 산정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8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본 대상지에서 공공용지 제공 시 250%까지 완화하여 적용 계획

- ▶ 계획(기준) 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 ▶ 허용 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우수디자인 건축물 등 인센티브 (20%이내)
- ▶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 × 1.3 × α]
(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18,341.5	82.99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소계 (A)	3,759.5	17.01	공공용지율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B)	1,408	6.37	
	공공시설제공부지 (A-B)	2,351.5	10.64	순부담율

계획(기준)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	상한 용적률	건축계획 용적률	비 고
210%	250%	250%	249.12%	

※ 사업시행시 측량성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아현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지계획소유자 - 286 인 • 계획 - 424 세대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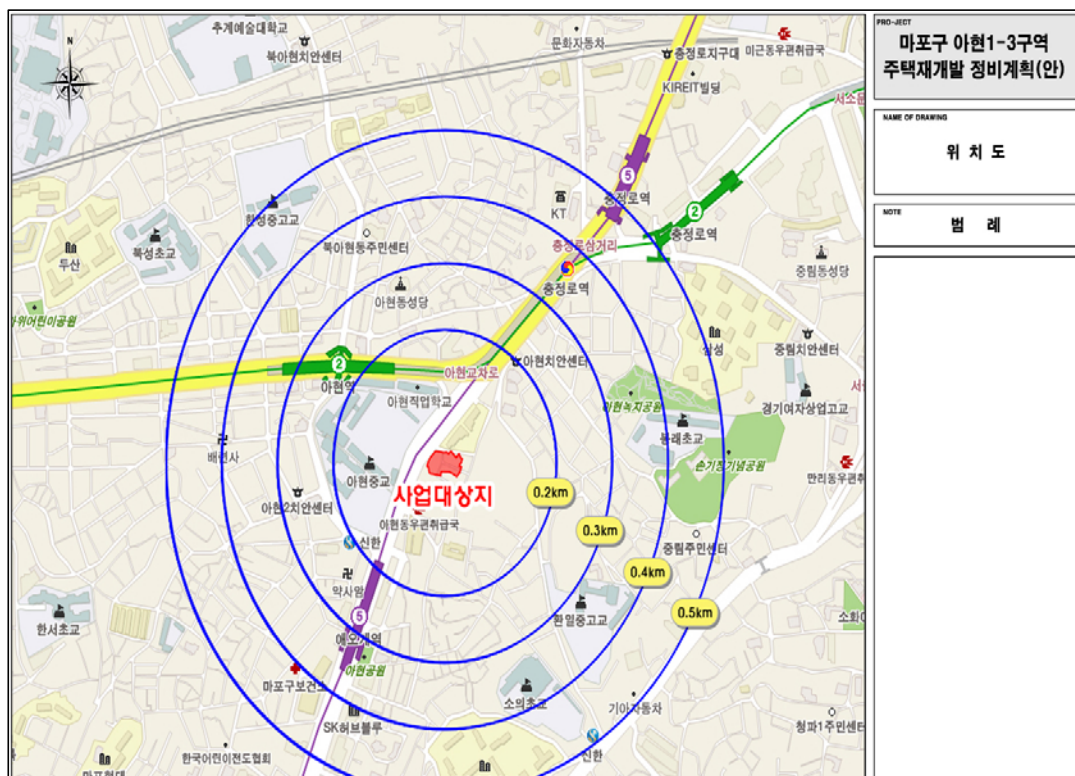
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지정도 및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마포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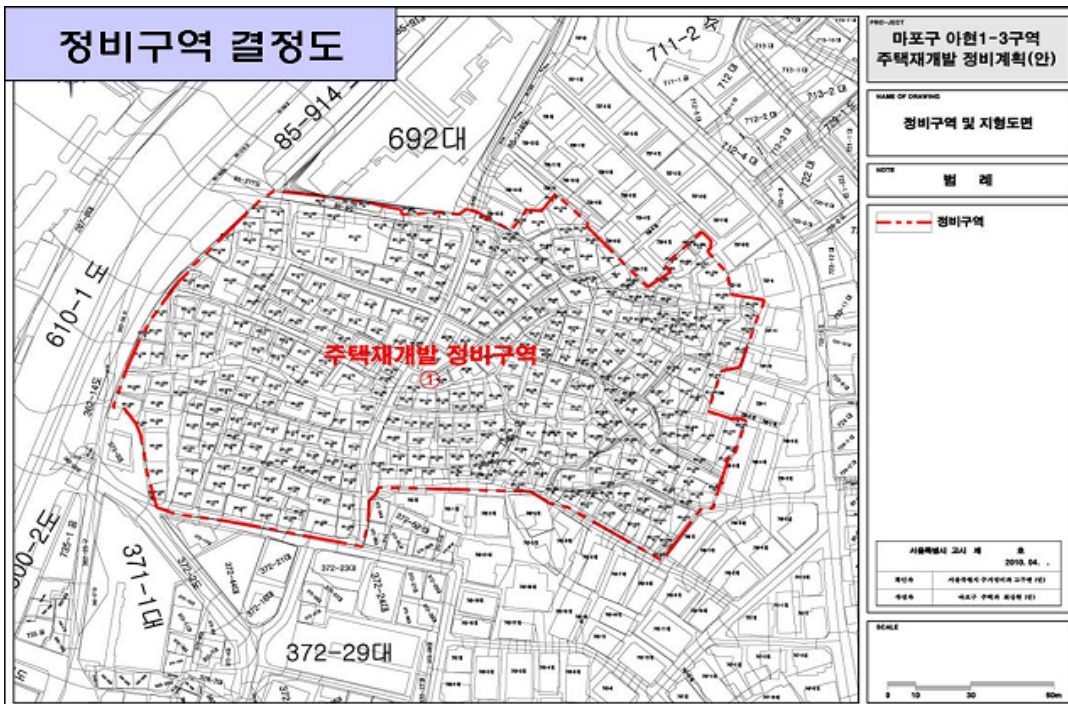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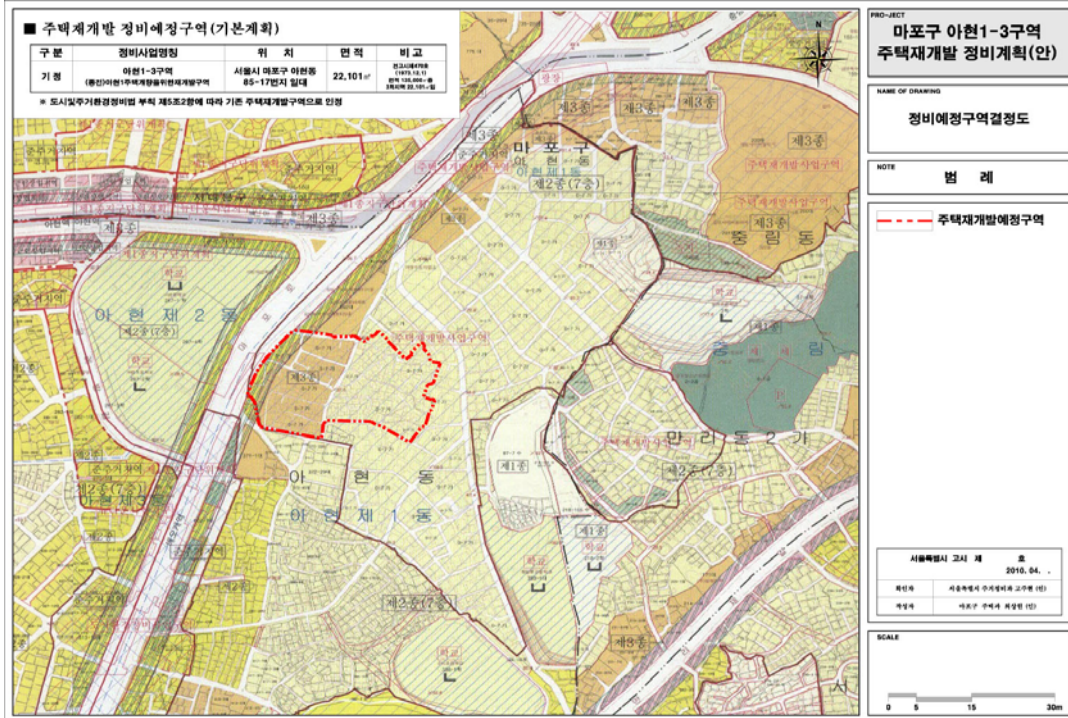
라.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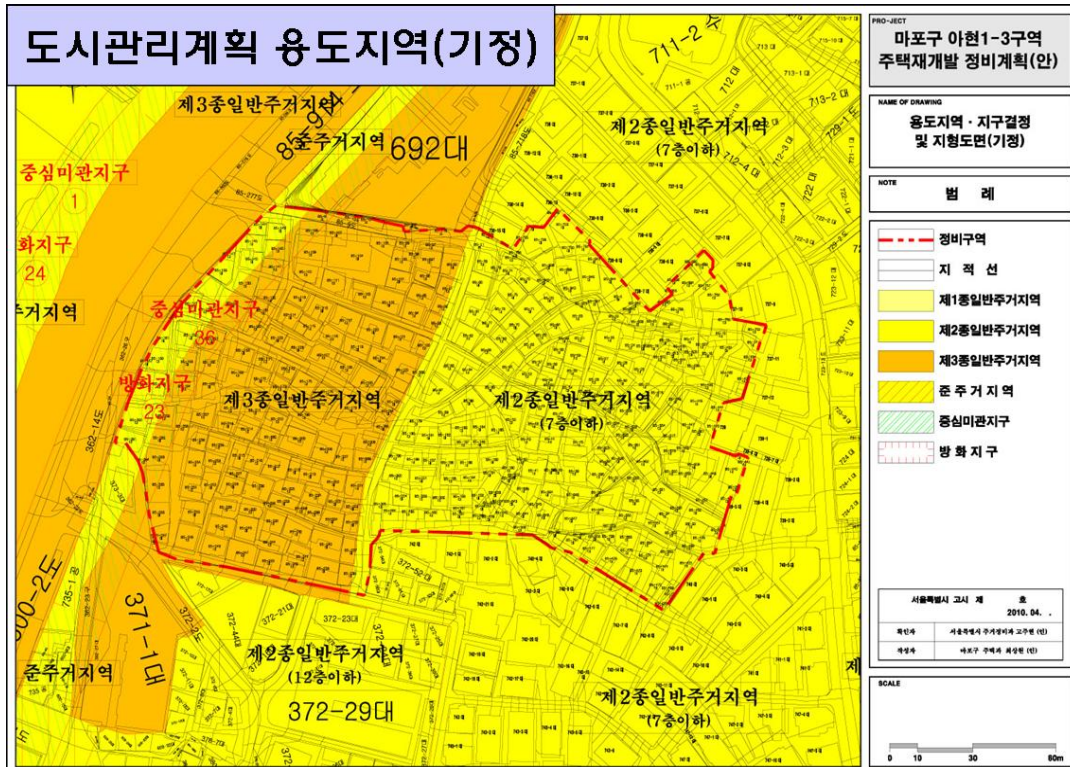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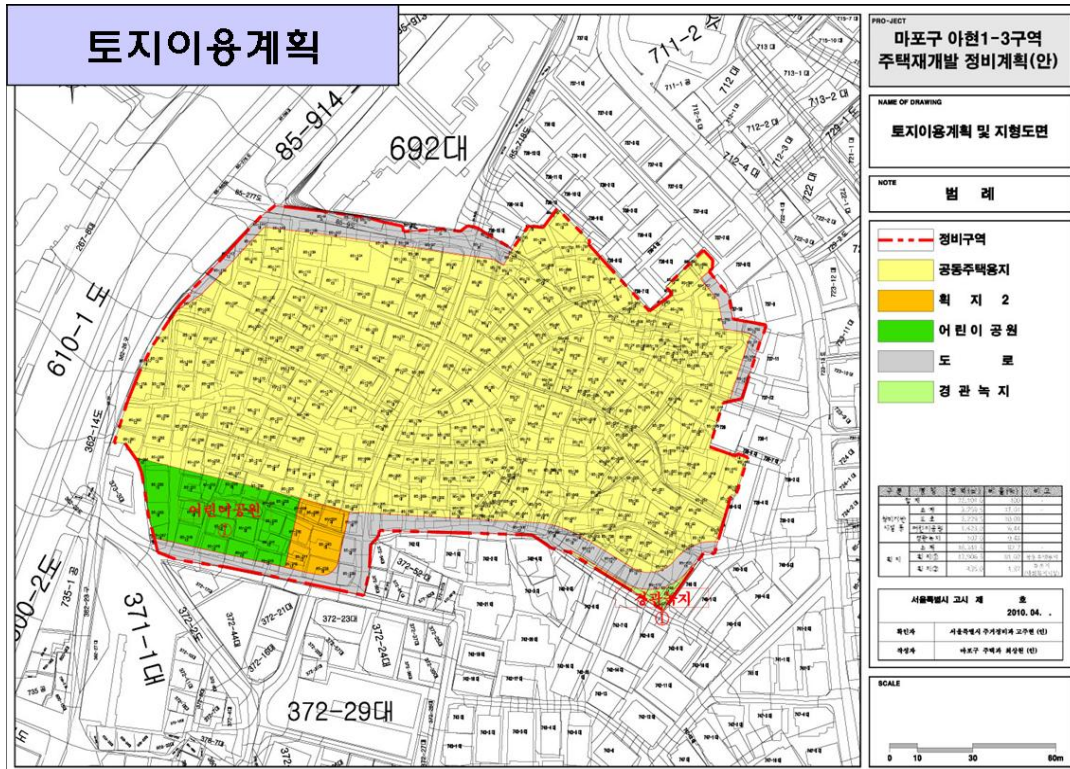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3707-8491)와 마포구청 주택과(☎02>3153-9316)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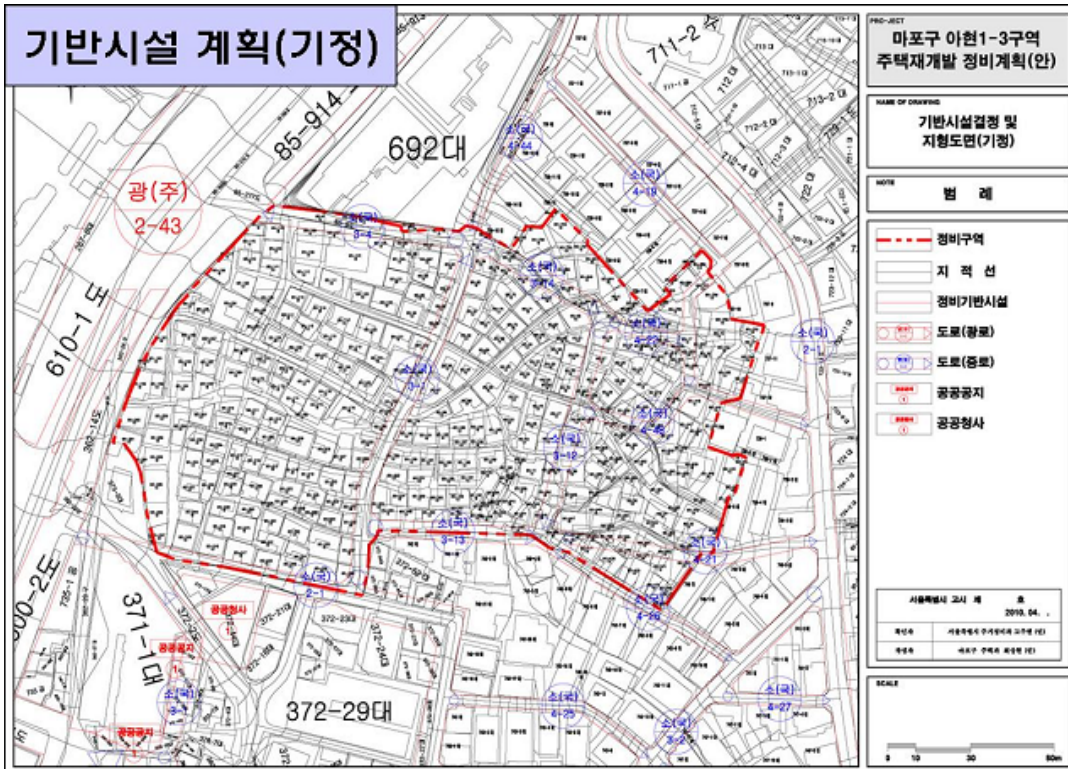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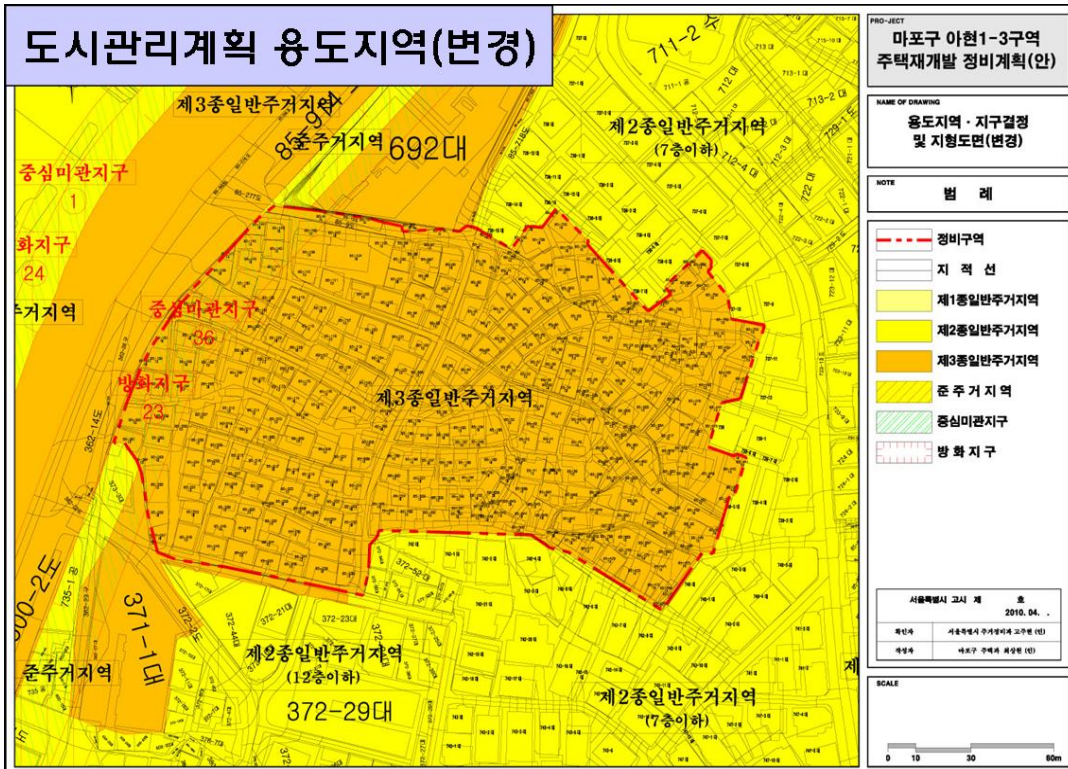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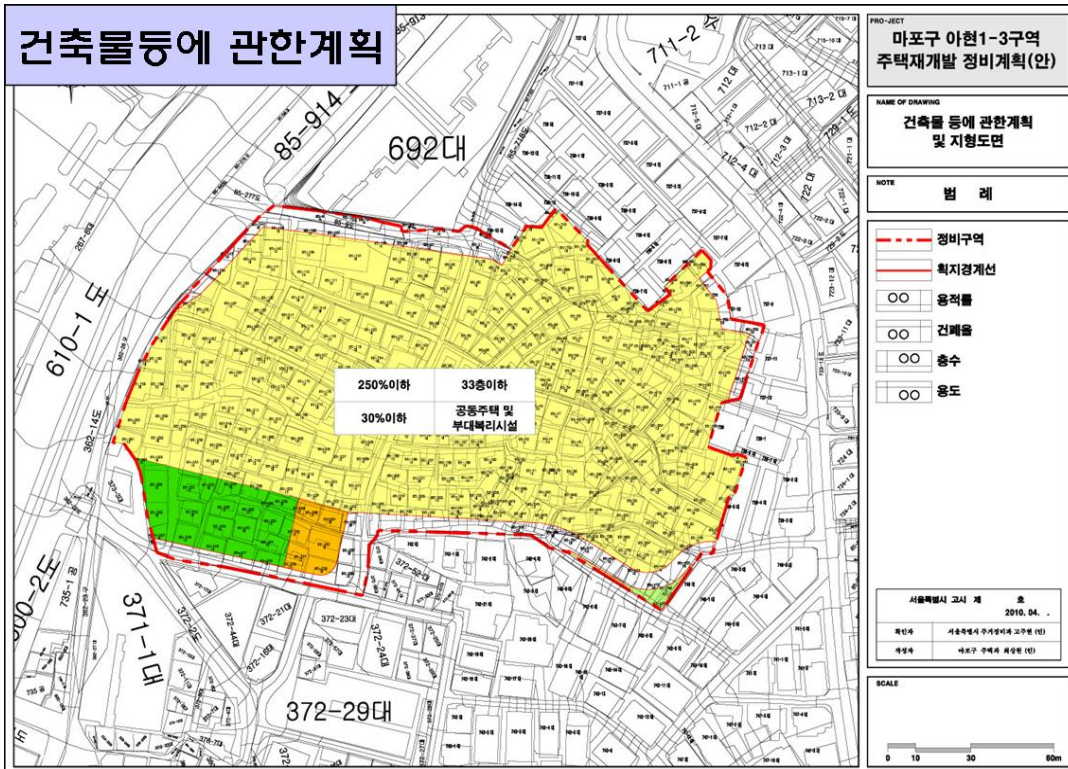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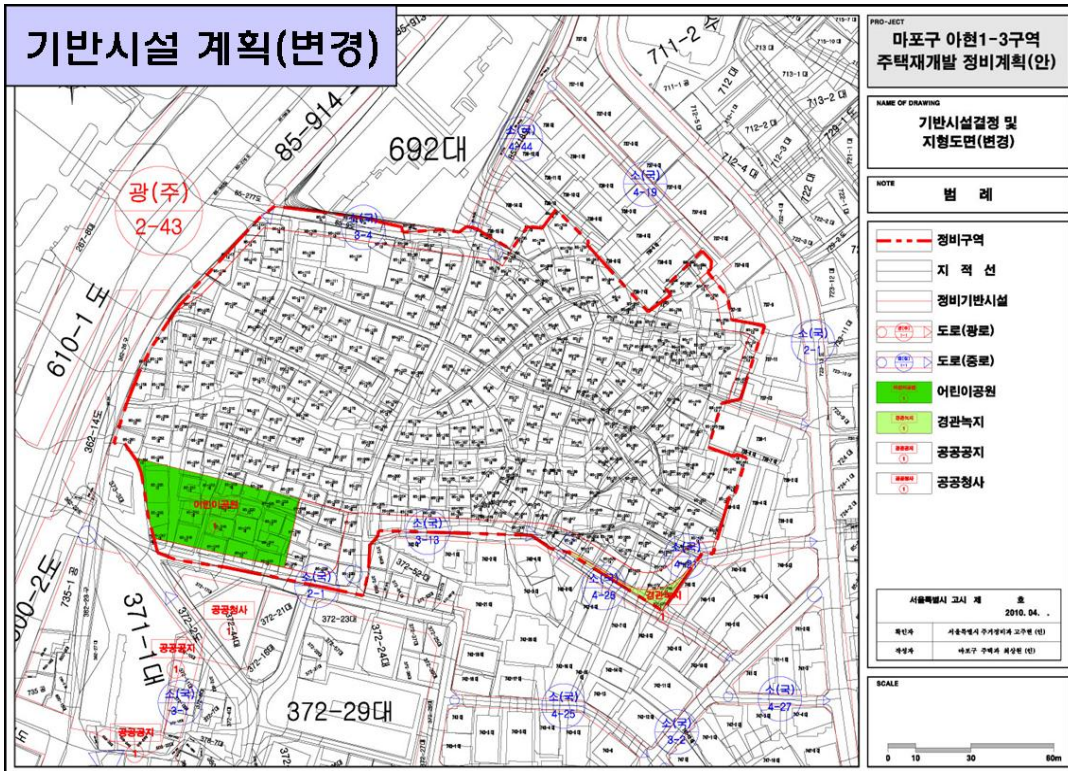


정비예정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39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 1,3,5동 일대	905,842	-	905,842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2012년→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외 기타 촉진계획 변경없음.

나.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결정.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신 설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번지 일대(항물상가)	-	증) 92,445	92,445	-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92,445	-	92,445	100.0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3,270.4	-	3,270.4	3.5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87,321.5	-	87,321.5	94.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853.1	-	1,853.1	2.0	-

주)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2) 용도지구

■ 미관지구 결정조서(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전농로	중심지 미관지구	전농동4거리~용답동 (답십리동276-25 ~답십리동490-47)	33,840 (2,817)	1,410 (230)	12	서고164호 (82.04.22)	-
기정	-	사가정길	일반 미관지구	장안삼거리~ 종량구 면목동1326-2 (답십리동477-9 ~답십리동482-104)	39,840 (1,414)	1,660 (156)	12	서고360호 (03.11.15)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0	25	보조 간선	1,100	마장동	전농동광장	일반 도로	건고시177호 (62.12.8)	-
변경	대로	3	10	25 (30~33)	보조 간선	1,100 (76)	마장동	전농동광장	일반 도로	건고시177호 (62.12.8)	일부 폭원변경
기정	소로	1	523	10	집산	720	답십리 (대3-10)	전농로 (대3-11)	일반 도로	서고시698호 (87.9.30)	-
변경	소로	1	523	10 (13)	집산	720 (34)	답십리 (대3-10)	전농로 (대3-11)	일반 도로	서고시698호 (87.9.30)	일부 폭원변경
기정	중로	1	172	20	집산	1,030	답십리 498	군자 205	일반 도로	서고시10호 (78.1.10)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98	25	보조 간선	4,068	전농동 사거리	용답동	일반 도로	건고시177호 (62.12.8)	-
기정	소로	2	1	8	국지	100	답십리 482 (중1-172)	답십리 (중1-180)	일반 도로	서고시274호 (78.6.12)	-
기정	소로	2	171	8	국지	220	답십리 320-20	답십리 496-1 (광로5)	일반 도로	서고시720호 (86.10.7)	-
기정	소로	2	2	8	국지	120	답십리 483 (중1-172)	답십리 (중1-180)	일반 도로	서고시274호 (78.6.12)	-
기정	소로	2	151	8	국지	220	답십리 483	답십리 495 (광로5)	일반 도로	서고시720호 (86.10.7)	-
기정	소로	2	3	8	국지	120	답십리 490 (중1-172)	답십리 (중1-180)	일반 도로	서고시274호 (78.6.12)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①	주차장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18번지 일대	1,863	-	1,863	동대문고시 제2003-26호 (03.04.21)	-

주)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폐지

다. 기반시설 확보계획

1) 도로 및 공공공지 확보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적 용 목 표
도 로	①	◦ 특별계획구역 1-CR, 2-C, 3-C, 4-C, 5-C, 6-CR 전면부	◦ 중로1-172(황물길) 3m 확폭 (20m → 23m)	- 지역산업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보행로 확폭
	②	◦ 특별계획구역 2, 3, 4, 5 내부	◦ 블록 내부 이면도로 신설(8m)	- 황물상가 조업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 신설이면 도로 개설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적 용 목 표
도 로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계획구역 1 사가정길변 ◦ 특별계획구역 6 전농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로3-10(사가정길) 3m 확폭(구역내) ◦ 대로3-498(전농로) 3m 확폭 	- 뉴타운 사업에 따른 향후 교통량 증가 대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일부 구간 도로 확폭
	④	◦ 특별계획구역 1, 6 이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로1-523(답오길) 일부 확폭 (10m → 13m) ◦ 답십리 제16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확보 	- 답오길변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
	⑤	◦ 특별계획구역 2	◦ 소로2-171 확폭 (8m → 18m)	- 답십리 16구역과 연계한 도로 확폭
	⑥	◦ 특별계획구역 4	◦ 소로2-151 확폭 (8m → 15m)	- 보차분리를 위한 도로 확폭
공공공지 및 소공원 확보		⑦ ◦ 특별계획구역 1, 3, 4, 5, 6 각각부	◦ 공공공지 및 소공원 조성 (총 8,082㎡)	- 보행자의 휴식공간 조성

주) 세부 내용 및 확보기준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1) 가구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신 설	가, 1, 2, 3, 4, 5, 6	

주) 세부 가구 결정 조서는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불허용도
신 설	C	제3종일반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지하층 제외)
	R	제3종일반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공장, 창고시설

주)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1 적용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권 장 용 도		비 고
			전 층	1 층	
신 설	C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제1, 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패션 및 문화 관련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 패션관련 업종 - 섬유, 의복 관련 * 문화관련 업종 - 예술품 및 선물 용품 소매업종
	R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	-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서점	가-R 1-R 6-R

주1)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1 적용

주2) 패션 및 문화관련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을 따르며,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8조 ⑦항 참고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지정용도	비 고
			1층 전면(황물길변)	
신 설	C	제3종일반주거지역	- 판매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 (황물관련 업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황물관련 업종)	* 황물관련 업종 -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주1)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1 적용

주2) 황물관련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소매업과 가구 소매업의 세분류 기준을 따르며,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6조 ③항 참고

4) 건축물의 용도완화 결정조서

구 분	분 류	용도지역	용도완화
신 설	C	제3종일반주거지역	- 판매시설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2,000㎡ 이상) - 업무시설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 오피스텔 제외

주)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적용

5)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제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도지역	계획내용
신 설	2~5 블록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각 구역별 비주거시설 면적 중 30% 이상 황물관련 용도 지정계획)
	1, 6 블록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각 구역별 비주거시설 면적 중 30% 이상 황물관련 용도 지정계획)

주1) 향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적용

주2) 향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사업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적률 체계가 변경되어도 연면적 비율제한의 적용은 본 계획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비율제한에 따른 확보면적을 적용토록 함

6)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가)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가구번호	용도지역	건폐율	비 고
신 설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공동개발
신 설	1, 2, 3, 4, 5, 6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특별계획구역

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수

나)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도지역	접도조건	계 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신 설	가-R	제2종일반 주거지역	간선변	170% 이하	200% 이하	-
	2-R, 3-R, 4-R, 5-R	제3종일반 주거지역	신설이면도로변	190% 이하	200% 이하	-
신 설	1-CR, 2-C, 3-C, 4-C, 5-C	제3종일반 주거지역	황물길변	200% 이하	230% 이하	-
	6-CR	제3종일반 주거지역, 노선준주거지역	황물길변	210% 이하	250% 이하	-
	6-R	제3종일반 주거지역, 노선준주거지역	이면부	200% 이하	220% 이하	-

주) 특별계획구역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용적률체계 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내 용				C, CR 구역	가-R구역
항 목					
규제형	획 지 계 획	획지개발 및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2
	대지내 공 지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전 면 공 지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5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0.5
유도형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0.8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 × 0.8
		쌈지형 공지	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5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대지면적) × 0.5
	대지내 통 로	공공보행통로	준수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0.1	-
	건축물 용 도	지정 /권장용도	준수시	기준용적률×(지정·권장용도 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4	기준용적률×(권장용도 면적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3
의무형	친환경 계 획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보존면적÷대지면적) × 0.1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 × 0.2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대지면적) × 0.2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준수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0.1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대지면적) × 0.1
		중수도/빗물 이용시설설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5	-
		신재생 에너지 사용	준수시	기준용적률 × 0.08	기준용적률 × 0.05
		에너지 절약 계획 도입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기준용적률 × 0.05
			2등급	기준용적률 × 0.05	기준용적률 × 0.02
구역 특징 및 인센티브 항목 주요 조정사항				- 규제형 10%, 유도형 60%, 의무형 30% 적용	- 규제형 50%, 유도형 30%, 의무형 20% 적용

구 분	R 구역(공동주택)				
우수디자인 (10%)	• 「공동주택 심의기준」의 디자인 다양화기준의 권장기준 충족 후 건축위원회에서 인정시				
	구 분		세부항목	적용방법(단위:유형)	
				최소기준	권장기준
	주동형식 다양화	1.주거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3백세대 미만이고 5동 미만	-	2 이상
			나.3백세대 또는 5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다.1천세대 또는 10동 이상	3 이상	4 이상
			라.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4 이상	5 이상
		2.높이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다.3백세대 미만이고 5개동 미만	-	2 이상
			가.3백세대 또는 5개동 이상	2 이상	3 이상
			나.1천5백세대 또는 15동 이상	3 이상	4 이상
		3.평면 및 단면 형태 다양화 (1가지 유형 10%이상)	가.단위주거 평면크기 변화		
	나.단위주거 평면형태 변화				
다.단위주거 단면형태 변화 (복층형, 디자인된 혼합형 등)					
입면의 다양화	4.입면디자인 다양화	가.벽면율	40%이상	50%이상	
		나.디자인 다양화			
	5.발코니 형태 다양화	가.세대별 외벽길이 30%이상 지양	30%이상	30%이상	
		나.발코니 형태 다양화 (돌출형, 개방형 등)			
《예외 규정》					
- 구청장 등이 동 심의기준을 준용, 설계경기를 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2/3이상 인정시					
-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4/5이상 인정시					
에너지 절약형 설계 (5% 이내)	구 분	세부 항목		인센티브	
	건 물 에 너 지 성능표시	가.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1.5%	
	건 물 단열성능 강화설계	가.다음 각호에 따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 (W/㎡·K) 적용 설계시 1)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0.5%	
	신재생 에너지 설계	가.총 건축공사비의 1% 이상		2%	
		나.총 건축공사비의 0.5% 이상		1%	
	소 계	-		5%이내	
※ 신·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친환경계획 (5% 이내)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 (85점 이상)- 5%, 우수 (75점 이상)- 3%				
구역 특징 및 인센티브 항목 주요 조정사항	- 우수디자인 10%, 에너지 절약형 설계 5% 이내, 친환경계획 5% 이내 적용				

- 주1) R구역(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의 별표1기준을 따르며,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 등의 개정시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따름
- 주2) 의무형 인센티브 친환경 계획 항목은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30%)을 미달하는 경우에도 유도형과 규제형 인센티브 항목존수를 통하여 부족한 의무형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주3) 유도형 인센티브 여러 항목 중 한 항목의 유도형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해당 유도형 인센티브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적용
- 주4) 지정용도는 계획된 비주거시설면적의 30%이상 입지해야하며, 권장용도 산정시에 지정용도 면적을 포함함
- 주5) 전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의 30%이상(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및 공용면적 제외)인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주6) 1층 권장용도는 권장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 1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고 가로변 외벽길이의 1/3 이상 입지하는 경우 권장용도를 수용한 것으로 인정함
- 주7) 공동개발(지정/권장)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는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당시 계획이 수립된 대지에 한하여 적용하며,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공동개발시에는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 주8)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46조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한계선 보다 추가하여 후퇴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함
- 주9) 조경면적 등 타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없으며,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 없음
- 주10) 의무형 인센티브는 해당 유형에서 정한 인센티브량(20~30%)을 초과하여 계획한 경우에는 규제형과 유도형의 인센티브 미달량에 대하여 의무형 인센티브로 대체하여 적용 가능

7)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도지역	최고높이	비 고
신 설	사가정길변	가-R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m 이하
	황물길변 가각부	1-CR	제3종 일반주거지역	60m 이하
	황물길변	2-C, 3-C, 4-C, 5-C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m 이하
	이면부	2-R, 3-R, 4-R, 5-R	제3종 일반주거지역	60m 이하
	황물길변	6-CR	제3종 일반주거지역	80m 이하
	이면부	6-R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m 이하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H \leq 1.5D$)을
적용하지 않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신 설	건축한계선 (규 제)	- 도로의 확폭	황물길변
		- 도로의 확폭	이면도로변
	벽면한계선 (규 제)	- 저층부 연속된 가로경관 조성	황물길변
		- 상점이용객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신설이면도로변
	고층부 벽면한계선 (규 제)	- 가로경관의 연속성 확보	1-C, 6-C
		- 고층부 개방감 확보	2-C~5-C

도로경계선에서 3m
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에서 4m, 2m
건축한계선에서 2m
건축한계선에서 1m(전면부 C),
건축한계선에서 2m(후면부 R)
지정위치 수직높이 40m이하
수직높이 10m이상부터
건축물간 지정폭원(10m)이상 이격

주) 세부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는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공공공지 (소공원)	-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유지 - 주민 휴식공간	- 주요 보행결절점에 조성위치 지정 - 소공원 형태로 조성
전 면 공 지	- 가로 보행환경 개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
공 개 공 지	- 가로 보행 환경 개선 -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가각부 인지성 확보	- 건축법상 설치대상 필지 - 주요 보행결절점에 조성위치 지정
쌈지형 공지	- 가로 보행 환경 개선 - 보행자 휴게공간 확보	- 건축법상 공개공지설치 미대상 필지

주)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 확보대상이 아닐 경우 쌈지형 공지로 대체할 수 있음

3)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목 표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건축물 형 태	고층부 탑상형 - 가로 개방감 확보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C구역 건축물 수직높이 10m 이상 고층부 건 폐율 40%이하로 제한 - 단변길이가 장변길이 1/2 이상이 되도록 규제
	연도형 상가배치 - 가로 연속성 확보		- C구역 벽면한계선에 맞추어 상가 배치 유도
외 관 및 의 장	개방형 입면 (규제) - 시각적 개방감 확보 - 건축물 외벽의 일체감 및 동질 감을 살려 구역 내 이미지 및 가 로경관 제고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전면도로에 접한 지상1층 외벽은 투시율 50%이상 확보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제한
	외벽처리 (규제)		
전 층 전면부 입 면	개구부 - 연접건물과 조화를 이루어 설치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저층부 인접건물 및 동일한 외벽재료를 사용 하여 저층부 연속성 및 조화 유도
연도형 상 가 전면부	1층 층고 - 연속적인 가로경관 및 통일성 형성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인접건물 1층 층고와 10cm 이상 차이 제한 - 1층전면 외벽면의 재료는 연접건물과 조화를 이루 도록 조성
	외벽면 재료		
전면부 처리	건축선 후퇴부분 처리(규제) - 보행활동의 연속성과 안전성 도모 및 가로 경관 제고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조성 -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의 설치 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 시설	옥외 광고물 (규제, 권장) - 가로경관의 향상 및 보행환경 확보	- 도로변에 접한 대지	-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 광고물 조명 권장
	조명 (권장) - 지구의 이미지 개선		- 장소성, 지역적특성을 고려한 조명 유도 - 야간조명 설치

4)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대 상	적 용 기 준	적 용 목 표
차량출입 금지구간 (규제)	- 황물길변 - 사가정길 - 전농로	- 차량출입금지 구간 지정	- 황물길변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 - 신설도로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차량출입 불허 - 전농로변에서 블록 내부로 차량출입 불허 - 보행활동의 연속성 부여
공공보행통로 (규제)	- 2-C~5-C	-최소 폭 4m이상	- 황물상가 내로의 원활한 보행동선체계 수립 및 물품 운반 통로 조성
주차출입구	- 신설이면도로, 답오길	- 차량출입구간 지정	- 황물상가 및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정
보차혼용도로	- 신설이면도로	- 폭 8m	- 보행활성화 및 보행의 쾌적성 확보 (일방통행 및 조업차량 시간제 통행 운영)

④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도 면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1	특별계획구역-1	동대문구 답십리동 482-76번지 일대	-	증)10,771.8	10,771.8	-
신 설	2	특별계획구역-2	동대문구 답십리동 483-39번지 일대	-	증)13,397.2	13,397.2	-
신 설	3	특별계획구역-3	동대문구 답십리동 484-18번지 일대	-	증)13,245.9	13,245.9	-
신 설	4	특별계획구역-4	동대문구 답십리동 485-24번지 일대	-	증)12,201.3	12,201.3	-
신 설	5	특별계획구역-5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83번지 일대	-	증)13,170.0	13,170.0	-
신 설	6	특별계획구역-6	동대문구 답십리동 490-99번지 일대	-	증)20,278.9	20,278.9	-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특별계획구역-1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변경	
기 반 시 설	도 로	- 황물길변 확폭 : 20m → 23m (보도 3m) - 사가정길변 확폭 : 25m → 28m (대상지구 내 일부) - 답오길변 확폭 : 10m → 13m (대상지구 내 일부)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 기여(기부채납) 비율 : 구역 면적의 15% 이상	
	공공공지	- 조성위치 : 답십리동 482-1 일대 1개소				
건 축 용 도	용도완화	- 판매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2,000㎡이상) - 업무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 C 구역	
	연면적 비율제한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	
	지정용도	- 판매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황물관련 업종)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황물관련 업종) ※황물관련 업종 :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인테리어, DIY Shop,철물 디자인점 등			- C 구역 - 비주거시설 연면적 중 30% 황물관련 지정용도 입지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R구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창고시설(지하층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물품적치로 인한 가로환경 저 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창 고시설은 지하부 유도	
	권장용도	전 층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C 구역
		1 층	C 구역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패션 및 문화관련 업종), 일반 및 휴게 음식점		- 패션관련 업종 : 섬유 및 의 복 관련
		R 구역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서점		- 문화관련 업종 :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종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	
	기준/허용 용적률	- 200% 이하/230% 이하		건폐율 - 5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 60m 이하			-	
건축물의 배 치	건축한계선	- 황물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내부 이면도로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답오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 황물길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지상 4m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	- 지정위치 수직 높이 40m 이하로 제한			- C 구역 - 고층부 탑상형 유도	
기 타	차량출입 금지구간	- 사가정길변 및 황물길변에 지정			-	
노후도 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노후도 요건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주택 1/2이상(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블록간 통합개발 가능 - 향후 여건 충족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개발 가능				

■ 특별계획구역-2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기 반 시 설	도 로	- 황물길변 확폭 : 20m → 23m (보도 3m) - 신설이면도로 개설 : 8m (블록 내) - 답십리 16구역과 연속성을 고려한 도로 확폭 : 8m → 18m		-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 · C 구역(구역면적의 10% 이상) · R 구역(구역면적의 15% 이상) ※구역구분은 신설이면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
	용도안화	- 판매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2,000㎡이상) - 업무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 C 구역
건 축 용 도	연면적 비율제한	-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
	지정용도	- 판매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황물관련 업종)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황물관련 업종) ※황물관련 업종 :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인테리어, DIY Shop, 철물 디자인점 등		- C 구역 - 비주거시설 연면적 중 30% 황물관련 지정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R구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창고시설(지하층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물품적치로 인한 가로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창고 시설 지하부 유도
	권장용도	전 층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C 구역
		1 층	- 제1, 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패션 및 문화관련 업종), 일반 및 휴게 음식점	- C 구역 - 패션관련 업종 : 섬유 및 의복 관련 - 문화관련 업종 :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종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 고층부 건폐율 40% 이하(2-C)
	기준/허용 용적률	황물상가 부분(2-C)	200% 이하/230% 이하	-
		공동주택 부분(2-R)	190% 이하/2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황물상가 부분(2-C)	40m 이하	-
		공동주택 부분(2-R)	60m 이하	
건축물 배 치	건축한계선	- 황물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신설이면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4m - 답오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내부 이면도로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 황물길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신설이면도로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 2m		- 지상 4m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	- 수직높이 10m이상부터 건축물간 지정폭원(10m)이상 이격		- C 구역 - 고층부 탑상형 유도
기 타	차량출입 금지구간	- 황물길변 지정		-
	공공보행통로	- 황물길변(전면부) 저층상가 중앙 공공보행통로 지정		- C 구역 - 물품운반 및 보행 유도
노후도 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노후도 요건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주택 1/2이상(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계획 구역 블록간 통합개발 가능 - 향후 여건 충족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개발 가능		

■ 특별계획구역-3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기 반 시 설	도 로	- 황물길변 확폭 : 20m → 23m (보도 3m) - 신설이면도로 개설 : 8m (블록 내)		-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 · C 구역(구역면적의 10% 이상) · R 구역(구역면적의 15% 이상) ※구역구분은 신설이면도로 중심 선을 기준으로 함 ※공공시설확보는 향후 세부개발 계획시 동대문구 관련부서인 교통지도과와 별도로 협의
	공공공지	- 조성위치 : 답십리동 484-18번지 일대 2개소 위치지정		
	공공시설	- 기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시 동대 문구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지역산업문화거리에 부합한 대 체시설 확보 가능 ※ 설치가능 공공시설 · 문화시설과 관련하여 고미술 및 패션 전시장 등 · 도서관/연구소설과 관련하여 창업센터 및 디자인/이스코 센터 등		
건 축 용 도	용도완화	- 판매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2,000 ㎡이상) - 업무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000 ㎡이상)		- C 구역
	연면적 비율제한	-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
	지정용도	- 판매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황물관련 업종)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황물관련 업종) ※황물관련 업종 :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인테리어, DIY Shop, 철물 디자인점 등		- C 구역 - 비주거시설 연면적 중 30% 황물관련 지정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R구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창고시설(지하층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물품적치로 인한 가로환경 저 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창고 시설 지하부 유도
	권장용도	전 층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C 구역
		1 층	- 제1,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패션 및 문화관련 업종), 일반 및 휴게 음식점	- C 구역 - 패션관련 업종 : 섬유 및 의복 관련 - 문화관련 업종 :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종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 고층부 건폐율 40% 이하(3-C)
	기준/허용 용적률	황물상가 부분(3-C)	200% 이하/230% 이하	-
		공동주택 부분(3-R)	190% 이하/2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 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 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황물상가 부분(3-C)	40m 이하	-
		공동주택 부분(3-R)	60m 이하	
건축물 배 치	건축한계선	- 황물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신설이면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4m - 답오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내부 이면도로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 황물길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신설이면도로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 2m		- 지상 4m이하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고층부 벽면한계선	- 수직높이 10m이상부터 건축물간 지정폭원(10m)이상 이격	- C 구역 - 고층부 탑상형 유도
기 타	차량출입 금지구간	- 황물길변 지정	-
	공공보행통로	- 황물길변(전면부) 저층상가 중앙 공공보행통로 지정	- C 구역 - 물품운반 및 보행 유도
노후도 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노후도 요건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주택 1/2이상(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계획 구역 블록간 통합개발 가능 - 향후 여건 충족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개발 가능	

■ 특별계획구역-4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기 반 시 설	도 로	- 황물길변 확폭 : 20m → 23m (보도 3m) - 신설이면도로 개설 : 8m (블록 내) - 내부이면도로 확폭 : 8m → 15m	-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 · C 구역(구역면적의 10% 이상) · R 구역(구역면적의 15% 이상) ※구역구분은 신설이면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함
	공공공지	- 조성위치 : 답십리동 485-24번지 일대 1개소 위치지정	
건 축 용 도	용도완화	- 판매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2,000㎡이상) - 업무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 C 구역
	연면적 비율제한	-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
	지정용도	- 판매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황물관련 업종)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황물관련 업종) ※황물관련 업종 :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인테리어, DIY Shop, 철물 디자인점 등	- C 구역 - 비주거시설 연면적 중 30% 황물관련 지정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R구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창고시설(지하층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물품적치로 인한 가로환경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창고시설 지하부 유도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권장용도	전 층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C 구역
		1 층	- 제1,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패션 및 문화관련 업종), 일반 및 휴게 음식점	- C 구역 - 패션관련 업종 : 섬유 및 의복 관련 - 문화관련 업종 :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종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
	기준/허용 용적률	항물상가 부분(4-C)	200% 이하/230% 이하	-
		공동주택 부분(4-R)	190% 이하/2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α 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항물상가 부분(4-C)	40m 이하	-
		공동주택 부분(4-R)	60m 이하	
건축물 배 치	건축한계선	- 황물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신설이면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4m - 답오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내부 이면도로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 황물길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신설이면도로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 2m		- 지상 4m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	- 수직높이 10m이상부터 건축물간 지정폭원(10m)이상 이격		- C 구역 - 고층부 탑상형 유도
기 타	차량출입 금지구간	- 황물길변 지정		-
	공공보행통로	- 황물길변(전면부) 저층상가 중앙 공공보행통로 지정		- C 구역 - 물품운반 및 보행 유도
노후도 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노후도 요건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주택 1/2이상(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블록간 통합개발 가능 - 향후 여건 충족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개발 가능		

■ 특별계획구역-5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기 반 시 설	도 로	- 황물길변 확폭 : 20m → 23m (보도 3m) - 신설이면도로 개설 : 8m (블록 내)		-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 : · C 구역(구역면적의 10% 이상) · R 구역(구역면적의 15% 이상) ※구역구분은 신설이면도로 중심 선을 기준으로 함	
	공공공지	- 조성위치 : 답십리동 489-83번지 일대 1개소 위치지정			
건 축 용 도	용도완화	- 판매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2,000㎡이상) - 업무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 C 구역	
	연면적 비율제한	- 전체 연면적의 30%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	
	지정용도	- 판매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황물관련 업종)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황물관련 업종) ※황물관련 업종 :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인테리어, DIY Shop, 철물 디자인점 등		- C 구역 - 비주거시설 연면적 중 30% 황물관련 지정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R구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창고시설(지하층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물품적치로 인한 가로환경 저 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창고 시설 지하부 유도	
	권장용도	전 층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C 구역
		1 층	- 제1, 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패션 및 문화관 련 업종), 일반 및 휴게 음식점		- C 구역 - 패션관련 업종 : 섬유 및 의복 관련 - 문화관련 업종 :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종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 고층부 건폐율 40% 이하(5-C)	
	기준/허용 용적률	황물상가 부분(5-C)	200% 이하/230% 이하	-	
		공동주택 부분(5-R)	190% 이하/200% 이하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α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 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황물상가 부분(5-C)	40m 이하	-	
		공동주택 부분(5-R)	60m 이하		
건축물 배 치	건축한계선	- 황물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신설이면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4m - 답오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내부 이면도로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건축물 배 치	벽면한계선	- 황물길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신설이면도로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 2m	- 지상 4m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	- 수직높이 10m이상부터 건축물간 지정폭원(10m)이상 이격	- C 구역 - 고층부 탑상형 유도
기 타	차량출입 금지구간	- 황물길변 지정	-
	공공보행통로	- 황물길변(전면부) 저층상가 중앙 공공보행통로 지정	- C 구역 - 물품운반 및 보행 유도
노후도 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노후도 요건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주택 1/2이상(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블록간 통합개발 가능 - 향후 여건 충족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개발 가능	

■ 특별계획구역-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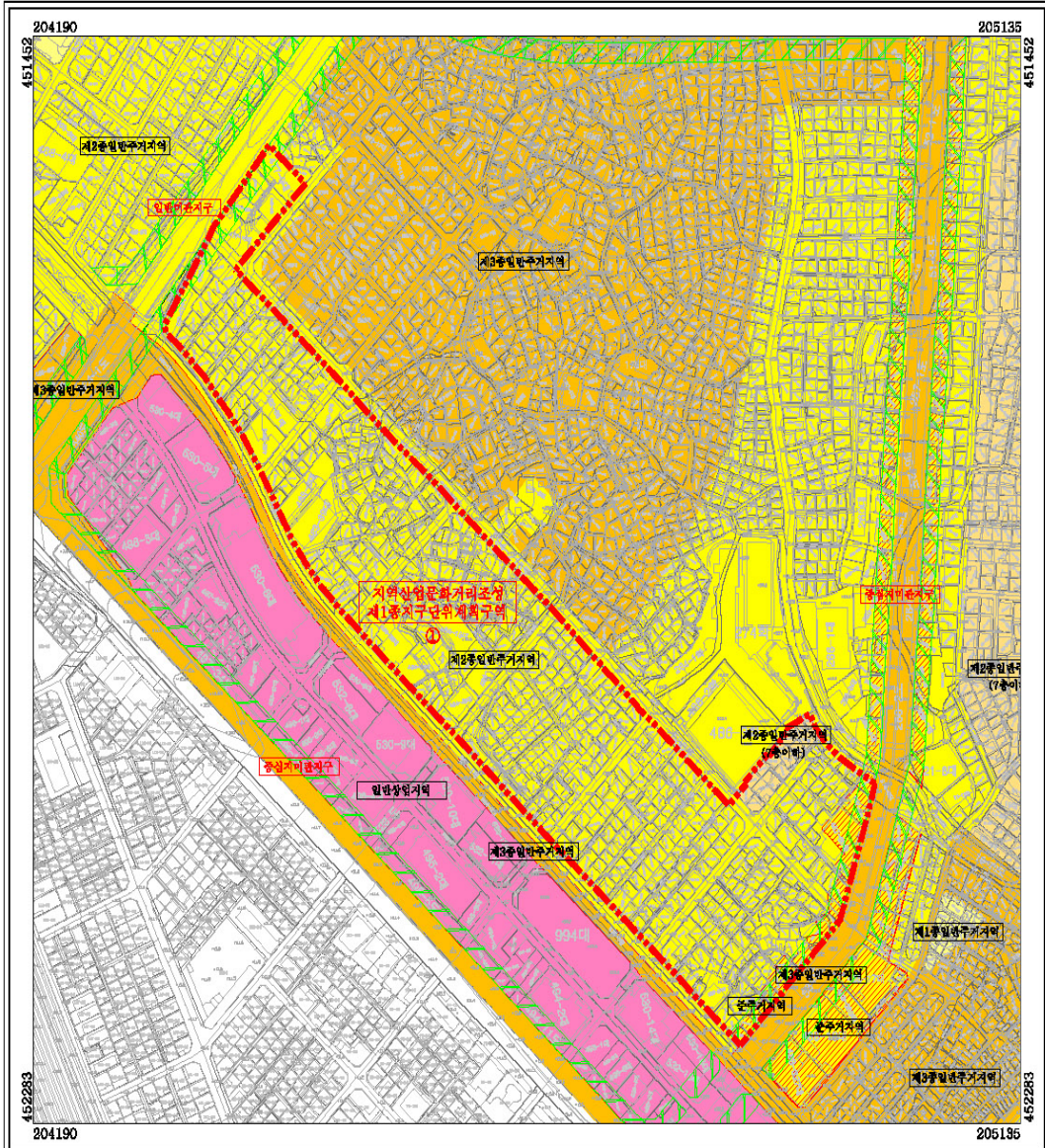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결정
기 반 시 설	도 로	- 황물길변 확폭 : 20m → 23m (보도 3m) - 전농로변 확폭 : 25m → 28m (대상지구 내) - 답오길변 확폭 : 10m → 13m (대상지구 내 일부)	-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 기여(기부채납) 비율 : 구역 면적의 15% 이상
	공공공지	- 조성위치 : 답십리동 490-99 일대 2개소 위치지정	
건 축 용 도	용도완화	- 판매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2,000㎡이상) - 업무시설(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 C 구역
	연면적 비율제한	-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비주거시설 면적 확보	-
	지정용도	- 판매시설 중 도매 및 소매시장(황물관련 업종)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황물관련 업종) ※황물관련 업종 : 철물, 페인트, 유리 및 건설자재, 인테리어, DIY Shop, 철물 디자인점 등	- C 구역 - 비주거시설 연면적 중 30% 황물 관련 지정용도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R구역)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공장, 창고시설(지하층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물품적치로 인한 가로환경 저해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창고시설 지하부 유도

구 분		계 획 지 침		비 고
	권장용도	전 총	- 업무시설,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노유자시설	-
		1 층	C구역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패션 및 문화관련 업종), 일반 및 휴게 음식점	- 패션관련 업종 : 섬유 및 의복 관련
			R구역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과점, 서점	- 문화관련 업종 : 예술품 및 선물 용품 소매업종
밀 도	건폐율	- 50% 이하		-
	기준/허용 용적률	황물상가 부분(6-CR)	210% 이하/250% 이하(가중평균)	-
		공동주택 부분(6-R)	200% 이하/220% 이하(가중평균)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times (1+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이내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 용적률		- α 란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최고높이		황물상가 부분(6-CR)	80m 이하	-
		공동주택 부분(6-R)	40m 이하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황물길변 및 전농로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답오길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 내부 이면도로 :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
	벽면한계선	- 황물길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2m		- 지상 4m이하
	고층부 벽면한계선	- 지정위치 수직 높이 40m 이하로 제한		- C 구역 - 고층부 탑상형 유도
기 타	차량출입 금지구간	- 전농로변 및 황물길 지정		-
노후도 기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노후도 요건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주택 1/2이상(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30% 이상)을 충족해야 함		
운용기준		- 기반시설의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본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조정이 가능함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주민동의 및 여건변화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블록간 통합개발 가능 - 답십리 성당은 존치하나 세부개발계획시 협의하에 이전 가능함 - 향후 여건 충족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개발 가능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02-2171-2677)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02-2127-4941)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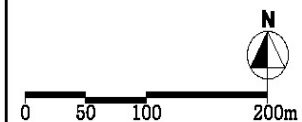
□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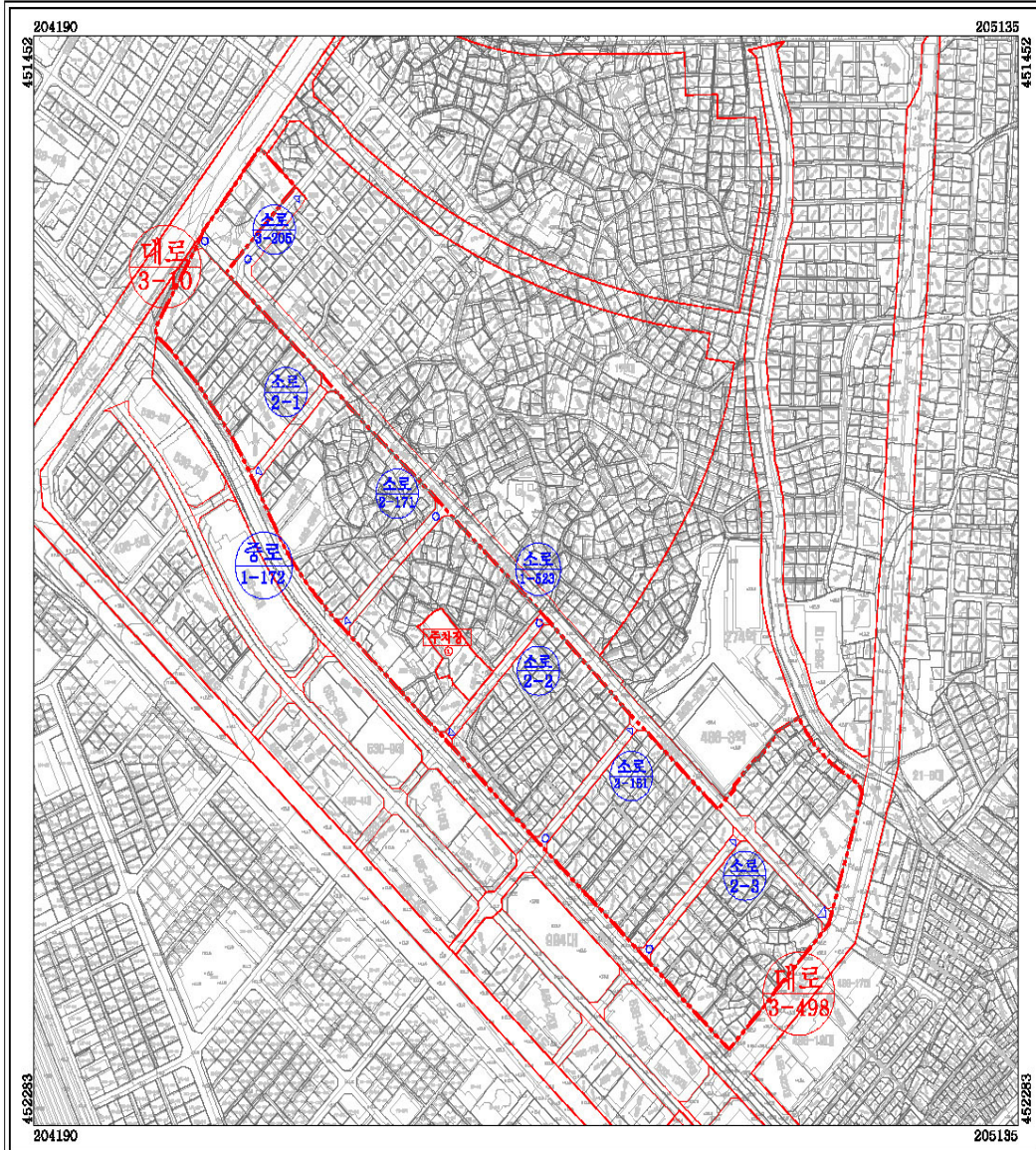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지구
에 관한 결정도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지적선 | 중심지미관지구(폭12m) |
| 일반상업지역 | 일반미관지구(폭12m) |
| 준주거지역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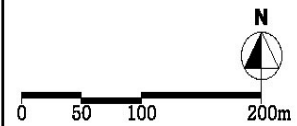
□ 기반시설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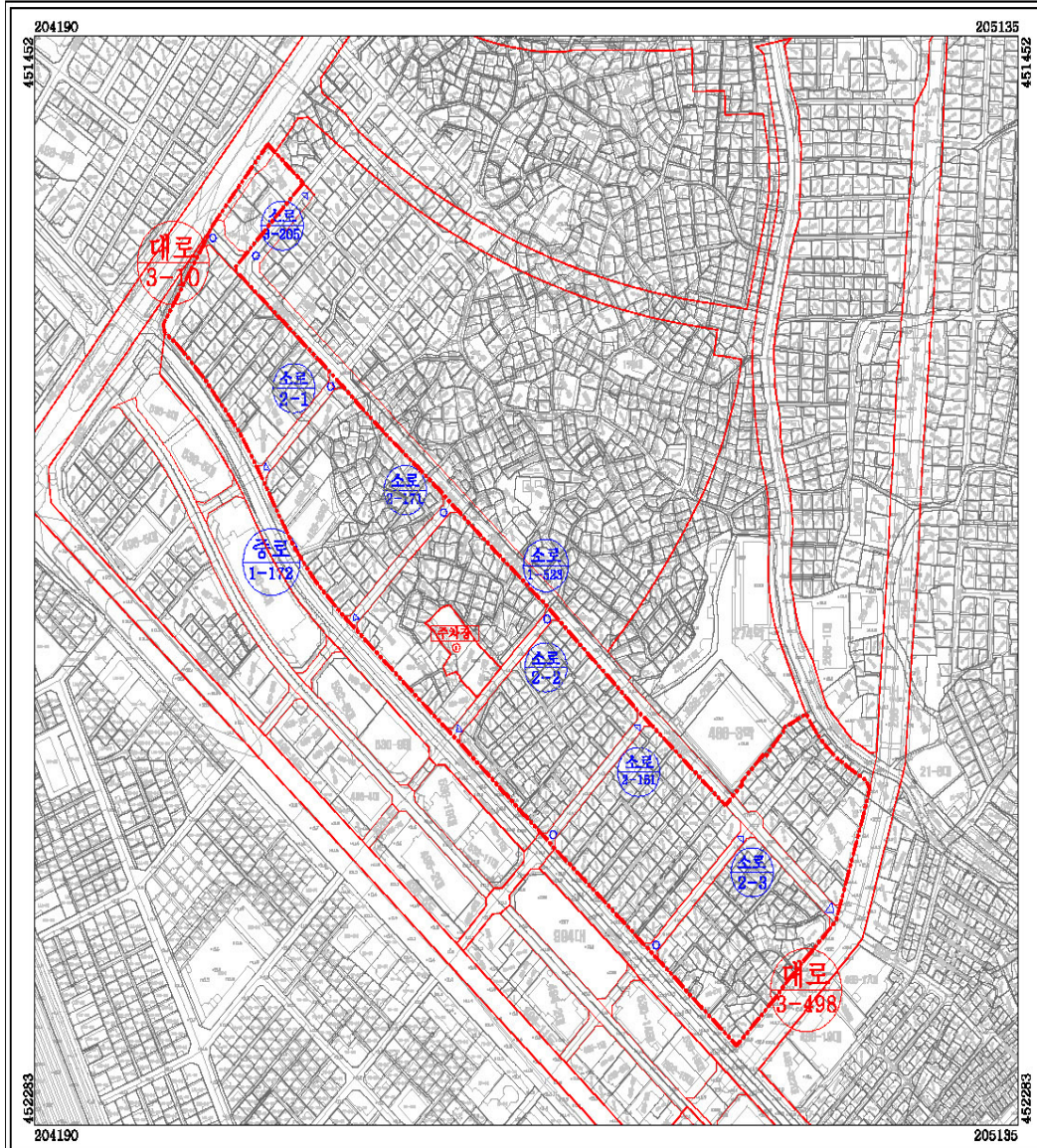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주차장
-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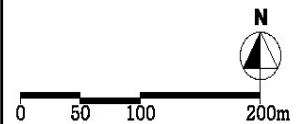
□ 기반시설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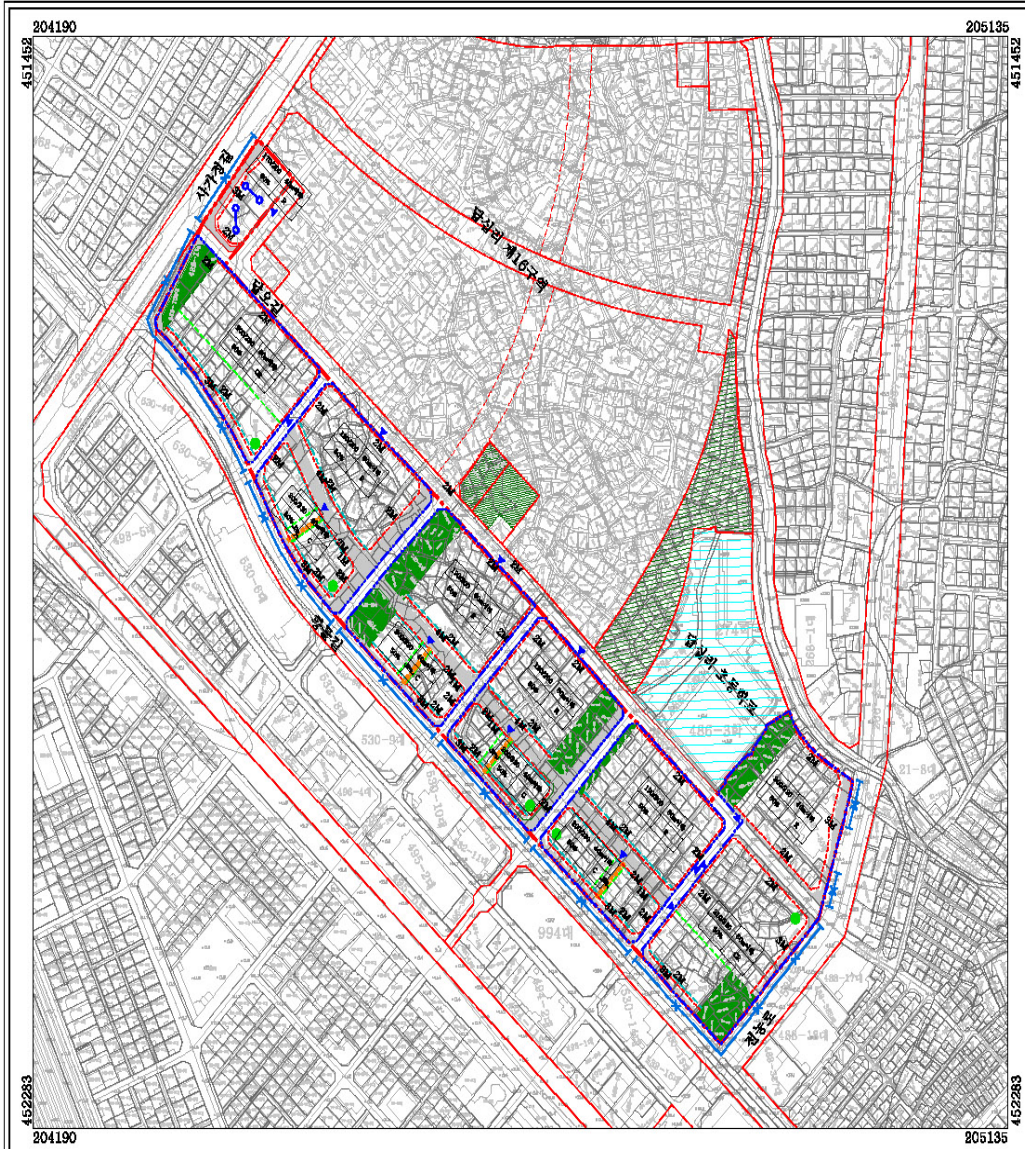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적선
- P 주차장
- 도시계획도로(대로이상)
- 도시계획도로(중로이하)



☐ 종합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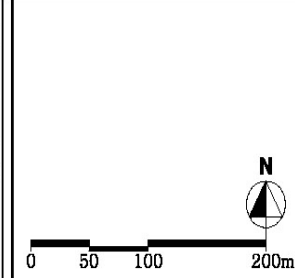
지역산업문화거리 제1종지구단위계획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종합지침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
- 계획계획구역
- 건축제한지
- 건축제한지
- 건축부 제한지
- 공동주택(2차)
- 차등제한지구
- 차등제한지구
- 공공복합지구
- 소공원 및 공공공간 (원지)
- 공계공간 (원지)
- 도로 (기부)

용도지구	
종류	지정 목적
제1종	지역내 200㎡ 이상 토지 10% 이상, 지역내 100㎡ 이상 토지 20% 이상
제2종	지역내 200㎡ 이상 토지 10% 이상, 지역내 100㎡ 이상 토지 20% 이상

지정용도	
구분	지정 목적
제1종	지역내 200㎡ 이상 토지 10% 이상, 지역내 100㎡ 이상 토지 20% 이상
제2종	지역내 200㎡ 이상 토지 10% 이상, 지역내 100㎡ 이상 토지 20% 이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45호(2009.04.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장위동 68-8 일원	1,867,756.6	증) 6,619.0	1,874,375.6	월곡중학교(6,619㎡) 편입에 따른 면적 증가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06년
- 목표년도 : 2016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변 경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1,867,756.6	증) 6,619.0	1,874,375.6	100.00	
주거	소 계	1,176,086.2	감) 2,202.0	1,173,884.2	62.63	
	공동주택	1,064,481.2	감) 1,760.0	1,062,721.2	56.70	
	복합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	111,605.0	감) 442.0	111,163.0	5.93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652,745.6	증) 7,268.0	660,013.6	35.21	
	도 로	268,647.2	증) 1,160.0	269,807.2	14.39	
	공 원	213,829.0	감) 2,456.0	211,373.0	11.28	

구분	변 경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 시설 용지	녹 지	57,927.7	-	57,927.7	3.09	
	학 교	45,469.8	증) 6,614.0	52,083.8	2.78	
	공공공지	41,601.6	-	41,601.6	2.22	
	공공청사	13,850.0	-	13,850.0	0.74	
	문화시설	3,084.0	증) 1,950.0	5,034.0	0.27	
	사회복지시설	2,881.0	-	2,881.0	0.15	
	연구시설	2,604.0	-	2,604.0	0.14	
	청소년수련시설	2,851.3	-	2,851.3	0.15	
기타	소 계	38,924.8	증) 1,553.0	40,477.8	2.16	
	종교시설	25,013.0	증) 1,553.0	26,566.0	1.42	
	근린생활시설	10,910.8	-	10,910.8	0.58	
	의료시설	3,001.0	-	3,001.0	0.16	

주) 장위15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 : 73,353인 / 23,873세대

구 분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3,832	증) 41	23,873	73,353	임대 4,075세대 포함
촉진구역	소 계	21,409	증) 2,464	23,873		
	전용면적 30㎡~40㎡	1,675	증) 179	1,854		
	전용면적 40㎡~50㎡	1,524	증) 193	1,717		
	전용면적 50㎡~60㎡	1,913	증) 200	2,113		
	전용면적 60㎡~85㎡	8,729	증) 963	9,692		
	전용면적 85㎡ 이상	7,568	증) 929	8,497		
존치 정비구역	소 계	2,423	감) 2,423	-		
	공동주택	2,423	감) 2,423	-		

주) 존치시설인 우방아파트 147세대는 상기 숫자에서 제외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교육시설

학 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장곡초등학교	장위동 235	8,734.0	-	8,734.0	
장위초등학교	장위동 68-8	16,295.0	-	16,295.0	
광운초등학교	장위동 124	19,472.8	-	19,472.8	
남대문중학교	장위동 124-1				
월곡중학교	상월곡동 35-1	7,561.0	증) 21.0	7,582.0	장월로 확폭 및 부지정형화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공청사 (장위1동주민센터)	장위동 219-315	2,019.0	-	2,019.0	
장위1동 치안서비스센터	장위동 230-44	892.0	-	892.0	
공공청사 (장위2동주민센터)	장위동 68-263	2,454.0	-	2,454.0	
장위2동 치안서비스센터	장위동 68-225	910.0	-	910.0	
공공청사 (장위우체국)	장위동 65-159	2,100.0	-	2,100.0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장위동 65-154	2,604.0	-	2,604.0	
복지시설 (장위3동어린이집)	장위동 77-64	1,114.0	-	1,114.0	
문화시설 (종합문화복지센터)	장위동 76-299	3,084.0	-	3,084.0	
청소년수련시설 (성북청소년수련관)	장위동 135-2	2,851.3	-	2,851.3	
공공청사 (장위3동 주민센터)	장위동 100-3	2,412.0	-	2,412.0	
공공청사 (소방치안센터)	장위동 270-388	1,012.0	-	1,012.0	
공공청사 (장위3치안센터)	장위동 176-33	754.0	-	754.0	
공공청사 (주민커뮤니티센터)	장위동 176-33	1,297.0	-	1,297.0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176-23	1,000.0	-	1,000.0	
사회복지시설	장위동 238-249	767.0	-	767.0	
문화시설	장위동 246-300	-	증) 1,950.0	1,950.0	문화시설 (문화센터) 신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분	시설번호	명 칭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생활권 공원	소 계						
	주 제 공 원		4개소	45,721.0	-	45,721.0	
		410	남령역사공원	15,726.0	-	15,726.0	
		412	장시문화공원	21,910.0	-	21,910.0	
		415	상갈레문화공원	4,171.0	-	4,171.0	
		416	하갈레문화공원	3,914.0	-	3,914.0	
	근 린 공 원		4개소	147,178.0	감) 2,236.0	144,942.0	
		411	아랫말공원	23,538.0	-	23,538.0	
		413	푸석공원	33,636.0	감) 2,236.0	31,400.0	
		414	명덕공원	18,041.0	-	18,041.0	
		140	오동근린공원(편입지역)	71,963.0	-	71,963.0	
	어 린 이 공 원		3개소	20,930.0	감) 1,437.0	19,493.0	
		417	석촌공원	8,321.0	-	8,321.0	
		418	간대공원	5,384.0	-	5,384.0	
		419	장석공원	5,788.0	-	5,788.0	
		420	마른대미공원	1,437.0	감) 1,437.0	-	
	소 공 원		1개소	-	증) 1,217.0	1,217.0	
		420	마른대미공원	-	증) 1,217.0	1,217.0	면적 감소로 인한 변경 (어린이공원 → 소공원)
녹 지	소 계		57,927.7	-	57,927.7		
	연 결 녹 지	20~23	장위산내길 (중앙연결녹지)	19,931.6	-	19,931.6	
		24~33	푸른에움길 (수계연결녹지)	30,748.1	-	30,748.1	
		34~36	보행연결녹지	7,248.0	-	7,248.0	

5) 교통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부문

○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 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 유형
기정	장위1	-	장위동	144-24	8.0	-	-	-	2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2	-	장위동	290-9	2.5	-	-	-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3	-	장위동	305	6.6	-	-	-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4	-	장위동	289	15.4	-	-	-	2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5	-	장위동	173-114	8.9	-	-	-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6	-	장위동	25-55	10.5	-	-	-	2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7	-	장위동	189-3	8.8	-	-	-	1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8	-	장위동	85	11.9	-	-	-	2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9	-	장위동	238-83	8.6	-	-	-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10	-	장위동	68-37	9.4	-	-	-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11	-	장위동	68-141	15.9	-	-	-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12	-	장위동	231-233	4.9	-	-	-	4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13	-	장위동	232-17	31.8	-	-	-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장위14	-	장위동	233-552	14.4	-	-	-	4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기정 변경	장위15	-	장위동	233-42	18.3	-	-	-	4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 개발
					18.9						

주1) 1단계 (2008년부터), 2단계 (2009년부터), 3단계 (2010년부터), 4단계 (2011년부터)

주2)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 주택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 방식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	1,867,756.6	-	1,874,375.6	-	
촉진 구역	소 계 (15개구역)		1,578,768.6	증) 189,450.0	1,768,218.6	-	
	장위1구역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원	80,050.6	-	80,050.6	주택재개발	
	장위2구역	성북구 장위동 290-9 일원	25,356.0	-	25,356.0	주택재개발	
	장위3구역	성북구 장위동 305 일원	66,011.0	-	66,011.0	주택재개발	
	장위4구역	성북구 장위동 289 일원	153,826.0	-	153,826.0	주택재개발	
	장위5구역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원	89,972.0	-	89,972.0	주택재개발	
	장위6구역	성북구 장위동 25-55 일원	105,316.0	-	105,316.0	주택재개발	
	장위7구역	성북구 장위동 189-3 일원	87,783.0	-	87,783.0	주택재개발	
	장위8구역	성북구 장위동 85 일원	119,371.0	-	119,371.0	주택재개발	
	장위9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 일원	85,878.0	-	85,878.0	주택재개발	
	장위10구역	성북구 장위동 68-37 일원	94,624.0	-	94,624.0	주택재개발	
	장위11구역	성북구 장위동 68-141 일원	159,451.0	-	159,451.0	주택재개발	
	장위12구역	성북구 장위동 231-233 일원	48,514.0	-	48,514.0	주택재개발	
	장위13구역	성북구 장위동 232-17 일원	318,415.0	-	318,415.0	주택재개발	
	장위14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552 일원	144,201.0	-	144,201.0	주택재개발	
	장위15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원	-	증) 189,450.0	189,450.0	주택재개발	신설/ 역세권
존치 지역	존치 정비구역	소계 (1개 구역)		182,831.0	감) 182,831.0	-	
		장위15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원	182,831.0	감) 182,831.0	-	폐지
	존치 관리구역	소 계		106,157.0	-	106,157.0	
		존치구역	존치시설		106,157.0	-	106,157.0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1)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4) 장위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5) 장위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82,831.0	증) 6,619.0	189,450.0	100.0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565.0	감) 2,630.0	29,935.0	15.8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	증) 6,619.0	6,619.0	3.5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150,266.0	증) 2,630.0	152,896.0	80.7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14) 장위1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5) 장위15구역(주택재개발사업)

구 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 / 최고층수	최고높이 (m)	
신 설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190이하	236이하	19이하 / 33이하	100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 촉진지구 기반시설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652,745.6	증) 7,268.0	660,013.6	100.0
기반시설	도 로	268,647.2	증) 1,160.0	269,807.2	40.9
	공 원	213,829.0	감) 2,456.0	211,373.0	32.0
	녹 지	57,927.7	-	57,927.7	8.8
	학 교	45,469.8	증) 6,614.0	52,083.8	7.9
	공 공 공 지	41,601.6	-	41,601.6	6.3
	공 공 청 사	13,850.0	-	13,850.0	2.1
	문 화 시 설	3,084.0	증) 1,950.0	5,034.0	0.8
	사회복지시설	2,881.0	-	2,881.0	0.4
	연 구 시 설	2,604.0	-	2,604.0	0.4
	청소년수련시설	2,851.3	-	2,851.3	0.4

(2)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 장위1구역 ~ 장위14구역 : 변경없음
- 장위15구역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55,969.0	증) 7,268.0	63,237.0	100.0
기반시설	도 로	20,349.0	증) 1,160.0	21,509.0	34.0
	공 원	30,258.0	감) 2,456.0	27,802.0	44.0
	녹 지	4,324.0	-	4,324.0	6.8
	학 교	1,038.0	증) 6,614.0	7,652.0	12.1
	문 화 시 설	-	증) 1,950.0	1,950.0	3.1
	건 축 물	-	증) 3,330.0	3,330.0 (문화시설)	-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1) 장위1구역 ~ (14) 장위14구역 : 변경없음

(2) 장위15구역

구 분	구역명	전용면적 40㎡ 이하	전용면적 40~50㎡ 이하	전용면적 50~60㎡ 이하	계
기 정	장위 1구역	52	51	22	125
	장위 2구역	26	26	13	65
	장위 3구역	84	79	21	184
	장위 4구역	172	156	52	380
	장위 5구역	82	84	28	194
	장위 6구역	104	88	24	216
	장위 7구역	93	84	24	201
	장위 8구역	138	121	30	289
	장위 9구역	102	92	24	218
	장위10구역	114	104	32	250
	장위11구역	168	154	42	364
	장위12구역	57	58	19	134
	장위13구역	333	290	80	703
	장위14구역	150	137	45	332
기정	장위15구역	180	187	46	413
변경		179 (감1)	193 (증6)	48 (증2)	420 (증7)
기정	계	1,855	1,711	502	4,068
변경		1,854 (감1)	1,717 (증6)	504 (증2)	4,075 (증7)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14)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1. 존치지역 관리계획)에 명시
- 15)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 16) 광고물 관리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19. 광고물 관리계획)에 명시
-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0.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 18)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21.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명시
-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장위1구역 ~ 하) 장위14구역 : 변경없음
거) 장위15구역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 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장위15구역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	-	증) 189,450.0	189,450.0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

(2)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계		182,831.0	증) 6,619.0	189,450.0	100.0	촉진구역내 월곡중학교 편입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55,969.0	증) 7,268.0	63,237.0	33.4	
	공원	30,258.0	감) 2,456.0	27,802.0	14.7	푸석공원 및 마른대미공원 면적 일부 축소
	녹지	4,324.0	-	4,324.0	2.3	
	도로	20,349.0	증) 1,160.0	21,509.0	11.4	(구)장월로 확폭 및 미담길 신설
	문화시설	-	증) 1,950.0	1,950.0	1.0	문화시설(문화센터) 신설
	학교	1,038.0	증) 6,614.0	7,652.0	4.0	촉진구역내 월곡중학교 편입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택지 (획지)	소계	126,862.0	감) 649.0	126,213.0	66.6	
	15-1	66,337.0	감) 1,760.0	64,577.0	34.1	미반영 종교부지 추가 확보
	15-2	27,969.0	-	27,969.0	14.8	
	15-3	26,356.0	감) 442.0	25,914.0	13.7	미반영 종교부지 추가 확보
	15-4	2,466.0	증) 411.0	2,877.0	1.5	미반영 종교부지 추가 확보
	15-5	1,803.0	감) 1.0	1,802.0	0.9	
	15-6	1,650.0	-	1,650.0	0.9	
	15-7	-	증) 786.0	786.0	0.4	미반영 종교부지 추가 확보
	15-8	-	증) 357.0	357.0	0.2	미반영 종교부지 추가 확보
	15-9	281.0	-	281.0	0.1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3	35	간선 도로	9,500 (440)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중로	1	511	20	집산 도로	1,045	장위동 237-268	상월곡동 23-95			-	장월로
기정	중로	3	526	13		183	상월곡동 28-530	상월곡동 35	일반 도로		-	(구)장월로
변경	중로	2	a	17~19		183 (84)	상월곡동 28-530	상월곡동 35	일반 도로		-	(구)장월로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3-651	장위동 75-560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동길
기정	중로	1	519	20	집산 도로	578	장위동 233-253	장위동 61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3	12	국지 도로	248	상월곡동 29-31	상월곡동 27-7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1	521	10	국지 도로	1,155 (793)	장위동 231-590	상월곡동 37-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82	장위동 246-365	장위동 246-291	일반 도로		-	미담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5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20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233-86일대	5,905.0 (4,000.0)	-	5,905.0 (4,00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30	녹지	연결녹지	장위동 74-289일대	7,345.0 (324.0)	-	7,345.0 (324.0)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5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공 원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140	오동근린공원	근린공원	미아,장위,번동, 상하월곡동	1,518,198.0 (6,282.0)	-	1,518,198.0 (6,282.0)	건고시2181 (66.02.05)	
변경	413	푸석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246-371일대	33,636.0 (22,539.0)	감) 2,236.0	31,400.0 (20,303.0)	서고시111 (08.04.03)	
변경	420	마른대미공원	소공원	장위동 29-25일대	1,437.0 (1,437.0)	감) 220.0	1,217.0 (1,217.0)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5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 문화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②	문화시설	문화시설	장위동 246-300일대	-	증)1,950.0	1,950.0	-	

□ 학 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 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6,295.0 (70.0)	-	16,295.0 (70.0)	시교위고시5 (87.02.17)	
변경	①	월곡중학교	학교	장위동 35-1	7,561.0 (968.0)	증) 21.0	7,582.0 (7,582.0)	-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장위15구역내 면적을 의미함.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장위15구역	189,450.0	장위동 233-42 일대	735	1	-	734	-	

주) 존치 건물 1동은 월곡중학교임.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신설	장위 15구역	189,450.0	15-1	64,577.0	장위동 252-4일대	282,71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 이하	236% 이하	19층 이하	33층 이하 (100m 이하)
			15-2	27,969.0	장위동 233-42일대						
			15-3	25,914.0	상월곡동 28-7일대						
			15-4	2,877.0	장위동 246-304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종교 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15-5	1,802.0	상월곡동 28-74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종교 시설				
			15-6	1,650.0	장위동 262-32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종교 시설				
			15-7	786.0	장위동 246-111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종교 시설				
			15-8	357.0	장위동 265-11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종교 시설				
			15-9	281.0	상월곡동 28-96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종교 시설				
			학교	7,582.0	상월곡동 29-47일대	관련 법령에 의함	학교	관련 법령에 의함			
			문화 시설	1,950.0	장위동 246-300일대	3,300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 의함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평균	최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예정세대수 : 2,464세대 (임대주택 : 420세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40㎡이하 : 179세대(7.27%) [임대 : 179세대]- 전용면적 40~50㎡ : 193세대(7.83%) [임대 : 193세대]- 전용면적 50~60㎡ : 200세대(8.12%) [임대 : 48세대]- 전용면적 60~85㎡ : 963세대(39.08%)- 전용면적 85㎡이상 : 929세대(37.7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랑로 : 10m(단, 지하부는 6m로 완화 적용)• 월계로, 장위동길, 장월로, 순환가로, 국지도로변 : 6m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	4단계 (2011년부터)	주택재개발조합	-	-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총면적(㎡)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비고
기정	장위 15구역	-	-	-	• 180세대(7.43%)	• 40㎡이하	
					• 187세대(7.72%)	• 40~50㎡이하	
					• 46세대(1.90%)	• 50~60㎡이하	
					• 전체 : 413세대(17.05%)	-	
변경	장위 15구역	-	-	25,708.0 [18,225.85]	• 179세대(7.27%)	• 40㎡이하	
					• 193세대(7.83%)	• 40~50㎡이하	
					• 46세대(1.95%)	• 50~60㎡이하	
					• 전체 : 420세대(17.05%)	-	

주) 세대수 항목의 괄호() 내용은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20)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67,756.6	증) 6,619.0	1,874,375.6	100.00
일반주거지역	1,856,685.6	증) 6,619.0	1,863,304.6	99.41
제1종일반주거	246,688.0	감) 2,630.0	244,058.0	13.02
제2종(7층)일반주거	19,898.1	증) 6,619.0	26,517.1	1.42
제2종(12층)일반주거	1,525,423.5	증) 2,630.0	1,528,053.5	81.52
제3종일반주거	64,676.0	-	64,676.0	3.45
자연녹지지역	11,071.0	-	11,071.0	0.59

□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장위동 246-320일원 (푸석공원 및 순환가로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층이하)	2,630.0	200%	장위15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문화시 설 신설 및 종교부지 추가 확보)에 따 른 용도지역 경계 정형화
②	상월곡동 35-1일원 (월곡중학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6,619.0	200%	재정비촉진지구내 월곡중학교 편입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13	35	간선 도로	9,500 (440)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대로	3	39	25~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일반 도로		-	월계로
기정	대로	3	40	25~30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9	20		1,332	휘경지서앞 (중1-8)	장위동 64-95	일반도 로		총고시722 (36.12.26)	이문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40	30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길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1	20	집산 도로	1,045	장위동 237-268	상월곡동 23-95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장위동길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 도로	251	장위동 293-9	장위동 186-28			-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 도로	371	장위동 307-106	장위동 296-19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대로	1	13	35	간선 도로	9,500 (440)	종암동	장지리	일반 도로		건고시267 (71.06.10)	화랑로
기정	대로	3	39	25~30	간선 도로	5,110 (1,120)	미아동 42-13	하계동 184-1	일반 도로		-	월계로
기정	대로	3	40	25~30	간선 도로	11,530 (1,310)	군자동 (광로5호)	수유동	일반 도로	장위동	총고시722 (36.12.27)	한천로
기정	중로	1	9	20		1,332	환경지서앞 (중1-8)	장위동 64-95	일반도 로		총고시722 (36.12.26)	이문로
기정	대로	2	40	30	보조 간선	1,348	장위동 64-95	장위동 311-22	일반 도로		총고시722 (36.12.26)	돌곶이길
기정	중로	1	510	20	집산 도로	489	장위동 153-9	장위동 237-90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1	20	집산 도로	1,045	장위동 237-268	상월곡동 23-95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3	20	집산 도로	356	장위동 74-140	장위동 119-1	일반 도로		서고시23 (74.03.02)	장위동길
기정	중로	1	517	20	집산 도로	570	장위동 165-3	장위동 291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2	510	15	집산 도로	251	장위동 293-9	장위동 186-28			-	
기정	중로	2	511	15	집산 도로	371	장위동 307-106	장위동 296-19	일반 도로		건고시123 (73.04.04)	
기정	중로	3	520	12	국지 도로	269	장위동 43-3	월계동 492-11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중로	3	521	12	국지 도로	365	장위동 63-75	장위동 43-6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	13		183	상월곡동 28-53	상월곡동 35-7	일반 도로		-	(구)장월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2	a	17~19		183	상월곡동 28-53	상월곡동 35-7	일반 도로		-	(구)장월로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 도로	92	장위동 231-298	장위동 산3-11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522	10	국지 도로	92	장위동 65-27	장위동 66-44	일반 도로		서고시3 (69.01.18)	
기정	소로	1	S1	10		103	장위동 8-2	장위동 8-3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1	S6	10 ~11		227	장위동 50-17	장위동 63-61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소로	3	239	6		25	장위동 63-59	장위동 63-60	일반 도로		서고시212 (02.06.12)	석관지구단위 계획구역
기정	중로	3	526	12		183	상월곡동 28-530	상월곡동 35	일반 도로		-	장월로
기정	중로	1	512	20	집산 도로	55	장위동 158-43	장위동 157-2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4	20	집산 도로	396	장위동 233-651	장위동 75-560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동길
기정	중로	1	515	20	집산 도로	840	장위동 231-614	장위동 233-43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장위동길
기정	중로	1	516	20	집산 도로	93	장위동 135-4	장위동 12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8	20	집산 도로	515	장위동 215-1	장위동 225-83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19	20	집산 도로	578	장위동 233-253	장위동 612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0	20	집산 도로	519	장위동 68-668	장위동 69-4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1	20	집산 도로	367	장위동 69-48	장위동 36-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2	20	집산 도로	289	장위동 180	장위동 201-5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3	20	집산 도로	427	장위동 143-38	장위동 89-9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1	524	20	집산 도로	232	장위동 93-4	장위동 6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2	512	15	집산 도로	167	장위동 60-2	장위동 50-27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2	12	국지 도로	603	상월곡동 23-57	장위동 64-94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23	12	국지 도로	248	상월곡동 29-31	상월곡동 27-7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4	12	집산 도로	26	장위동 55-25	장위동 55-2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중로	3	525	12	국지 도로	67	장위동 219-267	장위동 230-37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1	521	10	국지 도로	1,155 (793)	장위동 231-590	상월곡동 37-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1	523	10	국지 도로	65	장위동 237-231	장위동 237-261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500	6	국지 도로	30	장위동 238-332	장위동 68-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기정	소로	3	501	6	국지 도로	67	장위동 270-58	장위동 270-58	일반 도로		서고시111 (08.04.03)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82	장위동 246-365	장위동 246-291	일반 도로		-	미담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526	중로 2-a	(구)장월로 폭원 확폭 B=13m → 17~19m폭	• (구)장월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확폭
-	소로 3-a	미담길 신설 B=6m, L=82m	• 월곡초등학교 후문측 통학로 확보에 따른 소로 3-a호선 신설

(2) 녹 지 : 변경없음

(3) 공 원

□ 공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140	오동 근린공원	근린공원	미아,장위,번동, 상하월곡동	1,517,198.0 (71,963.0)	-	1,517,198.0 (71,963.0)	건고시2181 (66.02.05)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410	남령공원	역사공원	장위동 76-59일대	15,726.0	-	15,726.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1	아랫말 공원	근린공원	월계동 479-4일대	23,538.0	-	23,538.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2	장시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66-150일대	21,910.0	-	21,910.0	서고시111 (08.04.03)	
변경	413	푸석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246-371일대	33,636.0	감)2,236	31,400.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4	명덕공원	근린공원	장위동 219-223일대	18,041.0	-	18,04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5	상길레 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289-29일대	4,171.0	-	4,171.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6	하길레 공원	문화공원	장위동 217일대	3,914.0	-	3,914.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8	간대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207-48일대	5,384.0	-	5,384.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9	장석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110-53일대	5,788.0	-	5,788.0	서고시111 (08.04.03)	
기정	417	석촌공원	어린이공원	장위동 180-1일대	8,321.0	-	8,321.0	서고시111 (08.04.03)	
변경	420	마른대미 공원	소공원	상월곡동 29-25일대	1,437.0	감) 220.0	1,217.0	서고시111 (08.04.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3	푸석공원	• 면적변경 : 33,636.0㎡ → 31,400.0㎡, 감)2,236㎡	• 토지이용계획변경(문화시설 신설 및 종교시설 추가 확보)에 따른 공원 면적 축소
420	마른대미공원	• 시설세분명칭 및 면적 변경 : - 어린이공원→소공원 - 1,437.0㎡ → 1,217.0㎡, 감)220.0㎡	• (구)장월로 3-526호선 확장에 따른 면적 축소 및 시설세분 명칭 변경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5) 열공급설비 : 변경없음

(6) 폐기물처리시설 : 변경없음

(7) 공공청사 : 변경없음

(8) 학 교

□ 학교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	남대문 중학교	학교	장위동 124-1	19,428.8	-	19,428.8	시교위고시5 (87.02.17)	
기정	-	광운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124					
기정	-	장곡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235	8,734.0	-	8,734.0	시교위고시5 (87.02.17)	
기정	-	장위 초등학교	학교	장위동 68-8	16,295.0	-	16,295.0	시교위고시5 (87.02.17)	
변경	①	월곡 중학교	학교	장위동 35-1	7,561.0 (968.0)	증) 21.0	7,582.0 (7,582.0)	서고시50 (82.02.03)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내 면적을 의미함.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월곡중학교	부지정형화 및 면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형한 학교시설 부지를 정형화시킴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 확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장월로 확폭에 따라 학교 대체부지 확보

(9) 문화시설

□ 문화시설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10	장위종합 문화복지센터	문화시설	장위동 75-299일대	3,084.0	-	3,084.0	서고시111 (08.04.03)	
신설	②	문화시설	문화시설	장위동 246-300일대	-	증) 1,950	1,950.0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문화시설	신 설	• 재정비촉진지구내 부족한 문화시설 신설

(10)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11) 청소년수련시설 : 변경없음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폐지	-	장위 15구역	-	성북구 장위동 233-42 일대	182,831.0	감)182,831.0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장위 15구역	· 폐지 - 위치 : 장위동 233-42 일대 - 면적 : 182,831.0㎡	·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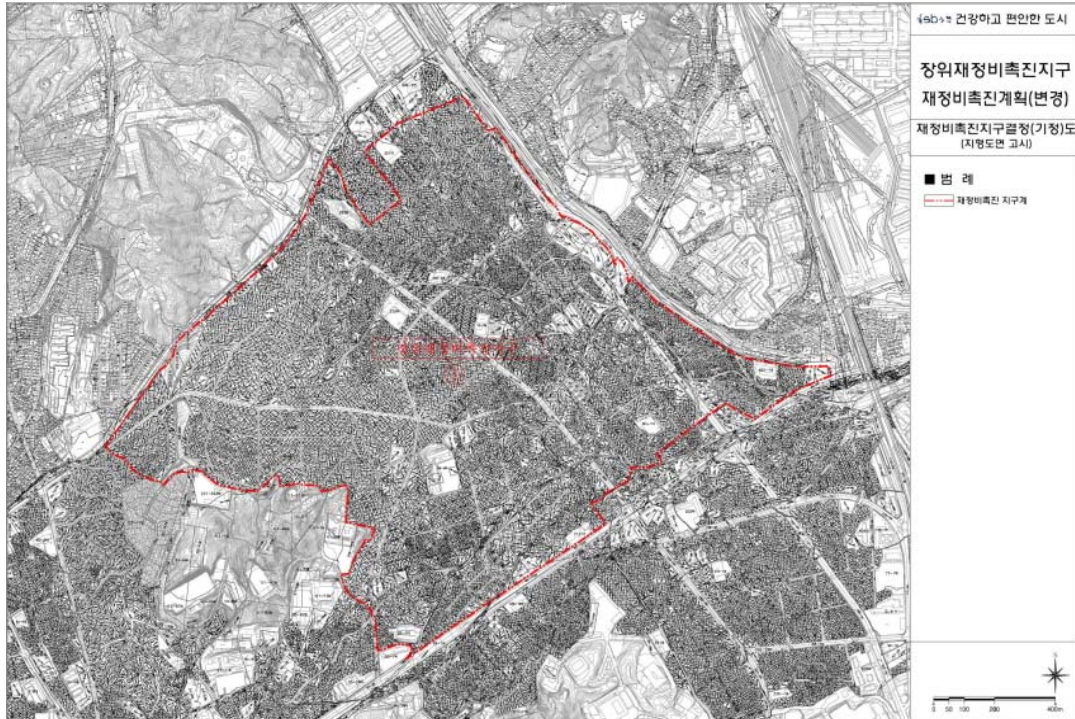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6.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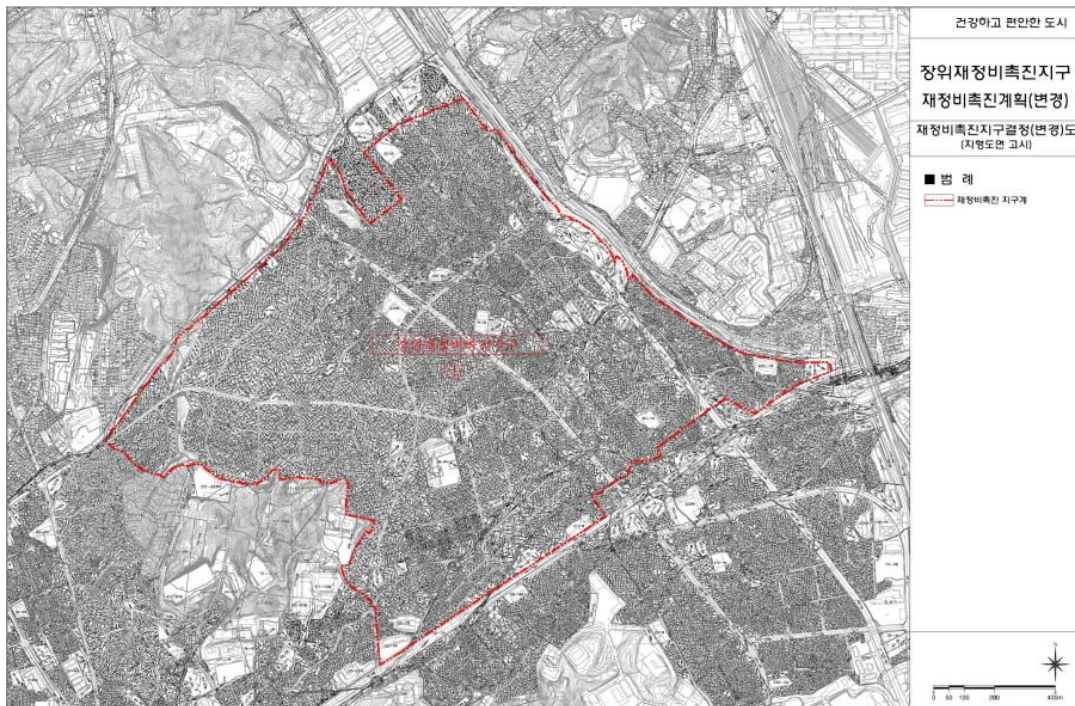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열람 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9) 및 성북구청 뉴타운사업과(☎02-920-377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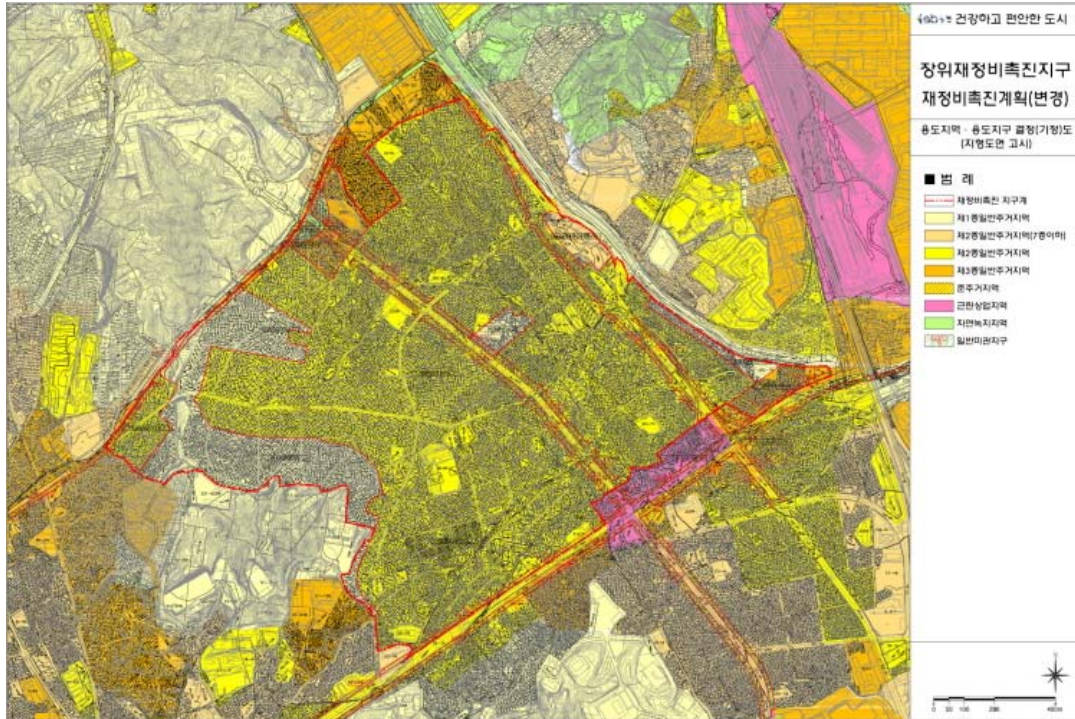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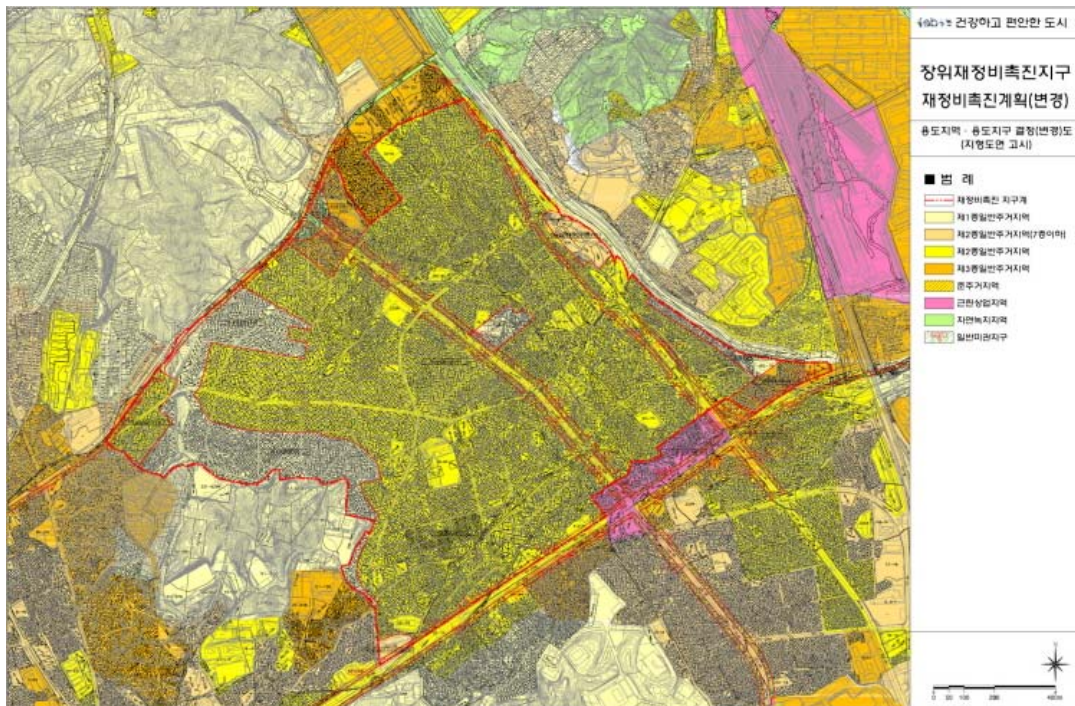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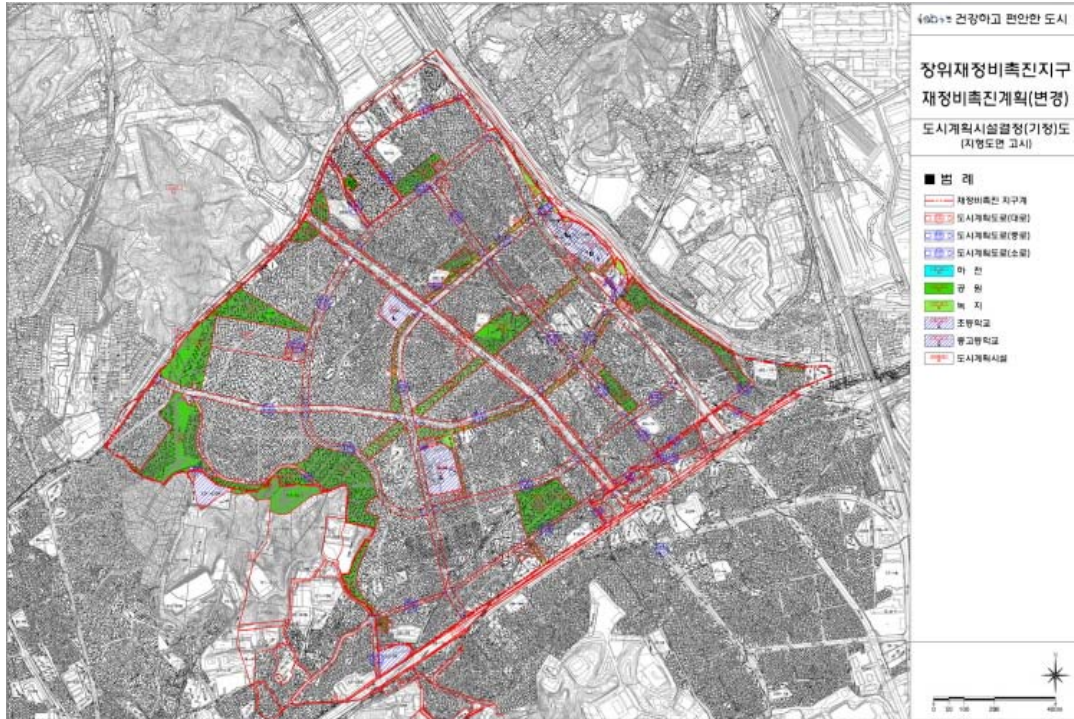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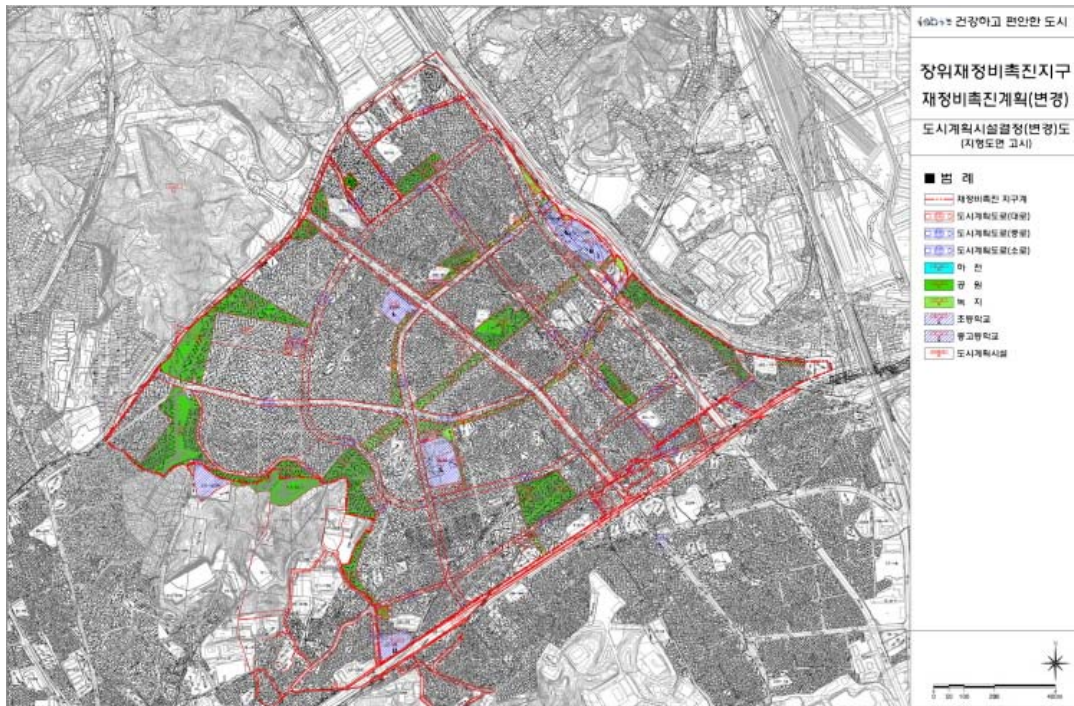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변경)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8-36호(2008.5.22)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10-204호(2010.03.25)로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된『구로동길 확장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730-76호~80-21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구로동길 확장공사

다. 사업규모 : 도로확장 폭 20m→23m, 연장 3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3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계획담당관(02-3707-8529) 및 구로구 도로건설과(02-860-3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
- 사업의명칭 : 구로동길 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로동 80-27	대	2.6	2.6	유수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10동 706호	구로신용 협동조합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2-2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구로동 80-21
2	구로동 348-15	대	14	14			구로2동 새마을금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339-59	근저당권 설정	구로동 348-10
3	구로동 730-109	대	18	18						구로동 730-60
4	구로동 730-110	대	33	33	송태복	서울 구로구 구로동 764-253				구로동 730-76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구분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세입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로동 730-109외 1필지	지하 1층	사무실	세멘트벽돌조	31	이발소	유수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94 신림현대아파트 110동 706호	구로2동 새마을 금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339-59	근저당권 설정
		1층	사무실	세멘트벽돌조	31	약국					
		2층	사무실	세멘트벽돌조	31	미용실					
		3층	사무실	세멘트벽돌조	31	화장품 매장					
		4층	사무실	세멘트벽돌조	31	사무실, 식당					
2	분할전 구로동 730-110	지하 1층	사무실	시멘트 벽돌조	43	사무실	송태복	서울 구로구 구로동 339-59			
		1층	사무실	시멘트 벽돌조	43	약국, 제과점					
		2층	사무실	시멘트 벽돌조	43	노래방, 치과					
		3층	사무실	시멘트 벽돌조	43	건강관리 샵					
		4층	사무실	시멘트 벽돌조	33	살림집					

영 업 권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구분	상호	물건의 종류	수 량 (식)	영업권 종 목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구로동 730-109외 1필지	지하1층	청하	이발소	1	서비스, 일반이용업	김옥례	구로동 730-60호	분할전 구로동 730-60호 외1필지
2		1층	동해물 약국	약 국	1	도매,소매	김영호	구로동 730-60호	
3		2층	헤어살롱 사이아	미용실	1	서비스	천태식	구로동 730-60호	
4		3층	마임	화장품매장	1	도매,소매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조성해	구로동 730-60호	
5	구로동 730-110	1층	백두산 약국	약 국	1	소매,양약	최현주	구로동 730-76호	분할전 구로동 730-76호
6		1층	로마나	제과점	1	음식,제과점	김선주	구로동 730-76호	
7		2층	KBS노래 연습장	노래방	1	서비스	서성순	구로동 730-76호	
8		2층	민영규 치과	치 과	1	의료,치과	민영규	구로동 730-76호	
9		3층	황실건강관 리샵	건강관리샵	1	서비스,건강관리	김지미	구로동 730-76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4호

도시계획시설(중랑생태문화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26호(2007.11.22)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0호(2007.12.27)로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호(2009.1.2)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65호(2009.2.1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6호(2010.3.18)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중랑구 망우동 7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중랑생태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시설과,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7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명 칭 : 중랑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147,988㎡(잔여지 추가편입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 면적증가 322㎡)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토지조서 : 따로붙임

○ 물건조서 : 변동없음

마. 변경인가사유 : 잔여지 추가편입 및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변경

바.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시장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덕수궁길 15)

사. 사업의 내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공원조성

아. 사업의 착수·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010. 12. 31까지

자.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등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부푸른도시사업소 시설과(☎02-3783-5972),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15-7558) 및 중랑구 공원녹지과(☎02-2094-2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중랑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89		변경없음											
90	당초	75-10	전	1,461	1,461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변경	75-7	전	190	190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잔여지 추가편입
		75-10	전	1,461	1,461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기편입
91	당초	75-11	대	140	140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변경	75-8	대	72	72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잔여지 추가편입
		75-11	대	140	140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기편입
92	당초	75-12	대	122	122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변경	75-9	대	141	141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잔여지 추가편입
		75-12	대	122	122	홍영숙 외 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 선릉엘지에클라트 제비동 1516호					기편입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내용	
93~123		변경 없음											
124	당초	산 37	임	2,462	2,462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변경	76-8	임	2,511	2,511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등록전환 에따른 면적증가
	당초	산 37-1	임	3,182	3,182				서울특별시				누락분
	변경	76-2	임	846	846				서울특별시				
		76-5	임	2,440	2,440				서울특별시				
125	당초	산 37-2	임	1,001	1,001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변경	76-3	과수 원	515	515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76-6	임	486	486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126	당초	산 38-1	임	1,686	1,686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변경	76-4	임	1,384	1,384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76-7	과수 원	302	302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127		변경 없음											
128	당초	산 38-3	임	1,884	1,884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변경	76-9	임	1,754	1,754		김홍기 외 2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4-1404				등록전환 에따른 면적감소
129~150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5호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7-37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서관)을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 계획시설 : 도서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문화 발전과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7-37 일대	-	중 1,572.9	1,572.9	-	구산정보도서관

- 건축물의 규모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도서관)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전화 351-7403)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7호

도시관리계획(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노원구 월계동 402-53호 일대 「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월계동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I. 결정취지

- 성북역 역세권 및 광운대학교 주변지역으로서, 가로환경정비를 통한 건전한 대학문화환경 조성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노원구 월계동 402-53호 일대	-	증)56,400	56,400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내 용	결 정 사 유
신설	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402-53호 일대 - 면적 : 5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광운대 주변지역의 교육·문화환경조성과 가로환경정비를 통해 바람직한 대학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6,400	-	56,400	100.0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277	-	277	0.5	
	제1종일반주거지역	2,381	-	2,381	4.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4,148	-	44,148	78.3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6,295	-	6,295	11.2	
	제3종일반주거지역	3,299	-	3,299	5.8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용도지구 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5	1,009	14,254	2	555	11,459	-	-	-	3	454	2,795
중로	2	555	11,459	2	555	11,459	-	-	-	-	-	-
소로	3	454	2,795	-	-	-	-	-	-	3	454	2,795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83	20	집산 도로	1,800 (110)	월계동 (중로1-182)	공릉동 (중로1-124)	일반 도로	-	-	광운4길
기정	중로	1	182	20	집산 도로	700 (445)	창위동 (대로3-40)	성북역 앞	일반 도로	광운대앞	서고시84 (78.3.9)	광운길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484 (225)	월계동 399-1	월계동 379-7	일반 도로	-	서고시60 (74.5.29)	-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39	월계동 392-19	월계동 392-26	일반 도로	-	서고시60 (74.5.29)	-
신설	소로	3	143	6	국지 도로	90	월계동 465-21	월계동 465-41	일반 도로	-	-	-

주) ()는 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 정 사 유
-	3-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로 신설 - 폭원 : 6m - 연장 : 9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도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구소유 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나. 도시공간시설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소공원	월계동 411-47호	-	증)814	814	-	소곶네 어린이공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 용	결 정 사 유
①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공원 신설 - 위치 : 월계동 411-47호 - 면적 : 8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지목상 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공원 신설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획지 결정조서

■ 단일획지의 개발규모

구 분	최소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	권장획지규모	비 고
간선가로변	90㎡이상	2,000㎡이하	500~800㎡	광운길, 광운4길
이 면 부	90㎡이상	1,000㎡이하	200~500㎡	구역내부

주)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추가 공동개발은 이면부 필지와 공동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번호	면적 (㎡)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A2	969	월계동 390-15,16,17	272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A3	4,354	월계동 382-35,50	242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390-26,27, 산144-1	823	•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건축
A6	2,979	월계동 392-50,54	211	• 공동개발권장	• 공공보행통로 확보 • 적정개발규모 확보
A7	2,446	월계동 392-38,39	338	• 공동개발권장	• 맹지해소
A8	794	월계동 392, 392-117, 393-1	794	• 공동개발권장	• 부정형필지 • 적정개발규모 확보

가구 번호	면적 (㎡)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 고
A9	4,353	월계동 393-14, 402-6	365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401-9,10, 402-12	212	• 공동개발권장	• 부정형필지해소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399-7, 402-29,33,34,59	472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 동일소유
		월계동 401-7,8,11	231	• 401-7,8 권장 • 401-8,11 지정	• 적정개발규모 확보 • 과소필지해소
A10	4,767	월계동 402-19,465-9	490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465-10,11	383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B2	2,201	월계동 405-1,5,6,25 407-17,18	244	• 405-6,407-18 권장 • 그 외 필지 지정	• 과소필지해소 • 동일소유
		월계동 407-1,28	309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해소
		월계동 407-3,10,11,15,16	515	• 407-15,16 권장 • 그 외 필지 지정	• 과소필지해소 • 동일소유
C1	3,252	월계동 403-11,404-21	182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월계동 403-3,5, 404-22, 405-12,13,20	265	• 공동개발지정	• 과소필지해소 • 동일소유
		월계동 405-11,16,21	242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404-16,40	195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404-13,26	198	• 공동개발권장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404-9,32,33,34,35	189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해소
C2	629	월계동 404-6,7,24,25,30,31	629	• 공동개발지정	• 기공동건축
C3	419	월계동 411-17,18	272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C4	548	월계동 404-50, 411-23,24	274	• 공동개발지정	• 동일소유 • 기공동건축
C5	2,492	월계동 411-13,58	287	• 공동개발권장	• 부정형필지해소 • 적정개발규모 확보
		월계동 411-28,31	102	• 공동개발권장	• 과소필지해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 불허용도

구 분	불 허 용 도	비 고
가로환경 정비구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이면부 주거지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나.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

■ 권장용도

구 분	권 장 용 도	비 고
가로환경 정비구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휴게소 	
이면부 주거지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다.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

1) 건폐율 결정조서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0%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2) 용적률 결정조서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80%이하	20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제공비율에 따른 산정식 적용(서울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이하	250%이하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 분	높이계획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사선제한적용	• 건축법 제60조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 \leq 1.5D$ 이하)을 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50m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m이하 (일부 이면부지역 도로사선제한적용)	-

라. 건축물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적용목적
건 축 한계선	• 10~20m도로변 (광운길, 광운4길)	• 대지경계선에서 2m	• 보행환경개선 • 전면공지 확보 • 가로개방감 확보
	• 이면부 4m이하도로	• 도로중심선에서 3m	• 접근체계 확보(6m도로확보)
	• 이면부 4~8m이하도로	• 도로중심선에서 4m	• 접근체계 확보(8m도로확보) • 보행환경 개선

■ 벽면지정선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적용목적
벽면 지정선	• 20m도로변 (광운길, 광운4길)	• 대지경계선에서 2m	•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도모 • 보행공간 확보 • 전면공지 확보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형 태	<div>저층부 형 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시벽(1층 전면 벽면의 50%이상) 및 투시형 셔터 설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단, 경사지의 경우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 높이의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 개구부 없는 벽면의 전면도로변 노출 금지(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 1층 개구부 높이는 인접건물과 일치시킬 것을 권장 • 1층부 연도형 상가 형태 권장 	20m이상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적용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 관 ^v	입 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 조립식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권장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건축물과 조화되는 재질 및 색채이용 권장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 파스텔 톤 색채 권장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시형벽면 설치시 내외부 조명을 설치하여 가로분위기를 조성하며, 특히 이면부의 야간경관 향상 및 보행활동 활성화 유도 권장 환경정비대상가로변 경관조명 설치 	20m이상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적용
기 타 사 항	자연지반 보 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부는 인공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저층부의 바닥, 비건폐지 등을 자연재료 또는 투수성 재료로 조성 권장 	
	옥상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이용자의 휴게 및 만남의 장소와 도시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 설치 권장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열섬효과 방지 등 도시생태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잔디 등 투수성재료를 사용한 녹색주차장 및 대지내 투수성포장 설치 권장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내 물순환 재생을 도모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여 공생할 수 있도록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 	
	생태면적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계획 대상면적 중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의 면적비 도시비오톱 향상을 도모하고 과도한 포장을 지양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생태면적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담장 및 옹벽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장 설치시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 권장 옹벽은 자연석, 조경석 등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 권장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전 면 공 지	광운길 광운4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을 통한 전면공지확보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조성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보도와 단차없이 조성(보도가 없을 경우 별도 보도 조성) - 포장패턴 설정시 공공부분 보도 포장패턴을 우선 준용 	벽면지정선 2m 건축한계선 2m
공개공지 (위치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보행결절점에 설치 	1개소

나. 대지내 통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흐름의 연속성 및 보행우회 방지 - 폭원 : 3m 	1개소

다. 차량동선 및 주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활한 차량소통 및 차량진출입으로 인한 보행공간 단절 최소화 광운길, 광운4길변에 지정 	
제한적 주차출입금지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개발(권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를 차량출입 허용 	
공동주차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운길, 광운4길변 획지 중 이면가로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지정 	

라. 보행자우선도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보행자우선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운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면도로 일부 구간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설정하여 보행환경 개선 	

4. 인센티브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이면부 주거지역)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항 목		세 분	완화용적률(%)	비 고
유도 항목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구조 : α=0.1 ■ 개방형구조 : α=0.2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 기준용적률×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필지 : α=0.05 ■ 3~4필지 : α=0.07 ■ 5필지이상 : α=0.1
	건축물용도	권 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인정
	건축물형태	형태및외관	■ 기준용적률×0.05	
	대지내통로	공공 보행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규제 항목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 기준용적률×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필지 : α=0.03 ■ 3~4필지 : α=0.05 ■ 5필지이상 : α=0.07

■ 제3종일반주거지역

항 목		세 분	완화용적률(%)	비 고
유도 항목	건축물용도	권 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3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인정
	건축물형태	형태 및 외관	■ 기준용적률×0.1	
규제 항목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

나. 용적률 인센티브 (가로환경정비구역 인접지역)

■ 제2종(7층, 12층)일반주거지역

항 목		세 분	완화용적률(%)	비 고
유도 항목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α	■ 피로티구조 : α=0.1 ■ 개방형구조 : α=0.2
	공동개발	공동개발 (권장)	■ 기준용적률×α	■ 2필지 : α=0.03 ■ 3~4필지 : α=0.05 ■ 5필지이상 : α=0.07
	건축물용도	권 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인정
	건축물형태	형태및외관	■ 기준용적률×0.01	
	기타	변압기	■ 기준용적률×α	■ α=변압기 1대당 0.03
규제 항목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 /대지면적}×1.0	■ 건축한계선과 벽면지정선 모두 충족시 인정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정)	■ 기준용적률×α	■ 2필지 : α=0.05 ■ 3~4필지 : α=0.07 ■ 5필지이상 : α=0.1

■ 제3종일반주거지역

항 목		세 분	완화용적률(%)	비 고
유도 항목	건축물용도	권 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3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의 20%이상시 인정
	건축물형태	형태및외관	■ 기준용적률×0.03	
규제 항목	대지내공지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0	■ 건축한계선과 벽면지정선 모두 충족시 인정
	기타	변압기	■ 기준용적률×α	■ α=변압기 1대당 0.07

④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결정함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구역과 연결한 필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을 전제함)
5. 공공보행통로의 성격·설계변경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제정·개정 또는 변경된 지침 및 법령을 적용함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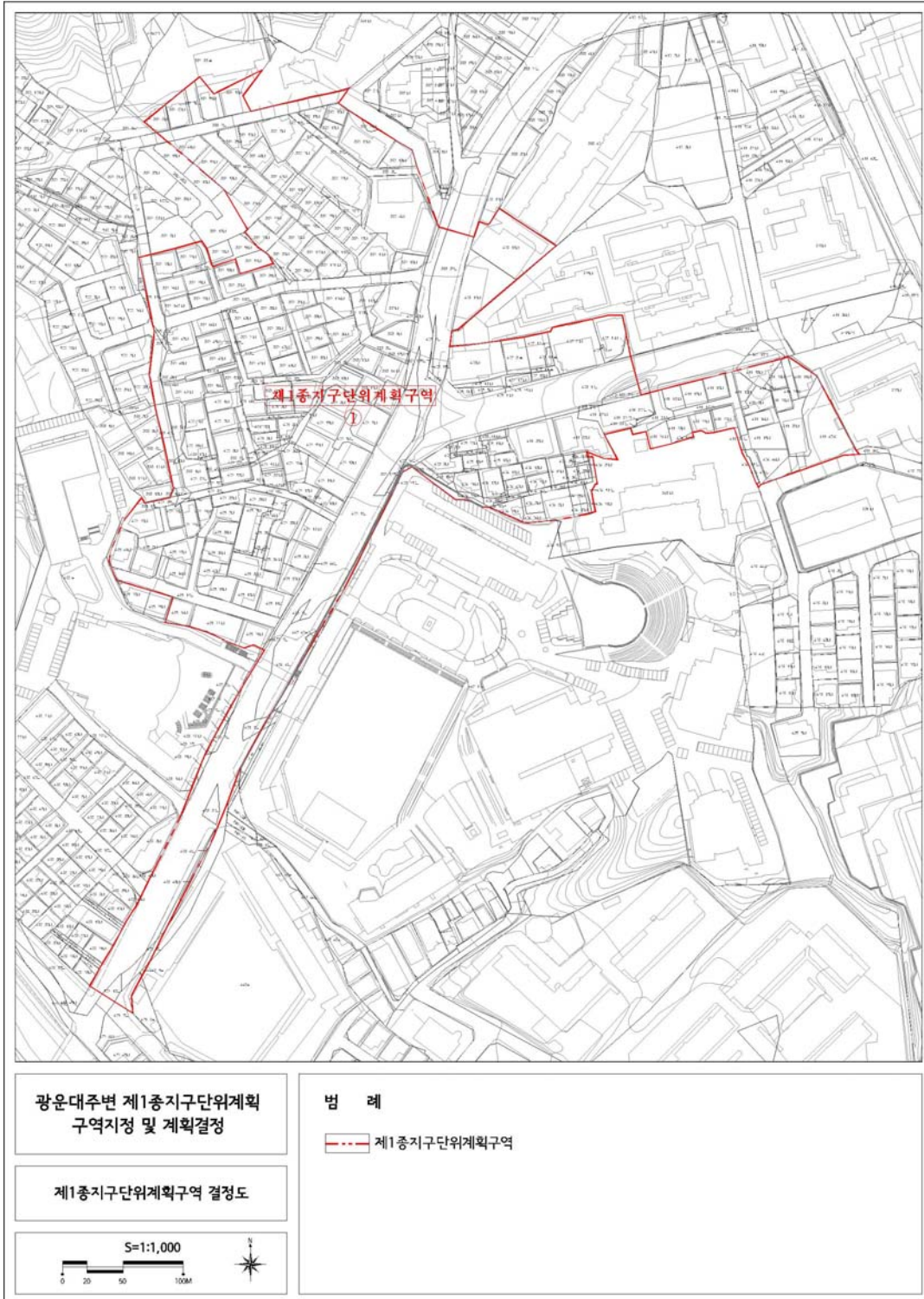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종합결정도
- 종합지침도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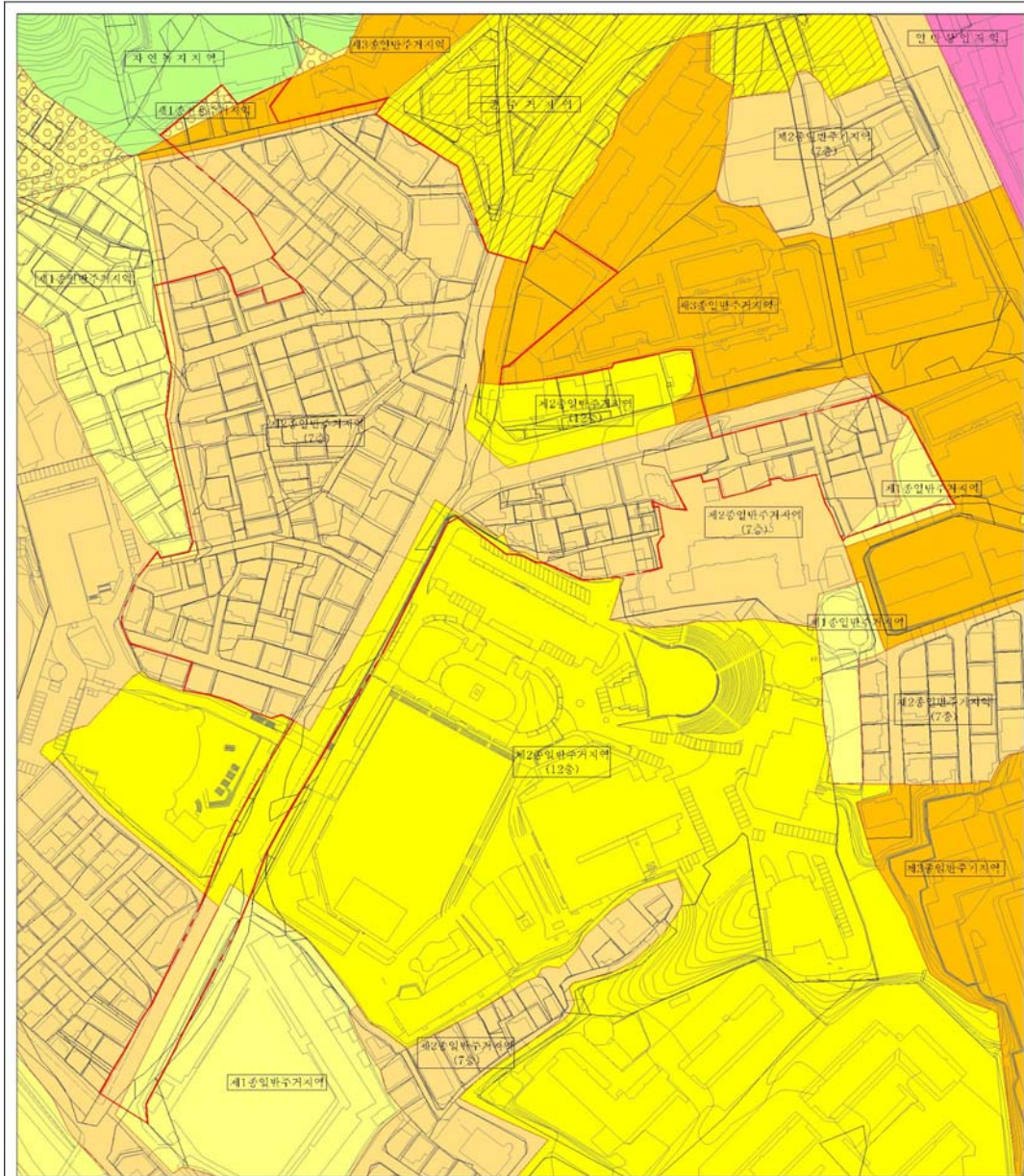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관리과(☎6361-3547)와 노원구청 도시개발과(☎2116-3867)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광운대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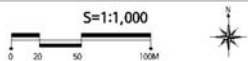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광운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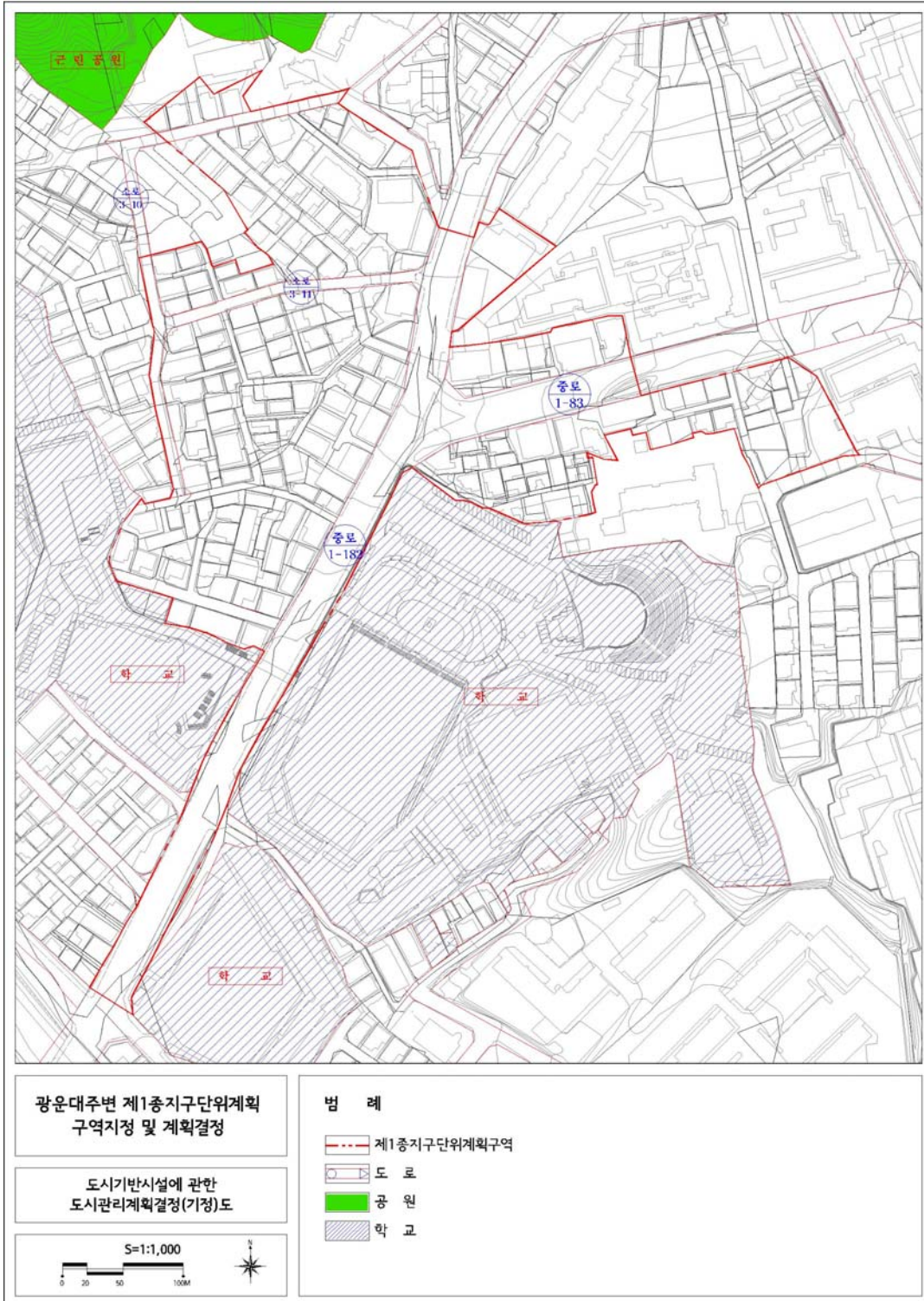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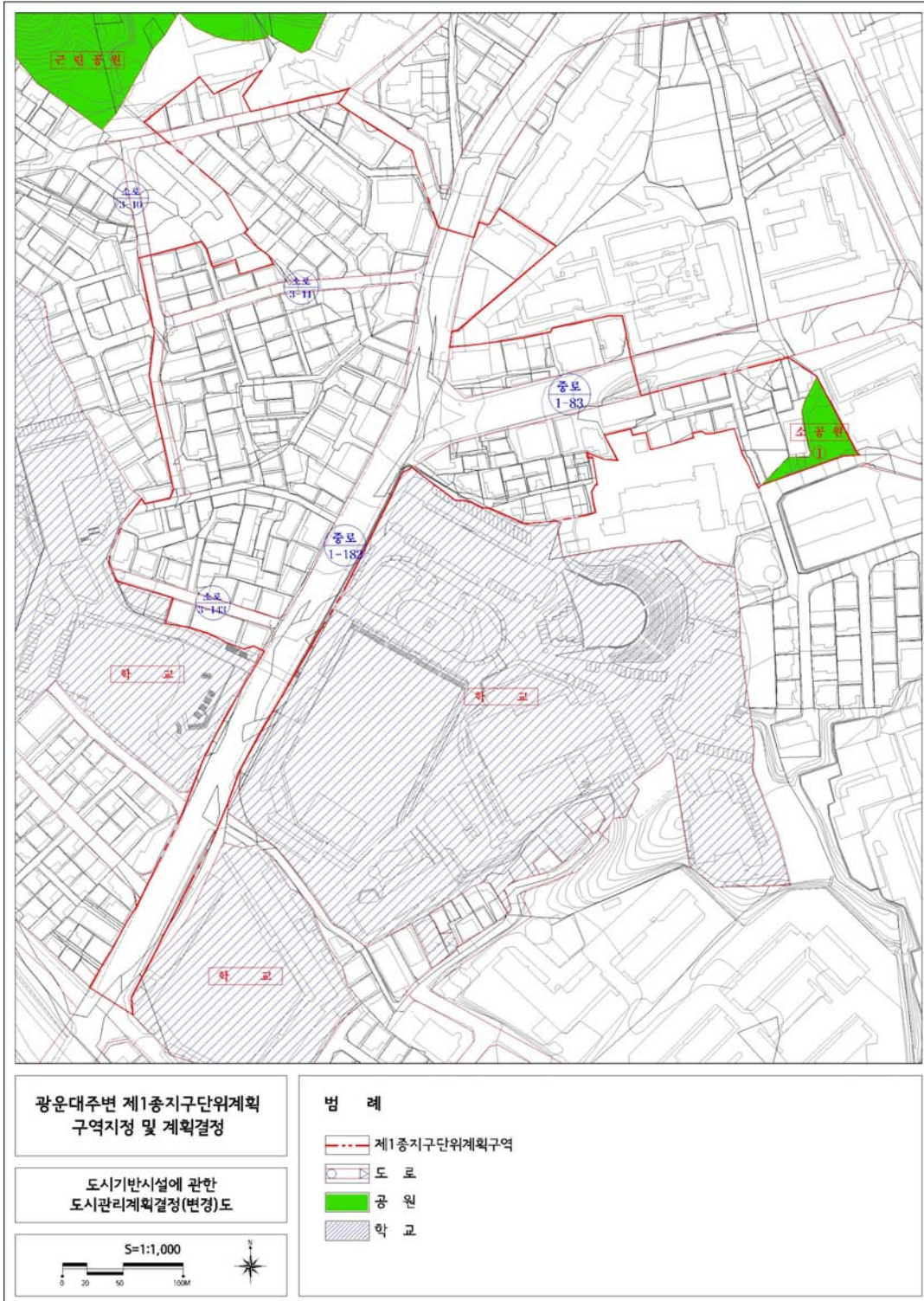
범례

- | |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일반상업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자연녹지지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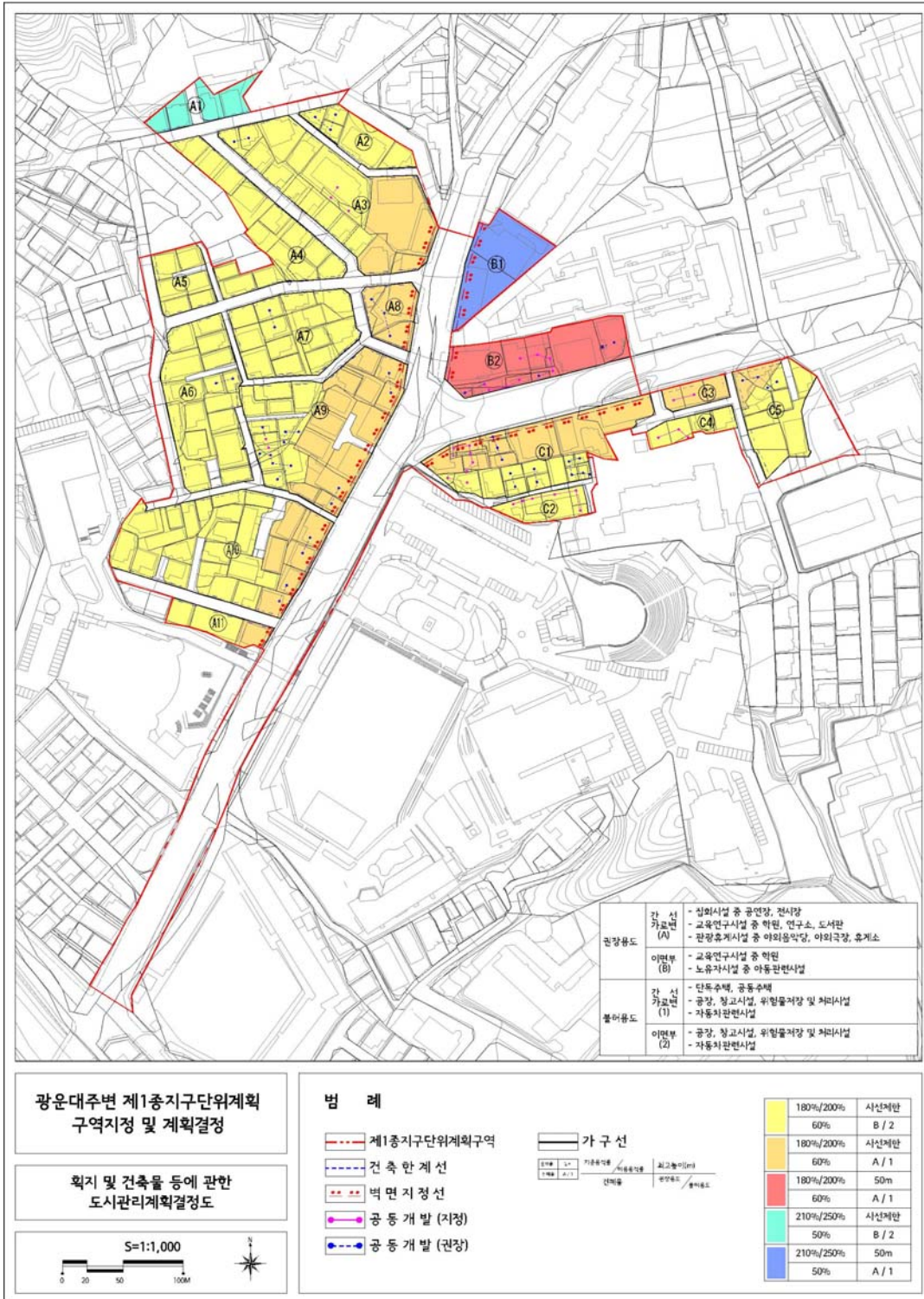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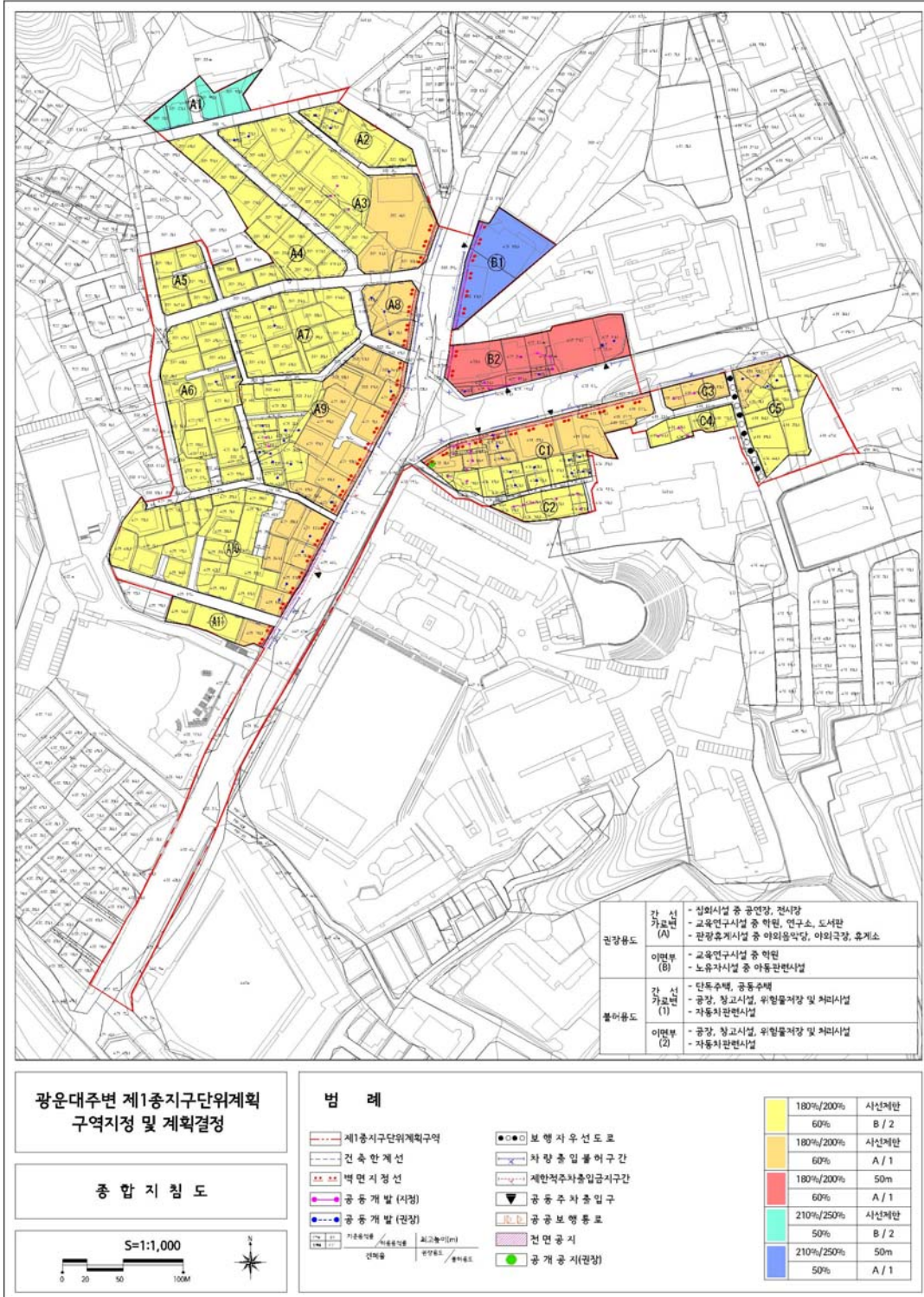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종합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8호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18호(2007.04.30)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호(2010.02.11)로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단계구간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계	종로구 창신1~3동, 송인1동 일대	846,100	-	846,100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창신·송인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함
	1단계구간		107,948	-	107,948	
	2단계구간		738,152	-	738,152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년도

가. 기준년도 : 2007년

나. 목표년도 : 201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도모

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산업 쇠퇴문제를 해결하고, 지리적으로 도심과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한 지역특성을 활용한 쾌적하고 활기 있는 도심형 주거의 재생, 생활권단위의 기반시설정비, 토지이용 효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다. 낙산공원~송인공원~청계천으로 연계되는 생활권에 대한 광역적인 계획수립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1단계구간) : 변경사항 없음

5.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2단계구간)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2단계 구간			비 고
		현 황 (㎡)	계 획 (㎡)	구성비 (%)	
합계		738,152	738,152	100.0	-
택지	소계	456,782	395,972	53.6	감)60,810
	주택용지	428,428	308,771	41.8	감)57,552
	복합용지		62,105	8.4	
	기타용지	28,354	25,096	3.4	증) 3,258
계획기반 시 설	소계	281,370	342,180	46.4	증)60,810
	공원	88,322	164,272	22.3	증)75,950
	녹지	4,920	14,030	1.9	증) 9,110
	공공공지	-	17,794	2.4	증)17,794
	공공청사	18,811	14,040	1.9	감) 2,159
	문화복지시설		2,612	0.4	
	열공급설비	-	6,998	0.9	증) 6,998
	학교	20,531	28,168	3.8	증) 7,637
	도로	148,786	94,266	12.8	감)54,520

나. 인구·주택수용계획 : 21,208인 / 7,855호

구 분		주택계획 (호)	계획인구 (인)
합계		7,855	21,208
재정비촉진구역	소계	7,855	21,208
	60㎡ 미만	3,570	9,639
	60㎡~85㎡	2,672	7,214
	85㎡ 초과	1,613	4,355
존치관리구역		-	-

다. 공공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합계		12	30,780	-
교육시설	소계	2	28,168	-
	초등학교	1	16,296	창신초교
	중학교	1	11,872	중학교 신설
공공·문화·복지시설	소계	10	16,652	-
	공공청사	7	14,040	시설복합화 및 존치
	문화·복지시설	3	2,612	시설복합화 및 존치

라.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공원·녹지시설	소계	15	178,302	-
	근린공원	3	158,839	-
	소공원	4	5,433	-
	녹지	8	14,030	-

마. 교통계획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VII.교통계획)에 명시

바. 경관계획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VIII.경관계획)에 명시

사.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촉진 구역	소 계		517,939	-	-
	창신7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창신동 567-1번지 일대	11,882	도시환경정비사업	신규
	창신8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창신동 302-1번지 일대	23,036		신규
	창신9구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136,474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창신10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창신동 641-1번지 일대	74,969		신규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창신동 23-25번지 일대	75,856		신규
	창신12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창신동 50-1번지 일대	71,824		신규
	송인1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송인동 56-66번지 일대	61,511		신규
	송인2재정비촉진구역	종로구 송인동 70-3번지 일대	62,387		신규

아. 용도지역 변경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738,152	-	738,152	100.0	
주거 지역	소계		714,653	감)	19,385	695,268	94.2
	일반 주거 지역	소계	694,133	감)	66,507	627,626	85.0
		제1종	161,160	증)	27,413	188,573	25.5
		제2종(7층)	325,549	감)	147,170	178,379	24.2
		제2종(12층)	118,069	증)	71,590	189,659	25.7
		제3종	89,355	감)	18,340	71,015	9.6
	준주거지역		20,520	증)	47,122	67,642	9.2
일반상업지역			23,499	증)	19,385	42,884	5.8

자.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1) 미관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왕산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2) 방화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왕산로변 방화지구	방화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차. 재정비촉진구역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분	구 역 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최고높이(층수)
재정비 촉진구역	창신7재정비촉진구역	주거,업무,판매	744 이하	60 이하	90m + α주)
	창신8재정비촉진구역	주거,업무,판매	682 이하	60 이하	90m
	창신9재정비촉진구역	주거	227 이하	60 이하	25층
	창신10재정비촉진구역	주거,판매	233 이하	60 이하	28층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주거	238 이하	60 이하	23층
	창신12재정비촉진구역	주거,업무,판매	283 이하	50 이하	28층
	송인1재정비촉진구역	주거	238 이하	60 이하	20층
	송인2재정비촉진구역	주거,업무,판매	267 이하	60 이하	25층

주)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을 초과한 공개공지 설치면적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높이완화 규정 준용

카.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1)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 ④	순 부 담 (①-②-③-④)	
						면 적	비 율
소 계	517,939	181,105	67,135	50,861	-	63,109	12.1
창신7구역	11,882	3,671	214	960	-	2,497	21.0
창신8구역	23,036	10,386	5,010	2,132	-	3,244	14.0
창신9구역	136,474	43,146	18,079	11,076	-	13,991	10.2
창신10구역	74,969	21,706	7,101	5,251	-	9,354	12.4
창신11구역	75,856	35,898	14,034	13,975	-	7,889	10.4
창신12구역	71,824	34,976	17,572	7,536	-	9,868	13.7
송인1구역	61,511	17,997	4,145	5,355	-	8,497	13.8
송인2구역	62,387	13,325	980	4,576	-	7,769	12.4

(2) 부담주체별 비용분담계획

구 분	비 용 분 담		비 고
	공 공	민 간	
도로	-	○	-
공원·녹지	-	○	-
공공청사	-	○	대지조성 및 건축물 건립
사회복지시설	-	○	대지조성 및 건축물 건립
문화시설	-	○	대지조성 및 건축물 건립

(3) 공공공지(봉제공장 건립예정부지) 부지확보에 따른 비용분담계획

(가) 부지확보를 위한 비용분담의 기준은 촉진계획 수립을 통하여 구역별 발생하는 개발규모 증가에 비례하도록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분담비율

- 1) 2단계구간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용적률 100%)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 완화(용적률 20%)에 따라 증가된 연면적을 기준으로 구역별 분담비율을 산정함
- 2) 구간별 분담비율 = 1단계구간 : 2단계구간 = 53.7% : 46.3%
- 3) 촉진구역별 분담 비율

구 분	2단계구간									1단계구간
구 역	소계	창신 7구역	창신 8구역	창신 9구역	창신 10구역	창신 11구역	창신 12구역	송인 1구역	송인 2구역	-
분담비율 (%)	46.3	4.3	7.2	10.4	6.0	4.5	3.6	4.9	5.4	53.7

(다) 구역별 납부금액 : 총분담비용 × 구역별 분담비율 × 물가상승률

※ 총분담비용 : 봉제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위해 서울시에서 선투자한 보상비 및 조성사업비

※ 물가상승률 : 서울시의 봉제공장부지 조성사업비 투자완료년도로부터 촉진구역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상승률

(라) 납부기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30일 이내

(마) 납부방법 : 각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서울시에 현금으로 일괄 납부

(바) 창신·송인지구내 봉제공장 건립 후 봉제공장 입주 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치코자 유보지(종로구민회관 및 열공급설비 부지)를 확보하여 봉제공장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함

타. 주택공급계획

구분	합계 (호)	임대 (60㎡ 미만, 호)			분양 (호)			
		소계	임대	장기전세주택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합계	7,855	1,517	1,391	126	6,338	2,053	2,672	1,613
창신7구역	157	60	-	60	97	-	65	32
창신8구역	247	83	17	66	164	-	88	76
창신9구역	2,070	387	387	-	1,683	697	630	356
창신10구역	1,540	280	280	-	1,260	465	455	340
창신11구역	900	164	164	-	736	201	383	152
창신12구역	887	160	160	-	727	233	339	155
송인1구역	964	186	186	-	778	208	356	214
송인2구역	1,090	197	197	-	893	249	356	288

※ 위 주택공급계획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대책을 포함한 것임

※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한 임대주택임

파.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기간			해당구역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1단계	2010년	2012년	2015년	창신7·11구역, 송인1·2구역
2단계	2012년	2014년	2017년	창신8·9구역
3단계	2014년	2016년	2019년	창신10·12구역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촉진구역 주민의 사업추진의지 등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되, 단계별 총량제를 적용하여 재정비 촉진지구(2단계구간) 사업추진구역의 단계별 총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규모 철거 및 이주로 인한 전세난이 우려될 경우 구청장은 전 단계 사업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다음 단계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 인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시장이 권역별 주택수급 등을 판단하여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요구할 경우 구청장은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

하. 광고물 관리계획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XVIII.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

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XIX.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너. 방재계획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XX.방재계획)에 명시

더. 정보화계획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XXI.정보화계획)에 명시

러. 에너지순환계획

: 「창신·송인 재정비촉진지구(2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XXII.에너지순환계획)에
명시

며.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1) 창신7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구	창신7재정비촉진구역	창신동 567-1번지 일대	-	증)11,882	11,882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1,882	100.0	-
택지	소계	8,211	69.1	-
	복합용지	8,211	69.1	-
기반시설	소계	3,671	30.9	-
	도로	2,939	24.7	-
	공원	732	6.2	1개소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882	-		11,882	100.0
주 거 지 역	소계		9,142	감)	7,998	1,144	9.6
	일 반 주 거 지 역	소계	4,361	감)	4,361	-	-
		제1종	473	감)	473	-	-
		제2종(7층)	-			-	-
		제2종(12층)	-			-	-
		제3종	3,888	감)	3,888	-	-
	준주거지역		4,781	감)	3,637	1,144	9.6
일반상업지역			2,740	증)	7,998	10,738	90.4

■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왕산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기정	왕산로변 방화지구	방화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변경	대로	2	6	30~40	주간선도로	2,600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서고26 (76.1.28)	왕산로 6M확폭 (2단계 3M확폭)
신설	중로	1	460	20	집산도로	187	창신동 530-1	창신동 138-10	-	-
신설	중로	3	460	20	집산도로	207	창신동 570-10	창신동 678-3	-	-
신설	소로	3	483	12	보행자 전용도로	40	창신동 545	창신동 580-31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기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봉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토록 함.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공원	소공원	종로구 창신동 697-3 일대	-	증)732	732	-	홍인지문 부근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창신7구역	11,882	대지	7,593	창신동 567-1 일대	업무, 판매, 주거	60 이하	744 이하	90+α주)

주) 공개공지 설치의무면적을 초과한 공개공지 설치면적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
에 따른 높이완화 규정 준용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창신7구역	11,882	대지	7,593	창신동 567-1 일대	63	-	-	63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창신7 재정비촉진구역	11,882	대지	7,593	창신동 567-1 일대	업무,판매,주거	60이하	744이하	90+α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60㎡ 미만, 호)			분 양 (호)			
		소계	임대	장기전세주택	소 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7구역	157	60	-	60	97	-	65	32

※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한 임대주택임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	1단계(2010~2015년)	민간	-	-

(2) 창신8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창신8재정비촉진구역	창신동 320-1번지 일대	-	증)23,036	23,036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23,036	100.0	-
택지	소계	12,650	54.9	-
	복합용지	12,650	54.9	-
기반시설	소계	10,386	45.1	-
	공원	877	3.8	1개소
	녹지	808	3.5	1개소
	공공청사	3,915	17.0	1개소
	도로	4,786	20.8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3,036	-	23,036		100.0
주거지역	소계	19,456	감)	13,995	5,461	23.7
	일 반 주 거 지 역					
	소계	7,979	감)	3,039	4,940	21.4
	제1종	-		-	-	-
	제2종(7층)	-		-	-	-
	제2종(12층)	4,580	증)	360	4,940	21.4
	제3종	3,399	감)	3,399	-	-
준주거지역		11,477	감)	10,956	521	2.3
일반상업지역		3,580	증)	13,995	17,575	76.3

■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왕산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기정	왕산로변 방화지구	방화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변경	대로	2	6	30~40	주간선도로	2,600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서고26 (76.1.28)	왕산로 6M확폭 (2단계 3M확폭)
변경	대로	3	-	20~25	주간선도로	1,680	송인동 83-5	성북동 보문동1가	-	지봉로 정비
신설	중로	1	2	460	집산도로	187	창신동 530-1	창신동 138-10	-	-
신설	중로	3	3	483	집산도로	398	창신동 81-2	창신동 143-17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지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봉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토록 함.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공원	소공원	종로구 창신동 269번지 일대	-	증)877	877	-	동묘역 부근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종로구 창신동 226-70	-	증)6,047	6,047	-	-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구민회관	종로구 창신동 222-8	3,974	감)59	3,915	종고96-47호 (*96.10.16)	봉제공장 유보지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창신8구역	23,036	대지	12,634	창신동 302-1 일대	업무, 판매, 주거	60 이하	682 이하	90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창신8구역	23,036	대지	12,634	창신동 302-1 일대	95	1	-	94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창신8 재정비촉진구역	23,036	대지	12,634	창신동 302-1 일대	업무, 판매, 주거	60이하	682이하	9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60㎡ 미만, 호)			분 양 (호)			
		소계	임대	장기전세주택	소 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8구역	247	83	17	66	164	-	88	76

※ 장기전세주택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의한 임대주택임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	2단계(2012~2017년)	민간	-	-

(3) 창신9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창신9재정비촉진구역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	증)136,474	136,474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136,474	100.0	-
택지	소계	93,328	68.4	-
	공동주택	91,332	66.9	-
	기타(종교시설)	1,996	1.5	-
기반시설	소계	43,146	31.6	-
	공원	29,178	21.4	2개소
	문화복지시설	695	0.5	2개소
	도로	13,273	9.7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36,474			136,474	100.0
주거지역	소계	136,474			136,474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계	136,474		136,474	100.0
		제1종	1,481	증)	33,983	26.0
		제2종(7층)	134,856	감)	58,481	56.0
		제2종(12층)	-		-	-
		제3종	137	증)	24,498	18.0
	준주거지역		-		-	-
일반상업지역		-			-	-

■ 용도지구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1	459	20	집산도로	439	창신동 25-1	창신동 138-9	-	-
신설	중로	2	487	15	집산도로	785	창신동 131-3	창신동 611-44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435	창신동 23-364	창신동 23-438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지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봉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토록 함.

■ 주 차 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609-21	124	감)124	-	'02.10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
폐지	-	주차장	종로구 창신동 23-611	405	감)405	-		동부여성문화센터부근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 공원	창신동 23-350	860	감) 860	-	-	낙산APT 철거부지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	201,779	증)14,041	215,820	-	낙산공원 (확장)
신설	2	공원	근린공원	창신동 23-345 일대	-	증)52,812	52,812	-	창신생태 공원
신설	4	공원	소공원	창신동 627-9 일대	-	증) 1,240	1,240	-	지장암 부근

■ 문화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지역문화복 지시설	창신동 626-4 일대	-	증)695	695	-	-

■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창신동 23-344	661	증)72	733		존치시설

4)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창신9구역	136,474	대지	91,327	창신동 23-606 일대	주거	60 이하	227 이하	25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창신9구역	136,474	대지	91,327	창신동 23-606 일대	782	1	-	781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창신9 재정비촉진구역	136,474	대지	91,327	창신동 23-606 일대	주거	60이하	227이하	2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 · 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호)				분 양 (호)			
		소계	30~40㎡	41~50㎡	51~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9구역	2,070	387	155	155	77	1,683	697	630	356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사업	2단계(2012~2017년)	민간	-	-

(4) 창신10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구	창신10재정비촉진구역	창신동 641-1번지 일대	-	증)74,969	74,969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74,969	100.0	-
택지	소계	53,263	71.0	-
	공동주택	36,028	48.1	-
	복합용지	15,259	20.4	-
	기타(종교시설)	1,976	2.6	-
기반시설	소계	21,706	28.9	-
	공원	10,949	14.6	1개소
	공공공지	100	0.1	1개소
	공공청사	1,543	2.1	1개소
	도로	9,114	12.1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74,969	-	74,969		100.0
주 거 지 역	소계	74,969		74,969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계	감)	18,522	56,447	75.3
		제1종	증)	9,832	9,875	13.2
		제2종(7층)	감)	18,064	46,572	62.1
		제2종(12층)		-	-	-
		제3종	감)	10,290	-	-
	준주거지역	-	증)	18,522	18,522	24.7
일반상업지역		-		-		-

■ 용도지구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1	2	20	집산도로	187	창신동 530-1	창신동 138-10	-	-
신설	중로	2	487	15	집산도로	785	창신동 131-3	창신동 611-44	-	-
신설	중로	3	484	12	집산도로	207	창신동 570-10	창신동 678-3		
신설	중로	3	485	12	집산도로	177	창신동 583-14	창신동 660-340		
신설	중로	3	488	12	집산도로	152	창신동 687-24	창신동 656-1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지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봉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도록 함.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	201,779	감)14,041	215,820	-	낙산공원 (확장)
신설	4	공원	소공원	창신동 627-9 일대	-	증) 1,240	1,240	-	지장암 부근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공청사	치안센터· 주민자치센터	창신동 687-18 일대	-	증)1,543	1,543	-	복합시설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창신10구역	74,969	대지	52,540	창신동 641-1 일대	주거,판매,업무	60 이하	233 이하	28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창신10구역	74,969	대지	52,540	창신동 641-1 일대	517	-	-	517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창신10 재정비촉진구역	74,969	대지	52,540	창신동 641-1 일대	주거,판매,업무	60이하	233이하	2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호)				분 양 (호)			
		소계	30~40㎡	41~50㎡	51~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10구역	1,540	280	121	120	39	1,260	465	455	340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사업	3단계(2014~2019년)	민간	-	-

(5)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창신11재정비촉진구역	창신동 23-25번지 일대	-	증)75,856	75,856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75,856	100.0	-
택지	소계	39,958	52.7	-
	공동주택	39,105	51.6	-
	기타(종교시설 등)	853	1.1	-
기반시설	소계	35,898	47.3	-
	공원	11,137	14.7	1개소
	녹지	1,666	2.2	1개소
	공공공지	4,437	5.8	1개소
	학교	11,872	15.7	2개소
	문화복지시설	1,184	1.6	1개소
	도로	5,602	7.4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75,856			75,856	100.0
주 거 지 역	소계		75,856			75,856	100.0
	일 반 주 거 지 역	소계	75,856			75,856	100.0
		제1종	16,146	증)	6,329	22,457	29.6
		제2종(7층)	42,513	감)	30,893	11,620	15.3
		제2종(12층)	15,852	증)	25,874	41,726	55.0
		제3종	1,345	감)	1,310	35	0.1
	준주거지역		-			-	-
일반상업지역			-			-	-

■ 용도지구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변경	대로	3	-	20~25	주간선도로	1,680	송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지붕로정비
신설	소로	1	3	8	국지도로	171	창신동 20-15	창신동 702-5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435	창신동 23-364	창신동 23-438	-	-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220	창신동 17-75	창신동 23-315	-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75	창신동 6-25	창신동 23-373	-	-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182	창신동 128-14	창신동 23-215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기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붕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토록 함.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산6-25	2,508	감) 2,508	-	-	창신지구대 부근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23-362	710	감) 710	-	-	열공급설비 부근
신설	2	공원	근린공원	창신동 23-345 일대	-	증) 52,812	52,812	-	창신생태공원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창신동 14-20	4,920	감) 3,828	1,092	'80.11.14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창신동 6-41	-	증) 484	484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창신동 3-3	-	증) 1,181	1,181	-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공공공지	창신동 17-34 일대	-	감) 9,329	9,329	-	동서관통도로 예정부지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창신동 23-816	666	-	666	-	존치시설
기정	7	공공청사	경찰청사	창신동 23-373	6,517	증)374	6,891		

■ 문화시설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문화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창신동 23-57 일대	-	증)1,184	1,184	-	복합시설

■ 학 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창신동 128-32 일대	15,947	증) 627	16,574	'02.3.18	창신초등학교
신설	2	학교	중학교	창신동 13-80 일대	-	증)11,594	11,594		서일정보고 부지 활용

4)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창신11구역	75,856	대지	39,092	창신동23-25 일대	주거	60 이하	238 이하	23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창신11구역	75,856	대지	39,092	창신동 23-25 일대	308	3	-	305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창신11 재정비촉진구역	75,085	대지	39,092	창신동 23-25 일대	주거	60이하	238이하	2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호)				분 양 (호)			
		소계	30~40㎡	41~50㎡	51~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11구역	900	164	70	70	24	736	201	383	152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2010~2015년)	민간	-	-

(6) 창신12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창신12재정비촉진구역	창신동 50-1번지 일대	-	증)71,284	71,284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71,824	100.0	-
택지	소계	36,848	51.3	-
	공동주택	12,855	17.9	-
	복합용지	19,291	26.9	-
	기타(종교시설)	4,702	6.5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반시설	소계	34,976	48.7	-
	공원	1,665	2.3	1개소
	녹지	5,249	7.3	1개소
	공공공지	57	0.1	1개소
	학교	16,296	22.7	1개소
	도로	11,709	16.3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71,824		71,824		100.0
주거지역	소계	71,824		71,824		100.0
	일반주거지역	소계		42,617		59.3
		제1종	증)	1,709	1,709	2.3
		제2종(7층)	감)	18,050	18,660	26.0
		제2종(12층)	감)	568	-	-
		제3종	감)	12,298	22,248	31.0
	준주거지역	-	증)	29,207	29,207	40.7
일반상업지역		-		-		-

■ 용도지구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변경	대로	3	-	20~25	주간선도로	1,680	송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지붕로정비
신설	중로	1	459	20	집산도로	439	창신동 25-1	창신동 138-9	-	-
신설	중로	1	460	20	집산도로	187	창신동 530-1	창신동 138-10	-	-
신설	중로	3	483	12	집산도로	398	창신동 81-2	창신동 143-17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기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붕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도록 함.

■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창신동 82	1,170	감)1,170	-	-	두산아파트 부근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원	근린공원	창신동 23-345 일대	-	증)52,812	52,812	-	창신생태공원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창신동 226-70	-	증)6,047	6,047	-	-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공공공지	창신동 232-2 일대	-	증)57	57	-	-

■ 학 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창신동 128-32 일대	15,947	증) 627	16,574	'02.3.18	창신초등학교

4)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창신12구역	71,824	대지	31,888	창신동50-1 일대	주거,판매,업무	60 이하	283 이하	28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창신12구역	71,824	대지	31,888	창신동 50-1 일대	362	1	-	361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창신12 재정비촉진구역	71,824	대지	31,888	창신동 50-1 일대	주거,업무, 판매	60이하	283이하	2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호)				분 양 (호)			
		소계	30~40㎡	41~50㎡	51~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12구역	887	160	80	64	16	727	233	339	155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사업	3단계(2014~2019년)	민간	-	-

(7) 송인1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송인1재정비촉진구역	송인동 55-66번지 일대	-	증)61,511	61,511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61,511	100.0	-
택지	소계	43,514	70.7	-
	공동주택	43,194	70.2	-
	기타(종교시설)	320	0.5	-
기반시설	소계	17,997	29.3	-
	공원	8,595	14.0	2개소
	녹지	3,088	5.0	1개소
	공공공지	4,892	8.0	2개소
	도로	1,422	2.3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1,511			61,511	100.0
주거지역	소계		61,511			61,511	100.0
	일반주거지역	소계	61,511			61,511	100.0
		제1종	23,221	감)	14,446	8,775	14.3
		제2종(7층)	12,437	감)	12,437	-	-
		제2종(12층)	25,853	증)	26,883	52,736	85.7
		제3종	-			-	-
	준주거지역		-			-	-
일반상업지역			-			-	-

■ 용도지구 결정 : 해당사항 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변경	대로	3	-	20~25	주간선도로	1,680	송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지봉로정비
신설	중로	3	489	12	집산도로	370	송인동 5-32	송인동 20-110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기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봉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토록 함.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송인동 59번지 일대	45,615	증)7,854	53,469	'04.9.10	송인공원(확장)
신설	7	공원	소공원	송인동 20-107 일대	-	증)2,584	2,584	-	청룡사 부근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송인동 5-4	-	증)1,741	1,741	-	-
신설	6	녹지	연결녹지	송인동 56-129		증)2,031	2,031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공공공지	창신동 17-34 일대	-	증)9,329	9,329	-	동서관통도로 예정부지

4)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송인1구역	61,511	대지	43,194	송인동 56-66 일대	주거	60 이하	238 이하	20

5)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송인1구역	61,511	대지	43,194	송인동 56-66 일대	336	-	-	336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		위 치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송인1 재정비촉진구역	61,511	대지	43,194	송인동 56-66 일대	주거	60이하	238이하	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호)				분 양 (호)			
		소계	30~40㎡	41~50㎡	51~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12구역	887	186	74	74	38	778	208	356	214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2010~2015년)	민간	-	-

(8) 송인2재정비촉진구역

(가)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 규	송인2재정비촉진구역	송인동 70-3번지 일대	-	증)62,387	62,387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계		62,387	100.0	-
택지	소계	49,062	78.6	-
	공동주택	40,642	65.1	-
	복합용지	7,048	11.3	-
	기타(종교시설)	1,372	2.2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반시설	소계	13,325	21.4	-
	공원	4,410	7.1	1개소
	녹지	2,127	3.4	3개소
	공공공지	583	0.9	1개소
	도로	6,205	9.9	-

2)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2,387				62,387	100.0
주거지역	소계		59,779				62,387	100.0
	일반주거지역	소계	55,517				51,644	82.8
		제1종	18,848	감)	13,438	5,410	8.7	
		제2종(7층)	76	감)	76	-	-	
		제2종(12층)	26,178	증)	20,056	46,234	74.1	
		제3종	10,415	감)	10,415	-	-	
	준주거지역		4,262	증)	6,481	10,743	17.2	
일반상업지역			2,608	감)	2,608	-	-	

■ 용도지구 결정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왕산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기정	왕산로변 방화지구	방화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도 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변경	대로	2	6	30~40	주간선도로	2,600	안국동 광장	동대문 광장	'76.1.28	왕산로 6M확폭 (2단계 3M확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변경	대로	3	-	20~25	주간선도로	1,680	송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지붕로정비
신설	중로	3	486	12	집산도로	355	송인동 76-1	송인동 72-4		
신설	중로	3	487	12	집산도로	36	송인동 72-13	송인동 72-11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114	창신동 107-5	창신동 72-62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53	송인동 72-58	송인동 72-4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50	송인동 96-2	송인동 102-1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기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붕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토록 함.

■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송인동 72-170	178	감)178	-	'01.7.28	-

■ 공 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송인동 59번지 일대	45,615	증)7,854	53,469	'04.9.10	송인공원(확장)

■ 녹 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6	녹지	연결녹지	송인동 56-129	-	증)2,031	2,031	-	-
신설	7	녹지	연결녹지	송인동 72-17		증)1,021	1,021	-	-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송인동 72-170		증) 433	433	-	-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공공공지	송인동 97번지 일대	-	증)583	583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송인2구역	62,387	대지	47,690	송인동 70-3 일대	주거,판매,업무	60이하	267이하	25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전면철거후 시행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등)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송인2구역	62,387	대지	47,690	송인동 70-3 일대	426	-	-	426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층)
	명 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송인2 재정비촉진구역	62,387	대지	47,690	송인동 70-3 일대	주거,판매,업무	60이하	267이하	2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창신·송인재정비촉진계획(2단계구간)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의함					

6) 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합계 (호)	임 대 (호)				분 양 (호)			
		소계	30~40㎡	41~50㎡	51~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창신12구역	887	197	79	79	39	893	249	356	288

7) 정비사업 시행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주택재개발사업	1단계(2010~2015년)	민간	-	-

버.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결정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2단계 구간)	종로구 창신1~3동, 및 송인1동 일대	738,152	-	738,152	'07. 4.30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738,152	-	738,152	100.0
주거 지역	소계	714,653	감) 19,385	695,268	94.2
	일반 주거 지역	694,133	감) 66,507	627,626	85.0
	제1종	161,160	증) 27,413	188,573	25.5
	제2종(7층)	325,549	감) 147,170	178,379	24.2
	제2종(12층)	118,069	증) 71,590	189,659	25.7
	제3종	89,355	감) 18,340	71,015	9.6
	준주거지역	20,520	증) 47,122	67,642	9.2
일반상업지역		23,499	증) 19,385	42,884	5.8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왕산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기정	왕산로변 방화지구	방화지구	창신동 330-1, 송인동 138번지 일대	-	1,775	12	-	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1) 도 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변경	대로	2	6	30~40	주간선도로	2,600	안국동광장	동대문광장	'76.1.28	왕산로 6M확폭 (2단계 3M확폭)
변경	대로	3	-	20~25	주간선도로	1,680	송인동 83-5	성북구 보문동1가	-	지봉로 정비
신설	중로	1	459	20	집산도로	439	창신동 25-1	창신동 138-9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신설	중로	1	460	20	집산도로	187	창신동 530-1	창신동 138-10	-	-
신설	중로	2	487	15	집산도로	785	창신동 131-3	창신동 611-44	-	-
신설	중로	3	483	12	집산도로	398	창신동 81-2	창신동 143-17	-	-
신설	중로	3	484	12	집산도로	207	창신동 570-10	창신동 678-3	-	-
신설	중로	3	485	12	집산도로	177	창신동 583-14	창신동 660-340	-	-
신설	중로	3	486	12	집산도로	355	송인동 76-1	송인동 72-4	-	-
신설	중로	3	487	12	집산도로	36	송인동 72-13	송인동 72-11	-	-
신설	중로	3	488	12	집산도로	152	창신동 687-24	창신동 656-1	-	-
신설	중로	3	489	12	집산도로	370	송인동 5-32	송인동 20-110	-	-
신설	소로	1	3	8	국지도로	171	창신동 20-15	창신동 702-5	-	-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435	창신동 23-364	창신동 23-438	-	-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220	창신동 17-75	창신동 23-315	-	-
신설	소로	2	4	8	국지도로	75	창신동 6-25	창신동 23-373	-	-
신설	소로	2	5	8	국지도로	182	창신동 128-14	창신동 23-215	-	-
신설	소로	2	6	8	국지도로	114	창신동 107-5	창신동 72-62	-	-
신설	소로	2	7	8	국지도로	53	송인동 72-58	송인동 72-4	-	-
신설	소로	2	8	8	국지도로	50	송인동 96-2	송인동 102-1	-	-
신설	소로	3	3	6	보행자 전용도로	40	창신동 545	창신동 580-31	-	-

※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지정 도로 중 왕산로와 지봉로를 제외한 도로(도시계획시설)는 폐지토록 함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창신동 609-21	124	감) 124	-	'02.10	창신주거환경개선지구
폐지	-	주차장	창신동 82	1,170	감) 1,170	-	-	두산아파트 부근
폐지	-	주차장	창신동 23-611	405	감) 405	-	-	동부여성센터 부근
기정	-	주차장	창신동 23-343	725	-	725	'01.7.28	존치
폐지	-	주차장	송인동 72-170	178	감) 178	-	'01.7.28	-

3) 공 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산6-25	2,508	감) 2,508	-	-	창신지구대부근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611-19	660	감) 660	-	-	낙산공원내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23-362	710	감) 710	-	-	열공급시설 부근
폐지	-	공원	어린이공원	창신동 23-350	860	감) 860	-	-	낙산아파트 철거부지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	201,779	증)14,041	215,820		낙산공원(확장)
신설	2	공원	근린공원	창신동 23-345 일대	-	증)52,812	52,812	-	창신생태공원
변경	3	공원	근린공원	송인동 59번지 일대	45,615	증) 7,854	53,469	'04.9.10	송인공원(확장)
신설	4	공원	소공원	창신동 627-9 일대	-	증) 1,240	1,240	-	지장암 부근
신설	5	공원	소공원	창신동 697-3 일대	-	증) 732	732	-	홍인지문 부근
신설	6	공원	소공원	창신동 269번지 일대	-	증) 877	877	-	동묘역 부근
신설	7	공원	소공원	송인동 20-107 일대	-	증) 2,584	2,584	-	청룡사 부근

4) 녹 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창신동 226-70	-	증)6,047	6,047	-	-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창신동 14-20	4,920	감)3,828	1,092	'80.11.14	-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창신동 6-41	-	증) 484	484	-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창신동 3-3	-	증)1,181	1,181	-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송인동 5-4	-	증)1,741	1,741	-	-
신설	6	녹지	연결녹지	송인동 56-129	-	증)2,031	2,031	-	-
신설	7	녹지	연결녹지	송인동 72-17	-	증)1,021	1,021	-	-
신설	8	녹지	경관녹지	송인동 72-170	-	증) 433	433	-	-

5)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송인동 76-2	98	-	98	-	존치구역
신설	2	공공공지	창신동 669-2 일대	-	증)7,727	7,727	-	봉제공장예정부지
신설	3	공공공지	창신동 17-34 일대	-	증)9,329	9,329	-	동서관통도로예정부지
신설	4	공공공지	송인동 97 일대	-	증) 583	583	-	-
신설	5	공공공지	창신동 232-2 일대	-	증) 57	57	-	-

6)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구민회관	창신동 222-8	3,974	감) 59	3,915	'96.10.16	봉제공장 유보지
신설	2	공공청사	치안센터· 주민자치센터	창신동 687-18 일대	-	증) 1,543	1,543	-	복합시설
기정	3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창신동 23-816	666	-	666	-	존치시설
기정	4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송인동 55-2	666	-	666	-	
기정	5	공공청사	우체국	송인동 53-25	190	-	190	-	
변경	6	공공청사	치안센터	송인동 53-29	86	증) 63	149	-	
기정	7	공공청사	경찰청사	창신동 23-373	6,517	증) 347	6,891	-	

7) 문화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창신동 626-4 일대	-	증) 695	695	-	
신설	2	문화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창신동 23-57 일대	-	증) 1,184	1,184	-	복합시설

8) 사회복지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창신동 23-344	661	증) 72	733	-	존치시설

9) 학교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창신동 128-32 일대	15,947	증) 627	16,574	'02.3.18	창신초등학교
신설	2	학교	중학교	창신동 13-80 일대	-	증) 11,594	11,594		서일정보고 부지 활용

10) 수도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창신동 23-322	707	-	707	-	존치시설
기정	3	수도공급설비	송인동 58	15,000	-	15,000	'88.8.1	존치시설

11) 열공급설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열공급설비	창신동 23-315 일대	-	증)6,998	6,998	-	봉제공장유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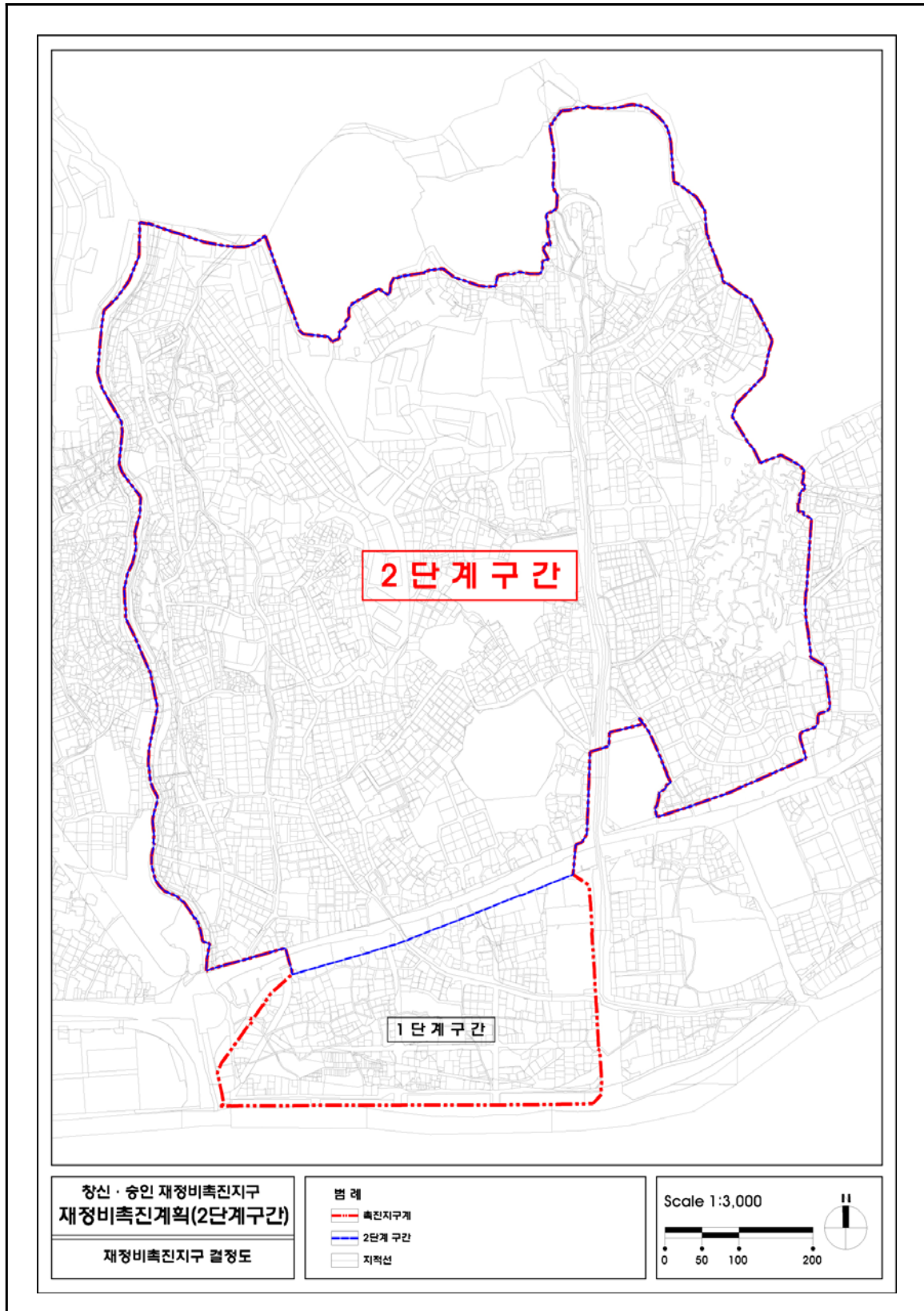
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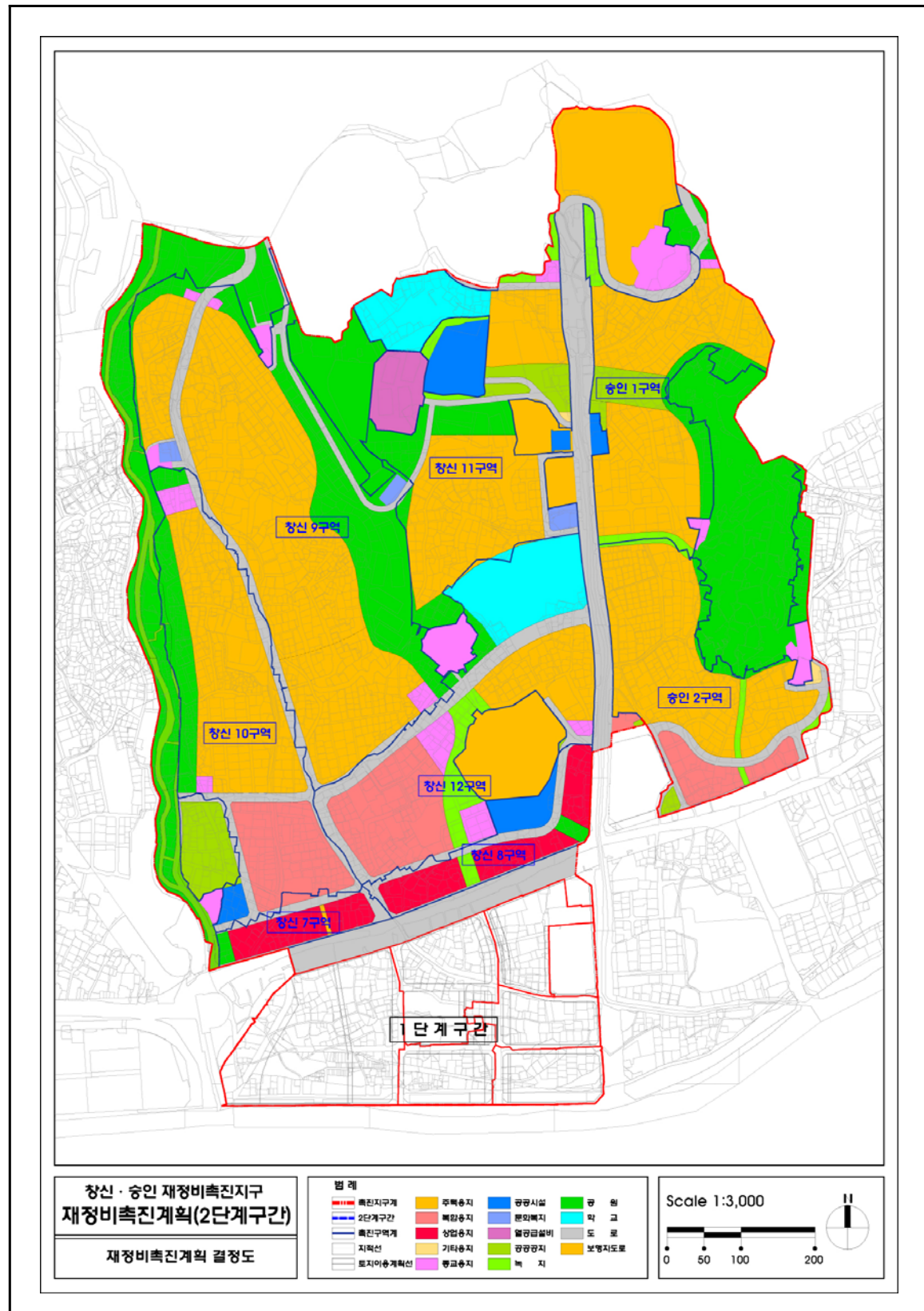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유형
기정	9	A	창신3동	23	3.5	19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전면)
변경	창신11	C	창신동	23-25	7.5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폐지	10	A	창신동	143-27	0.3	210%	-	50%	1	주거환경개선	전면개발
기정	11	B	송인1동	61	2.1	19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송인2	C	송인동	70-3	6.2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기정	12	B	송인동	10	1.7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변경	송인1	C	송인동	56-66	6.1	190%	12층이하	60%	1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신규	창신9	C	창신동	23-606	13.6	190%	12층이하	60%	2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신규	창신10	C	창신동	641-1	7.5	190%	12층이하	6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신규	창신12	C	창신동	50-1	7.2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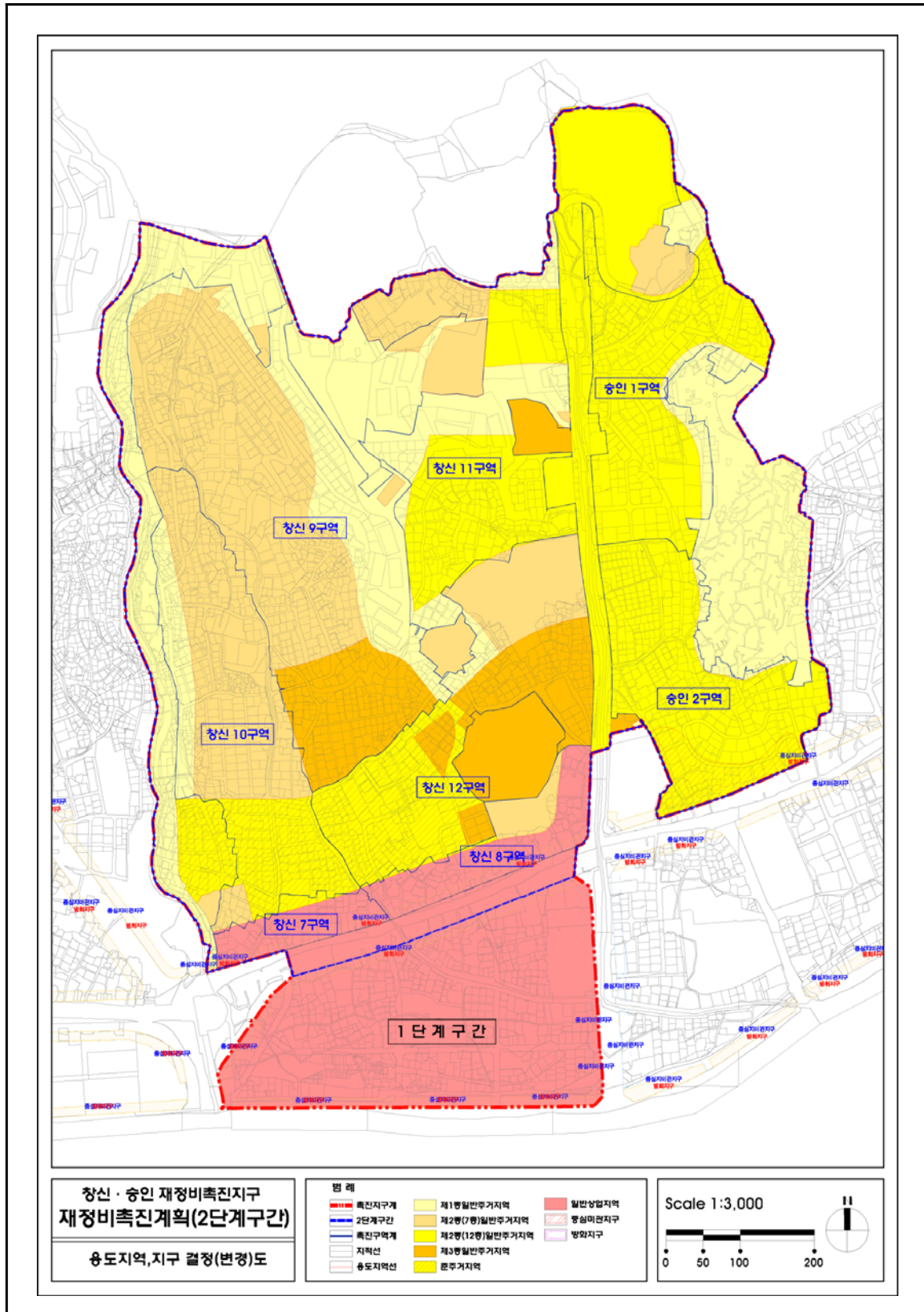
어. 동대문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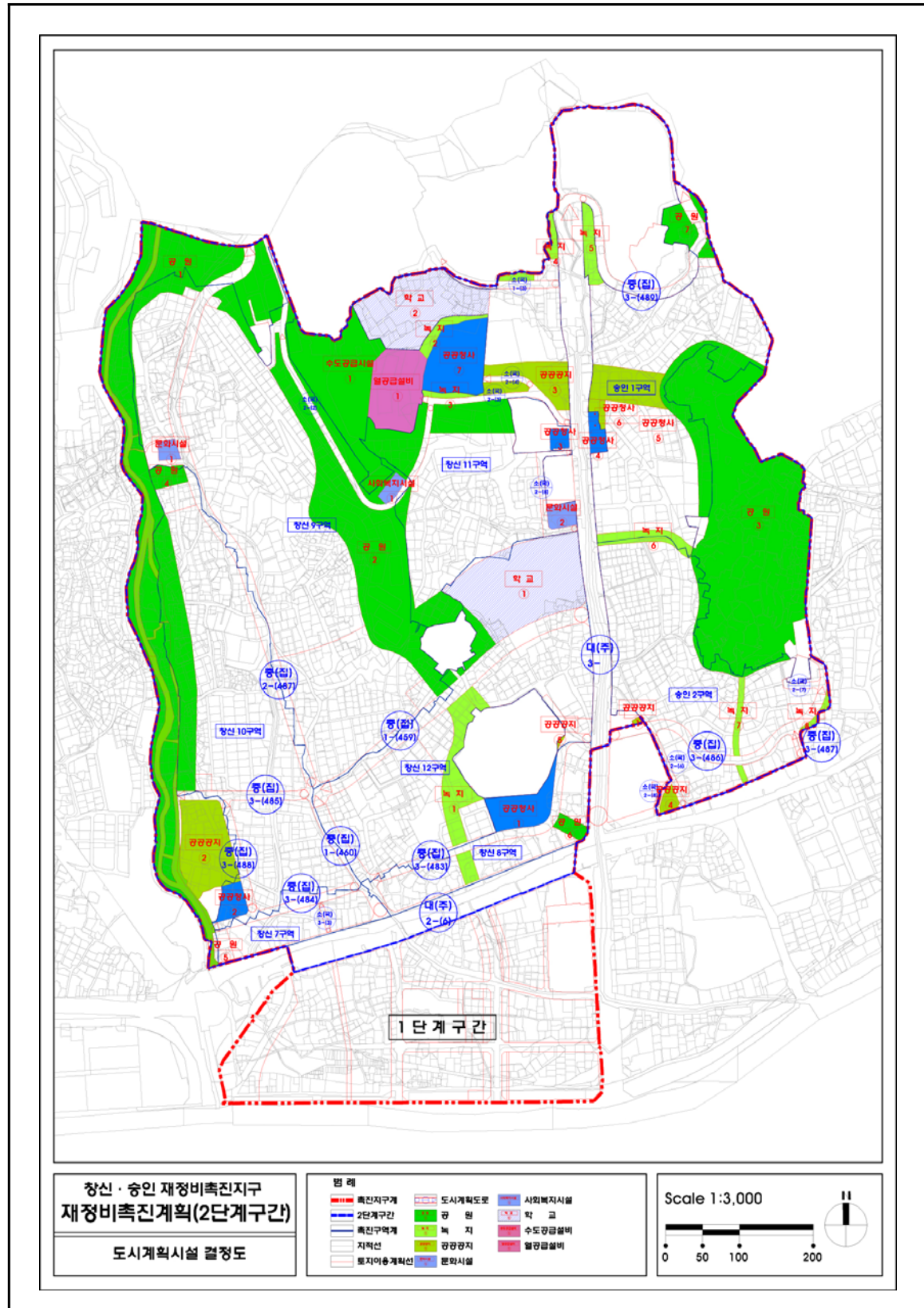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종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종로구 동대문 지구단위계획	종로구 창신동, 송인동 일대	270,230	감)160,341	109,889	1996.6.7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6.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창신·송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에 명시
7.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8.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02-2171-2698) 및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731-190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9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고시일 : 2010. 04. 22.
2. 고시방법 : 시보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
4.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 02-731-6635 (FAX : 02-3707-8148)

나. 주소 :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9층

다. 서울시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adress.seoul.go.kr>) 참조

6.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의 결정조서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1	3,170	25~32	로	중구 충무로5가 19-7 (퇴계로)	성북구 성북동1가(한성대입 구 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중구, 종로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창경궁로	조선5대 궁궐의 하나인 창경궁 명칭 인용
1-1	3,210	35	로	성북구 성북동1가(한성대입 구 사거리)	성북구 하월곡동 196 (미아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20m	연속부여	동소문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1-2	5,740	25~35	로	성북구 하월곡동 196 (미아삼거리)	노원구 월계동 (월계1교 북단)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20m	연속부여	월계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1-3	5,980	25~35	로	노원구 월계동 (월계1교 북단)	노원구 상계동 661(동부간선로)	별도조서 참조	노원구	20m	연속부여	한글비석로	보물 제1524호인 한글비석의 역사성 인용
2	2,400	10	로	종로구 사직동 (사직로)	종로구 부암동 (창의문길)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20m	연속부여	인왕산로	서울의 내4산의 하나인 인왕산 명칭 인용
2-1	9,700	10	로	종로구 부암동 (창의문길)	성북구 종암동 (종암로)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북악산로	서울의 내4산의 하나인 북악산 명칭 인용
3	4,700	40	대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용산구	20m	연속부여	반포대로	한강을 경계로 서초구를 통과하 는 반포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인 용
3-1	4,000	38	대로	용산구 서빙고동 (반포대교 북단)	중구 회현동1가 (3호터널 끝)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20m	연속부여	녹사평대로	조선시대까지 잡초가 무성하여 불리었던 녹사평의 지명을 인용
3-2	1,600	20~38	로	중구 혜화동1가 (3호터널 끝)	중구 소공동 (태평로)	별도조서 참조	중구	20m	연속부여	소공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지점)	도로명	부여사유
4	800	30~40	로	서대문구 충정로3가 44(충정로삼거리)	서대문구 충정로2가 8-2(의주로)	별도조서 참조	서대문구	20m	연속부여	충정로	조선시대 말기의 충신 민영환의 시호를 인용
4-1	1,100	40	로	서대문구 충정로2가 8-2(의주로)	종로구 세종로 139 (세종로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서대문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새문안로	서대문안을 의미하는 새문안의 의미를 인용
4-2	4,300	26~40	로	종로구 신문로1가 (세종로사거리)	종로구 창신동 (신설동로타리)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20m	연속부여	종로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도로의 역사성 인용
4-3	3,350	26	로	종로구 창신동 (신설동로타리)	동대문구 청량리동 749(시조사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동대문구	20m	연속부여	왕산로	대한제국 의병장 허위의 호 인용
4-4	4,400	20	로	동대문구 청량리동 (시조사삼거리)	성북구 장위동 (월계로)	별도조서 참조	동대문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이문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5	3,900	35~40	로	성동구 옥수동 (동호대교 북단)	종로구 종로5가(종로)	별도조서 참조	성동구,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동호로	동호대교 명칭 인용
5-1	1,600	20~40	로	종로구 종로5가(종로)	종로구 혜화동 (혜화동로타리)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20m	연속부여	대학로	서울대 문리대가 위치했던 역사 성 반영
6	4,800	30~35	로	중구 봉래동2가 (대우빌딩 앞)	중구 황학동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중구	20m	연속부여	퇴계로	조선시대 유학자 이항의 호 인용
6-1	3,900	30	로	성동구 성수동1가 (강변북로)	중구 황학동 (도로교통공단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성동구, 중구	20m	연속부여	왕십리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8	1,290	35~40	로	중구 남대문로4가 (남대문)	중구 다동 (청계천, 구경계)	별도조서 참조	중구	20m	연속부여	남대문로	국보 제1호 남대문의 명칭 인용
8-1	720	30~35	로	중구 다동 (청계천, 구경계)	종로구 견지동 (을곡로)	별도조서 참조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우정국로	조선시대 우편사무를 맡았던 우 정총국이 있던 역사성 반영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9	2,750	10~25	로	성동구 금호동1가 580-1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로타리)	별도조서 참조	성동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20m	연속부여	난계로	조선 초 문신인 박연의 호 인용
9-1	2,100	25~30	로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동로타리)	성북구 동서문동 (동소문로)	별도조서 참조	성동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보문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10	2,800	30	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로)	중구 황학동 (청계천, 구경계)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다산로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호 인용
10-1	1,800	25	로	중구 황학동 (청계천, 구경계)	성북구 보문동(보문로)	별도조서 참조	중구, 종로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지봉로	조선중기 문신인 이수광의 호 인용
10-2	1,210	25	로	성북구 보문동 (보문로)	성북구 안암동 (고대앞 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20m	연속부여	인촌로	고려대학교 설립자인 김성수의 호 인용
10-3	4,050	25	로	성북구 안암동 (고대앞 사거리)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동대문구	20m	연속부여	전농로	조선시대 초기부터 왕의 친경지 인 전농의 역사성 인용
11	2,800	25~40	로	용산구 한남동 산9-2 (한남대로 종점)	중구 을지로6가 (청계천)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20m	연속부여	장충단로	중구 장충동에 있는 장충단비의 역사성 인용
12	4,700	40	대로	용산구 한남동 (고가 시점)	종로구 관철동 (율곡로)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삼일대로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도로 명 인용
12-1	1,450	20	로	종로구 관철동 (율곡로)	종로구 삼청동 (삼청동길)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20m	연속부여	북촌로	북촌마을 인용
13	6,700	20~28	로	성북구 길음동 (미아로)	강북구 우이동 199-1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강북구, 동북구	20m	연속부여	삼양로	옛 행정동 이었던 삼양동 인용
14	13,220	18~28	로	동대문구 장안동 (도시철도공사 사거리)	강북구 수유동 산 127-1	별도조서 참조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20m	연속부여	한천로	한천(중랑천) 지명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15	5,110	20~35	로	강북구 수유동 (도봉로)	노원구 상계동 (노원길)	별도조서 참조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20m	연속부여	노해로	옛 지명인 양주군 노해면의 의미를 인용
16	6,250	30	로	노원구 공릉동 78-6 (화랑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 구경계)	별도조서 참조	노원구	20m	연속부여	노원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16-1	3,650	22~30	로	노원구 상계동 (중랑천, 구경계)	강북구 우이동 207-4	별도조서 참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20m	연속부여	방학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17	4,990	15	로	노원구 월계동 (월계로)	도봉구 쌍문동 (해동길)	별도조서 참조	노원구, 도봉구	20m	연속부여	우이천로	우이천을 따라 개설된 도로로서 우이천 명칭 인용
18	4,900	30	로	용산구 용산동5가 (한강로)	성동구 옥수동 (구경계)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성동구	20m	연속부여	서빙고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18-1	6,750	15~30	로	성동구 옥수동 (구경계)	광진구 자양동 (동서울호텔앞 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성동구, 광진구	20m	연속부여	독섬로	옛 이름인 독섬명칭 인용
19	3,600	20~24	로	중구 을지로6가 (홍인문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역 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중구, 동대문구	20m	연속부여	마장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19-1	4,150	16~23	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역 사거리)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길)	별도조서 참조	동대문구, 중랑구	20m	연속부여	사가정로	조선 초기 문신 서거정의 호를 인용
20	4,700	30~35	로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	은평구 신사동 (신사오거리)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은평구	20m	연속부여	증산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20-1	6,510	35	로	은평구 신사동 (신사오거리)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	별도조서 참조	은평구	20m	연속부여	연서로	불광천의 옛 이름인 연서천 명칭을 인용
21	4,100	25	로	마포구 동교동 147-4 (동교동 삼거리)	서대문구 홍은동 217-6 (의주로)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서대문구	20m	연속부여	연희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21-1	5,200	18~36	로	서대문구 홍은동 (의주로)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별도조서 참조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세검정로	역사성 깊은 세검정 정자 명칭 인용
21-3	4,500	25~40	로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성북구 종암동 (종암로)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20m	연속부여	정릉로	조선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정 릉 명칭 인용
22	6,650	24~40	로	마포구 망원동 (성산대교 북단)	서대문구 현저동 104(의주로)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새대문구	20m	연속부여	성산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22-1	1,800	36	로	서대문구 교북동 109(의주로)	종로구 중학동 38-1 (경복궁로타리)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20m	연속부여	사직로	사직공원 안에 있는 사직단의 의미를 인용
22-2	3,180	36	로	종로구 중학동 38-1 (경복궁로타리)	종로구 종로6가 (청계천)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20m	연속부여	울곡로	조선증기의 대표적 유학자 이이 의 호 인용
23	3,600	30	로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 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20m	연속부여	이태원로	외국인이 많아 관광특구로 지정 된 기존명칭 사용
23-1	4,150	30	로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타리)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마포구	20m	연속부여	백범로	정치가, 독립운동가인 김구의 호 인용
23-2	600	20	로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타리)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정문)	별도조서 참조	새대문구	20m	연속부여	연세로	이 길의 종점에 위치한, 연세대 학교 학명 인용
24	4,200	20~30	로	영등포구 문래동 2가 1-1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북단)	별도조서 참조	영등포구, 마포구	20m	연속부여	선유로	옛 선유봉의 이름 사용
24-1	2,150	30	로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북단)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20m	연속부여	양화로	옛 양화나루의 지명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25	10,200	40	대로	양천구 신월동 (신월 1.C)	마포구 하중동 (서강대교 북단)	별도조서 참조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	20m	연속부여	국회대로	도로구간 내 국회의사당이 위치 한 지역특징 인용
25-1	1,400	30	로	마포구 하중동 (서강대교 북단)	서대문구 창천동 (신촌로타리)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서대문구	20m	연속부여	서강로	서강대교의 명칭을 인용
26	5,700	30	로	동작구 신대방동 (우성아파트앞)	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대교 북단)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20m	연속부여	여의대방로	여의도+대방동 지명 혼합
26-1	4,900	30	로	용산구 원효로4가 (원효대교 북단)	중구 만리동1가 (서소문로)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20m	연속부여	청파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26-2	3,300	30	로	서대문구 창천동 (동교동삼거리)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서대문구	20m	연속부여	신촌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27	7,600	40	대로	강서구 방화동 621 (남부순환로)	영등포구 양화동 (양화교 끝단)	별도조서 참조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20m	연속부여	공항대로	김포공항에 연결되는 주도로의 의미부여
27-1	8,640	25~40	로	영등포구 양화동 산 5-2	동작구 본동 258-1 (한강대교 남단)	별도조서 참조	영등포구, 동작구	20m	연속부여	노들로	노량진의 옛 이름인 노들나루의 의미를 인용
27-2	2,600	35~40	로	동작구 노량진동 (한강대교 남단)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앞)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20m	연속부여	현충로	국립묘지를 통하는 도로 의미 반영
28	4,400	20~40	로	양천구 신정동 (신정교 서측)	영등포구 대림동 (시흥대로)	별도조서 참조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20m	연속부여	도림천로	도림천을 따라 형성된 도로로서 도림천 지명 인용
28-1	4,800	20~40	로	동작구 신대방동 (시흥대로)	관악구 봉천동 1634 (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관악구	20m	연속부여	봉천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29	2,500	35	로	구로구 구로4동 (도림로)	구로구 신도림동 (오금교 동측)	별도조서 참조	구로구, 양천구	20m	연속부여	구로중로	구로구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의 의미를 부여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지점)	도로명	부여사유
29-1	2,750	30~35	로	구로구 신도림동 (오금교 동측)	양천구 목동 (제물포길)	별도조서 참조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20m	연속부여	목동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29-2	2,400	30~35	로	양천구 목동 (제물포길)	강서구 등촌동 (등촌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양천구, 강서구	20m	연속부여	등촌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30	1,350	25	로	영등포구 신길동(도림로)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로)	별도조서 참조	영등포구	20m	연속부여	신평로	도로구간에 있는 지하철역명을 인용
30-1	5,550	20~40	로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로)	동작구 상도동 (상도동고개)	별도조서 참조	영등포구, 동작구	20m	연속부여	상도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30-2	2,900	36~40	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동작구 상도동 (상도동고개)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관악구	20m	연속부여	관악로	서울대학교에 연결되는 관악구 를 대표하는 도로
30-3	5,290	25~35	로	관악구 신림동 686(서울대)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 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관악구, 동작구	20m	연속부여	신림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31	4,900	20~40	로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	동작구 본동 (한강대교북단)	별도조서 참조	관악구, 동작구, 용산구	20m	연속부여	양녕로	인근에 조선시대 양녕대군의 사 당과 묘가 있는 역사성 반영
31-1	1,700	20~40	로	동작구 상도동 (신상도초교 앞)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로)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20m	연속부여	장승배기로	장승이 서 있다는 의미를 반영
32	3,800	20~40	로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	영등포구 양평동 (오목교 동측)	별도조서 참조	양천구, 영등포구	20m	연속부여	오목로	안양천에 놓인 오목교 명칭 인 용
32-1	4,350	30	로	영등포구 양평동 (오목교 동측)	영등포구 신길동 (대방로 교차)	별도조서 참조	영등포구	20m	연속부여	영등포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34	3,570	20	로	관악구 신림동 (산북터널)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앞)	별도조서 참조	관악구	20m	연속부여	난곡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지점)	도로명	부여사유
34-1	2,600	20	로	동작구 신대방동 (신대방역앞)	영등포구 대림동 (성원아파트 앞)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영등포구	20m	연속부여	대림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35	1,100	15	로	관악구 봉천동 (남부순환로)	동작구 사당동 (사당로)	별도조서 참조	관악구, 동작구	20m	연속부여	솔밭로	주변지역 특성 반영
36	4,460	20	로	금천구 시흥동 (박미삼거리)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길)	별도조서 참조	금천구, 관악구	20m	연속부여	독산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37	5,200	12~20	로	금천구 시흥동 (시흥역 앞)	구로구 구로동 473-21	별도조서 참조	금천구, 구로구	20m	연속부여	벗꽃로	주변지역 특성 반영
38	5,000	12~20	로	구로구 구로동 (구로동길)	영등포구 문래동 (진주아파트 앞)	별도조서 참조	구로구, 영등포구	20m	연속부여	도림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39	3,900	30	로	구로구 고척동 (경인로)	강서구 화곡동 (화곡고가 사거리)	별도조서 참조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20m	연속부여	중앙로	도로가 양천구의 중앙을 통과하 는 의미를 반영
39-1	5,350	30~35	로	강서구 화곡동 (화곡고가 사거리)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대로)	별도조서 참조	강서구	20m	연속부여	강서로	행정구역 명칭 인용
40	750	25	로	중구 필동 (퇴계로)	중구 입정동 (청계천)	별도조서 참조	중구	20m	연속부여	충무로	조선시대 명장 이순신의 시호 인 용
40-1	1,120	25	로	중구 입정동 (청계천)	종로구 와룡동 (창경궁로)	별도조서 참조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돈화문로	도로구간에 위치한 창덕궁의 정 문인 돈화문의 역사성 반영
41	7,050	13~28	로	광진구 광장동 (아차성길)	강동구 상일동 (상일동길)	별도조서 참조	광진구, 강동구	20m	연속부여	구천면로	옛 지명인 구천면의 역사성 반영
42	5,100	10~20	로	광진구 군자동 66	중랑구 상봉동 (상봉삼거리)	별도조서 참조	광진구, 중랑구	20m	연속부여	면목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43	4,100	25~30	로	동대문구 전농동 (왕산로)	중랑구 면목동 (용마산길)	별도조서 참조	동대문구, 광진구, 중랑구	20m	연속부여	답십리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44	2,250	20	로	마포구 도화동 (마포로)	용산구 한강로2가(한강로)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용산구	20m	연속부여	새창로	조선시대 선혜청 창고가 있던 지명 인용
45	3,900	40	대로	서초구 방배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사평대로	한강남안에 위치하며 백사장이 넓어 붙여진 사평원의 역사성 반 영
45-1	4,100	35	로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강남구 삼성동 (탄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봉은사로	삼성동에 위치한 봉은사(절)의 명칭 사용
46	2,700	25	로	동작구 상도동 (관악로)	동작구 사당동 (이수교차로)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20m	연속부여	사당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46-1	4,250	40	대로	서초구 방배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서초동 (강남대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서초대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46-- 2	3,900	50	대로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강남구 대치동 (탄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테헤란대로	서울시와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 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역사성 반영
47	4,400	30	로	서초구 방배동 (남부순환로)	서초구 서초동 (강남대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효령로	방배역 인근 조선시대 효령대군 의 묘가 있는 역사성 반영
47-1	4,700	35~40	로	강남구 대치동 (강남대로)	송파구 잠실동 (백제고분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송파구	20m	연속부여	도곡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48	2,580	30	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로)	서초구 잠원동 (사평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우면로	우면산 명칭 인용
48-1	2,400	30~40	로	서초구 서초동 (사평로)	서초구 잠원동 (강남대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잠원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48-2	3,100	30	로	강남구 신사동 (강남대로)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압구정로	압구정의 옛 역사성 반영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지점)	도로명	부여사유
48-3	5,050	35	로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삼성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49	3,500	30	로	서초구 반포동 (이수교차로)	서초구 반포동 (강남대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신반포로	주 통과지역의 명칭 인용
49-1	3,700	35~40	로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	강남구 삼성동 (청담대교 남단)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학동로	옛 지역모양이 학의 모양과 같 다하여 불려지는 역사성 반영
50	700	20	로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서초구 양재동 (논현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마방로	옛날 말을 제공하는 마방이 있 던 역사성 반영
50-1	4,500	20	로	강남구 개포동 (논현로)	강남구 일원동 (양재대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개포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51	1,900	20	로	서초구 서초동 (반포로)	서초구 서초동 (강남대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20m	연속부여	사임당로	조선시대의 여류 서화가인 신사 임당의 인명 인용
51-1	3,600	35	로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	강남구 대치동 (탄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역삼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53	3,400	35	로	송파구 가락동 (탄천)	송파구 오금동 (위례성길)	별도조서 참조	송파구	20m	연속부여	중대로	서울에 편입되기 이전 광주군 중대면 명칭 인용
53-1	3,300	30	로	강남구 일원동 (양재대로)	강남구 수서동 (탄천)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광평로	세종대왕 5남인 광평대군 묘역 명칭 인용
53-2	5,750	40~70	대로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20m	연속부여	영동대로	영동지역의 간선도로 명칭 인용
54	9,100	26	로	노원구 월계동 (화랑로)	도봉구 도봉동 (경기도 시계)	별도조서 참조	노원구, 도봉구	20m	연속부여	마들로	중랑천을 따라 발달한 예전의 마들평야 명칭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지점)	도로명	부여사유
55	4,100	10~20	로	성북구 월곡동 (종암사거리)	강북구 수유동 (도봉로)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강북구	20m	연속부여	오패산로	변동 뒷산인 오패산 명칭 인용
56	3,260	25~35	로	성북구 정릉동 (정릉길)	강북구 미아동 (도봉로)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강북구	20m	연속부여	솔샘로	미아동의 옛 지명인 솔샘 인용
57	3,400	30~35	로	은평구 역촌동 (통일로)	종로구 신영동 (세검정길)	별도조서 참조	은평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진흥로	구기동 비봉에 있는 신라 진흥 왕 북한순수비 명칭 인용
58	4,900	10~20	로	마포구 성산동 (난지도길)	서대문구 홍제동 (의주로)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서대문구	20m	연속부여	모래내로	모래내(사천, 홍제천) 명칭 인용
59	5,900	25~60	로	종로구 서린동 (태평로)	동대문구 용두동 (신답철교교차로)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20m	연속부여	청계천로	서울도심 한복판을 서쪽에서 동 쪽으로 흐르는 청계천 명칭 인 용
60	400	20	로	중구 무교동 (을지로 입구)	종로구 서린동 (종로)	별도조서 참조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무교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61	1,350	14~20	로	중구 수표동 (퇴계로)	종로구 관수동 (종로세무서앞)	별도조서 참조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수표로	청계천의 수표다리 명칭 인용
62	2,200	28	로	마포구 공덕동 (공덕동로타리)	중구 만리동 (서울역앞)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용산구, 중구	20m	연속부여	만리재로	조선시대 석전으로 유명한 만리 재 명칭 인용
63	1,440	30	로	서대문구 충정로 3가(충정로삼거리)	중구 태평로2가 (태평로)	별도조서 참조	서대문구, 중구	20m	연속부여	서소문로	서울성곽 4소문의 하나인 소덕 문 별칭인 서소문 인용
64	1,700	20	로	용산구 용산동1가 (두텁바위길)	중구 남대문로5가 (남대문경찰서 앞)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20m	연속부여	후암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65	3,800	20	로	중구 남창동 (남대문)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	별도조서 참조	중구, 용산구	20m	연속부여	소월로	서정시인 김정식의 호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지점)	도로명	부여사유
	2,900	15	로	성동구 옥수동 (두무개길)	중구 신당동 (퇴계로)	별도조서 참조	성동구, 중구	20m	연속부여	금호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67	4,400	25	로	용산구 한남동 (서빙고로)	성동구 응봉동 (응봉로)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성동구	20m	연속부여	독서당로	조선시대 있던 독서당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
68	2,040	25	로	성동구 도선동 (왕십리길)	동대문구 제기동 (안암로)	별도조서 참조	성동구, 동대문구	20m	연속부여	무학로	왕십리 남쪽에 있는 무학봉의 이름 인용
69	3,250	16~25	로	종량구 목동 (먹골역앞)	노원구 공릉동 (한글비석길)	별도조서 참조	종량구, 노원구	20m	연속부여	공릉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72	4,100	25	로	서대문구 북가좌동 (수색로)	은평구 녹번동 (불광동길)	별도조서 참조	서대문구, 은평구	20m	연속부여	응암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73	3,500	25	로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로)	은평구 신사동 (덕산중학교앞)	별도조서 참조	서대문구, 은평구	20m	연속부여	가좌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74	3,200	15	로	양천구 신월동 (남부순환로)	양천구 목동 (모새미길)	별도조서 참조	양천구, 강서구, 양천구	20m	연속부여	곰달래로	신월동의 자연마을인 곰달래라 는 옛 지명 인용
75	3,500	25~35	로	구로구 오류동 (경인로)	양천구 신정동 (등촌로)	별도조서 참조	구로구, 양천구	20m	연속부여	고척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76	3,000	12	로	양천구 신월동 448-1	양천구 신월동 4-1	별도조서 참조	양천구, 강서구	20m	연속부여	월정로	신월동과 은행정이 있던 마을 명칭 인용
77	2,700	35	로	동작구 대방동 (대방로)	동작구 노량진동 (양녕로)	별도조서 참조	동작구	20m	연속부여	노량진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79	4,500	20	로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하부)	강남구 대치2동 (영동대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강남구	20m	연속부여	양재천로	양재천 명칭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 길이(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도로명	부여사유
80	1,610	12	로	금천구 독산동 (독산동길)	구로구 가리봉동 (디지털단지오거리)	별도조서 참조	금천구, 구로구	20m	연속부여	가산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80-1	2,950	20	로	구로구 가리봉동 (디지털단지오거리)	구로구 구로동 (구로큰길)	별도조서 참조	구로구	20m	연속부여	구로동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81	2,500	20	로	금천구 독산동 (독산동길)	관악구 신림동 (신림로)	별도조서 참조	금천구, 관악구	20m	연속부여	문성로	옛 이름인 문성골 명칭 인용
82	1,800	20	로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앞)	동대문구 이문동 (회기역)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동대문구	20m	연속부여	회기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50호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 및 공람,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및 공람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510,385.9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서울의 국제업무 기능을 담당할 부도심으로 육성하여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본 사업대상지는 용산 철도정비창 이전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로서, 동 도시개발사업은 용산이 지니고 있는 용산공원, 한강 등의 대규모 시민휴식공간과 철도, 지하철의 편리한 대중교통 등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서울 발전의 선도적 역할 및 창조적인 도시를 실현하고자 함.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사업시행예정자 :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사업시행예정자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 제안자 : 한국철도공사(제안자 사무소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93-74)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가. 사업시행기간 : 2010년 4월 ~ 2016년 12월(예정)

나.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510,385.9	100.0	
복합용지	64,547.8	12.6	공동주택 + 상업시설
일반상업지역	46,722.0	9.1	
준주거지역	17,825.8	3.5	
상업용지	239,751.6	47.0	
중심상업지역	48,993.7	9.6	
일반상업지역	190,757.9	37.4	
도시기반시설용지	206,086.5	40.4 (40.0)	
공원	38,127.8	7.5	어린이공원 포함 9,096.1㎡
녹지	10,332.6	2.0	
문화시설	16,815.3	3.3	
학교시설	12,001.2	2.4	
공공청사	2,516.0	0.5	
철도시설	3,207.5	0.6	
주차장	-	-	소공원1내 중복결정 4,117.2㎡
도로	123,086.1	24.1	
유수지 (저 류 시 설)	-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3,124.2㎡

※ ()는 철도시설을 제외한 기반시설 확보 비율임

나. 기반시설계획

1) 교통시설

가) 도 로

□ 주간선도로

- 강변북로(이촌동길)와 동서관통도로를 사업구역의 주간선도로 기능 부여
- 주변지역과의 연계강화 및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강변북로 선형변경 및 입체화, 동서관통도로 신설 및 입체화

- 보조간선도로
 - 주변지역과의 유기적 연계 및 사업구역내 각 시설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간선도로인 강변북로(이촌동길)와 동서관통도로를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 계획
- 집산도로
 - 보조간선도로의 교통효용 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업무, 상업시설 등의 진·출입과 이동성,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동선체계 구축
- 국지도로
 - 사업구역 남동측 새남터성지 및 한강으로의 접근을 위해 국지도로 계획
- 나) 주차장
 - 상업·업무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외주차장 계획
- 2) 공간시설
 - 근린공원·소공원
 - 한강과의 연계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근린공원 및 소공원 계획
 - 근린공원 및 주변 업무시설 및 문화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계획 수립
 - 어린이공원
 - 복합용지 주변에 구역내 상주인구를 위한 어린이공원 계획
 - 녹지
 - 새남터성지(존치시설)와 기능간 상충조정 및 사업구역 경계부 주변지역과 연계
- 3) 유통 및 공급시설
 - 가) 수도공급설비
 - 상수도 공급계획
 - 목표연도 계획급수량($26,370\text{m}^3/\text{일}$)을 추정하여 서울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결과 독도정수장에서 용수공급 가능
 - 독도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부지 남측 송수관로(D1650mm)에서 분기되어진 D900mm관을 통해 사업부지로 용수공급
 - 나) 전기공급설비
 - 전력 공급계획
 - 구역내 전력수요량($150,550,512\text{W}$)을 추정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결과 전력공급 가능
 - 다) 가스공급설비
 - 가스 공급계획
 - 구역내 가스수요량($53,884,849\text{Nm}^3/\text{년}$)을 추정하여 서울도시가스(주)와 협의한 결과 가스공급 가능
- 4) 공공·문화 체육시설
 - 가) 학교
 -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학교 신설

은 필요 없음.

- 사업구역내 업무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외국인학교 1개소 계획

나) 공공청사

- 기존 이촌동주민자치센터, 글로벌지원센터 등을 수용하기위해 공공청사 1개소 계획
- 사업구역의 서측 용호로와 연계되는 진출입부분에 공공청사 용지를 계획하여 행정 및 민원 서비스 제공

다) 문화시설

- 사업구역내 적정장소에 문화시설을 계획하여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위상 제고 및 공공성 확대
-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한 광역 문화벨트 구현
- 서울의 문화관광도시 구현에 기여
- 각각의 문화시설은 인접한 공원·녹지, 상업시설 등과 연계하여 벨트를 형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

5) 방재시설

□ 우수지(저류시설)

- 사업시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우수가 한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사업구역 남측에 저류시설 계획
- 상부공간은 공원으로 계획하여 토지이용 효율 증대

6) 환경기초시설

□ 오수처리계획

- 목표연도 오수발생량(25,920m³/일)을 추정하여 서울시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결과 한강변에 매설된 차집관로에서 처리 가능
-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한강변에 매설된 차집관로(2.3m×2.3m)를 이용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최종처리

□ 우수처리계획

- 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자연유하식으로 처리
- 계획도로 및 구역 중앙의 근린공원을 이용 구역 하단부의 우수지에 우수를 모아 방출량을 조절하여 한강에 방류

7.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사 업 명			사업량	비 고
도로	1	강변북로 확장(성산대교~반포대교) 및 지역간 연결도로 신설	L=11.60km	
	2	동서방향 연결도로 신설(6차로)	L=0.37km	
	3	동서방향 연결도로 신설(6차로)	L=0.35km	
	4	남북방향 연결도로 신설(6차로)	L=0.92km	

사 업 명			사업량	비 고
도로	5	용산역 전면도로 신설(4~6차로)	L=1.46km	
	6	백범로 확장(4~6차로)(삼각지고가차도 지하화)	L=0.70km	
	7-1	한강로~청파로 연결성 제고(갈월가도교 확장)	L=0.15km	
	7-2	한강로~청파로 연결성 제고(갈월동 지하차도 확장)	L=0.09km	
기타	8	철도데크(Deck) 조성	57,100㎡	

※ 세부사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에 따름

8.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본항(8.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중 아래의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를 제외한 모든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305,900	증) 52,863	3,358,763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중구 봉래동~ 용산구 한강로 일대	3,358,763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확장(서부이촌동 포함)에 따른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나)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㉔	용산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442,575	증) 67,810.9	510,385.9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원	510,385.9	·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위상정립 및 국내외 세계를 잇는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을 결정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변경

※ 도시개발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결정된 것으로 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10,385.9	-	510,385.9	100.0	
주거 지역	소 계	510,278.5	감)	430,911.0	79,367.5	15.5
	제1종일반	1,871.8	감)	1,871.8	-	-
	제2종일반 (7층이하)	10,309.5	감)	10,309.5	-	-
	제2종일반	59,688.6	감)	59,688.6	-	-
	제3종일반	438,408.6	감)	393,988.1	44,420.5	8.7
	준 주 거	-	증)	34,947.0	34,947.0	6.8
상업 지역	소 계	107.4	증)	430,911.0	431,018.4	84.5
	일반상업	107.4	증)	376,953.5	377,060.9	73.9
	중심상업	-	증)	53,957.5	53,957.5	10.6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1	이촌동 206-1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871.8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2	이촌동 398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347.0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3	이촌동 397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준주거지역	6,044.1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4	이촌동 171-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일반상업지역	918.4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5	이촌동 206-3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6,601.5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구분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6	이촌동 203-29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9,646.1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7	이촌동 210-1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23,441.0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8	이촌동 422, 한강로3가 40-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2,600.2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9	이촌동 395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9,256.8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복합용지 계획으로 주거지역 용도 지정
10	이촌동 211-1, 한강로3가 40-1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352,594.1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11	한강로3가 40-1006 일원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53,957.5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중심상업지역 용도 지정
12	한강로3가 40-1008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07.4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용도 지정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미관지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⑤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원효교~신계동42	15,120 (3,382)	630 (168)	양측12	서고제618 (85.9.19)	용호로
변경	⑤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원효교~신계동42	11,738 (0)	462 (0)	양측12	-	구역내 폐지
기정	⑥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청암동(구계) ~이촌동 401	20,069 (15,214)	1,675 (1,270)	12	서고제194 (84.04.17)	
변경	⑥	미관 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이촌동 198-1 ~이촌동 401	4,855 (0)	405 (0)	12	-	구역내 폐지

※ ()는 사업구역내 면적, 연장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⑤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 일부구간 폐지 - 면적 3,382㎡ 감소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중심지미관지구 폐지
⑥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 일부구간 폐지 - 면적 15,214㎡ 감소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역사문화미관지구 폐지

2) 아파트지구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아파트지구	이촌지구	이촌2동 일대	98,270.6 (53,360.1)	-	
변경	①	아파트지구	이촌지구	이촌2동 일대	44,910.5 (0)	-	구역내 폐지

※ ()는 사업구역내 면적임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아파트지구	이촌지구	· 일부구간 폐지 - 면적 53,360.1㎡ 감소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구역내 아 파트지구 폐지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총괄조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폭원 (m)	연장 (m)	면적 (㎡)	노선 수	폭원 (m)	연장 (m)	면적 (㎡)	노선 수	폭원 (m)	연장 (m)	면적 (㎡)
합계	13	4,870	123,086.1	3	-	1,252	26,271.0	6	-	2,243	51,583.1	4	-	1,375	45,232.0
광로	2	1,136	40,660.3	-	-	-	-	-	-	-	-	2	40	1,136	40,660.3
대로	5	1,605	44,872.2	-	-	-	-	3	30	1,366	40,300.5	2	25	239	4,571.7
중로	5	1,967	36,085.7	3	20	1,252	26,271.0	2	15	715	9,814.7	-	-	-	-
소로	1	162	1,467.9	-	-	-	-	1	8~10	162	1,467.9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광로	3	A	40	주간선 도로	686 (686)	한강로3가 40-1029	이촌동 211-3	일반도로	-	이촌동길
신설	광로	3	B	40	주간선 도로	450 (450)	한강로3가 40-112	한강로3가 40-1029	일반도로	-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 도로	184 (68)	원효로3가 (원효로)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서고제229호 (01.7.7)	국제업무지 구서측도로
변경	대로	2	1	30	주간선 도로	184 (68)	원효로3가 (원효로)	한강로3가 40-1028	일반도로	-	선형변경
신설	대로	2	A	30	주간선 도로	1,140 (1,140)	한강로3가 40-961	이촌동 211-4	일반도로	-	
신설	대로	2	B	30	주간선 도로	158 (158)	한강로3가 40-1008	한강로3가 40-1007	일반도로	-	
기정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135 (75)	한강로3가 173-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서고제229호 (01.7.7)	
변경	대로	3	2	25	보조간선 도로	135 (75)	한강로3가 173-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	선형변경
신설	대로	3	A	25	보조간선 도로	164 (164)	한강로3가 40-1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60	20	보조간선 도로	1,338 (740)	한강교 북단	원효로4가	일반도로	내고23호 (52.3.25)	이촌동길
변경	중로	1	160	20	보조간선 도로	598 (0)	한강교 북단	한강로3가 40-973	일반도로	-	구역내 폐지
신설	중로	1	A	20	집산도로	489 (489)	한강로3가 40-1028	이촌동 1-13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B	20	집산도로	469 (469)	한강로3가 40-1029	한강로3가 40-1029	일반도로	-	
신설	중로	1	C	20	집산도로	294 (294)	한강로3가 40-112	한강로3가 40-2	일반도로	-	
폐지	중로	2	3	18	주간선 도로	172 (172)	이촌동 (중1-160)	이촌동 207-3	일반도로	서고제229호 (01.7.7)	
신설	중로	2	A	15	집산도로	323 (323)	한강로3가 40-1034	한강로3가 40-1	일반도로	-	
신설	중로	2	B	15	집산도로	392 (392)	이촌동 434	이촌동 199-2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1	1	10~12	국지도로	513 (513)	이촌동 (소2-1)	이촌동 (소2-5)	일반도로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동 아파트 지구
폐지	소로	1	2	10	국지도로	63 (63)	이촌동 171-1	이촌동 (소1-1)	일반도로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동 아파트 지구
신설	소로	2	A	8~10	국지도로	162 (162)	이촌동 171-1	이촌동 171-1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226 (226)	이촌동 171-1	이촌동 (소1-1)	일반도로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동 아파트 지구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89 (89)	이촌동 171-1	이촌동 171-1	일반도로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동 아파트 지구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46 (46)	이촌동 171-1	이촌동 (소1-1)	일반도로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동 아파트 지구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16 (16)	이촌동 171-1	이촌동 (소1-1)	일반도로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동 아파트 지구 중복오류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89 (89)	이촌동 212-13	이촌동 212-2	일반도로	서고제229호 (01.7.7)	
폐지	소로	2	5	8	국지도로	158 (158)	이촌동 171-1	이촌동 171-1	일반도로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동 아파트 지구
폐지	소로	3	58	4	국지도로	48 (48)	이촌동 (중1-160)	이촌동 (소1-1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59	4	국지도로	70 (70)	이촌동 206-25	이촌동 (소2-32)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60	4	국지도로	79 (79)	이촌동 (소2-32)	이촌동 (소1-1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61	4	국지도로	111 (111)	이촌동 (소2-32)	이촌동 (소2-33)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62	4	국지도로	124 (124)	이촌동 (소2-33)	이촌동 (소2-34)	일반도로	-	

※ ()는 구역내 편입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신설	-	광로3-A	· 도로신설 - 폭원 40m, 연장 686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신설	-	광로3-B	· 도로신설 - 폭원 40m, 연장 450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변경	대로2-1	대로2-1	· 도로선형 변경 - 폭원 30m, 연장 184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선형 변경
신설	-	대로2-A	· 도로신설 - 폭원 30m, 연장 1,140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신설	-	대로2-B	· 도로신설 - 폭원 30m, 연장 158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변경	대로3-2	대로3-2	· 도로선형 변경 - 폭원 25m, 연장 135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선형 변경
신설	-	대로3-A	· 도로신설 - 폭원 25m, 연장 164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변경	중로1-160	중로1-160	· 도로연장 축소 - 폭원 20m - 연장축소(1,338m→ 598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연장 축소(구역내 폐지)
신설	-	중로1-A	· 도로신설 - 폭원 20m, 연장 489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신설	-	중로1-B	· 도로신설 - 폭원 20m, 연장 469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신설	-	중로1-C	· 도로신설 - 폭원 20m, 연장 294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폐지	중로2-3	-	· 도로폐지 - 폭원 18m, 연장 172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신설	-	중로2-A	· 도로신설 - 폭원 15m, 연장 323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신설	-	중로2-B	· 도로신설 - 폭원 15m, 연장 392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폐지	소로1-1	-	· 도로폐지 - 폭원 10~12m, 연장 513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1-2	-	· 도로폐지 - 폭원 10m, 연장 63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신설	-	소로2-A	· 도로신설 - 폭원 8~10m, 연장 162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신설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폐지	소로2-1	-	· 도로폐지 - 폭원 8m, 연장 226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2-2	-	· 도로폐지 - 폭원 8m, 연장 89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2-3	-	· 도로폐지 - 폭원 8m, 연장 46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2-4	-	· 도로폐지 - 폭원 8m, 연장 16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2-4	-	· 도로폐지 - 폭원 8m, 연장 89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2-5	-	· 도로폐지 - 폭원 8m, 연장 158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3-58	-	· 도로폐지 - 폭원 4m, 연장 48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3-59	-	· 도로폐지 - 폭원 4m, 연장 70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3-60	-	· 도로폐지 - 폭원 4m, 연장 79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3-61	-	· 도로폐지 - 폭원 4m, 연장 111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폐지	소로3-62	-	· 도로폐지 - 폭원 4m, 연장 124m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폐지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표시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1	주차장	노외주차장	한강로3가 40-1 일원	4,117.2	-	소원공1내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표시	시설의 세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노외주차장	· 주차장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 일원 - 면적 : 4,117.2㎡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차장시설 신설

2) 공간시설

가)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480	증)37,647.8	38,127.8	-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한강로3가 40-1029 일원	-	증)23,195.4	23,195.4	-	
신설	1	공원	소공원	한강로3가 40-1 일원	-	증) 5,836.3	5,836.3	-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이촌동 398	-	증) 7,496.1	7,496.1	-	
신설	2	공원	어린이공원	한강로3가 40-1008 일원	-	증) 1,600.0	1,600.0	-	
폐지	10	공원	어린이공원	이촌동 206-1	480	감) 480.0	-	서고제52호 (92.2.29)	새싹 어린이공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29 일원 - 면적 : 23,195.4㎡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근린공원 신설
1	소공원	· 소공원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 일원 - 면적 : 5,836.3㎡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소공원 신설
1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위치 : 이촌동 398 - 면적 : 7,496.1㎡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2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08 일원 - 면적 : 1,600.0㎡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신설
10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폐지 - 위치 : 이촌동 206-1 - 면적 : 480.0㎡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어린이공원 폐지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	-	-	-	10,332.6	-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이촌동 171-1 일원	362.1	-	
신설	2	녹지	경관녹지	이촌동 208-2 일원	919.3	-	
신설	3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40-1005 일원	2,148.7	-	
신설	4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40-1026 일원	3,356.2	-	
신설	5	녹지	경관녹지	한강로3가 40-1029 일원	2,372.6	-	
신설	1	녹지	연결녹지	이촌동 397 일원	1,173.7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위치 : 이촌동 171-1 일원 - 면적 : 362.1㎡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2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위치 : 이촌동 208-2 일원 - 면적 : 919.3㎡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3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05 일원 - 면적 : 2,148.7㎡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4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26 일원 - 면적 : 3,356.2㎡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5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29 일원 - 면적 : 2,372.6㎡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녹지 신설
1	연결녹지	· 연결녹지 신설 - 위치 : 이촌동 397 일원 - 면적 : 1,173.7㎡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연결녹지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996.7	감) 996.7	-	-	
폐지	5	공공공지	공공공지	이촌동 211-1 일원	637.8	감) 637.8	-	서고제423호 (05.12.29)	
폐지	6	공공공지	공공공지	이촌동 209-27 일원	358.9	감) 358.9	-	서고제423호 (05.12.29)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위치 : 이촌동 211-1 일원 - 면적 : 637.8㎡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
6	공공공지	· 공공공지 폐지 - 위치 : 이촌동 209-27 일원 - 면적 : 358.9㎡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

3)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 학 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학교	이촌동 422 일원	12,001.2	-	외국인학교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학교	· 학교 신설 - 위치 : 이촌동 422 일원 - 면적 : 12,001.2㎡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	-	-	1,088.9	증)1,427.1	2,516	-	
신설	1	공공청사	-	한강로3가 40-1030 일원	-	증)2,516.0	2,516.0	-	
폐지	2	공공청사	주민자치센터	이촌동 206-2	1,088.9	감)1,088.9	-	서고제423호 (05.12.29)	이촌제2동 주민자치센터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한강로3가 40-1030 일원 - 면적 : 2,516.0㎡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청사 신설
2	공공청사	· 공공청사 폐지 - 위치 : 이촌동 206-2 - 면적 : 1,088.9㎡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공청사 폐지

4) 방재시설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1	유수지	저류시설	이촌동 206-6 일원	3,124.2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 유수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유수지	·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 위치 : 이촌동 206-6 일원 - 면적 : 3,124.2㎡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유수지(저류시설) 신설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구역지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지형도면 : 별첨 (공람장소에 비치, S=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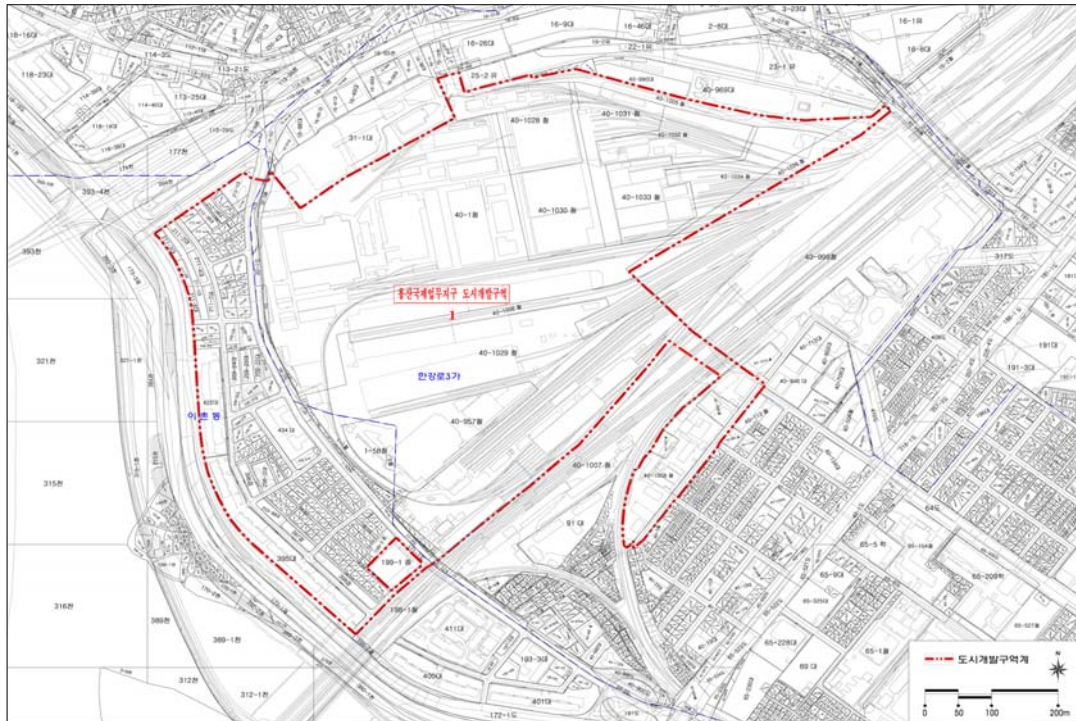
11. 관계도면 : 첨부

- 첨부된 관계도면 등(그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 관계도서(서류)의 공람방법 : 시민의 공람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공람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6361-3544),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710-3385)
- 공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간

◆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결정도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평면도



◆ 용산국제업무지구 용도지역계획도



◆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의 기반시설계획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80호

마을버스 노선변경 운행계통기준 공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 노선변경 운행계통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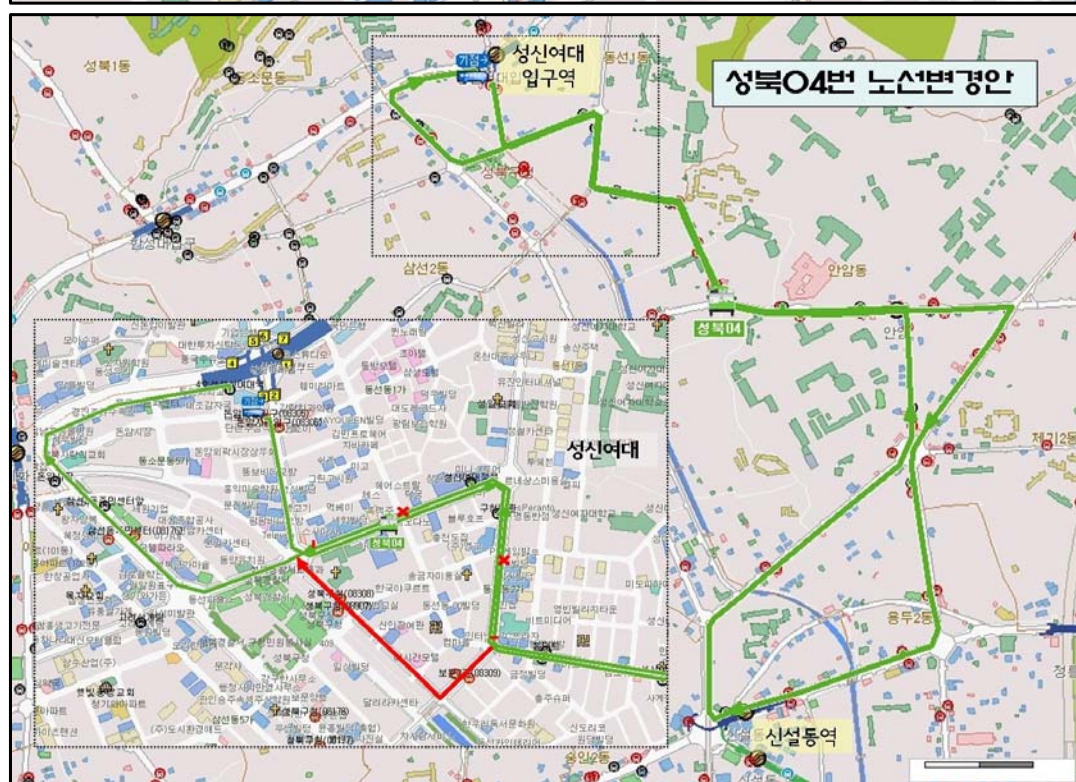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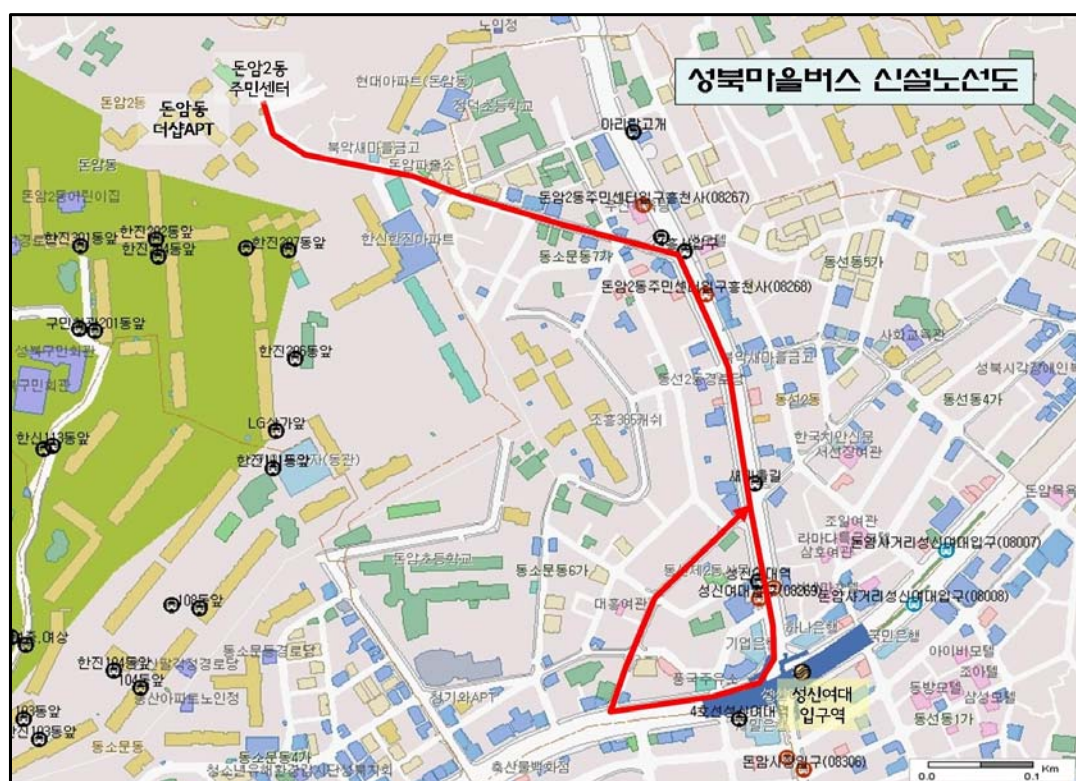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1. 대상 : 마을버스 노선 운행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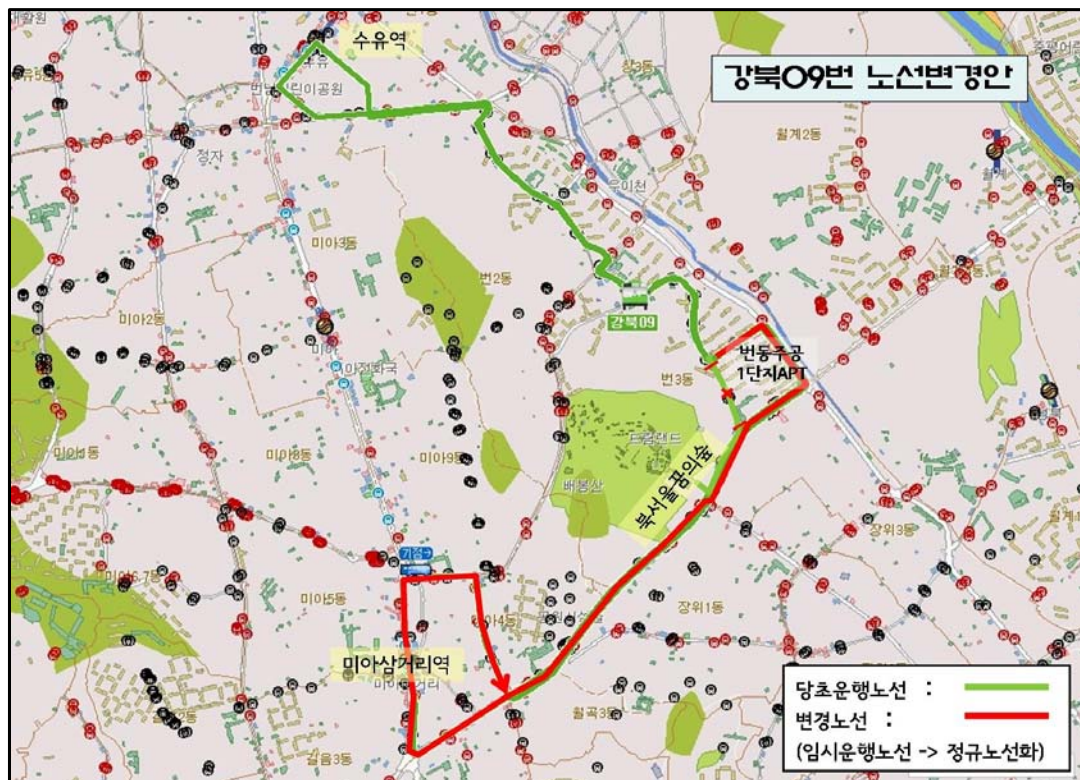
노선번호	업체명	구 분	기·종점	운행대수	배차간격	비 고
성북(미정)	미정	노선신설	돈암2동주민센터~성신여대입구역	2대	10~13분	대중교통 이용불편 문제해소
성북04	안암교통	노선변경	성신여대입구역~신설동역	7대	5분	대학가주변 시범가로 환경개선공사(일방통행)에 따른 노선변경
성북10	고려승객	노선변경	미아삼거리역~장위중학교	6대	6분	대학가주변 시범가로 환경개선공사(일방통행)에 따른 노선변경
성북14	석계운수	노선변경	북서울꿈의숲~석계역	5대	6분	북서울꿈의숲 공사에 따른 임시운행노선의 정규노선화
강북09	복지운수	노선변경	미아삼거리역~수유역	7대	5분	북서울꿈의숲 공사에 따른 임시운행노선의 정규노선화
도봉09	진양운수	노선연장	창동역~도봉산역	14대	5~7분	대중교통 이용불편 문제해소

2. 마을버스운행노선의 운행계통 중 운행대수와 운행횟수, 배차간격에 대하여 등록관청은 지역교통수요에 비해 운행차량이 과다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음

3. 노선의 등록현황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담당관(전화:6360-4560) 및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교통행정과(전화:920-3488/901-5913/2289-1955)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 노선도는 서울시 대중교통 홈페이지(<http://bus.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82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대상 변경을 위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범위 변경 계획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범위 변경안

현재 보호구역				보호구역 변경안			
지번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지번	지적	지정면적	소유자
1필지		6,009.7㎡		1필지		8,930.4㎡	
관악구 남현동 산57-48	40,233㎡	6,009.7㎡	전주이씨 우곡공파 종중	관악구 남현동 산57-48	40,233㎡	8,930.4㎡	전주이씨 우곡공파 종중

※ <별첨>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변경계획 도면 참조

- 변경 추진사유 : 펜스라인으로 설정된 기존 보호구역선을 문화재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변경 조정하여, 보다 넓은 완충지역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이경직 묘역과 신도비를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함

이경직 묘역과 신도비 보호를 위하여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대상 토지
 - 문화재보호법 제75조(준용규정) 제2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6조(수리 등)·제20조(허가사항)·제22조(행정명령) 및 제23조(신고사항) 등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지역
 - 효민공 이경직 묘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6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 상의 '일반묘역'이므로 동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외곽 50m 이내 지역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등)에 의거, 같은 조례 제46조 제2항부터 제4항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

3.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 ① 전화 : (02) 2171-2594
 - ② 팩스 : (02) 2171-2589

- ③ 우편 :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3층
- 관악구 문화체육과
 - ① 전화 : (02) 880-3496
 - ② 팩스 : (02) 880-3799
 - ③ 우편 : (151-70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462(봉천동 1570-1)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금번 변경 계획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 비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또는 관악구 문화체육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변경계획 도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97호

경제진흥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제1항제2호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 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 2010-28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4월 12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이오코리아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수동 20번지 드림팰리스 4층
5. 대표자 : 이 광 석
6. 설립목적 : 본 법인은 꾸준히 배우고 발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미래를 이끌어갈 기업가들만의 회원단체입니다. 본 법인은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을 미래의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들 상호간의 배움의 장을 돈독히 하는 촉매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더 큰 사업의 성공과 풍요로운 개인의 삶을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799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지식경제부장관및 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허가번호 : 제2010 - 29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4월13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패션리폼협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490 홍익사랑 1층
5. 대표자 : 함 영 길
6. 설립목적 : 국내 패션리폼 업계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패션리폼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인적 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00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지식경제부장관및 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 제2010 - 30호
2. 허가년월일 : 2010년 4월13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한국머신소잉협회』
4.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8-5 2층
5. 대표자 : 정 용 효
6. 설립목적 : 머신 소잉 분야의 종사자들의 자율정신을 바탕으로 소잉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고, 머신소잉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소잉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04호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주택재건축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제2006-95호(2006.3.23)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주거환경개선부문/주택재건축부문)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1. 공람기간 : 2010년 4월 22일 ~ 2010년 5월 6일
2. 공람장소
 - 가.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235,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
 - 나. 종로구청 주택과(☎731-1401)외 20개 구청

3.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계			14개소		66.8						
1	성 동	A	하왕십리	987	5.5	210	-	50%	3	전면	
2	성 동	A	금호동3가	574	6.6	190	12층이하	60%	3	전면	
3	성 동	A	마장동	457	5.8	210	-	50%	3	전면	
4	광 진	C	군자동	127-1	10.7	210	-	50%	3	전면	
5	성 북	B	등소문동7가	12	1.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6	성 북	A	상월곡동	24	1.5	170	7층이하	60%	3	전면	
7	성 북	B	석관동	285	8.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8	성 북	B	하월곡동	90-1557	3.0	190	12층이하	60%	3	전면	
9	양 천	A	신월동	77-1	3.7	190	12층이하	60%	3	전면	
10	구 로	A	가리봉동	2-92	8.1	210	-	50%	3	전면	
11	구 로	A	궁동	192	2.3	170	7층이하	60%	3	전면	
12	영등포	A	신길7동	1017	1.4	190	12층이하	60%	3	전면	
13	관 악	A	신림동	1464	2.5	210	-	50%	3	전면	
14	관 악	A	신림동	1482	6.7	210	-	50%	3	전면	

1) 신규지정 : 성동구 하왕십리 987번지 등 14개소 66.8ha

2) 변경지정(해제 포함) : 동대문구 제기동 620번지 등 4개소 10.9ha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	동대문	C	제기동	620	2.7	190	12층이하	60%	3	전면	
	해제										
2	성 북	B	성북2동	29-51	1.9	170	5층이하	60%	2	전면(수복)	자연경관지구
	변경없음				3.1	변경없음					
3	성 북	A	안암동2가	59	1.2	190	12층이하	60%	3	전면	
	해제										
4	강 북	A	미아동	6,7	1.1	210	-	50%	3	전면	
	변경없음				2.1	변경없음					

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 신규지정 : 종로구 충신동 6번지 등 33개소 110.8ha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총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계		33개소		110.8						
1	종로구	충신동	6	4.3	170	60	7	2	단독	
2	용 산	용문동	8	9.5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3	용산구	원효로2가	1							
4	용산구	원효로3가	1	3.9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5	동대문	휘경동	43-8	4.9	170	60	3	2	단독	
6	종랑구	신내동	493	3.4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폭 12m 도로
7	성북구	돈암동	538-48	1.8	170	60	5	2	단독	
8	강북구	미아동	3-111	1.1	170	60	5	2	단독	
9	강북구	미아동	258-601	13.1	170	60	5	2	단독	폭 12m 도로
10	도봉구	창동	474	1.9	170	60	7	2	단독	
11	은평구	불광동	23	1.4	170	60	5	2	단독	
12	은평구	신사동	200	4.2	190	60	7	2	단독	
13	은평구	갈현동	12-248	3.2	170	60	5	2	단독	
14	서대문	홍제동	266	2.9	190	60	12	2	단독	
15	서대문	연희동	706	7	190	60	7	2	단독	
16	양천구	신월동	460-5	2.8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폭 12m 도로
17	구로구	오류동	19	1.5	190	60	7	2	단독	
18	구로구	구로동	142-66	4.6	190	60	12	2	단독	폭 12m 도로
19	구로구	구로동	545	2.0	190	60	12	2	단독	
20	구로구	오류동	156-15	2.3	170	60	7	2	공동	현대타운
21	영등포	신길1동	61-13	4.8	190	60	평균층수15	2	단독	
22	영등포	대림3동	786	1.9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23	동작구	사당동	303	3.7	190	60	7	2	단독	
24	서초구	방배동	975-35	3.1	170	60	7	2	단독	폭 15m 도로
25	강남구	논현동	246	1.2	170	60	5	2	단독	
26	강남구	대치동	963	3.1	170	60	7	2	단독	
27	강남구	대치동	977	1.5	170	60	7	2	단독	
28	강남구	대치동	964	1.5	170	60	7	2	단독	
29	송파구	문정동	136	6.4	190	60	7	2	단독	
30	송파구	오금동	143	1.2	190	60	7	2	단독	폭 12m 도로
31	송파구	송파동	100	2.5	190	60	7	2	단독	
32	강동구	암사동	458	2.8	190	60	12	2	단독	
33	강동구	암사동	514	1.3	190	60	12	2	단독	

2) 변경지정(해제 포함) : 용산구 용문동 38-148 등 12개소 32.6ha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	용 산	용문동	38-148	1.8	190	60	7	2	단독	
2	중랑구	목동	237-45	1.5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3	중랑구	목동	238-112	1.1	190	50	평균층수15	1	단독	
4	중랑구	중화동	131-35	1.8	190	60	7	1	단독	
5	중랑구	중화동	158-11	1.0	190	60	7	1	단독	
6	성북구	상월곡동	77-1	2.1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7	서대문	북가좌동	330-6	1.0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8	구로구	고척동	134-93	6.2	평균계획 용적률 (190%,210%)	60	평균층수10	1	단독	
9	구로구	고척동	57-9	1.2	190	60	7	2	공동	산업인 APT
10	구로구	구로동	111-2	1.2	210	50	-	2	단독	
11	동작구	사당동	41-17	2.3	190	60	7	2	단독	
12	서초구	방배동	856-13	2.2	190	60	7	1	단독	폭 12m, 15m 도로

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1) 기본개요

1-1) 장기전세주택의 개념

저소득, 중산층 등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59㎡, 84㎡, 114㎡)을 주변 전세가격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0년 동안 전세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

1-2)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목적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을 통한 부동산 시장 가격안정 도모

1-3) 역세권 공급의 추진배경

주택건설이 가능한 시유지 등 국공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만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입주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반시설 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내 정비예정구역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정의 완화를 통해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공급하여 공공분야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4) 세부운영방안

사업의 대상,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에서의 공급방안

2-1) 사업가능대상지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안의 정비예정구역으로 하며, 역세권의 반경에 따라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으로 구분한다. 1차 역세권의 사업대상지는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250m 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의 사업대상지는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한다.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와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역세권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 난개발을 방지한다.

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적용가능 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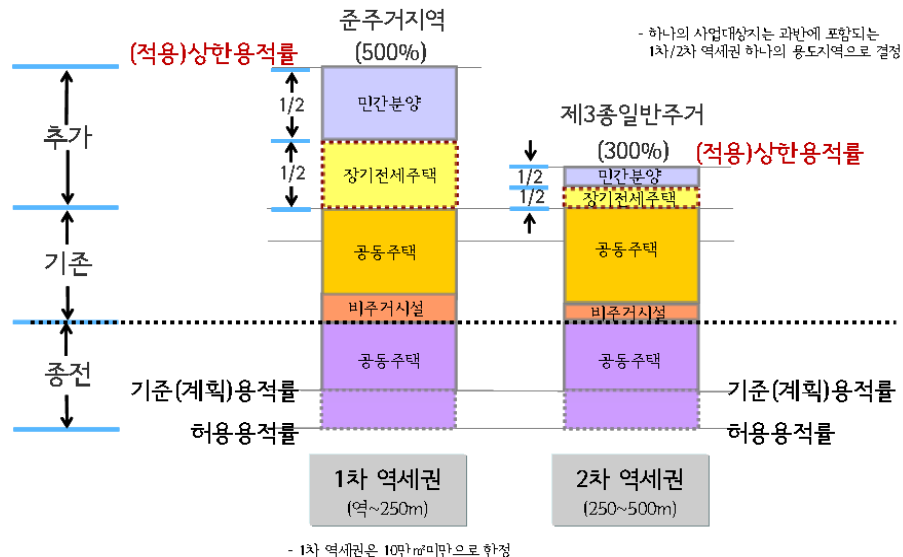
2-2) 공급방안 및 용적률 적용체계

사업가능대상지에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1차 역세권 및 2차 역세권의 반경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체계를 적용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세분조정하고, 조례와 법령간 용적률 차이를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완화된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의 용적률을 뺀 50/100이상의 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적용체계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91.5.11. 이후 준주거지역 포함)
변경 후 용도지역	1차역세권	준주거지역
	2차역세권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계획)용적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1차역세권	500
	2차역세권	300
정비계획용적률	1차역세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2차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용적률	1차역세권	[(적용)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의 50/100 이상으로 한다.
	2차역세권	



4. 따로붙임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안)
5. 의견제출
본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안)

제정 2010. . .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 호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 1-1-1. 기반시설 용량 및 경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전세주택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 1-2-1.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
- 1-2-2. 도정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3-1. “장기전세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
- 1-3-2. “역세권”이란 보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모든 개통된 역(사용승인시점에 개통 예정인 역을 포함한다)의 중심(각각 승강장 전체의 중심점 한 곳)으로부터 반경 500m이내의 일단의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한다.
- 1-3-3.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정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 1-3-4.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정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 1-3-5. “정비계획”이란 도정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말한다.
- 1-3-6. “사업대상지”란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 1-3-7. “권장기준”이란 의무기준 이외의 항목으로 장기전세주택 건설 비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3-8.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절 적용원칙

- 1-4-1. 장기전세주택의 건립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시 국제법령, 도정법령, 주택법령,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4-2.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자와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구청장(이하 “입안권자”라 한다)은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4-3.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며, 당해 정비계획의 설계방향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시 제시하여야 한다.
- 1-4-4. 입안권자는 장기전세주택의 건축계획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기준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정비계획 수립기준

제1절 사업대상지 개요

- 2-1-1.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안의 주거지역으로 하며,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 지형, 기반시설계획,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다.
- 2-1-2. 사업대상지는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으로 구분한다. 1차 역세권의 사업대상지는 역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250m이내의 범위로 하고, 2차 역세권의 사업대상지는 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m에서 500m이내의 범위로 한다.
- (1)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또는 2차 역세권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상이 1차 역세권 또는 2차 역세권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2)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과 2차 역세권에 걸치는 경우 과반이상이 포함되는 역세권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역세권 사업대상지의 범위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지형, 기반시설계획,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완화할 수 있다.
- 2-1-3.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에 과반이 포함된 경우 준주거지역을 전제로 검토하고, 2차 역세권에 과반이 포함된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전제로 검토한다. 다만, 1차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2차 역세권의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 또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2-1-4. 종전 택지개발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아파트지구 등 장기전세주택 사업과는 관계없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구역은 원칙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사

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장기전세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사업단위 규모

2-2-1. 합리적인 정비계획의 수립과 장기전세주택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차 역세권 준주거지
역의 경우 최대 사업대상지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단, 2차 역세권 제3종일반주거
지역의 경우 최대 사업대상지 면적 제한이 없다.

2-2-2. 토지의 효율적 이용, 지형, 기반시설계획, 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2-2-1.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절 용적률 적용 체계

2-3-1. 정비계획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용적률 체계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는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적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현재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91.5.11. 이후 준주거지역 포함)
변경 후 용도지역	1차역세권	준주거지역
	2차역세권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계획)용적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름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1차역세권	500
	2차역세권	300
정비계획용적률	1차역세권	허용용적률 + 기준(계획)용적률×1.3α
	2차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용적률	1차역세권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의 50/100 이상으로 한다.
	2차역세권	

* 법적상한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함.

* 정비계획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

- (1)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고,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한다.
하나의 사업대상지 안에서 현재 용도지역이 다를 경우 이를 가중평균하여 용적률을 적용한다.
- (2) 사업대상지의 일부나 전부가 제1종 내지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존치되어야 하
거나 준공업지역 또는 상업지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대상지의 일부나 전부를 사업대
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3-2.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일은 1991. 5.11.로 한다. 즉, 현재 용도지역이 준주거지
역인 경우에도 기준일 이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면 현재 적용시점에서 용도
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고 용적률을 적용한다.

제4절 용도지역 계획

2-4-1.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1) 1차 역세권내에 과반이상이 포함되는 사업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층이하)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 (2) 2차 역세권내에 과반이상이 포함되는 사업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2층이하)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 (3)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및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4) 하나의 사업대상지는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하나의 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분리하여 받는 경우에도 각각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절 공공시설 부담기준

2-5-1. 용도지역 상향(세분변경)시 순부담으로 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한 비율만큼 공공시설을 설치 제공하여야 한다.

- (1) 용도지역 1단계 상향(세분변경)시 : 15% 이상
- (2) 용도지역 2단계 상향(세분변경)시 : 20% 이상
- (3) 용도지역 3단계 상향(세분변경)시 : 25% 이상

2-5-2. 2-5-1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은 설치하여야 하며,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시설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시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추가 설치·제공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이 된다.

제6절 건축물의 비주거 비율

2-6-1. 1차 역세권의 준주거지역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결한 정비사업인 경우 주거지원시설의 확보와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비주거비율에 따라 주거이외의 용도를 지상층에 건립하도록 권장한다.

-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의 비주거 비율을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비주거 비율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2) 비주거 비율에 대한 토지는 별도의 획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3) 지상층 연면적의 90%미만으로 주거비율을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6-2. 2-6-1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시프트 정비사업 대상지 인근에 대형 할인점, 백화점, 재래시장 등 주변의 주거지원시설의 기존 분포현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주거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장기전세주택 건립 및 운영계획**제1절 규모별 건설비율**

3-1-1.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장기전세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은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1-2.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세대수는 다음과 같은 비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해양부)에 따른다. 이중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의 세대수는 제외)의 17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1-3. 정비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주택건설규모비율에 장기전세주택의 건립규모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절 사회혼합(Social mix)

3-2-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자 또는 입안권자는 동일 단지·건축물 안에 분양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함께 계획하는 경우 분양주택과 차별화된 구조와 동선체계로 하거나 공동이용시설 사용상의 불리 등으로 인한 차별 및 불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혼합(social mixing)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절 장기전세주택 지분 토지 등에 대한 조치

3-3-1. 장기전세주택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이 부속토지는 2-5-1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 비율 및 2-5-2에 의한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3-2.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하는 건축비로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절 시행일

4-1-1. 이 기준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4-1-2.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이후 적용한다.

제2절 다른 행정지침의 적용 배제

4-2-1. 이 기준에 따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서울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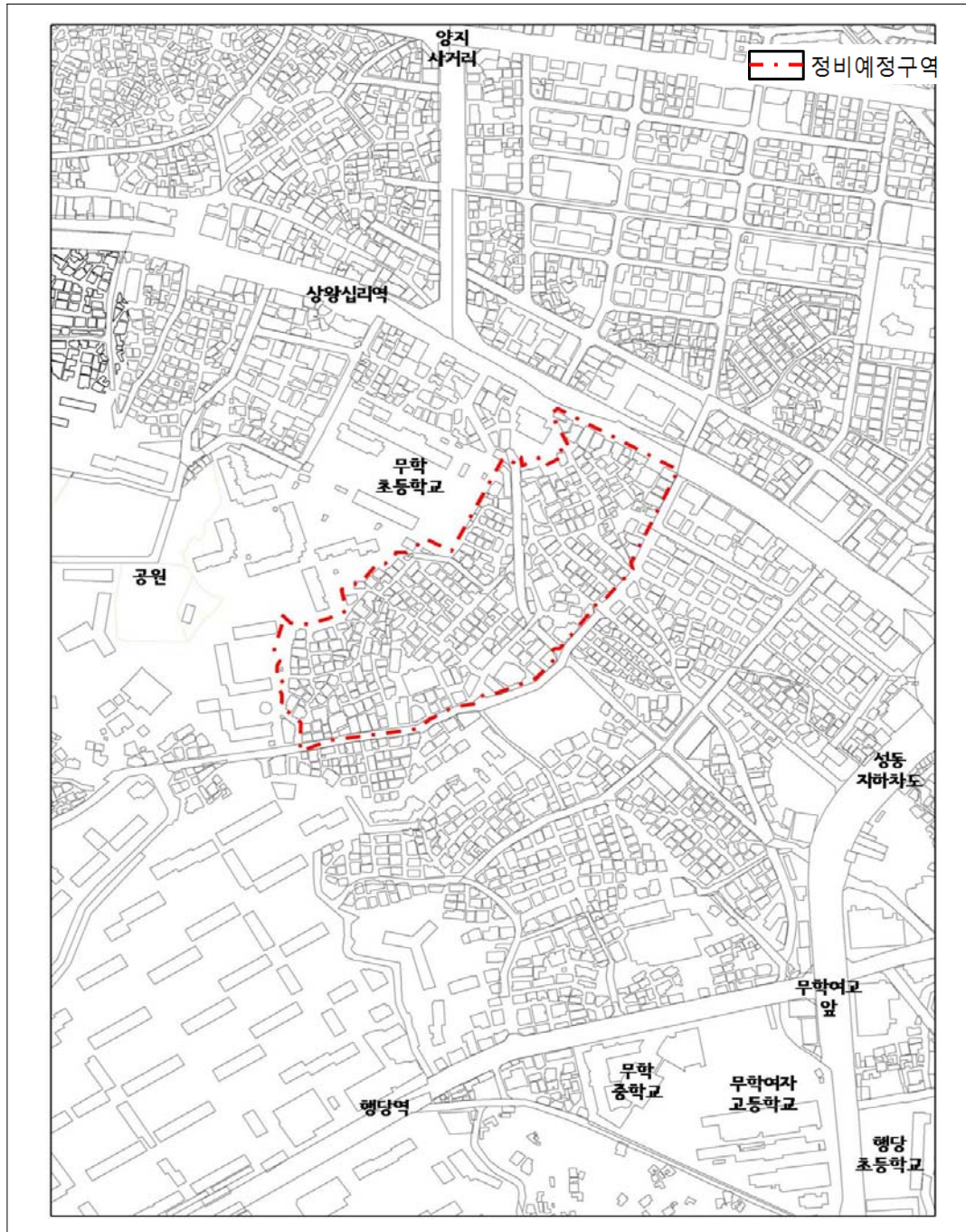
정비계획 수립기준 검토서				
□ 의무 및 선택 기준				
구		검 토 사 항	계획내용	적합 여부
정비계획 수립기준	1. 사업대상지 적합여부	1차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사업대상지 면적 100,000㎡ 이하		
	2.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	[법적상한용적률-정비계획용적률]의 50/100 이상		
	3. 용적률 체계 적합여부	기준(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4.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세분변경기준	1차역세권(역중심 반경 250m)의 용도지역		
		2차역세권(역중심 반경 250~500m)의 용도지역		
5. 공공시설부담률	15%, 20%, 25% 이상			
6. 비주거비율	지상층 연면적의 10%이상 지상설치(단, 오피스텔 제외)			
장기전세 주택건설 비율	7.전용건립규모 비율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건립		
수립기준에 검토에 대한 종합적 입안권자(자치구청장 등)의 검토의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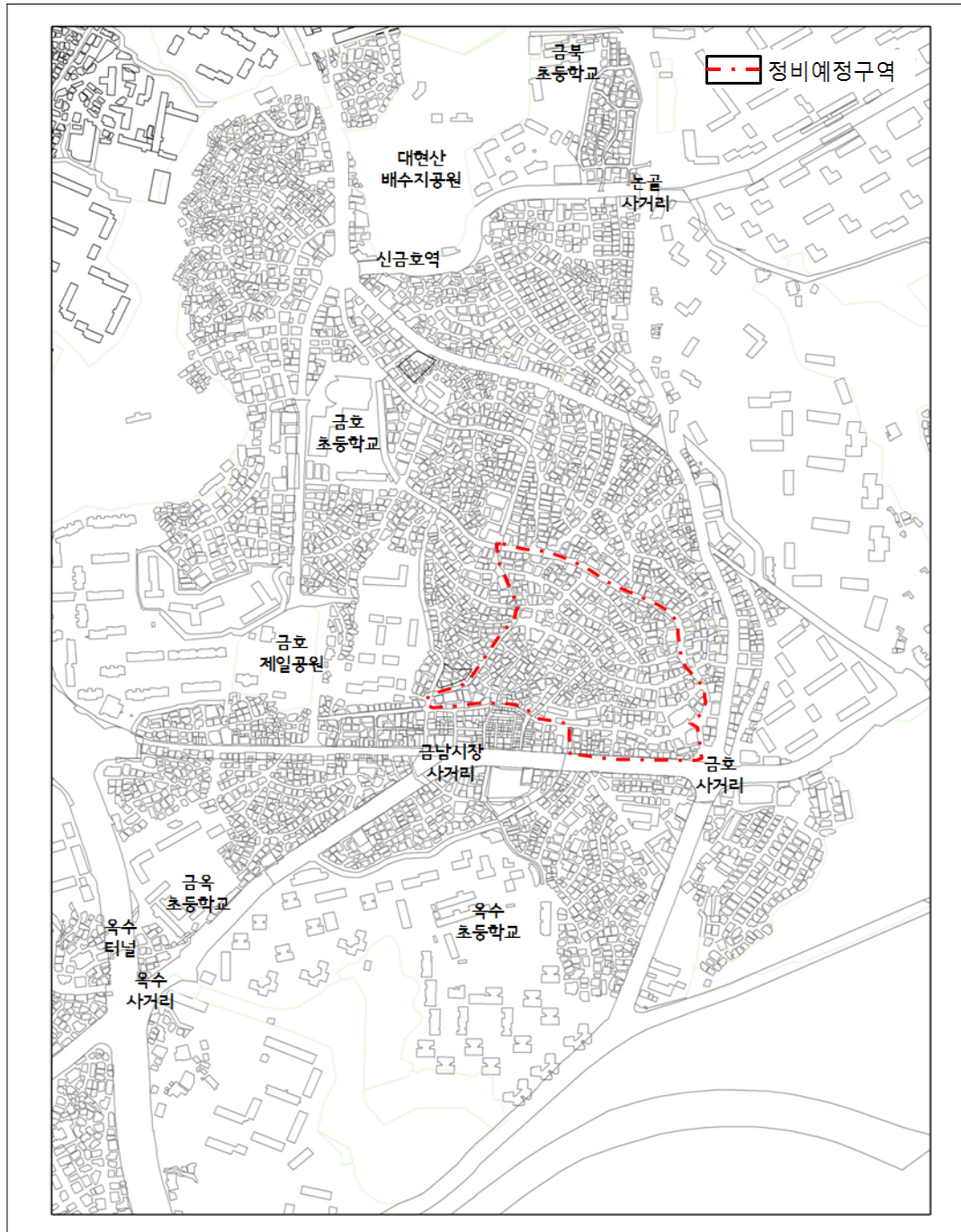
※ 작성기준

- 이 검토서는 입안권자가 작성한다.
- 정비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합여부 검토내용에 대해 실제 적용한 정비계획(또는 건축계획) 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작성한다.
- 적합여부는 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합'으로 부적합할 경우 '부적합'으로 표시한다.
-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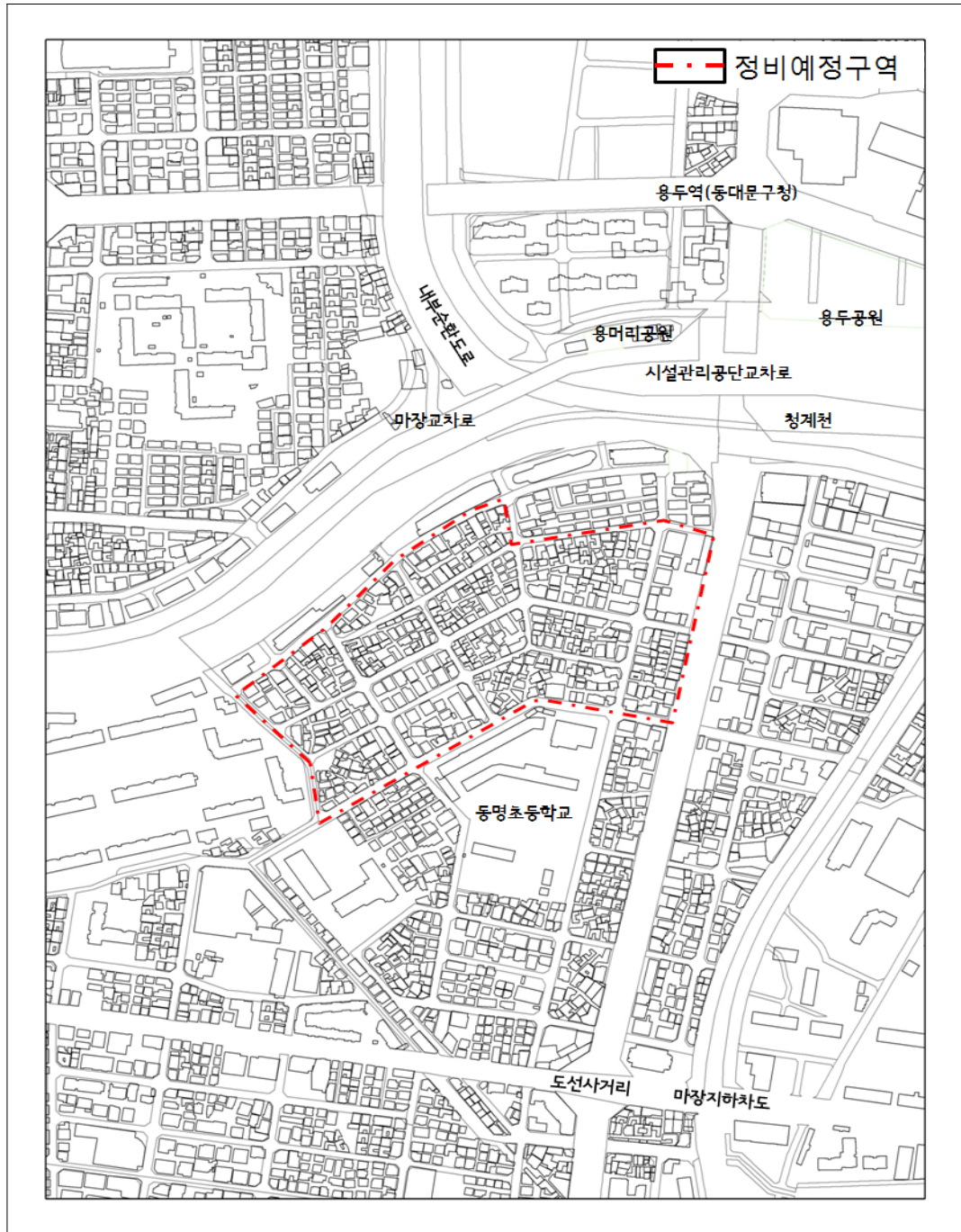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	성 동	A	하왕십리	987	5.5	210	-	5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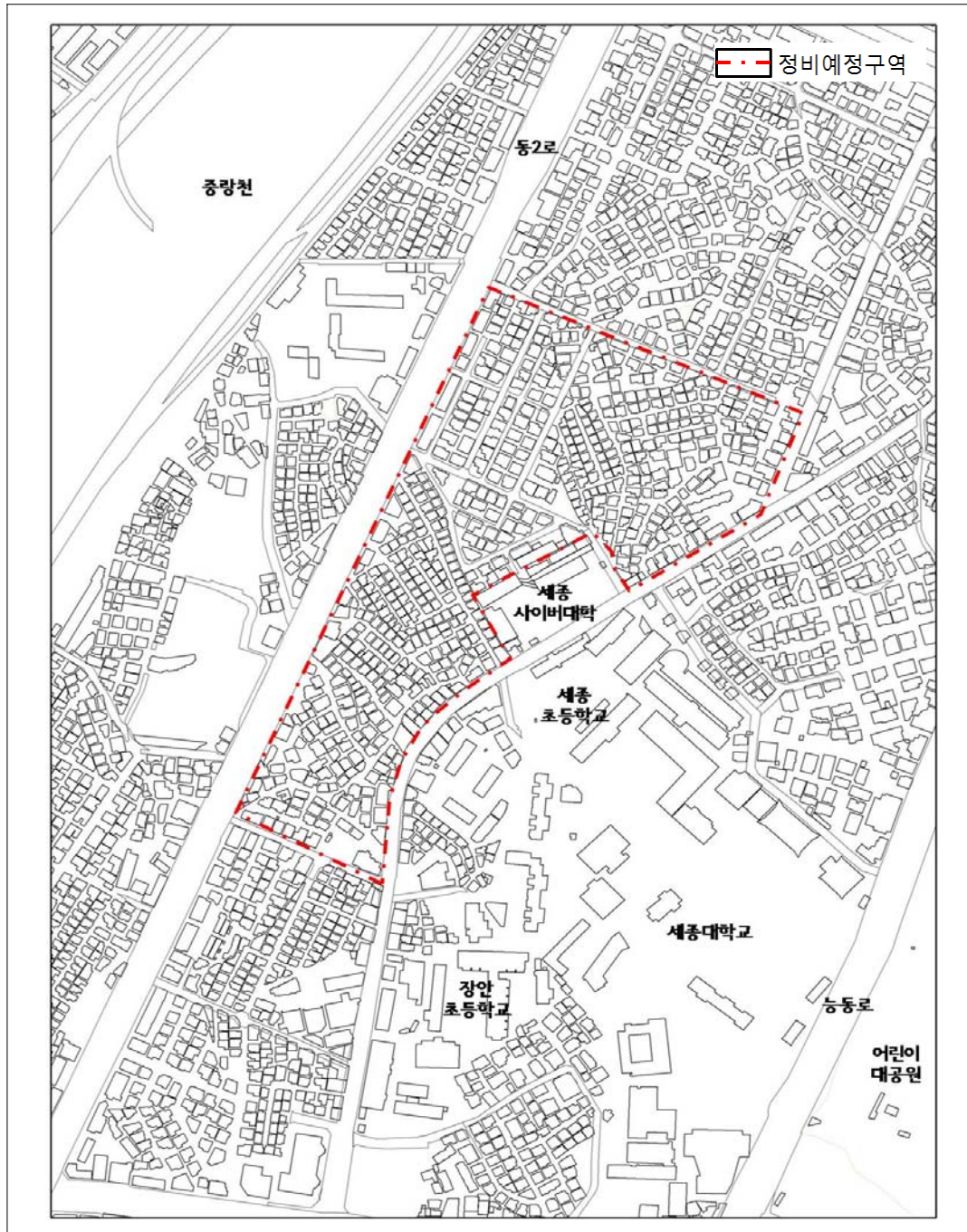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2	성 동	A	금호동 3가	574	6.6	190	12층 이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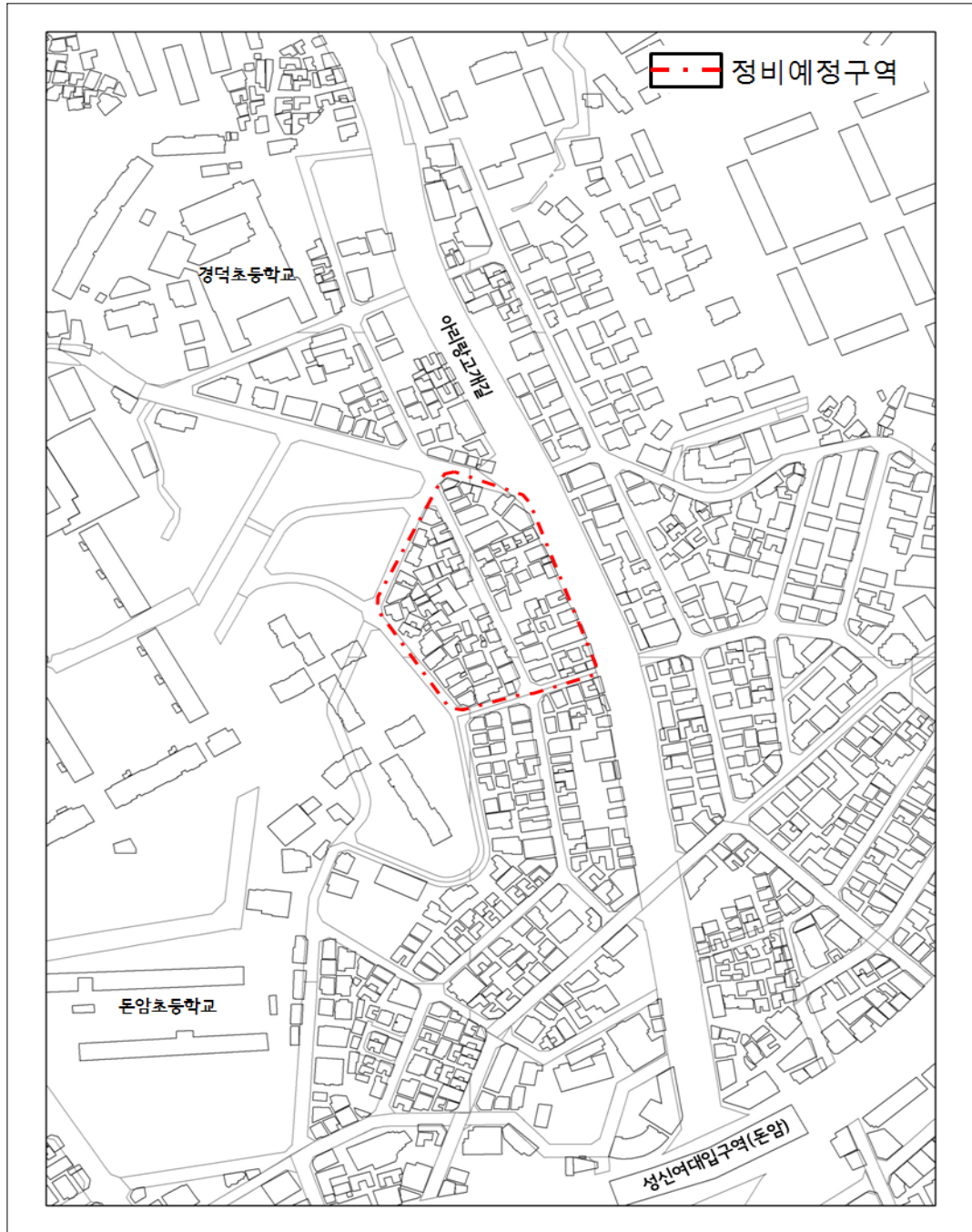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3	성 동	A	마장동	457	5.8	210	-	5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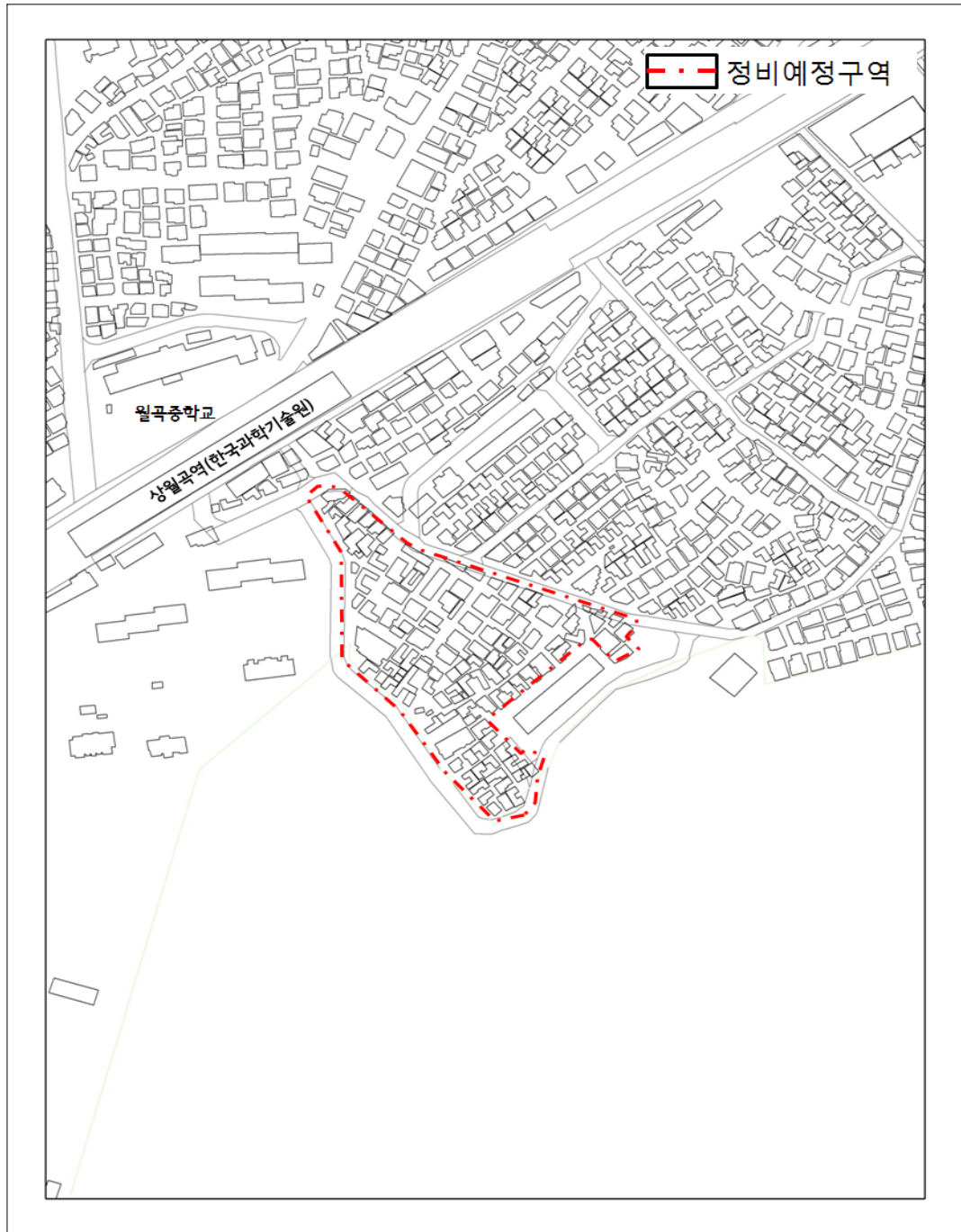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4	광 진	C	군자동	127-1	10.7	210	-	5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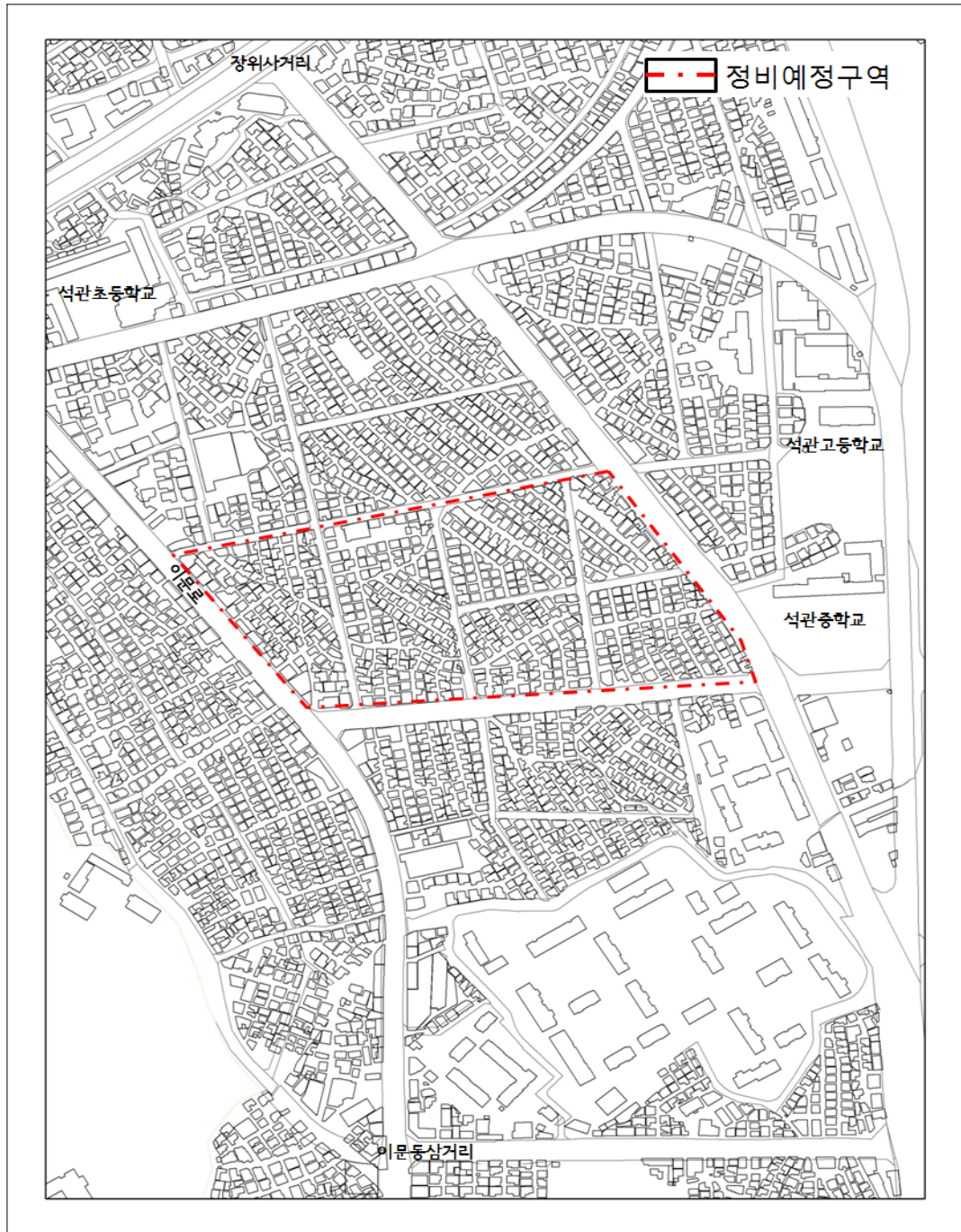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5	성 북	B	동소문 동7가	12	1.0	190	12층이 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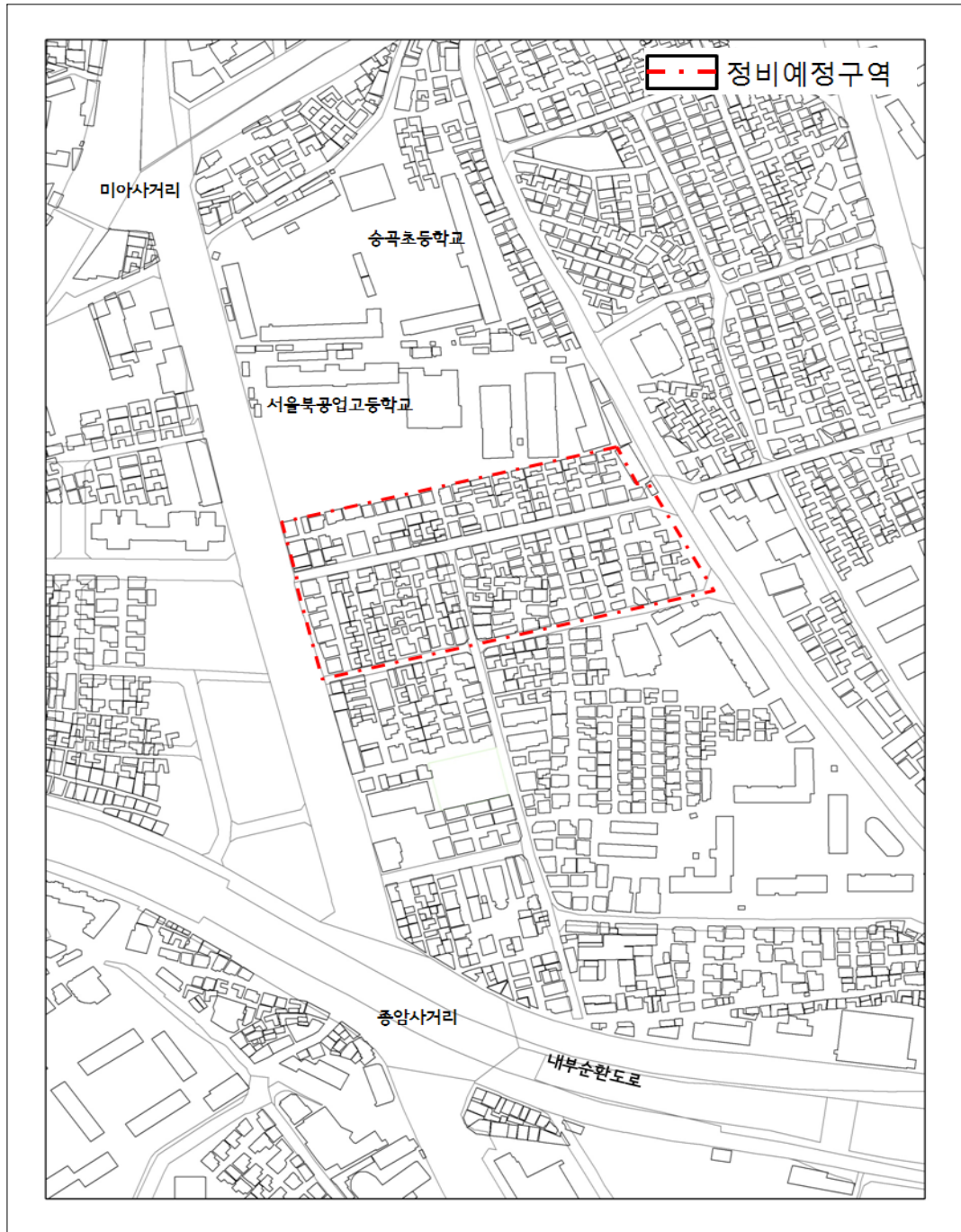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6	성 북	A	상월곡 동	24	1.5	170	7층이 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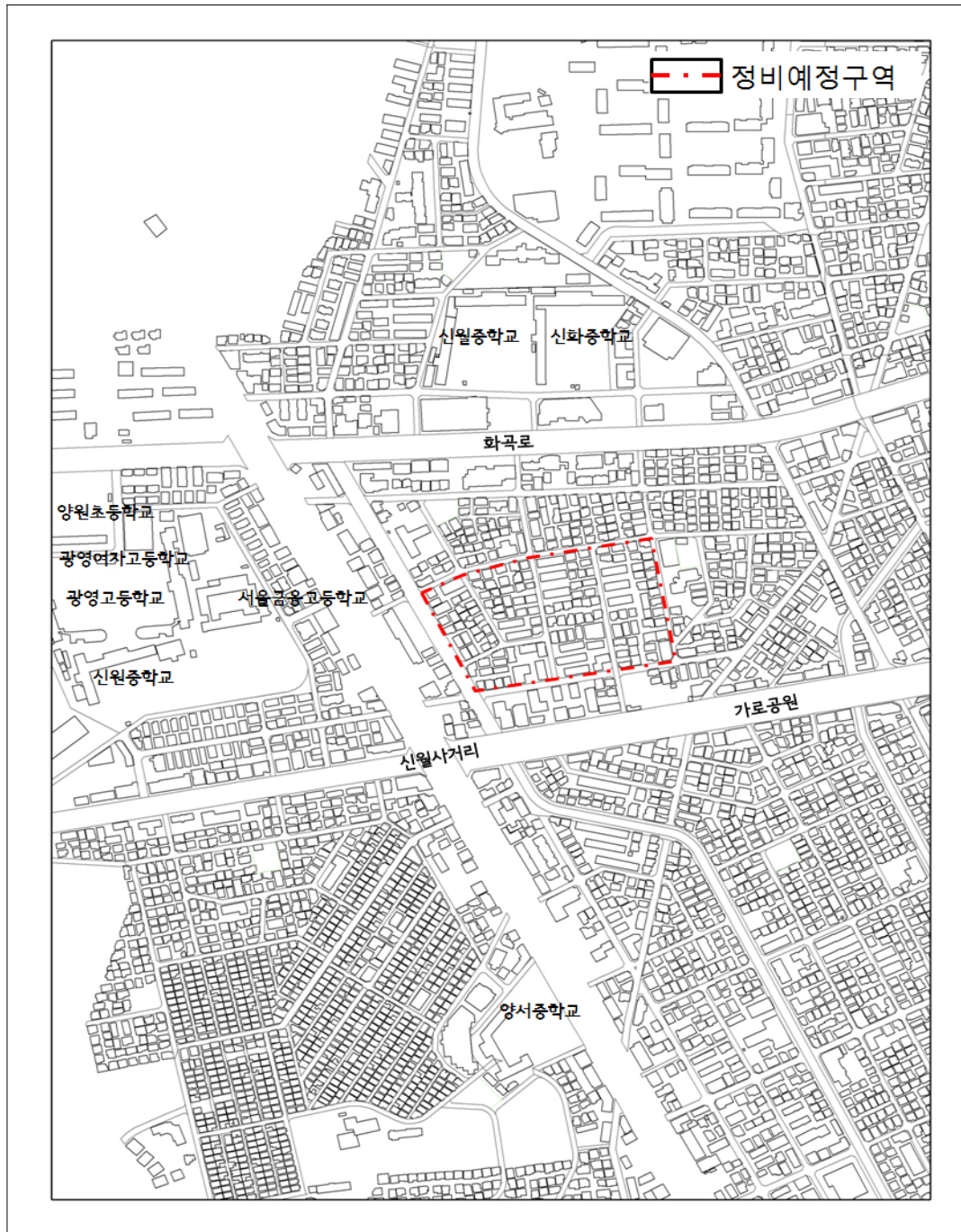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7	성 북	B	석관동	285	8.0	190	12층 이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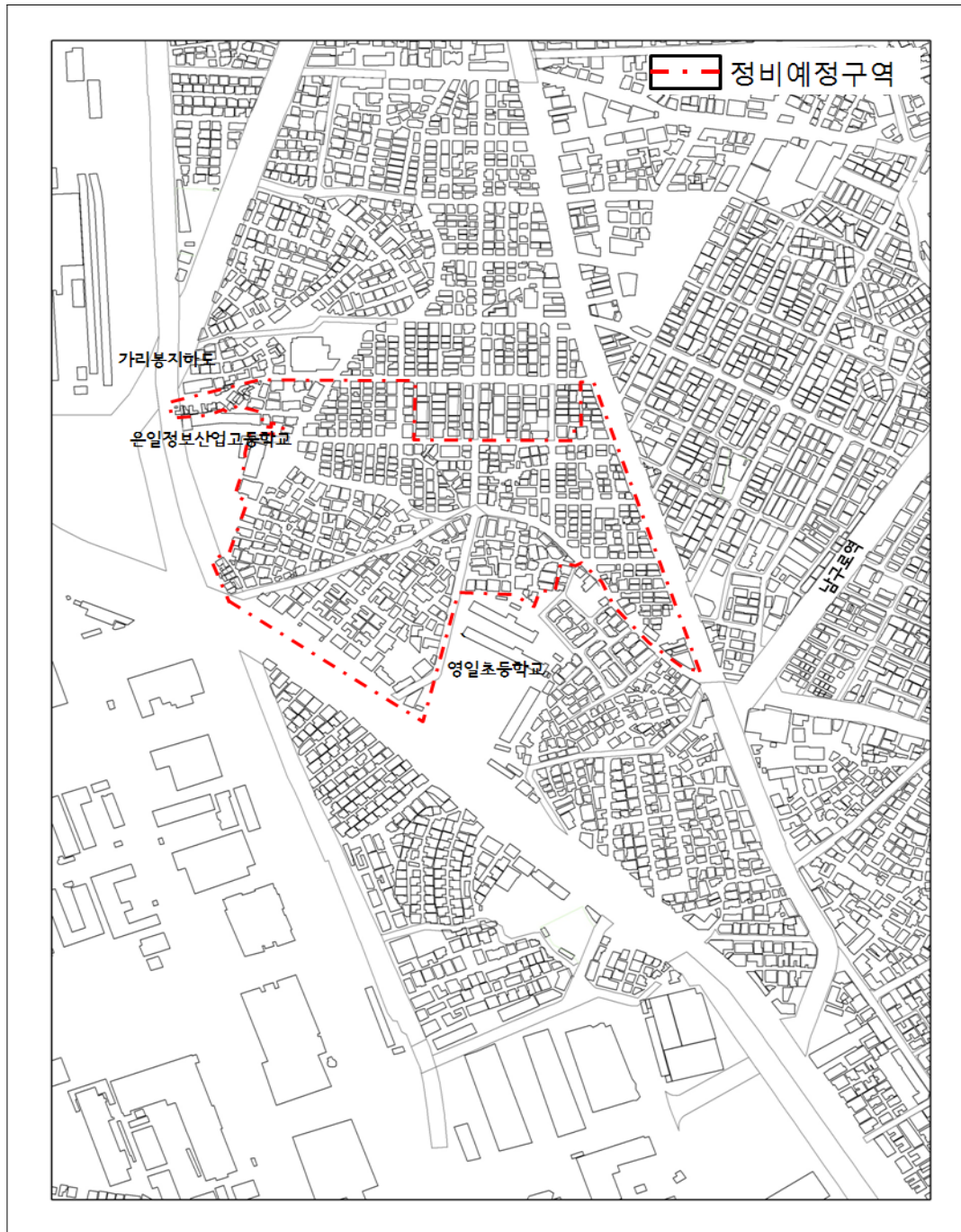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8	성 북	B	하월곡 동	90-1557	3.0	190	12층 이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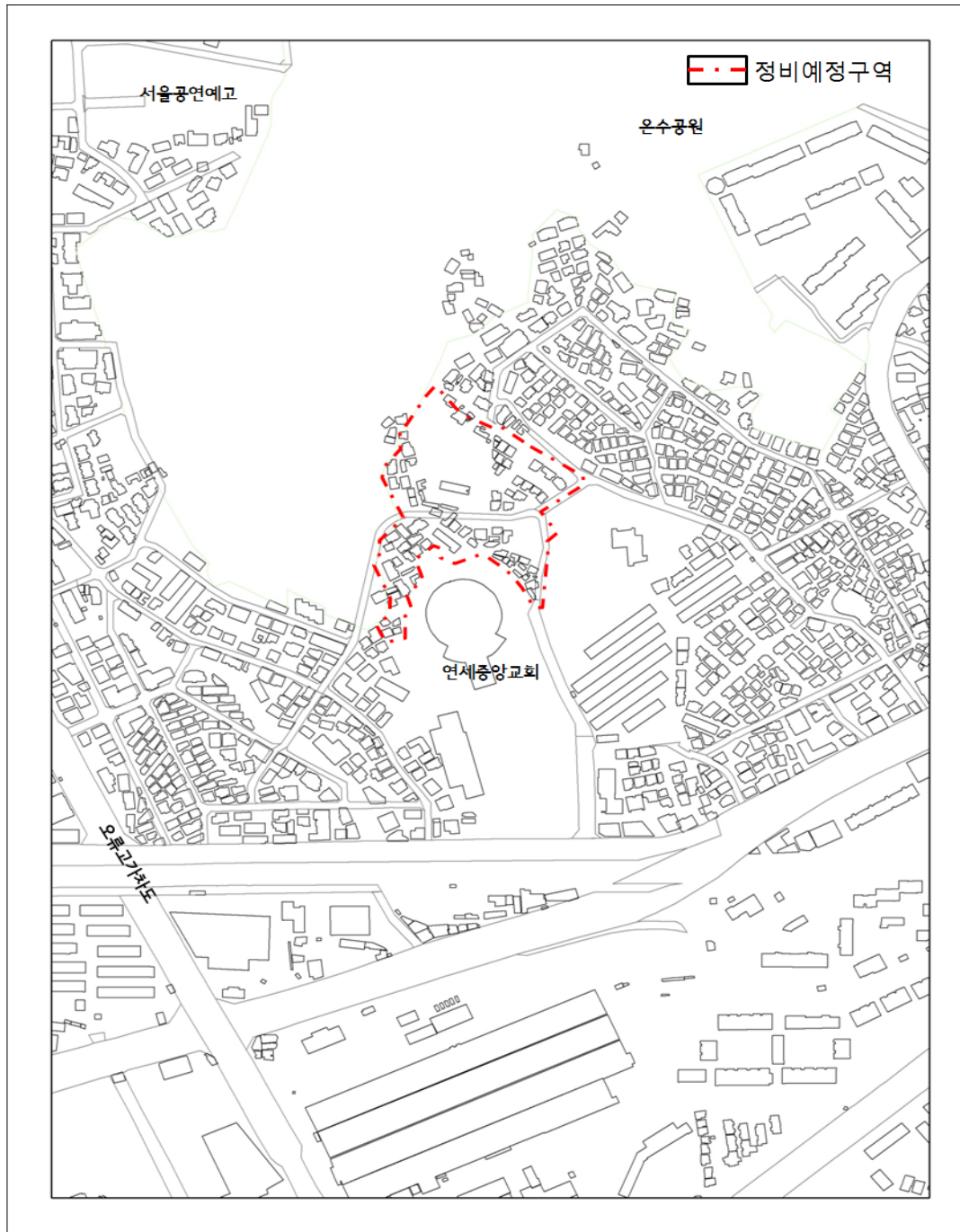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9	양 천	A	신월동	77-1	3.7	190	12층 이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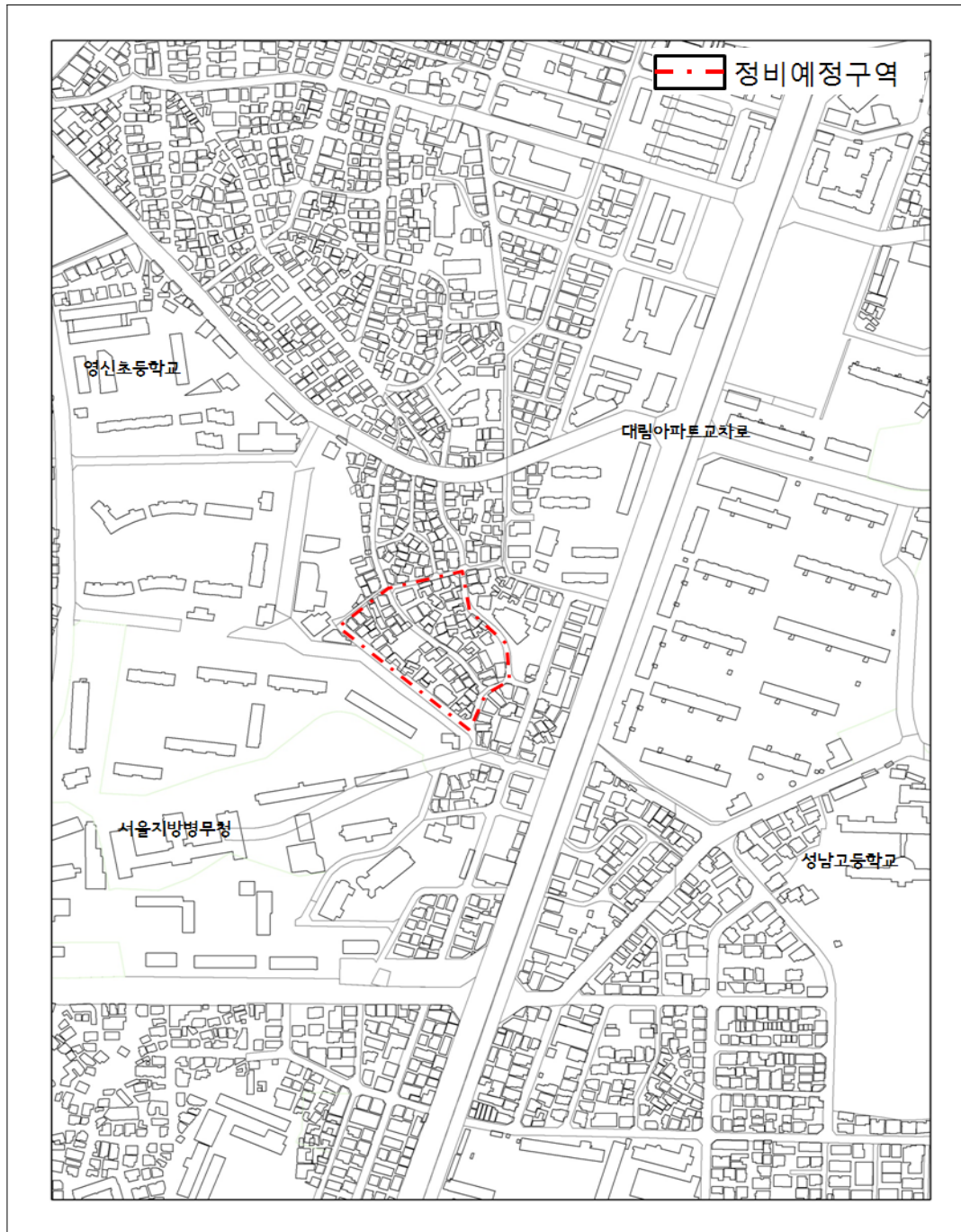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0	구 로	A	가리봉 동	2-92	8.1	210	-	5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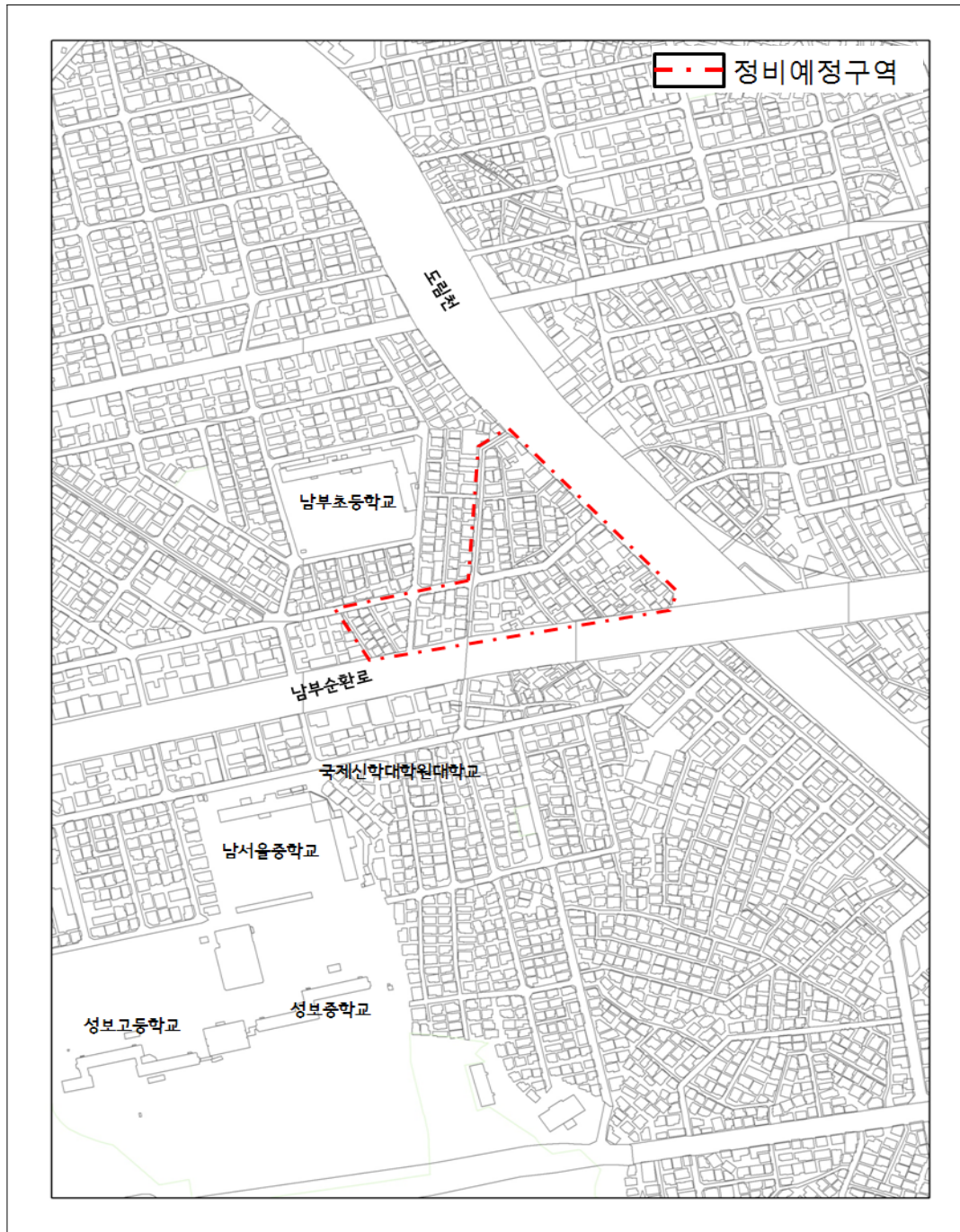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1	구 로	A	궁동	192	2.3	170	7층이 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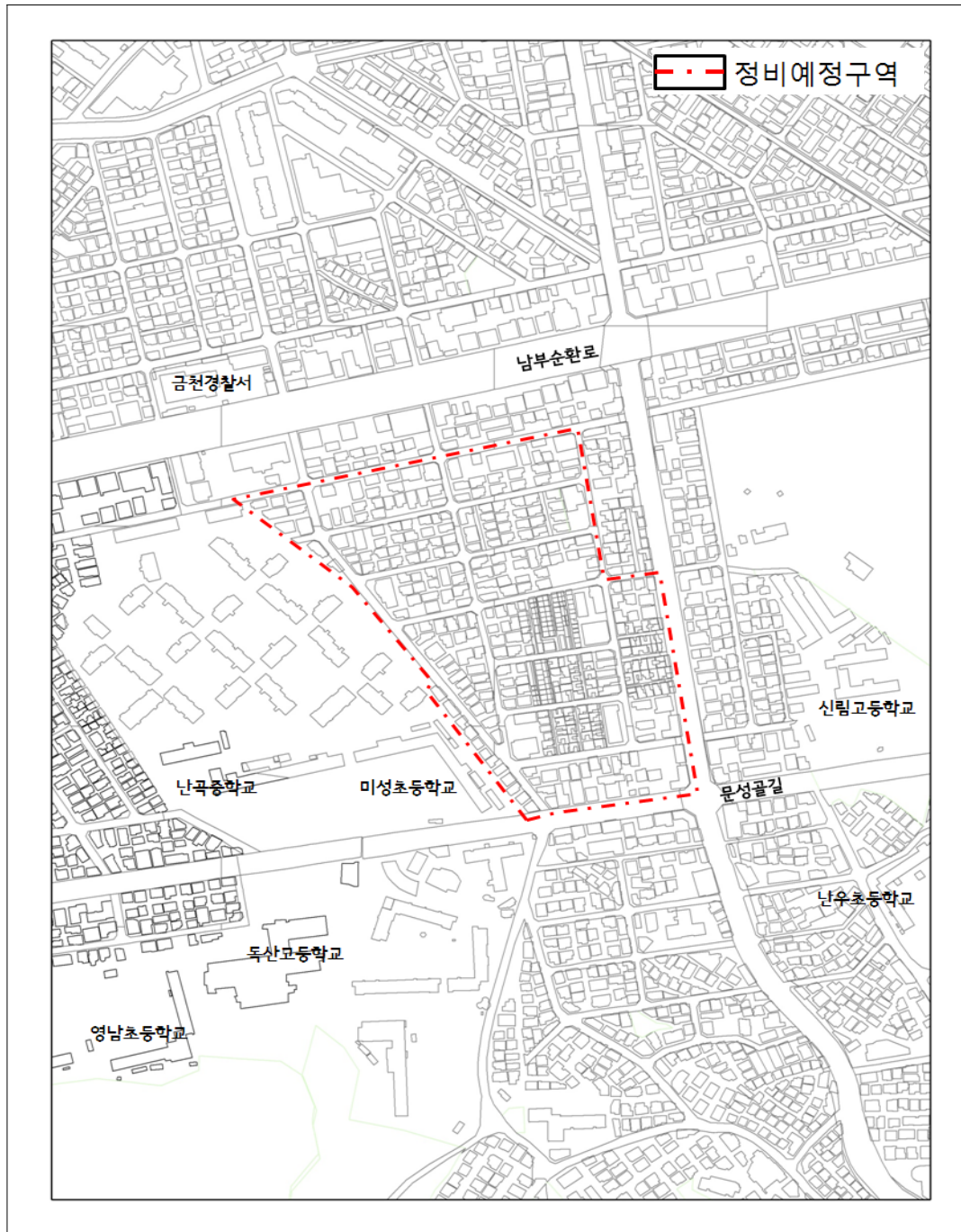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2	영등포	A	신길7동	1017	1.4	190	12층 이하	6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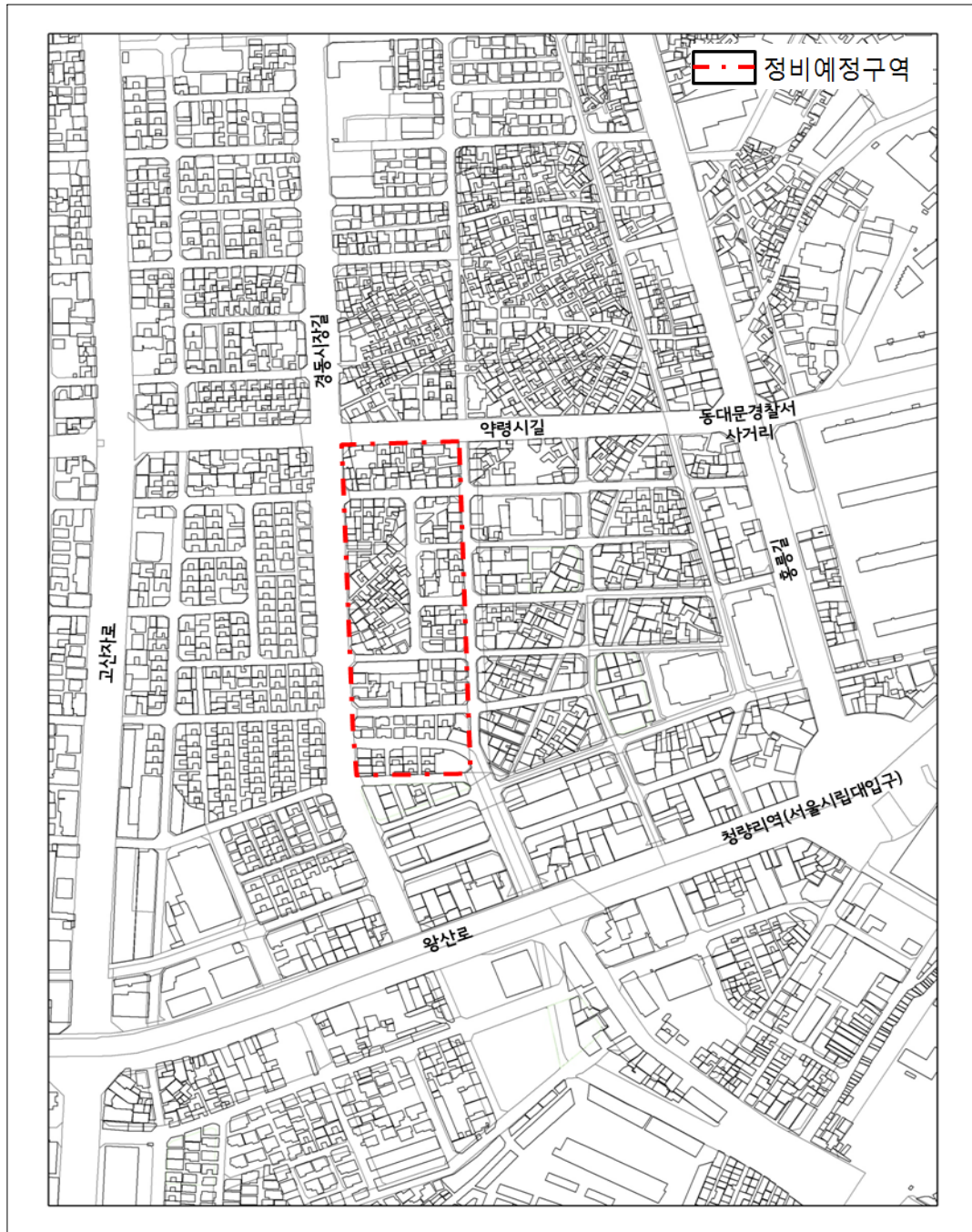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3	관악	A	신림동	1464	2.5	210	-	5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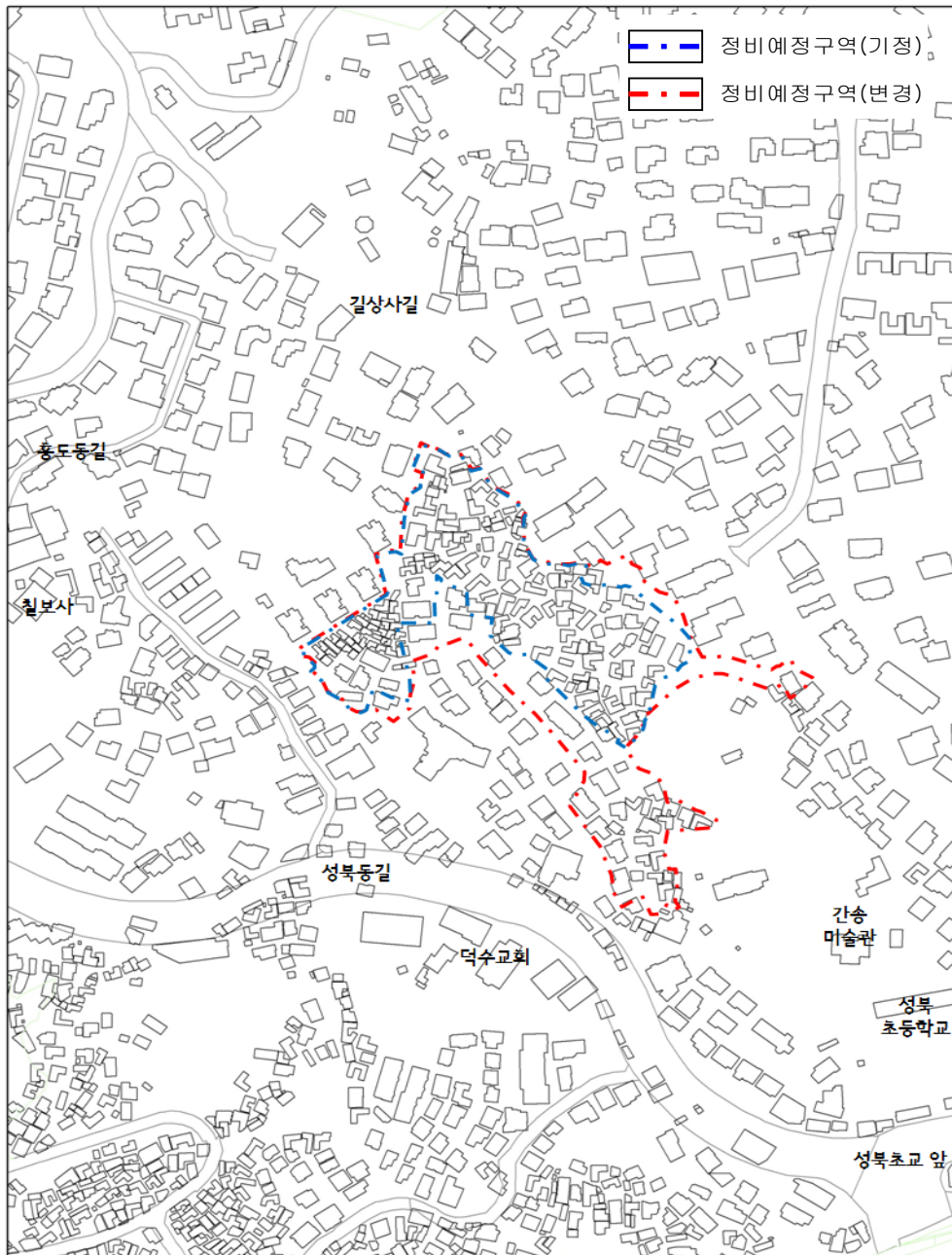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4	관악	A	신림동	1482	6.7	210	-	50%	3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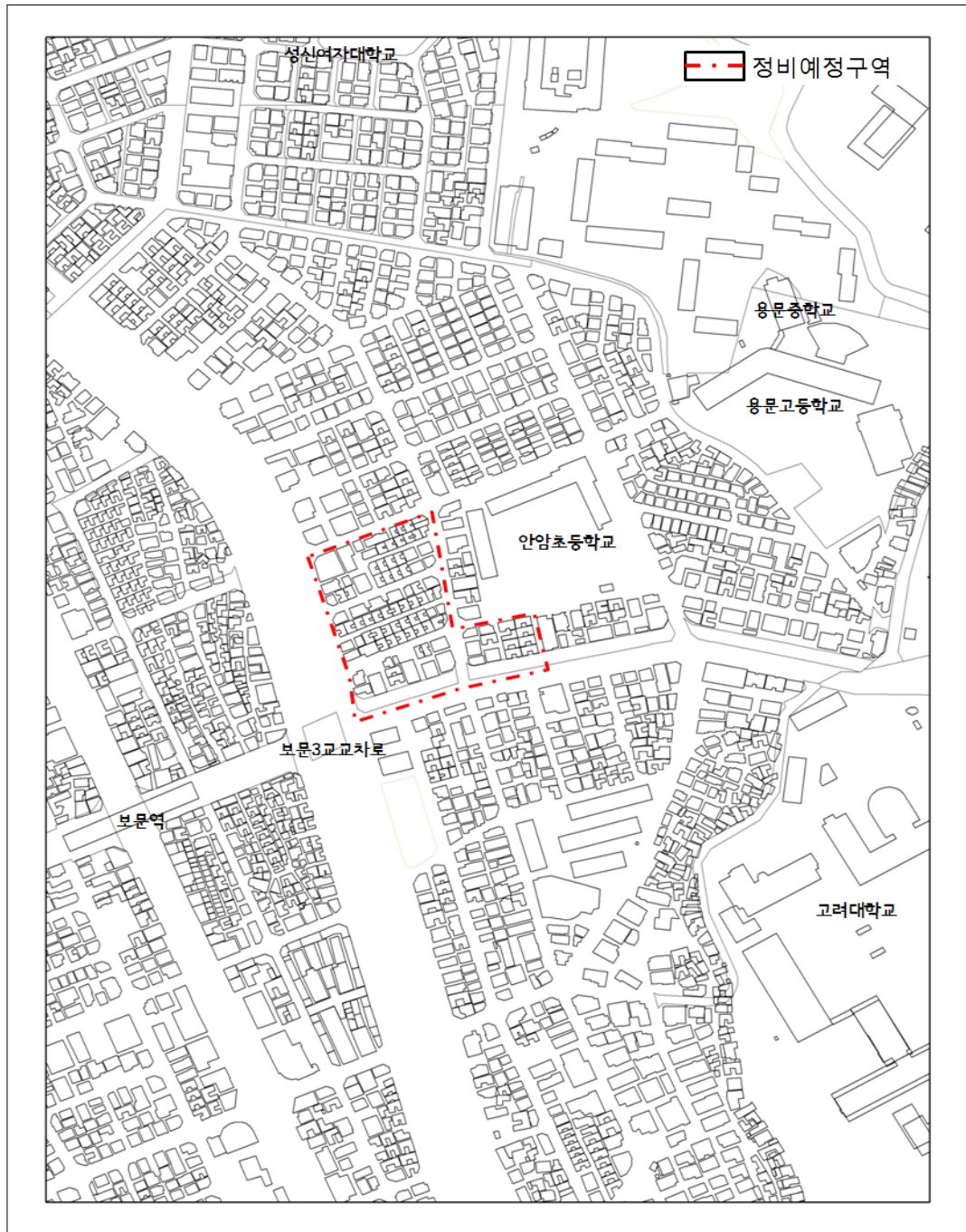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1	동대문	C	제기동	620	2.7	190	12층 이하	60%	3	전면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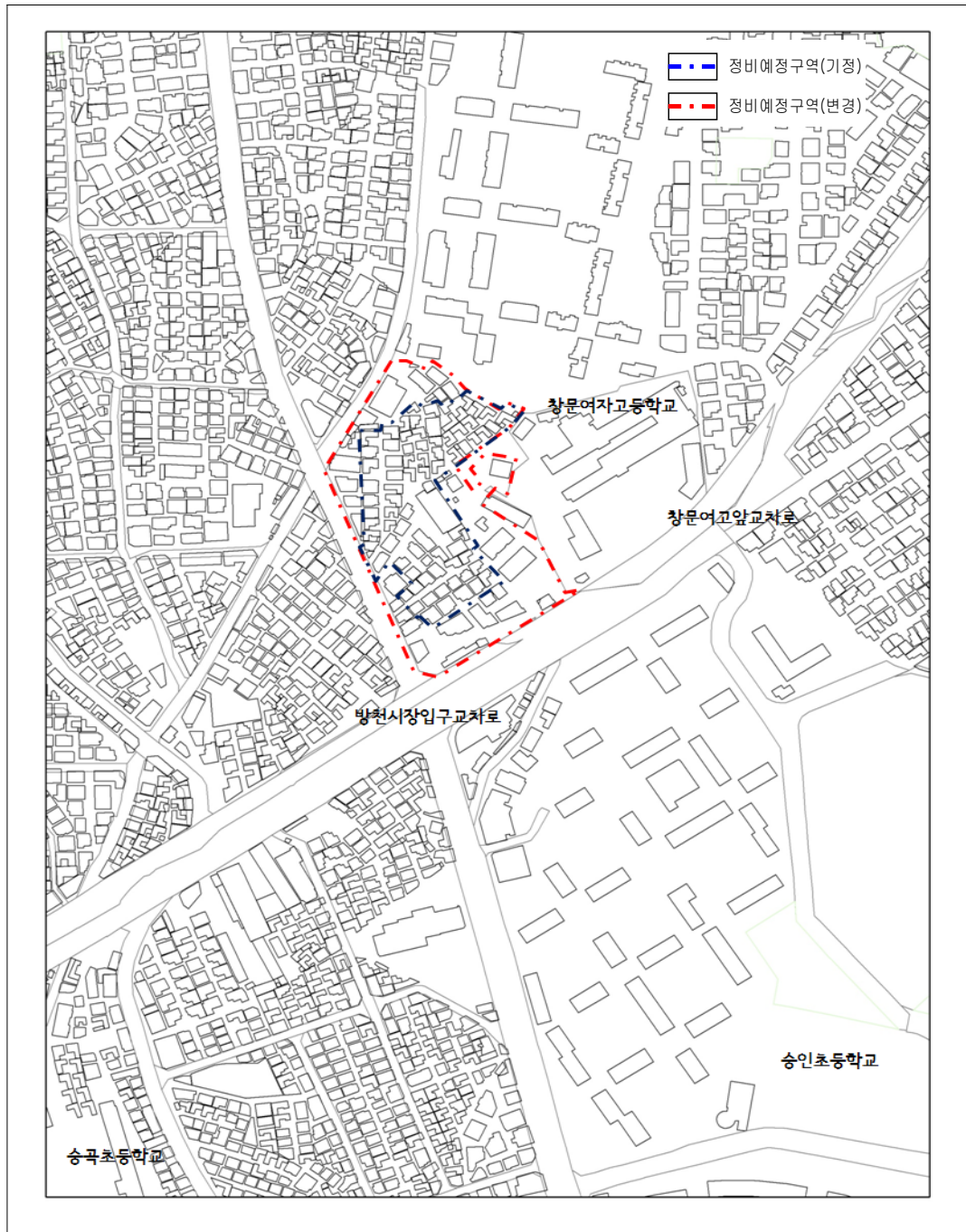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2	성 북	B	성북2동	29-5 1	5.5	170	5층 이하	60%	2	전면 (수복)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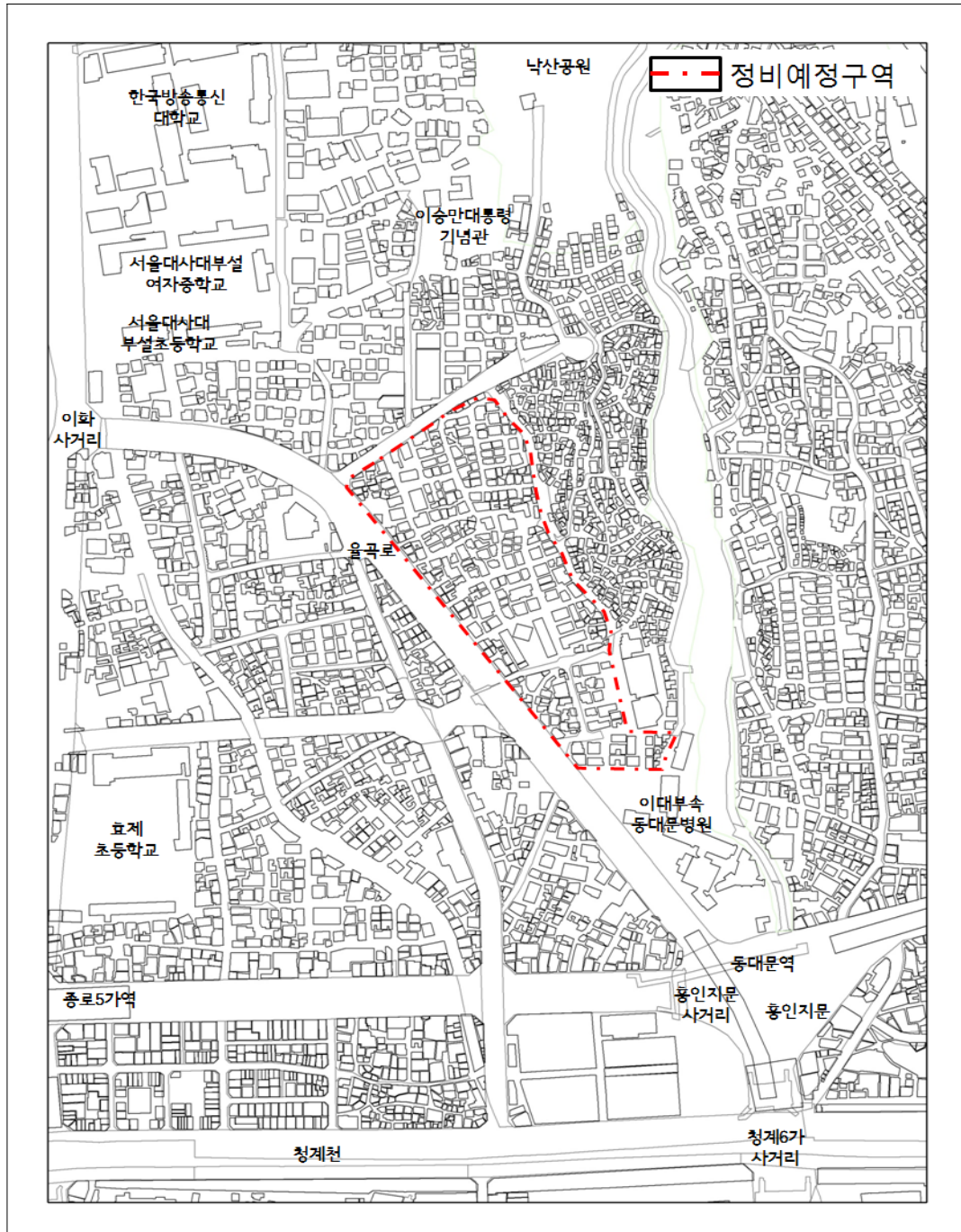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3	성 북	A	안암동2 가	59	1.2	190	12층 이하	60%	3	전면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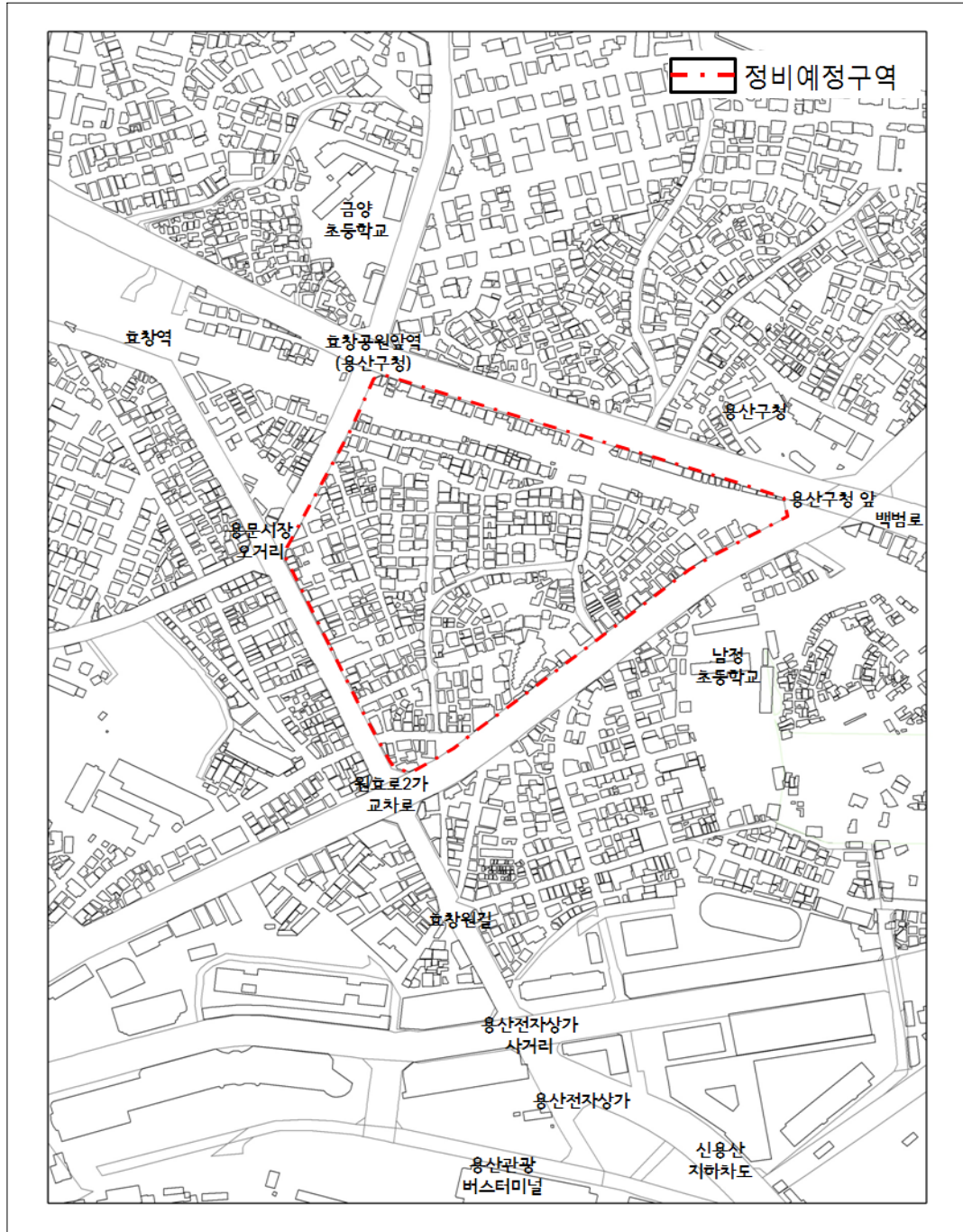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 고
4	강 북	A	미아동	6,7	2.1	210	-	50%	3	전면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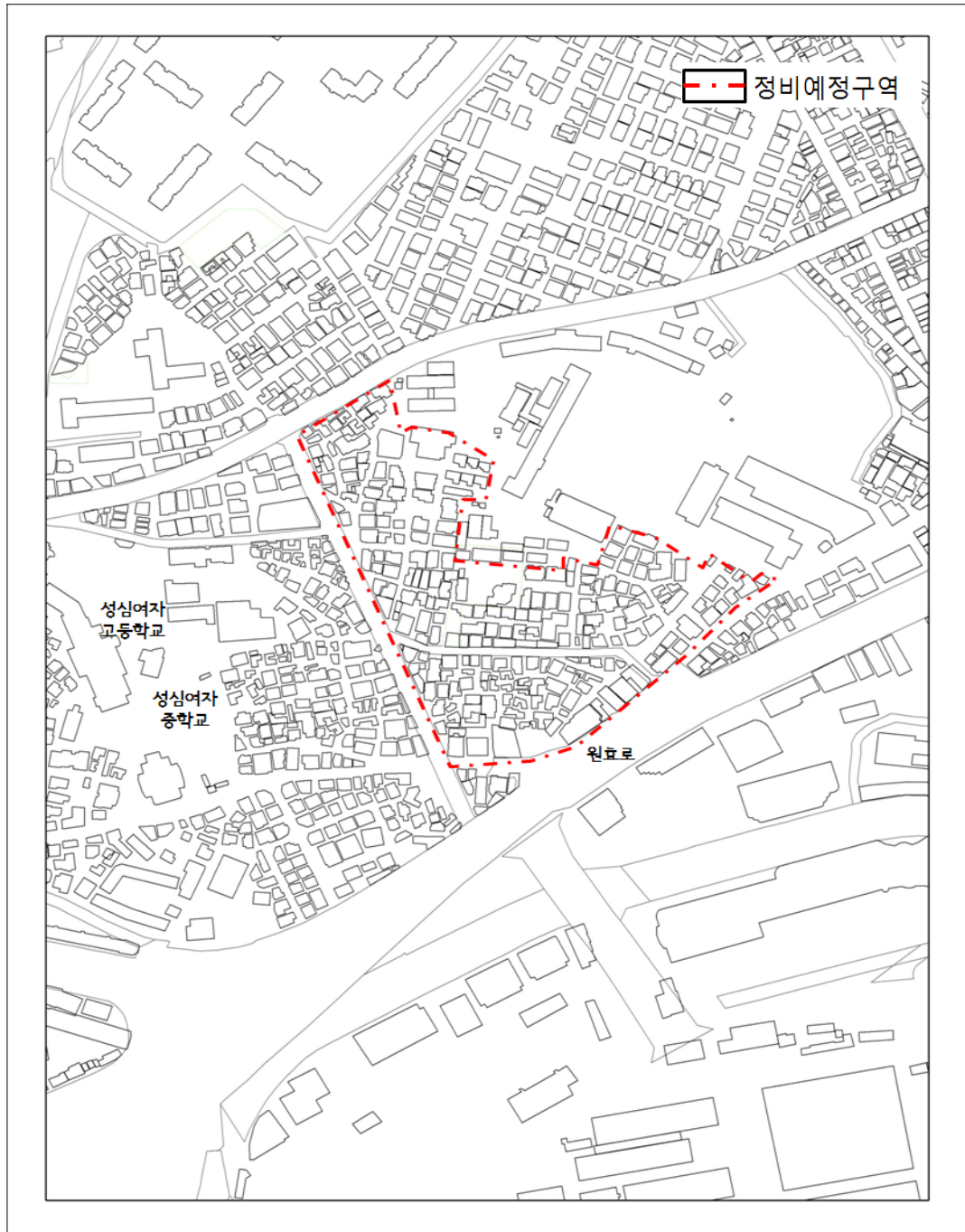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	종로구	충신동	6	4.3	17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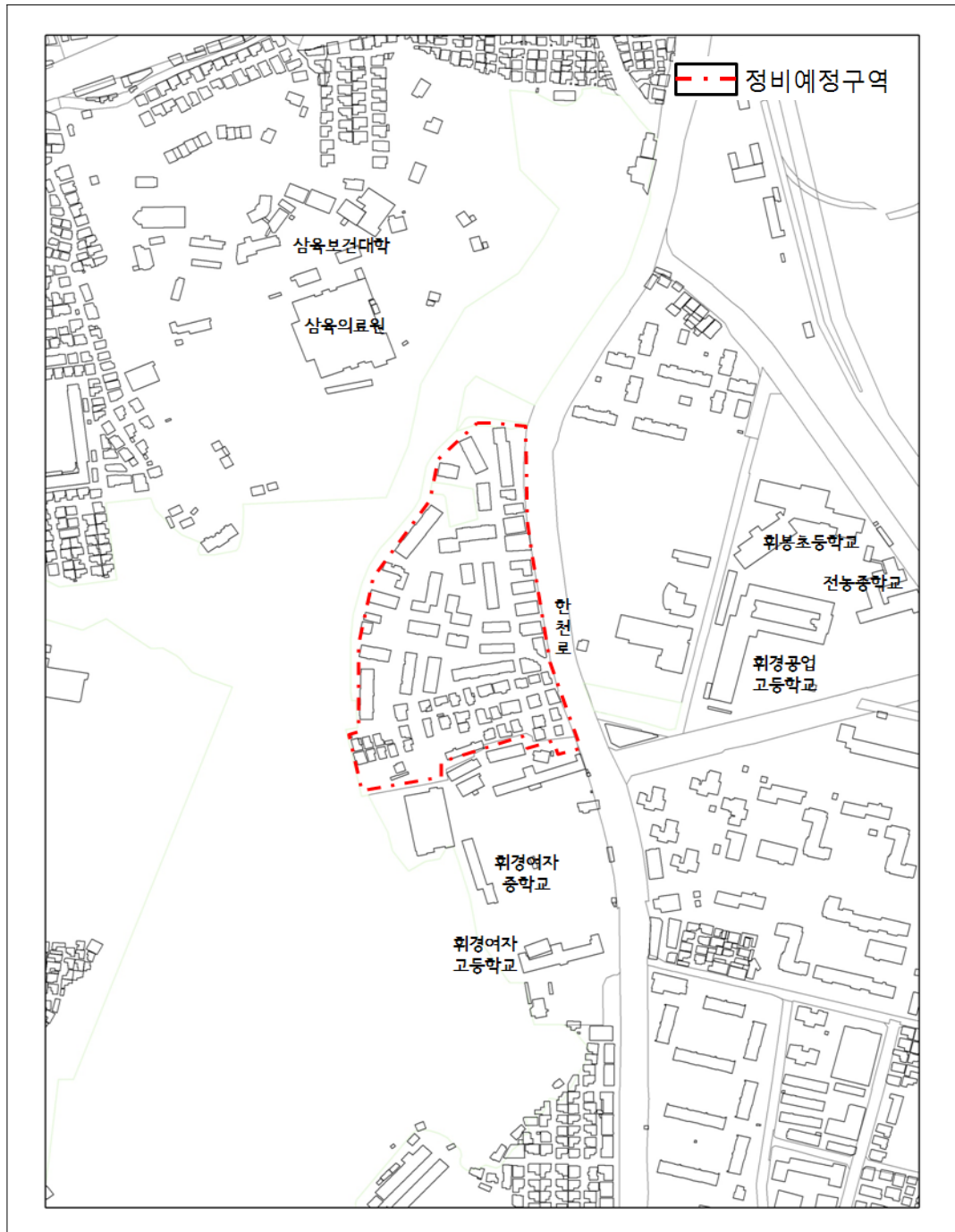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3	용산구	용문동	8	9.5	190	60	평균층수 10	2	단독	
	용산구	원효로2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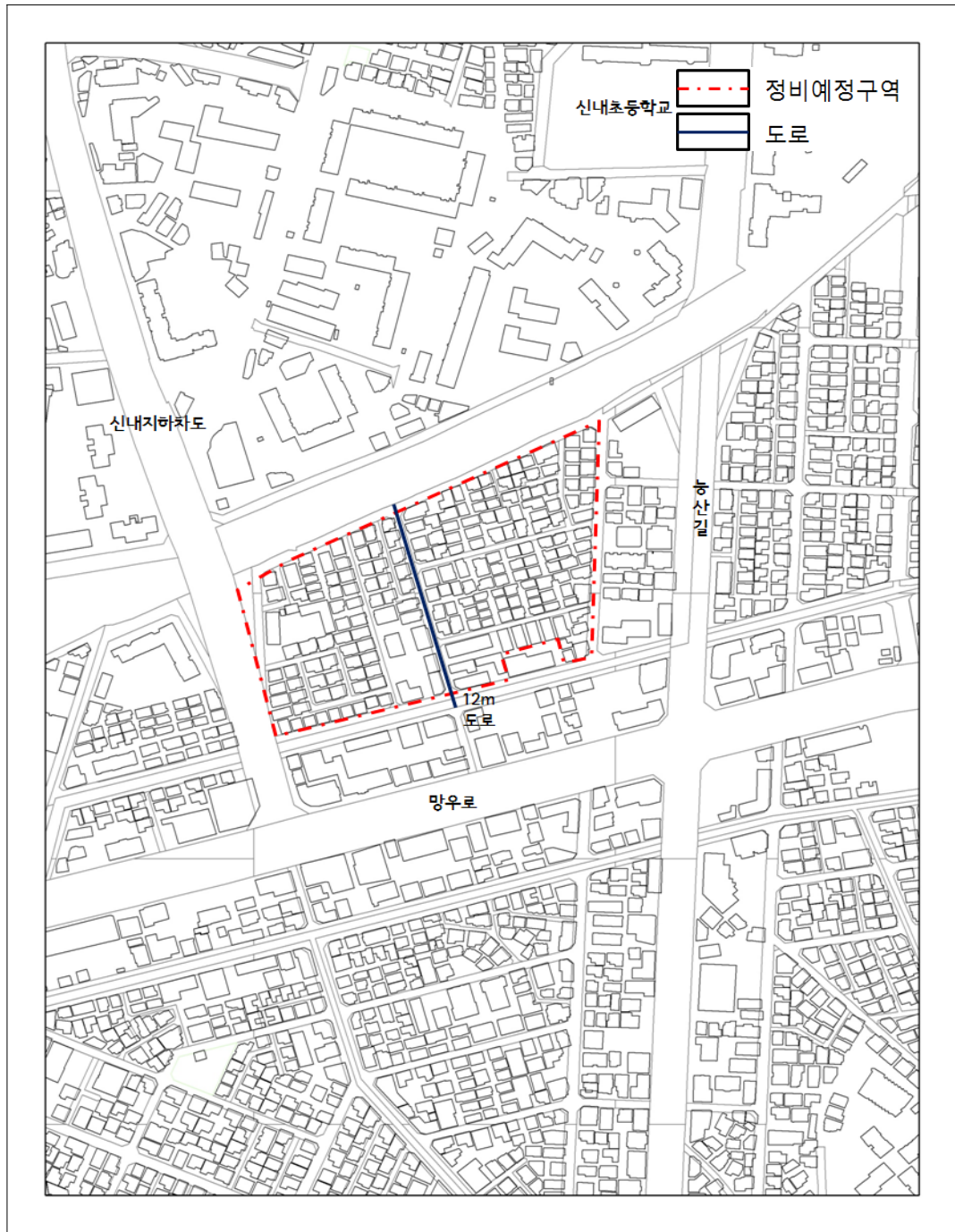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4	용 산	원효로3 가	1	3.9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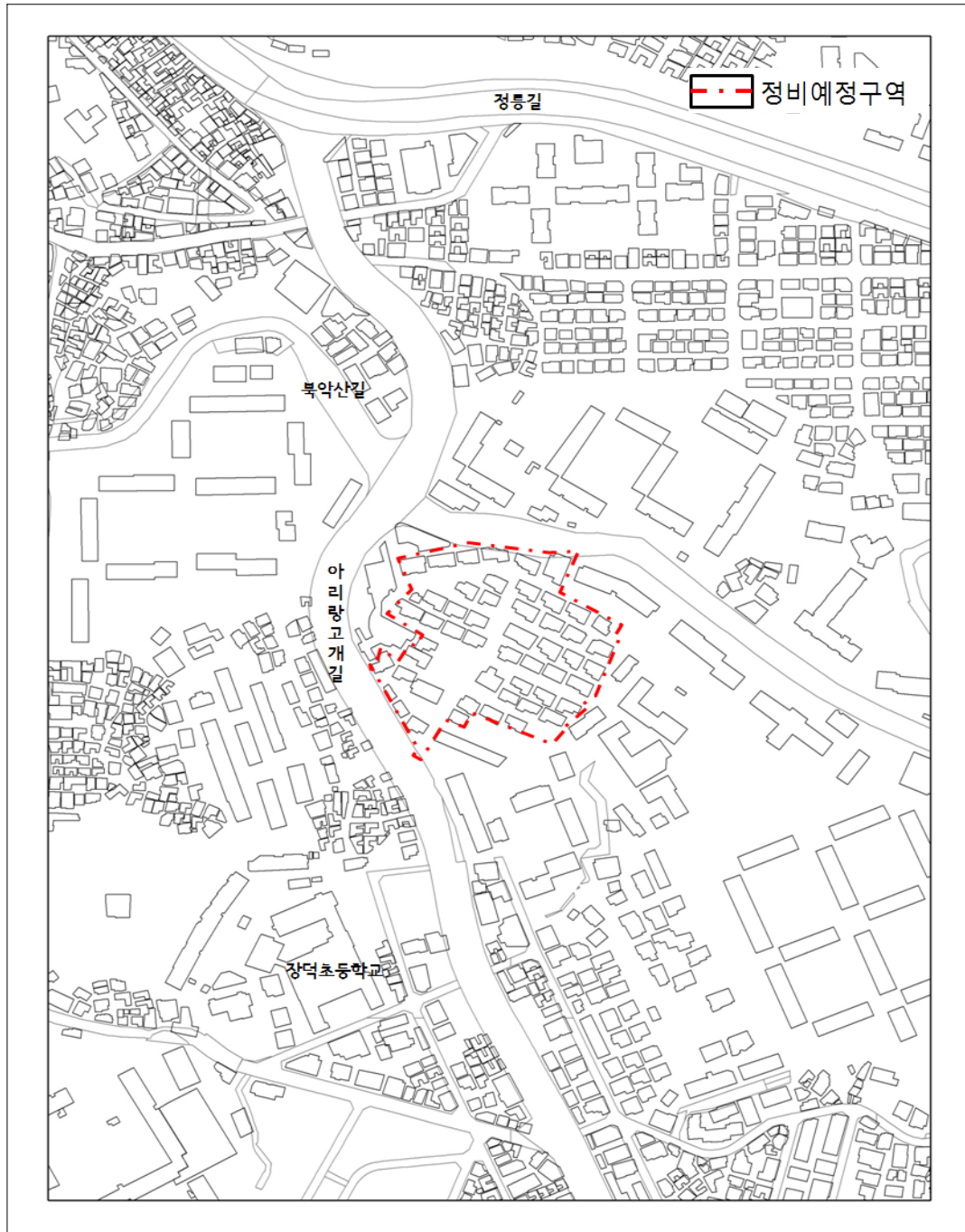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5	동대문	휘경동	43-8	4.9	170	60	3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6	중랑구	신내동	493	3.4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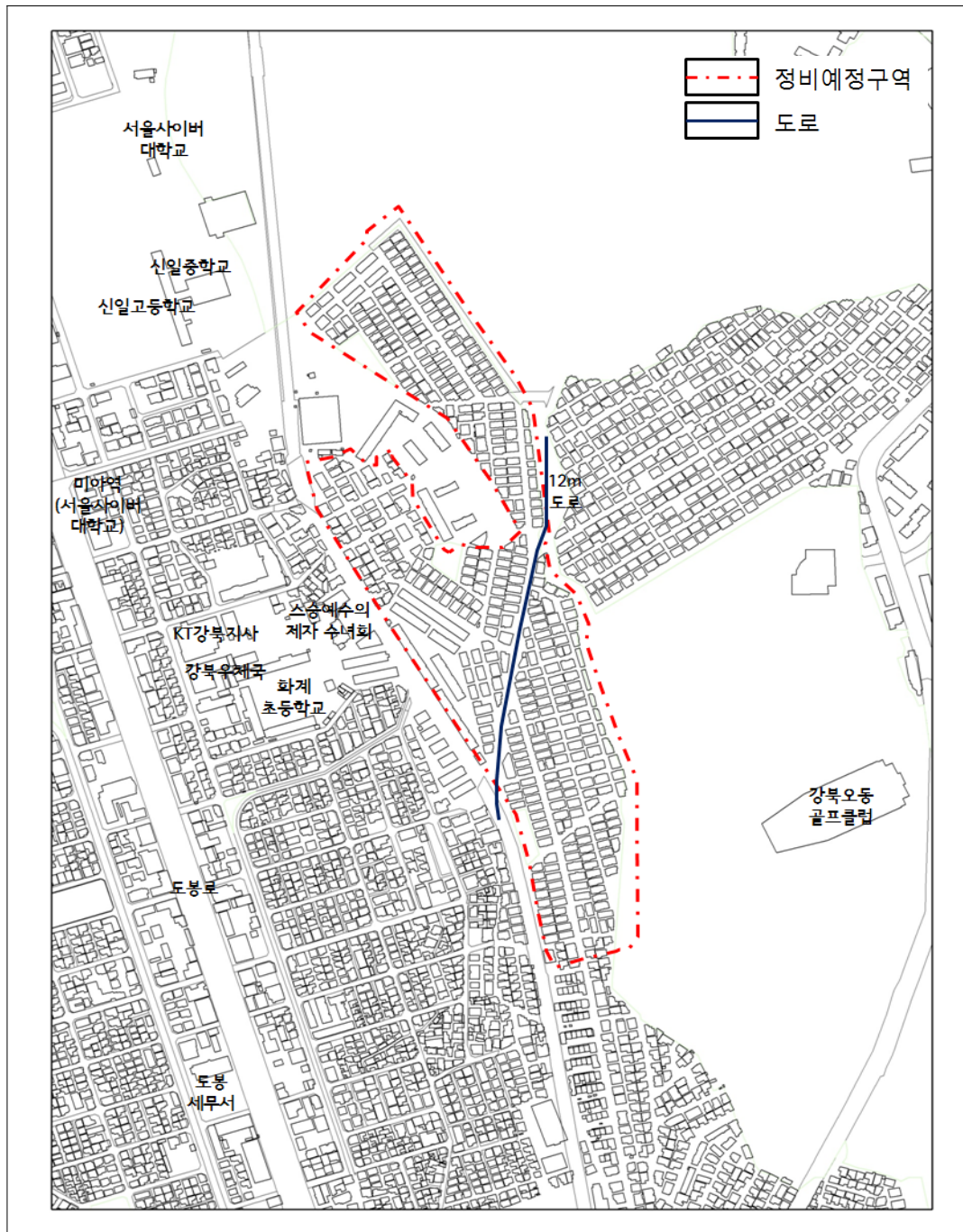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7	성북구	돈암동	538-48	1.8	170	60	5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8	강북구	미아동	3-111	1.1	170	60	5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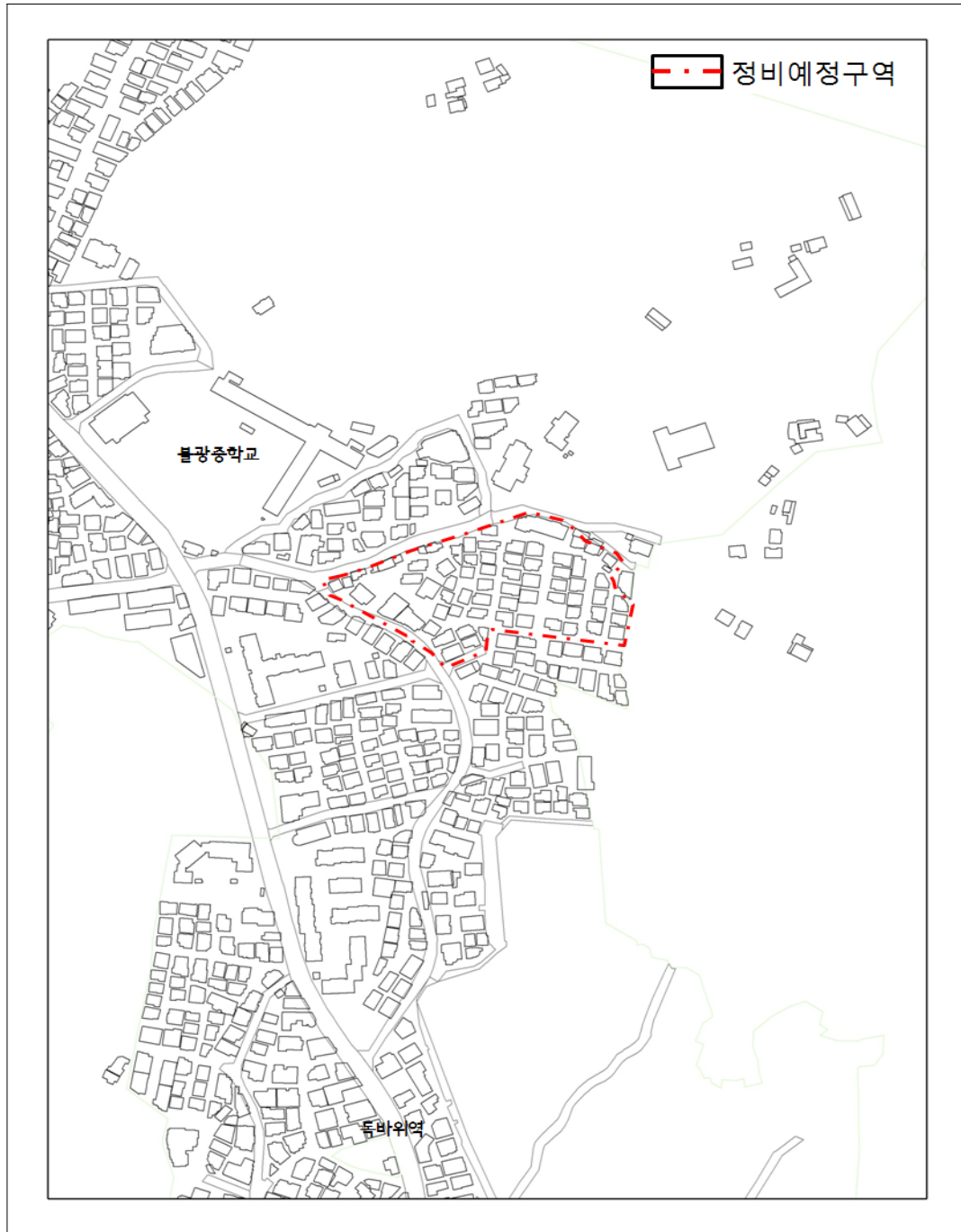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9	강북구	미아동	258-6 01	13.1	170	60	5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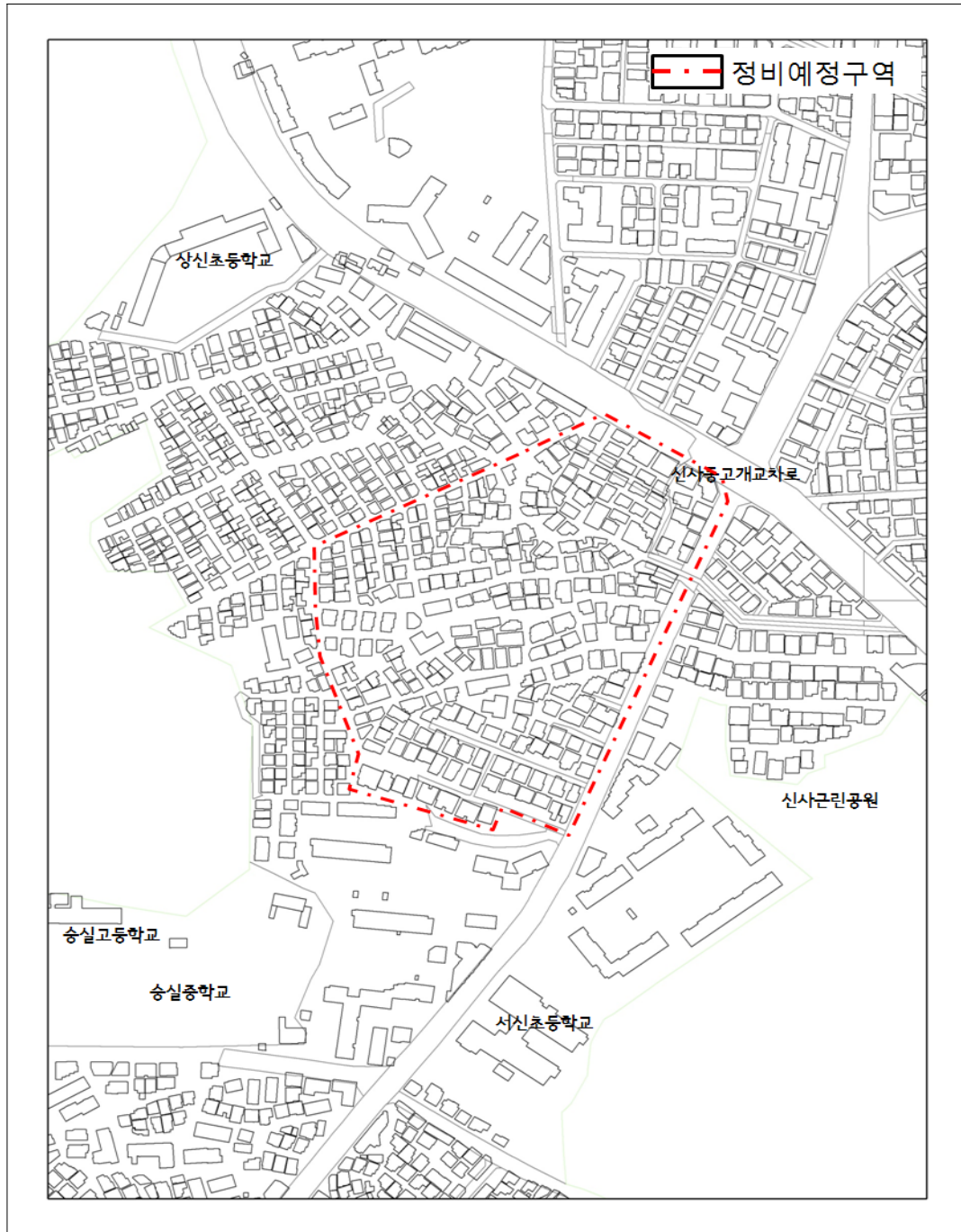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0	도봉구	창동	474	1.9	17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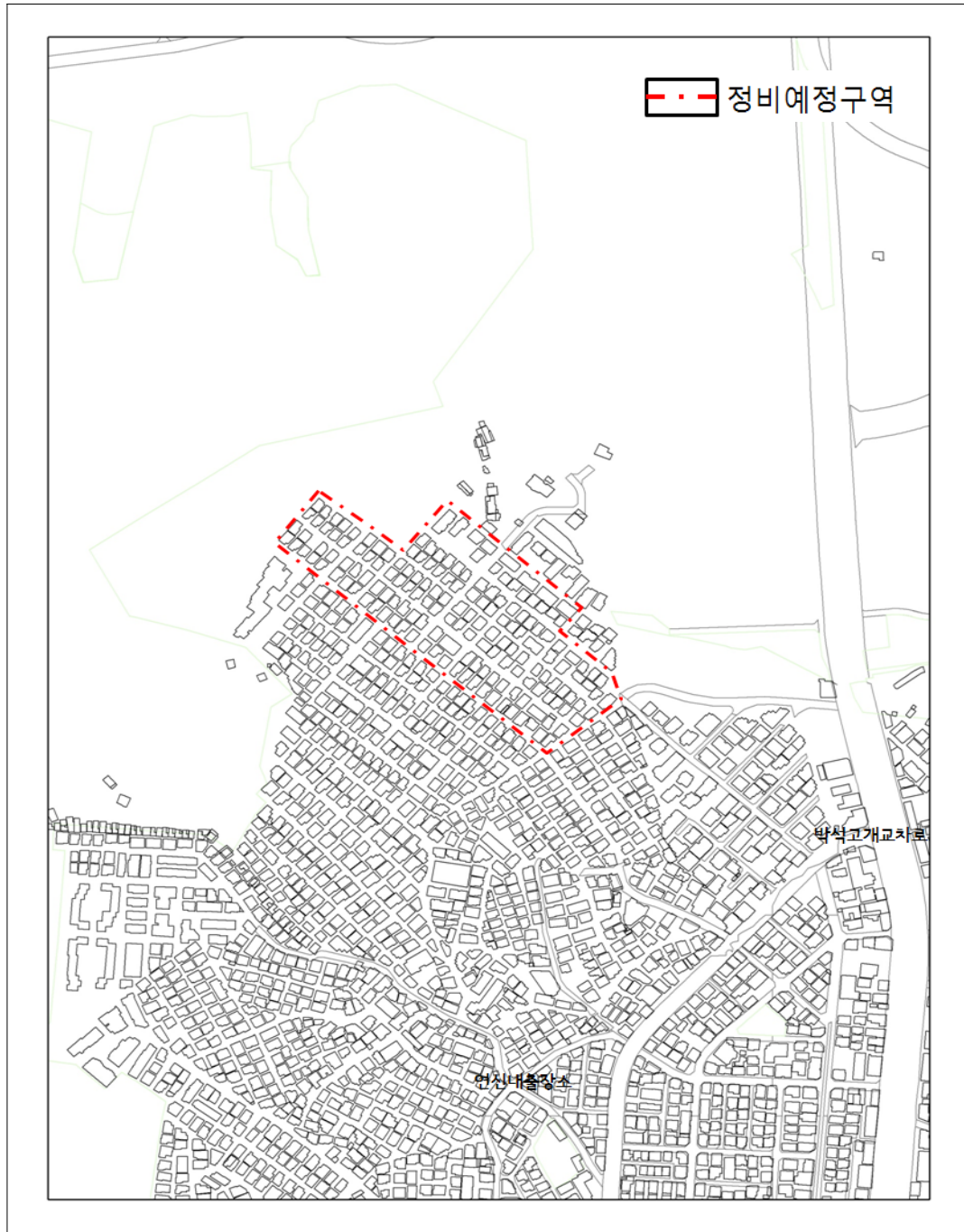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1	은평구	불광동	23	1.4	170	60	5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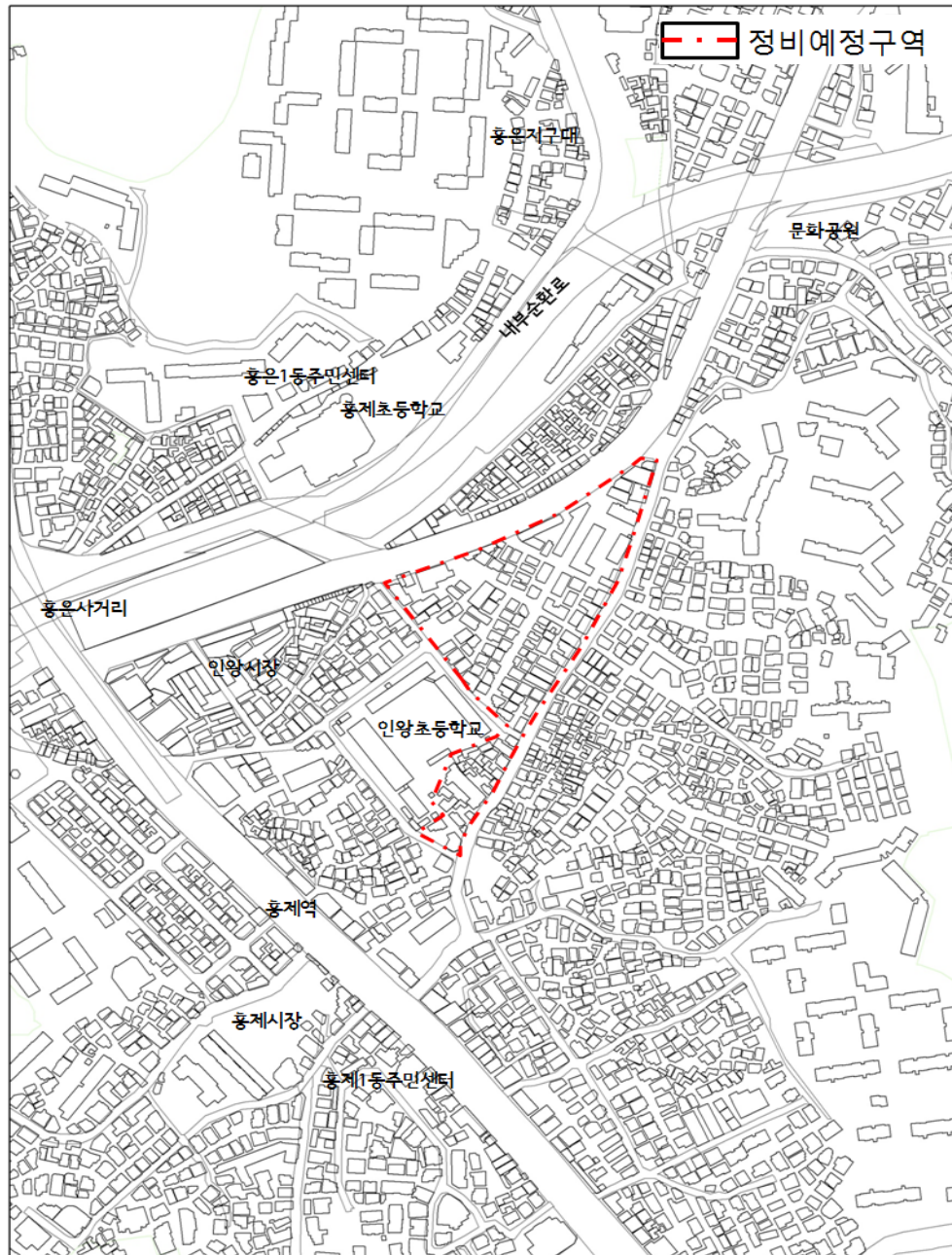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2	은평구	신사동	200	4.2	19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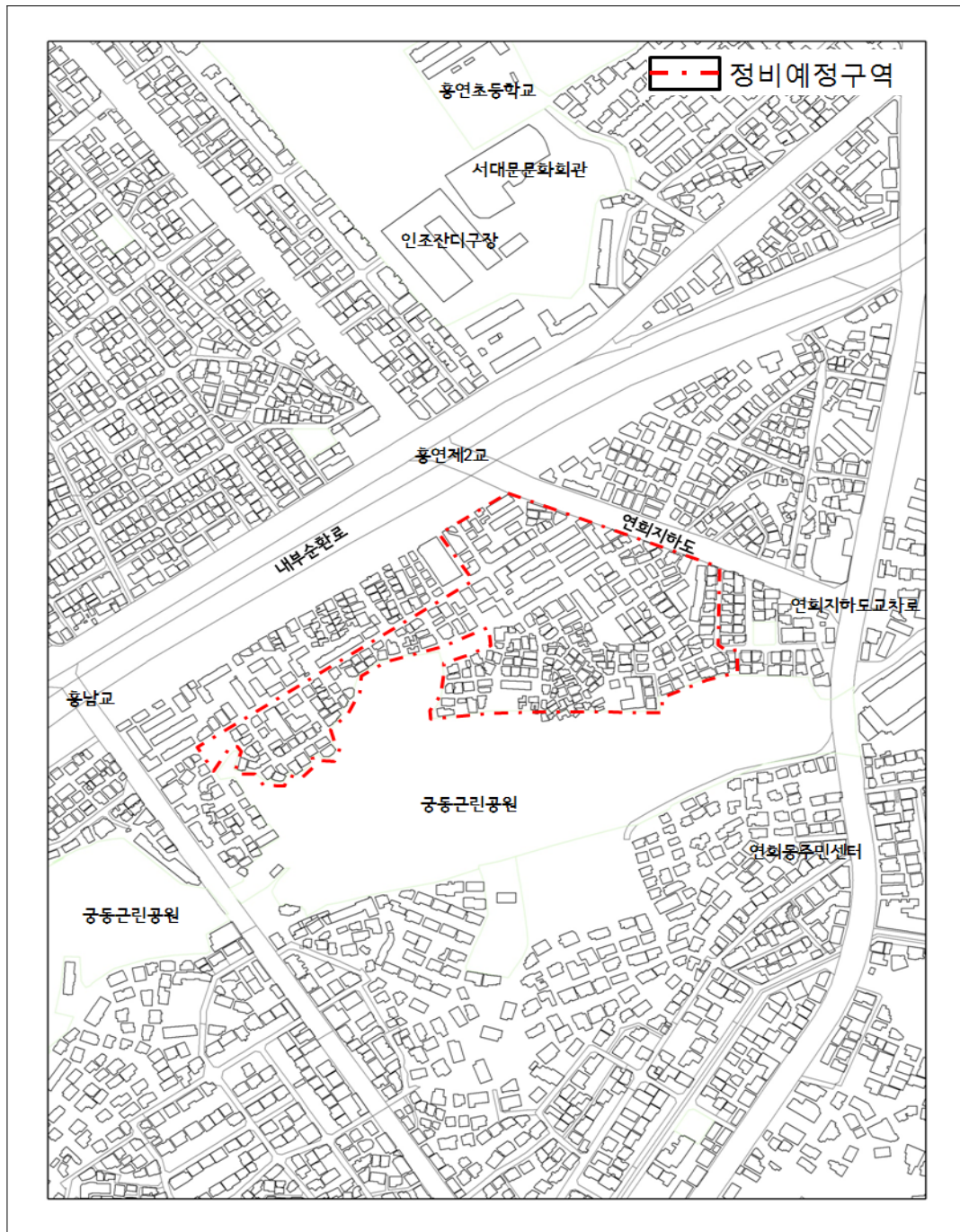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3	은평구	갈현동	12-248	3.2	170	60	5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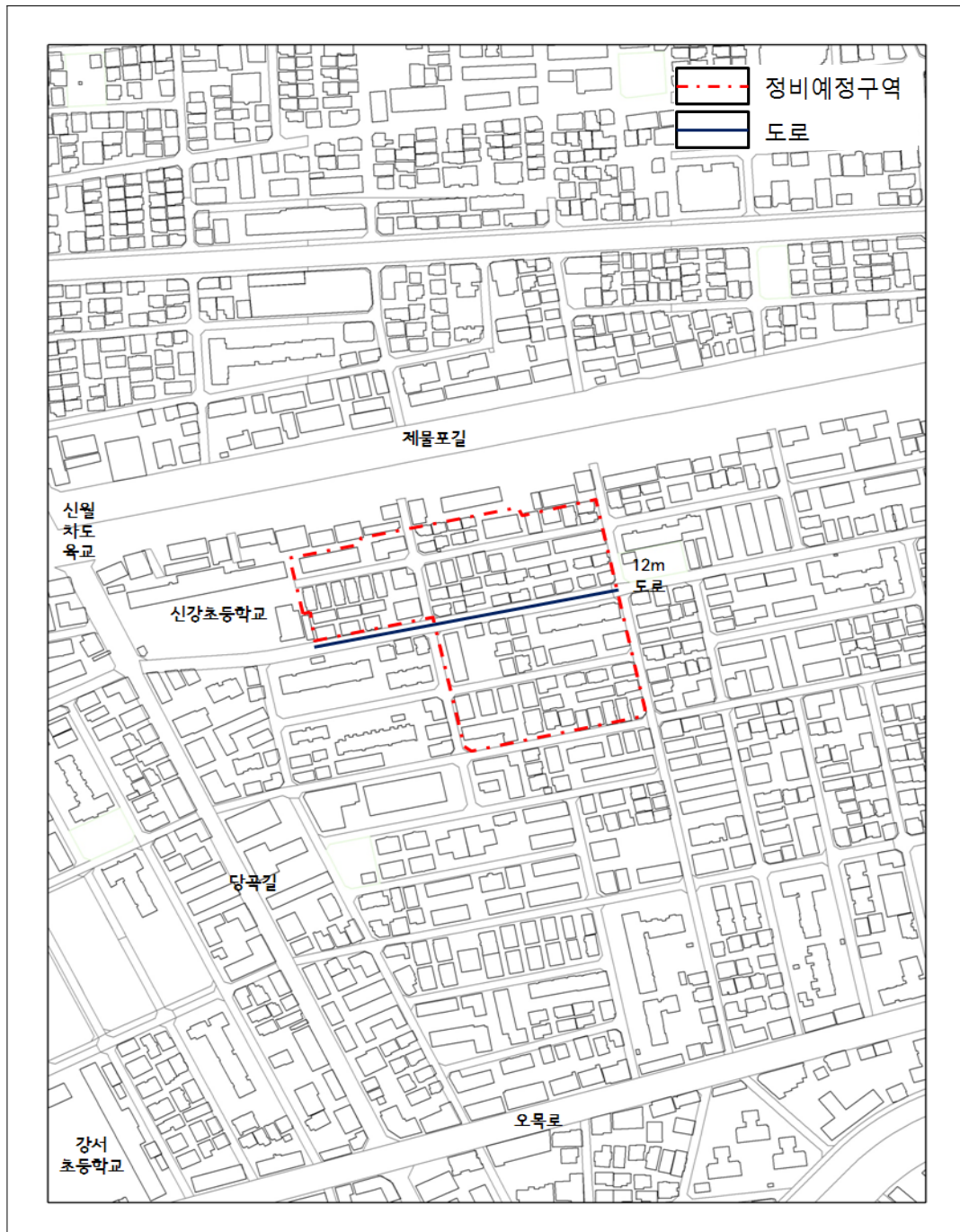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4	서대문 구	홍제동	266	2.9	190	60	12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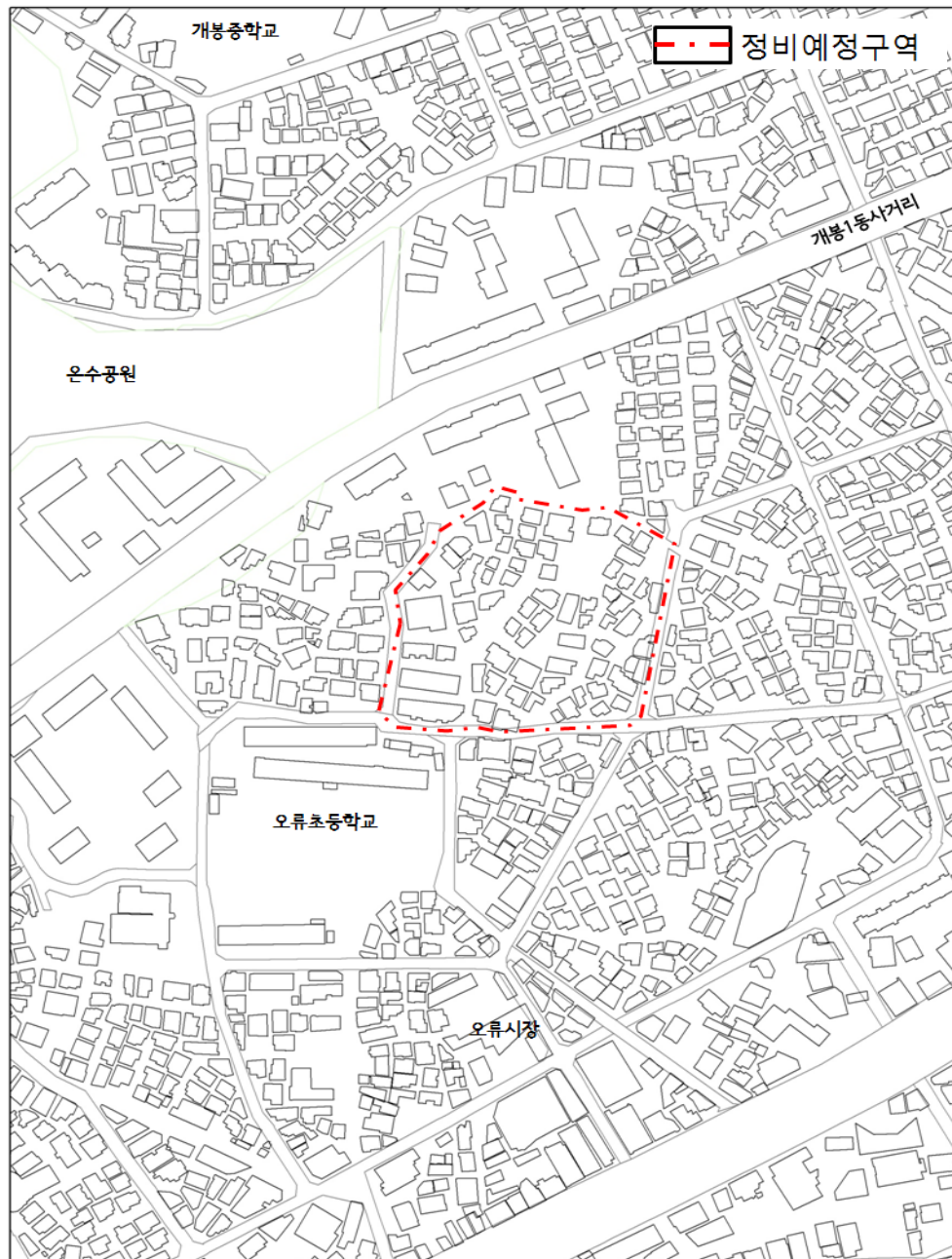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5	서대문 구	연희동	706	7	190	60	7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6	양천구	신월동	460 -5	2.8	190	60	평균층수 10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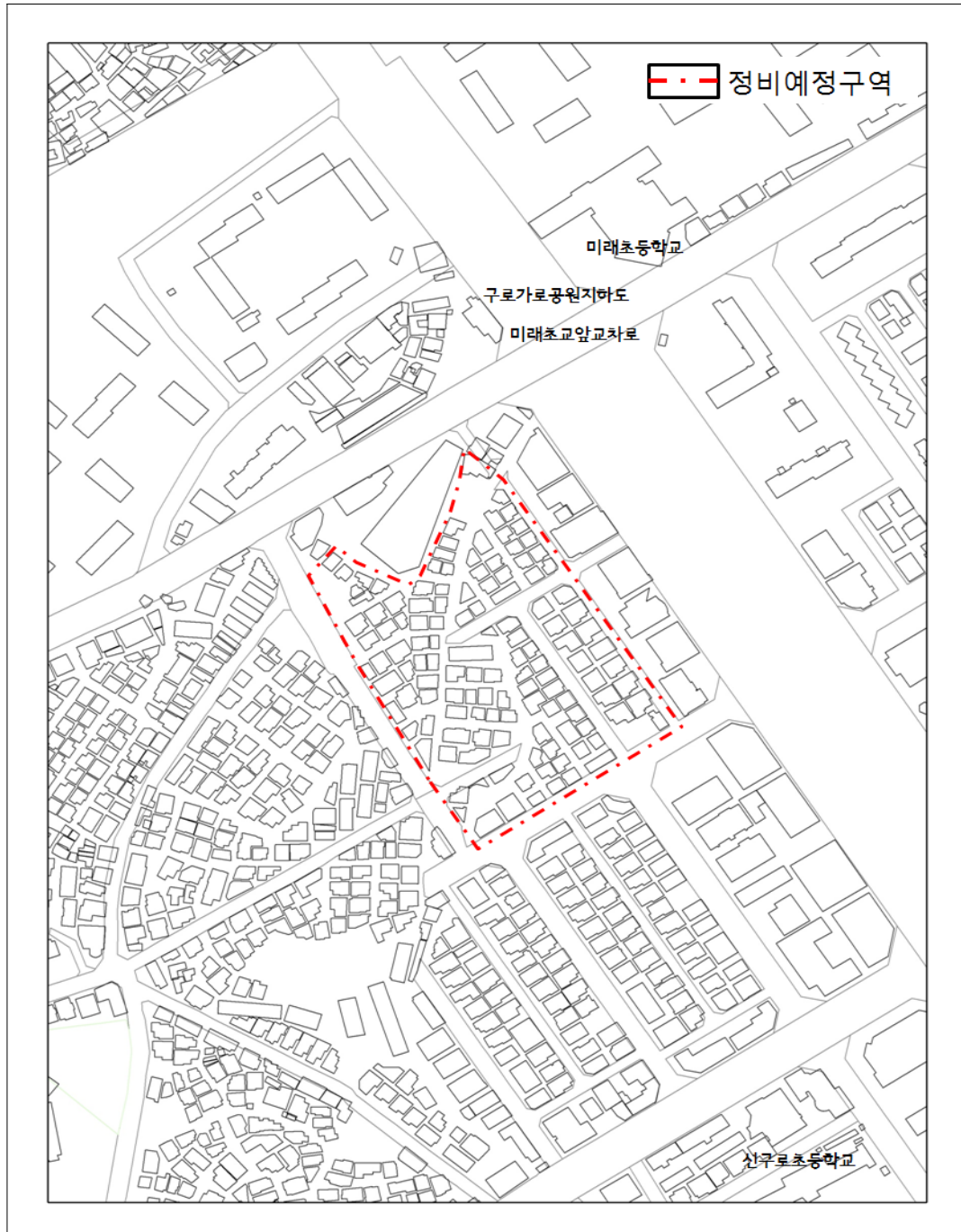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7	구로구	오류동	19	1.5	19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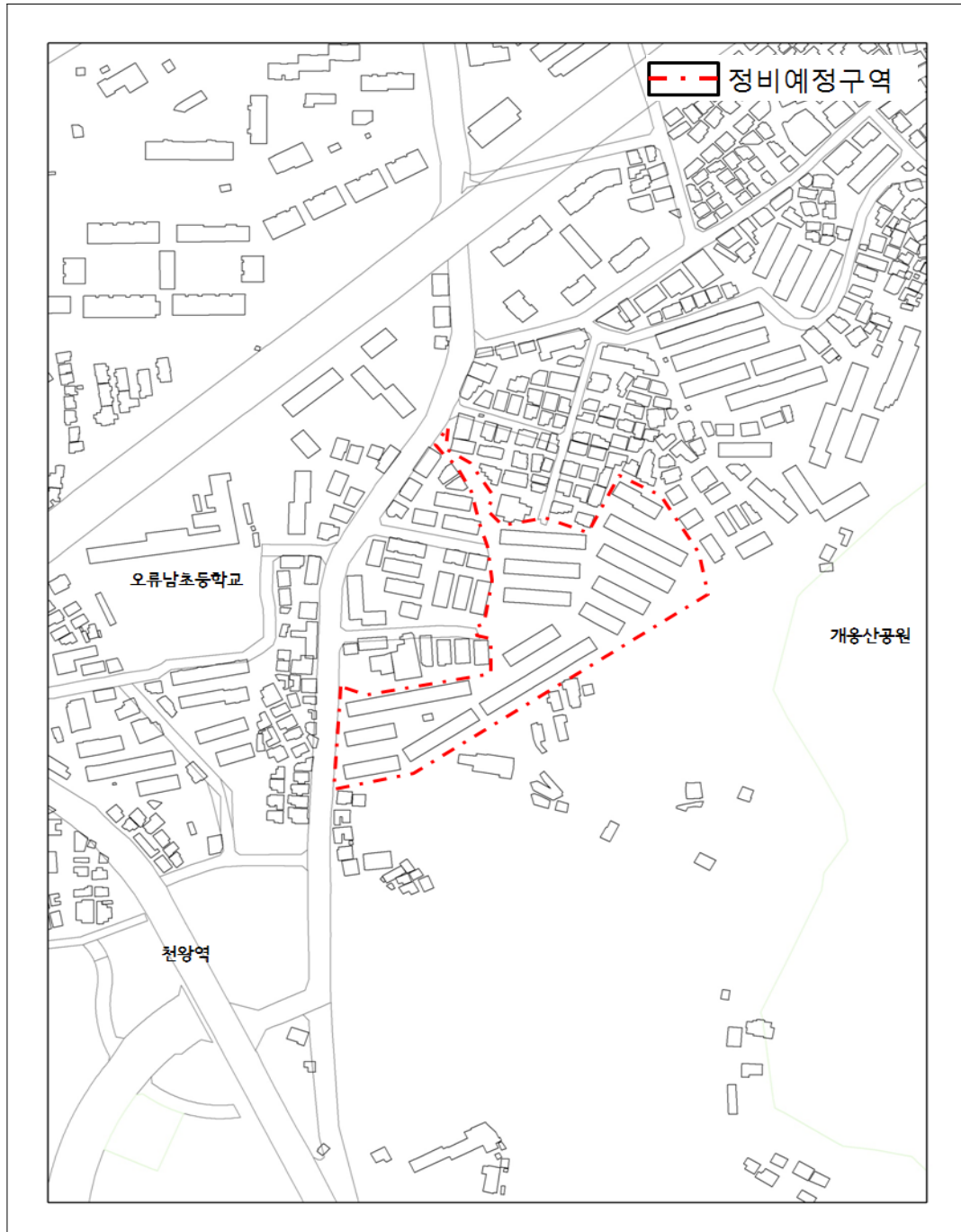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8	구로구	구로동	142-66	4.6	190	60	12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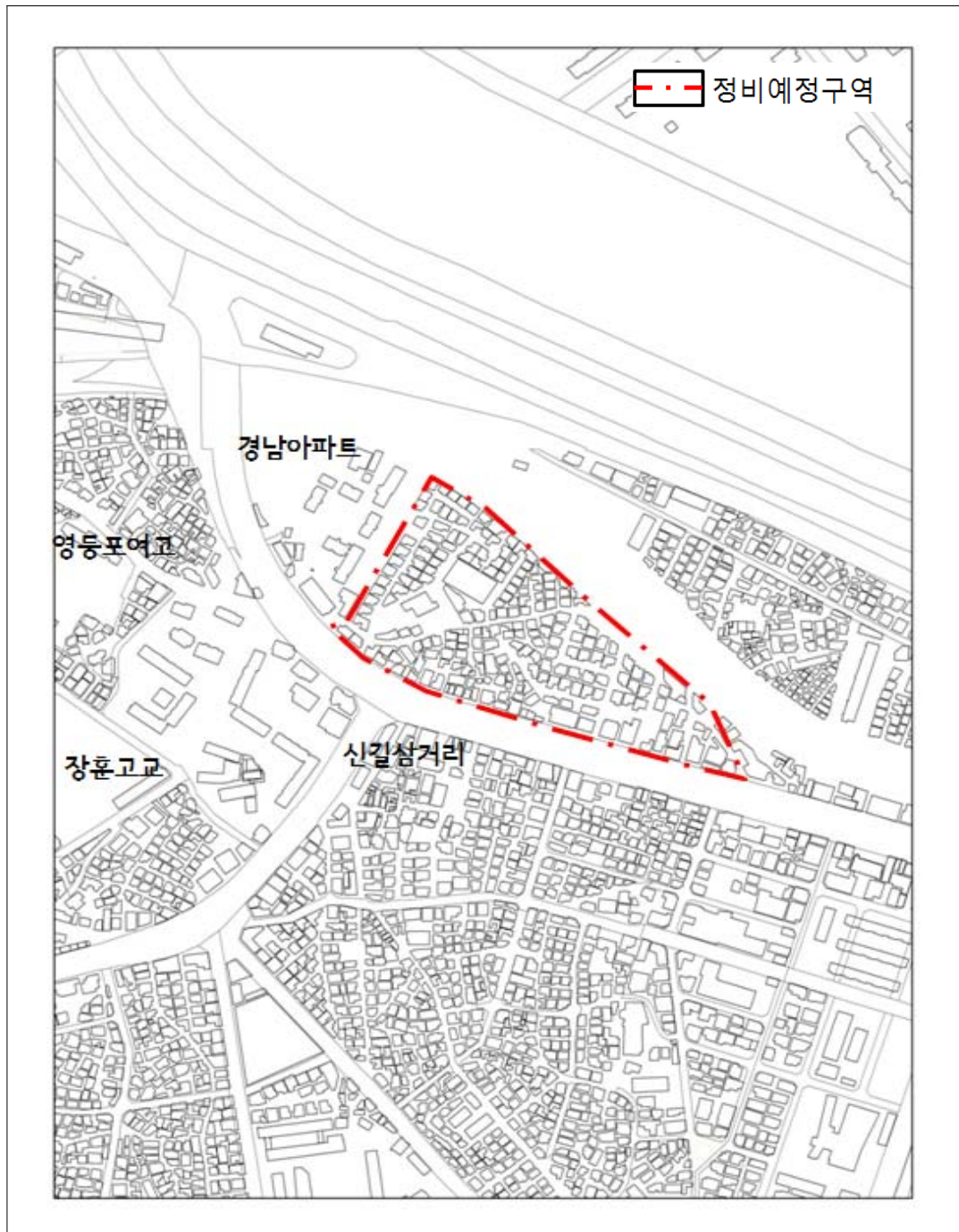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9	구로구	구로동	545	2.0	190	60	12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0	구로구	오류동	156 -15	2.3	170	60		2	공동	현대타운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1	영등포	신길1동	61-13	4.8	190	60	평균층수 15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2	영등포	대림3동	786	1.9	190	60	평균층수 10	2	단독	

 정비예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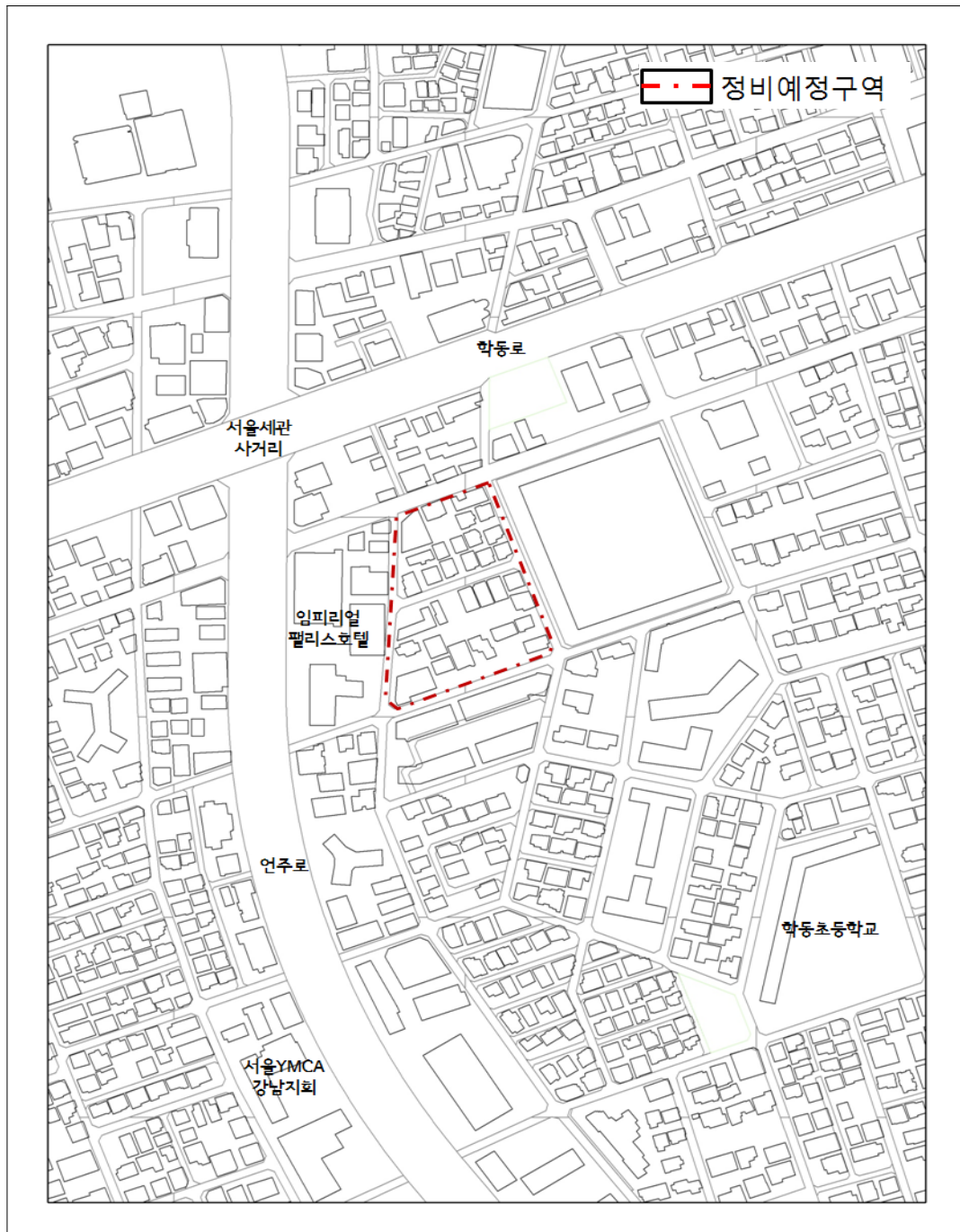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 고
23	동작구	사당동	303	3.7	190	60	7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 고
24	서초구	방배동	975-35	3.1	17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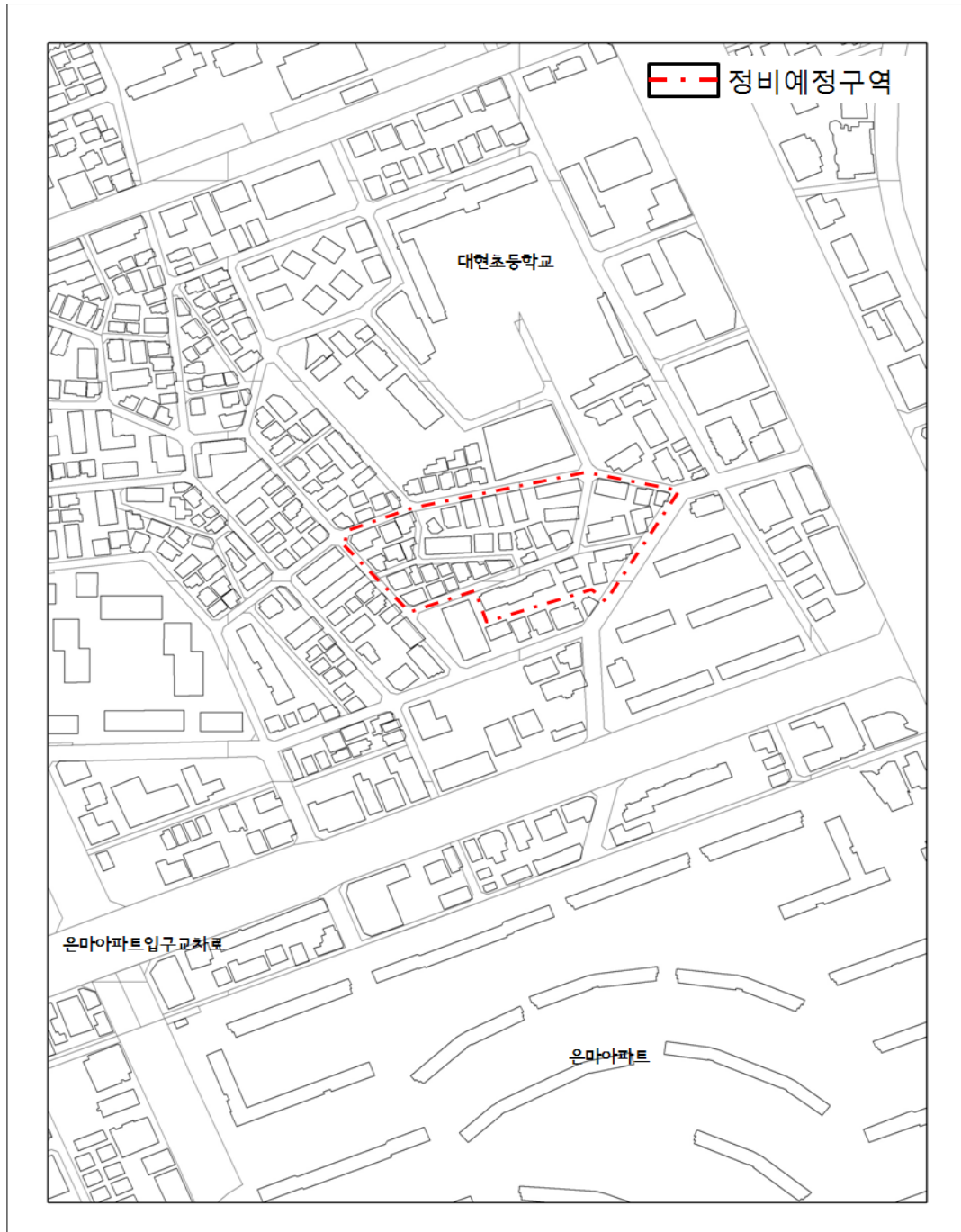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5	강남구	논현동	246	1.2	170	60	5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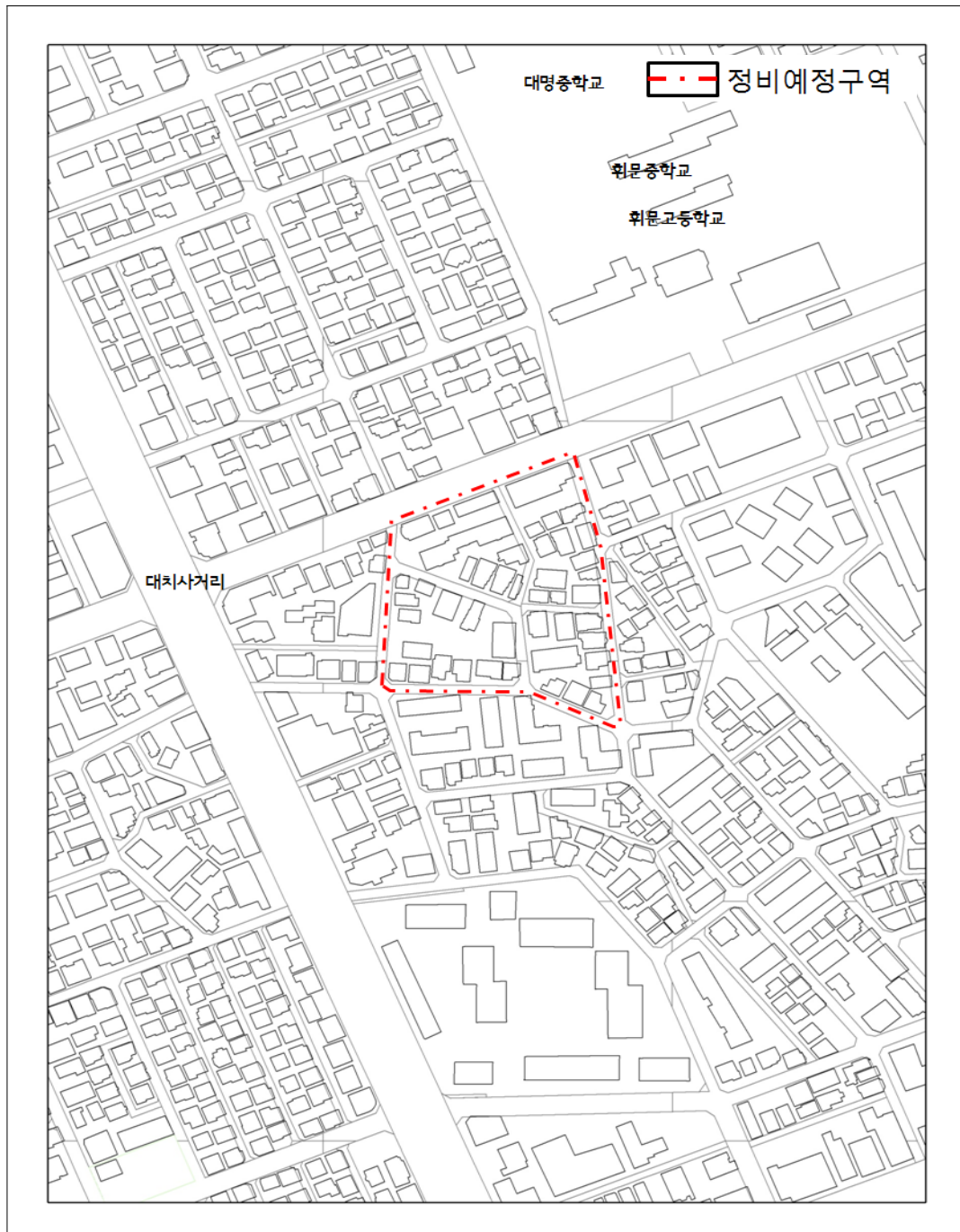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6	강남구	대치동	963	3.1	170	60	7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7	강남구	대치동	977	1.5	17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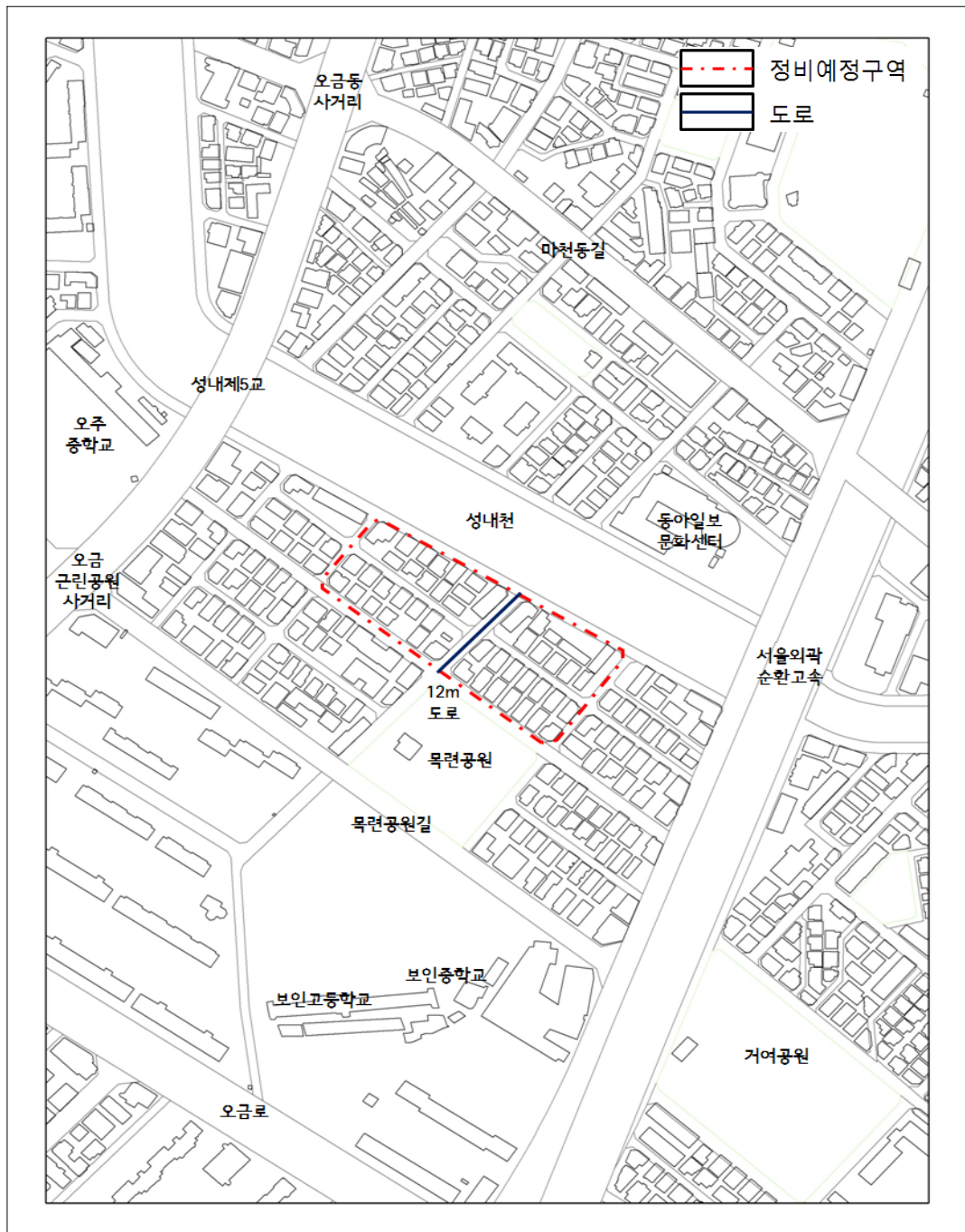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8	강남구	대치동	964	1.5	17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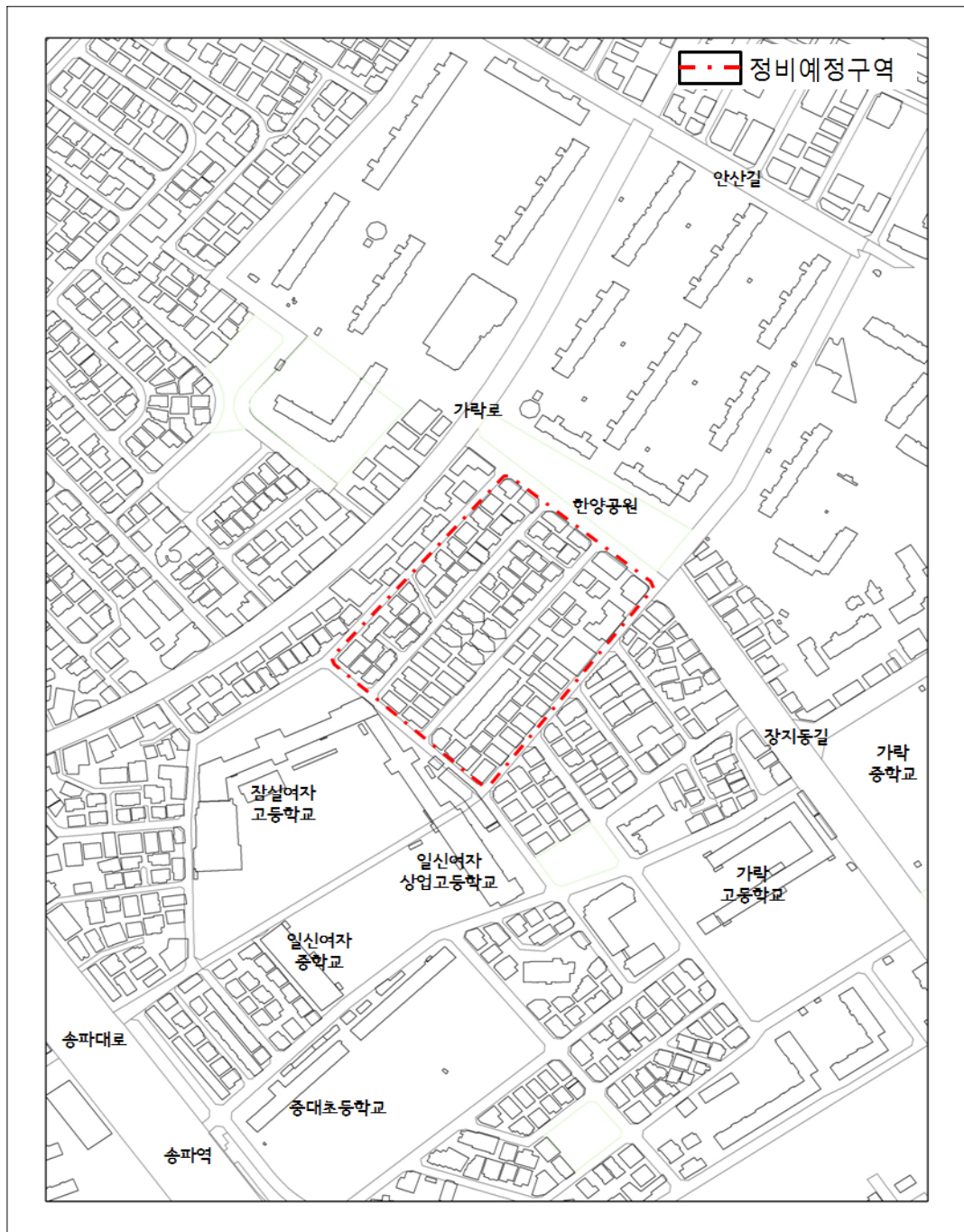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9	송파구	문정동	136	6.4	19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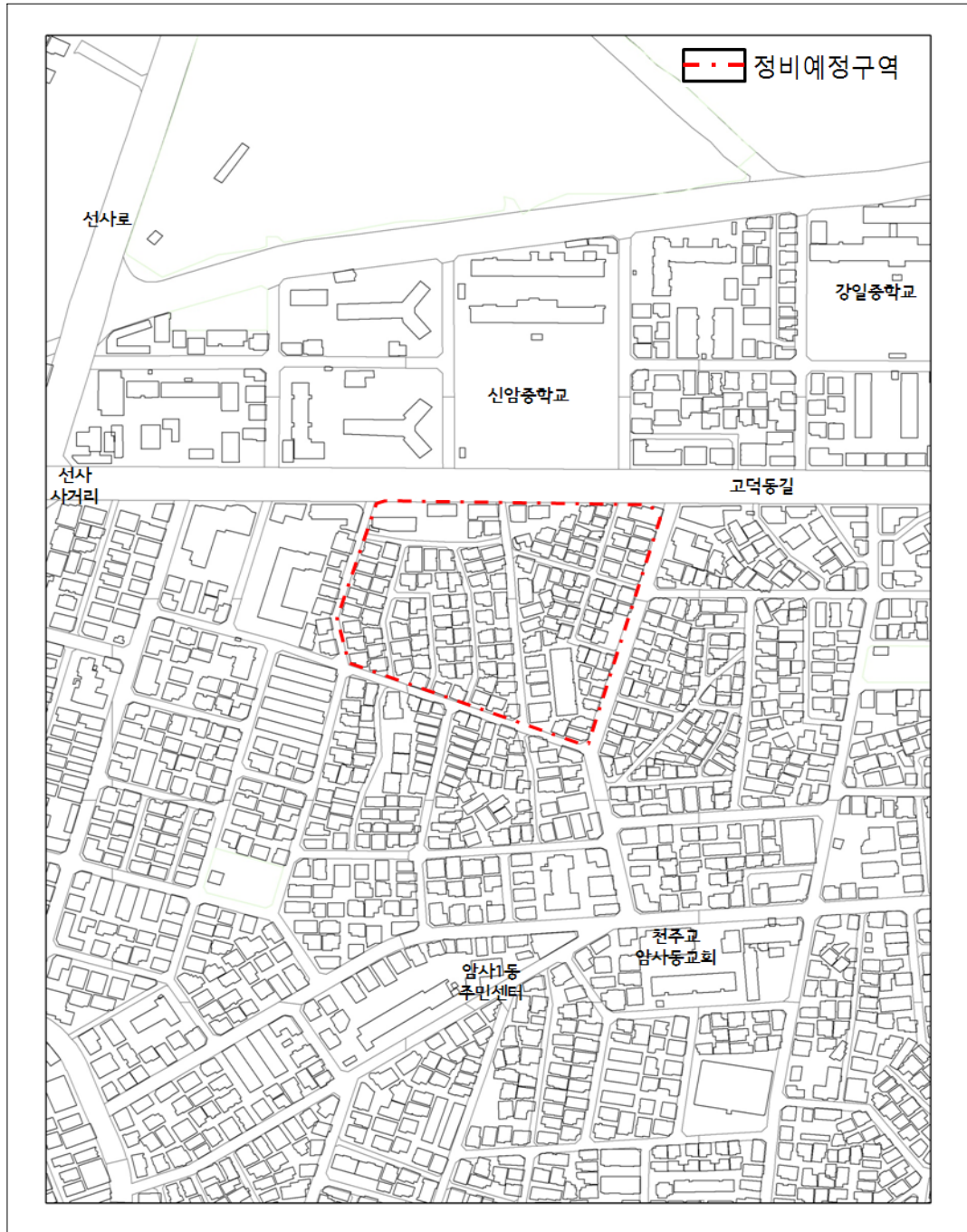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30	송파구	오금동	143	1.2	190	60	7	2	단독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31	송파구	송파동	100	2.5	190	60	7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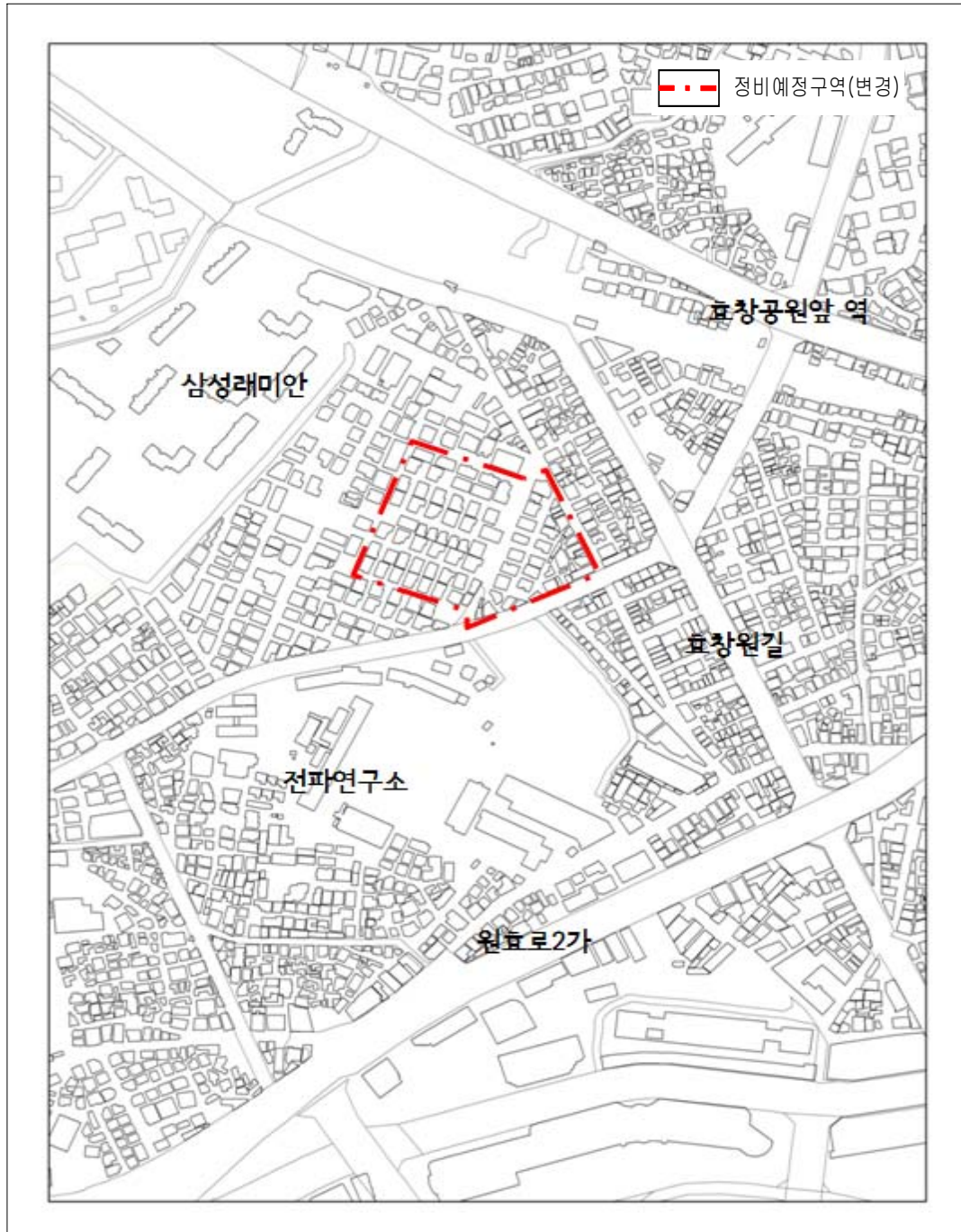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32	강동구	암사동	458	2.8	190	60	12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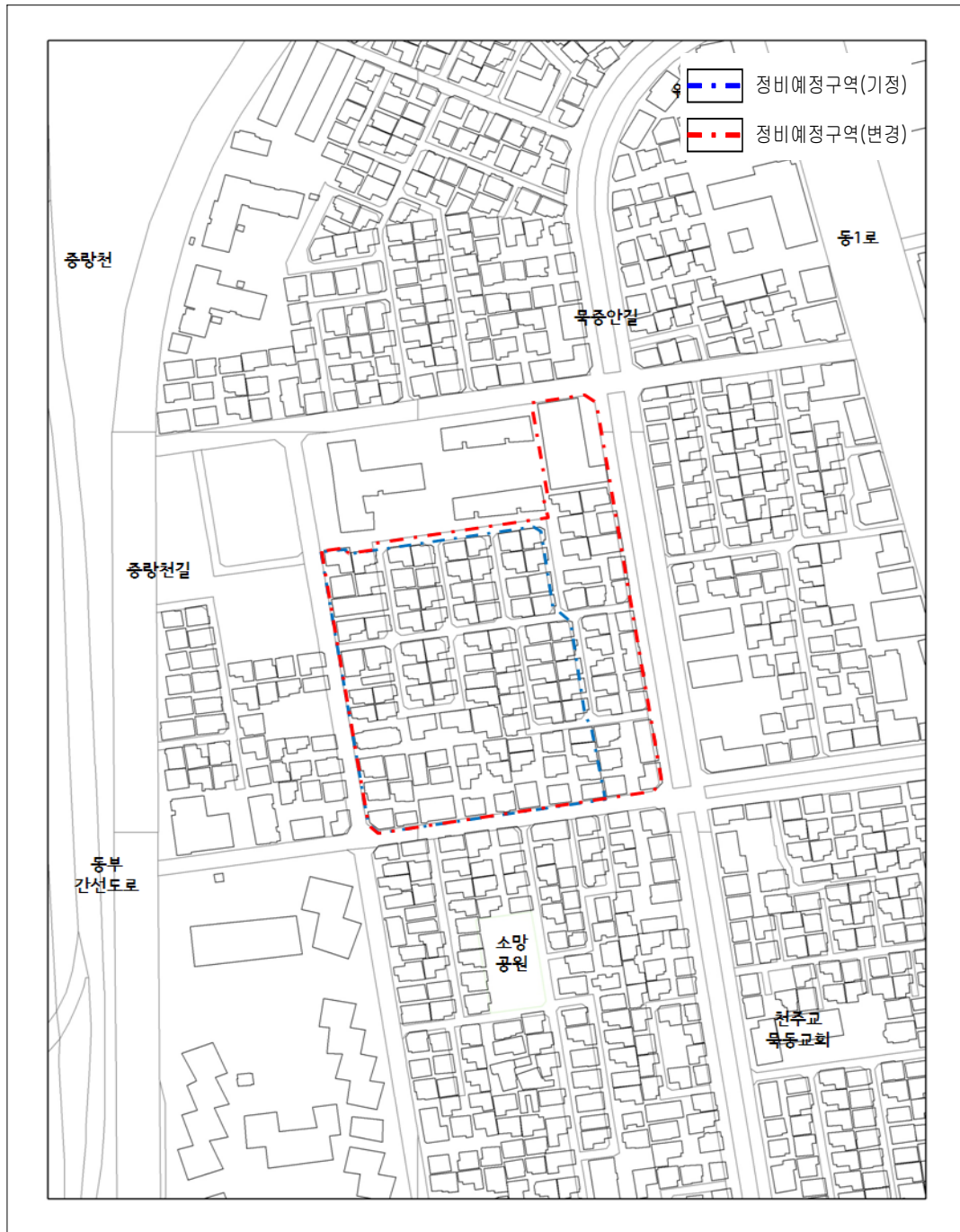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33	강동구	암사동	514	1.3	190	60	12	2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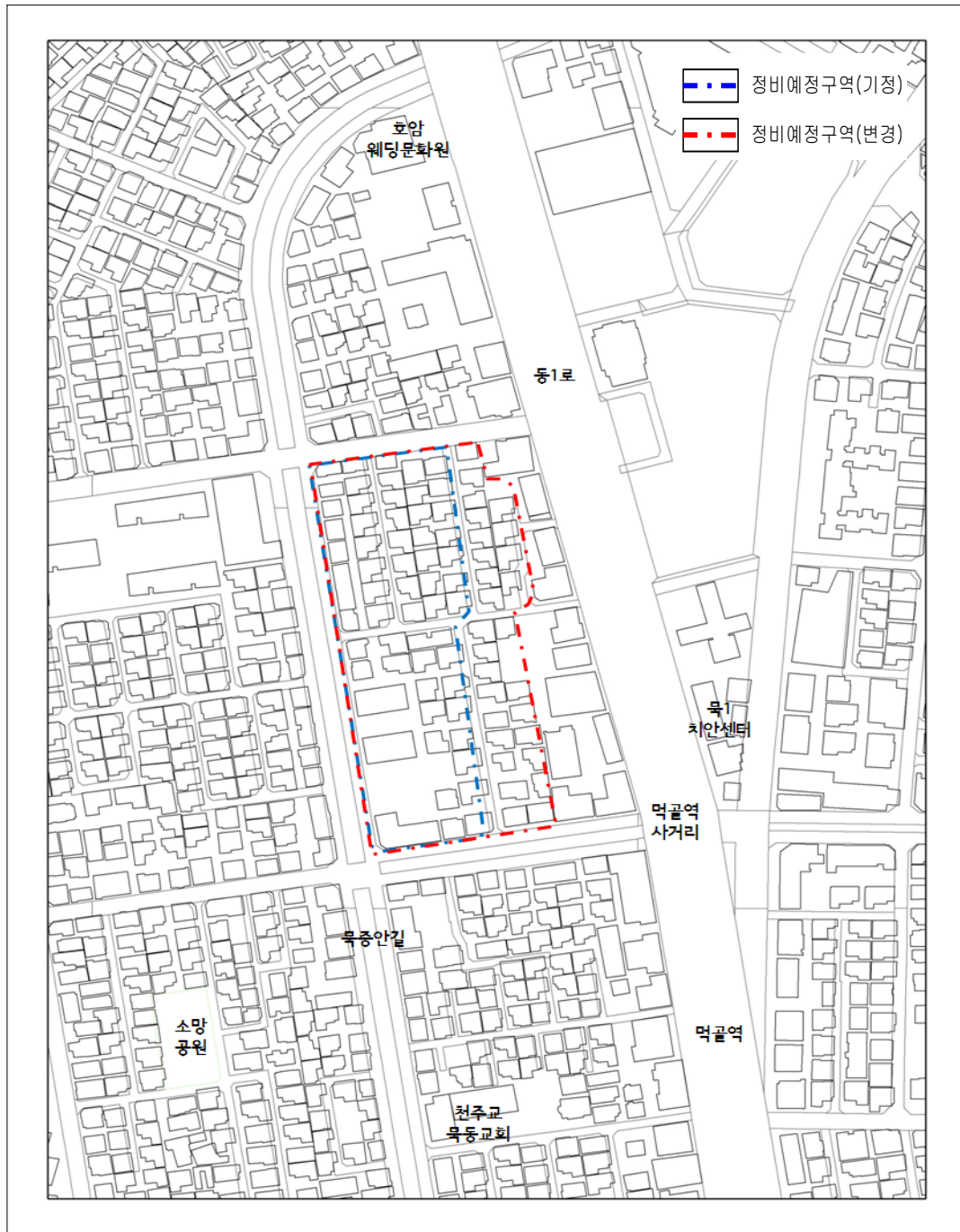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 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추진 단계	주택유 형	비 고
1	용산구	용문동	38-148	1.8	190	60	7	2	단독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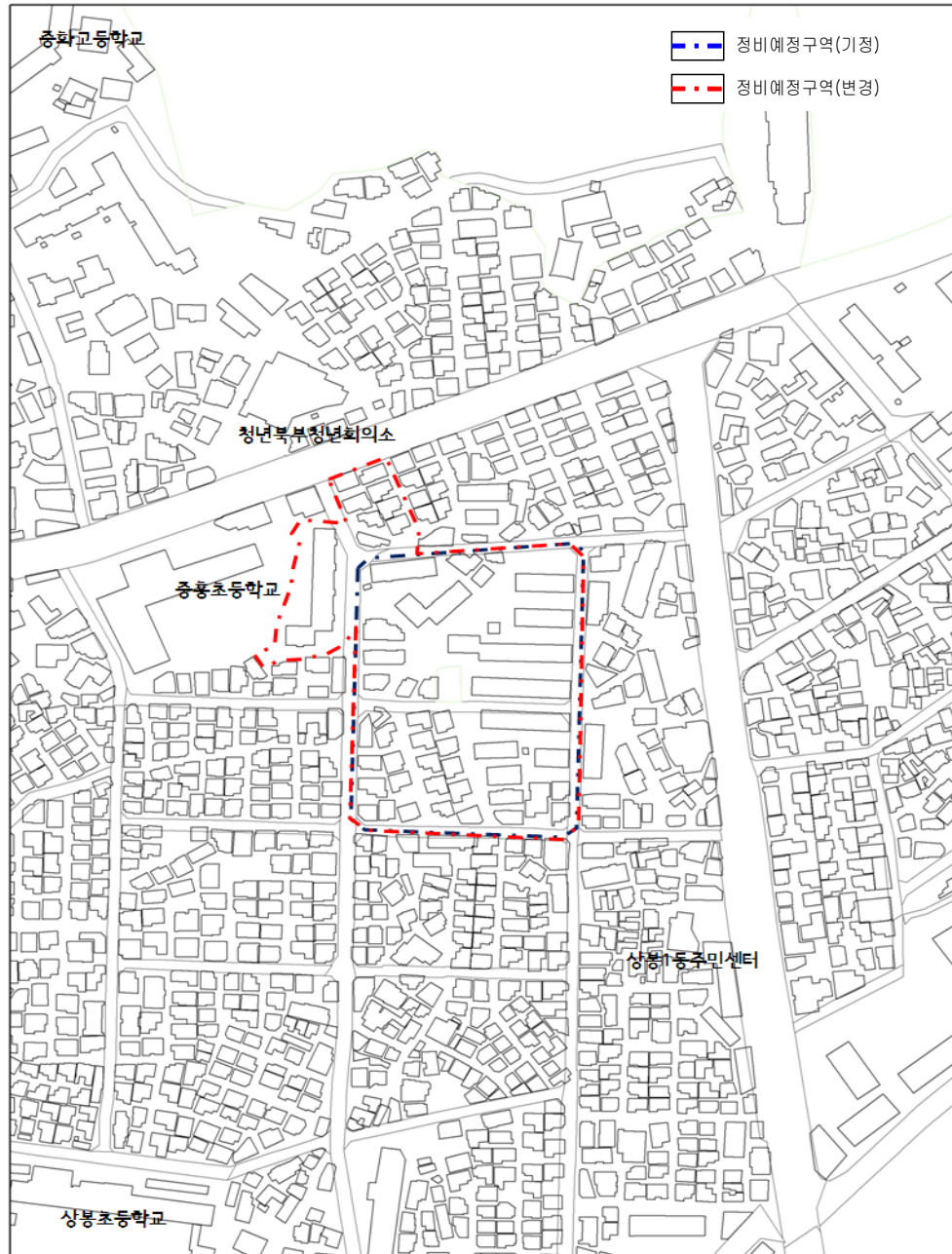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2	중랑구	목동	237-45	2.1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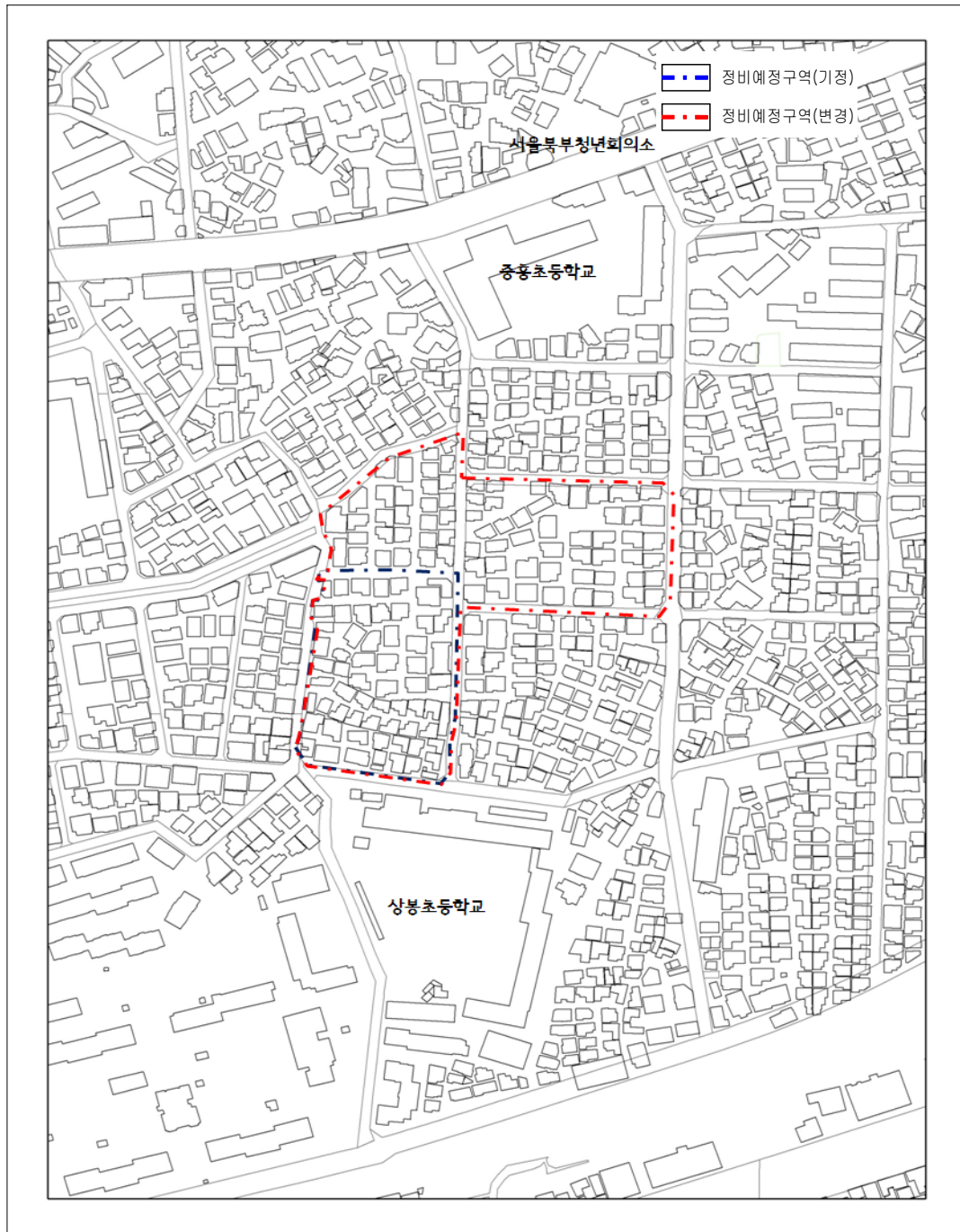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3	중랑구	목동	238-112	1.1	190	50	평균층수 15	1	단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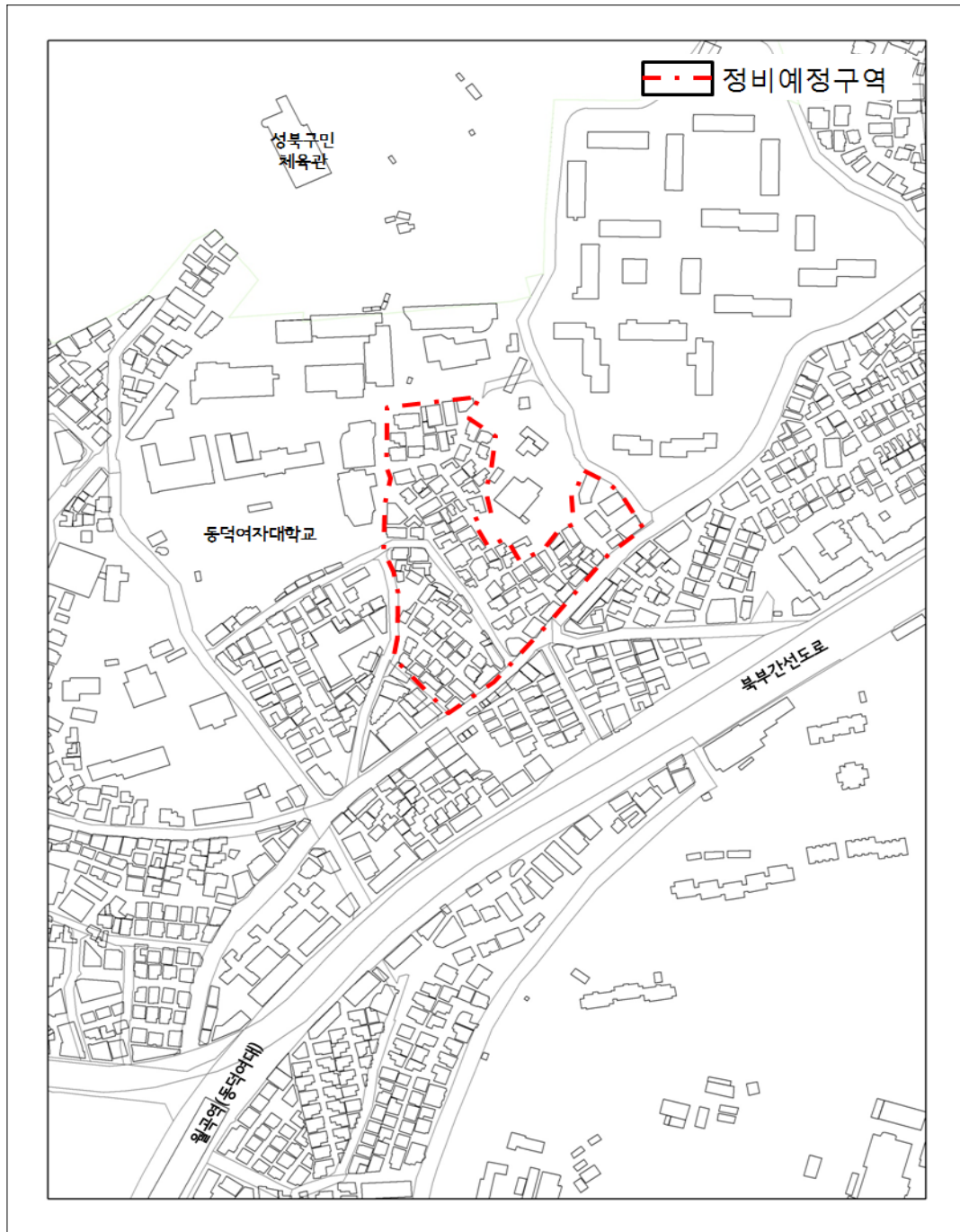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4	중랑구	중화동	131-35	2.2	190	60	7	1	단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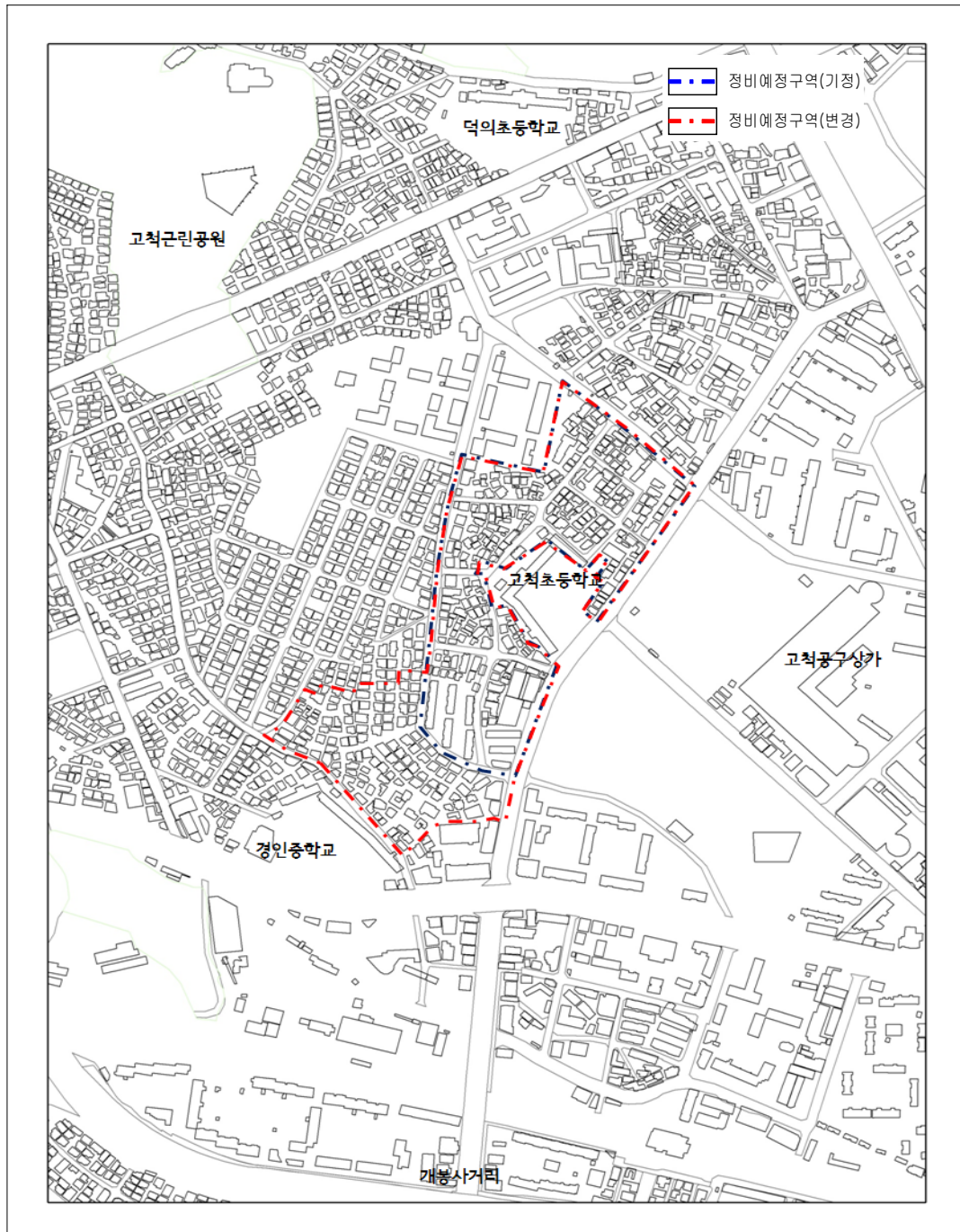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5	종로구	중화동	158-11	2.2	190	60	7	1	단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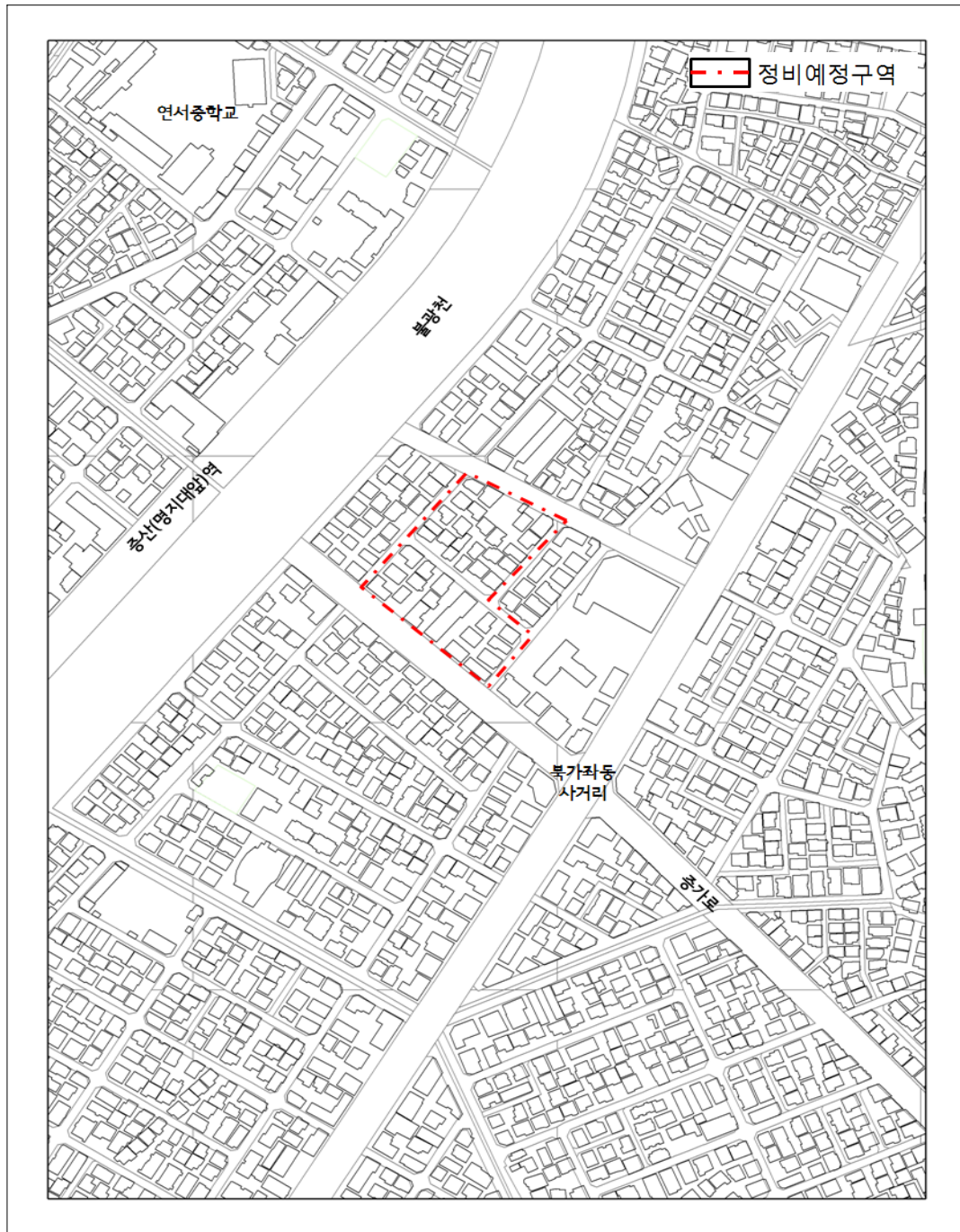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6	성북구	상월곡 동	77-1	2.1	190	60	평균층수 10	2	단독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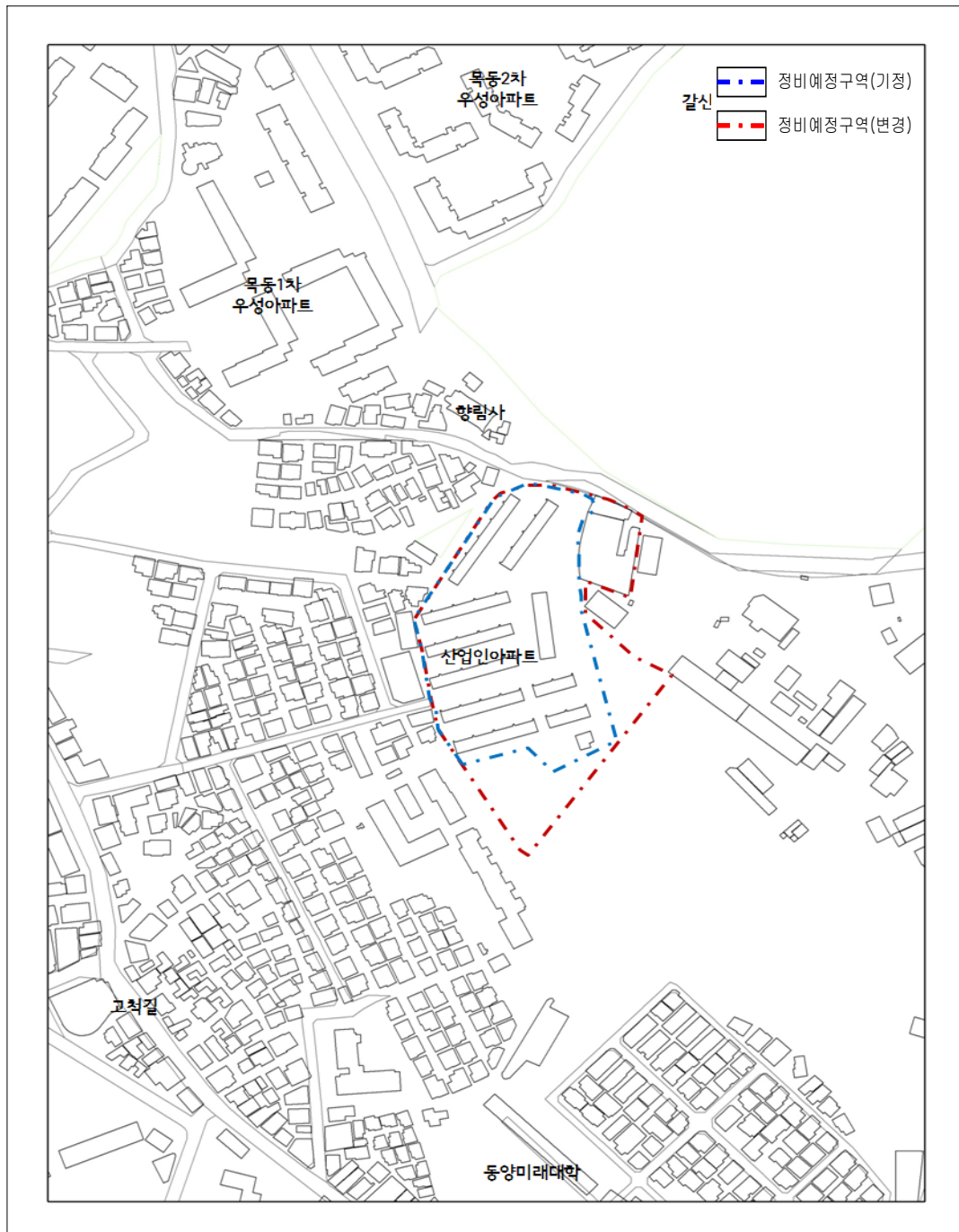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7	구로구	고척동	134-93	9.1	평균계획용적률 (190%,21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확장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8	서대문	북가좌동	330-6	1.0	190	60	평균층수 10	1	단독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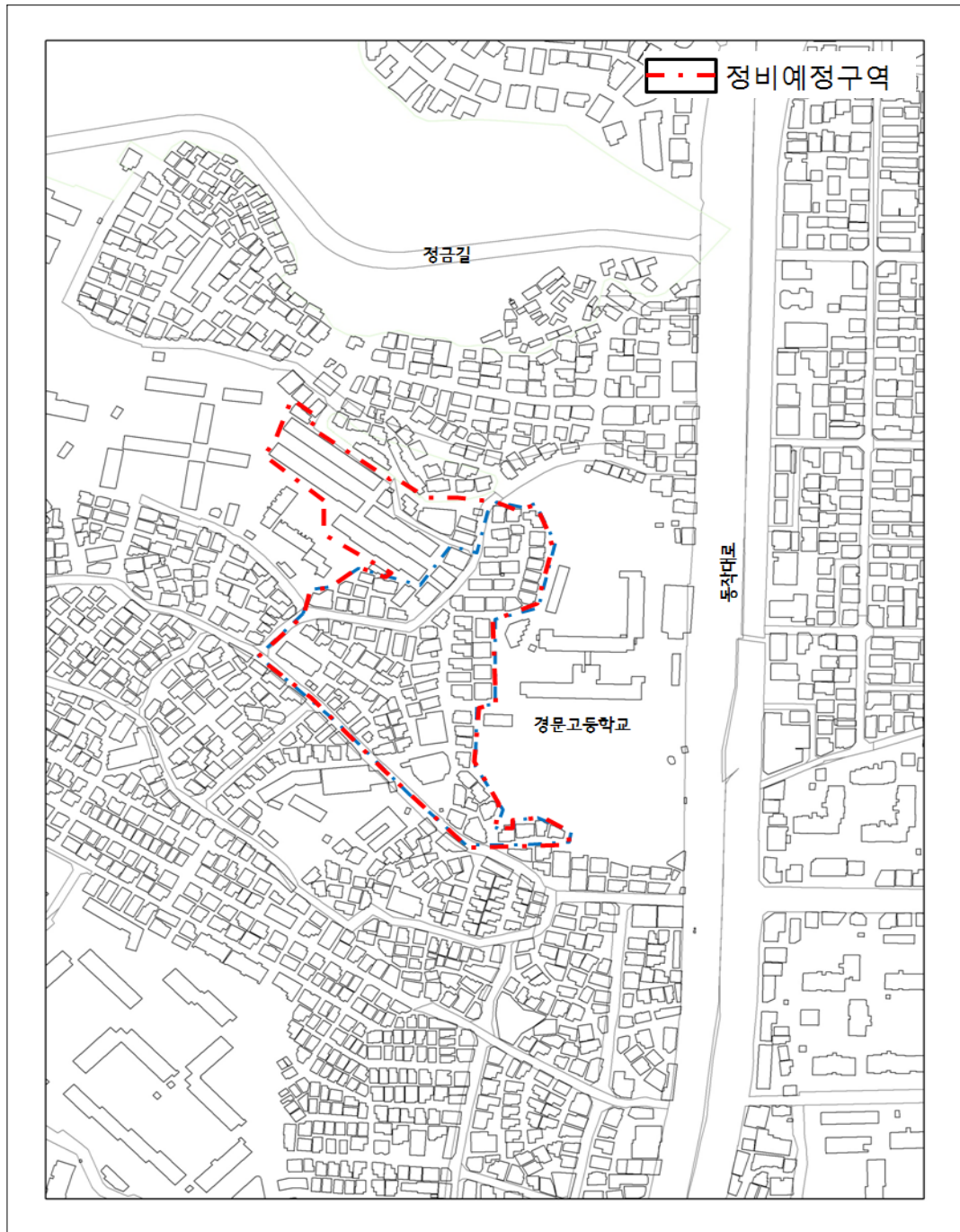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9	구로구	고척동	57-9	1.7	190	60	7	2	공동	-산업인아파트 -확장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0	구로구	구로동	111-2	2.5	210	50	-	2	단독	확장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1	동작구	사당동	41-1 7	3.2	190	60	7	2	단독	확장



연번	자치구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12	서초구	방배동	856-13	3.1	190	60	7	1	단독	확장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06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부의 안건명	주관부서
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도시교통본부 (도로행정담당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11호

남태령근린공원 조성계획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13호(2009.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남태령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장

가. 공 원 명 : 남태령근린공원

나. 면 적 : 13,500㎡

다. 공원조성계획

- 기반시설 : 372.34㎡ (광장 244.12㎡, 도로 128.22㎡)
- 조경시설 : 파고라 등 20.32㎡
- 휴양시설 : 데크 27.68㎡
- 녹지 및 기타 시설 : 13,079.66㎡

라.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마. 관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15-7594)

바.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85 서울특별시청 남산별관 공원녹지과
- ※ 우편으로 제출시 공고일 마지막일 소인분에 한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행정처분 대상 및 내용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1	200958	(주)엔티씨정보기술	양태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1-11 2층	기준미달 (기능계1)	영업정지15일 10.4.23~5.7
2	200582	청솔네트웍스(주)	고철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 411호	기준미달 (기술계2,기능계1)	영업정지1월 10.4.23~5.22
3	200863	(주)윈디아이에스	임종혁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용산파크자이 디동 317호	기준미달 (기술계1,기능계1)	영업정지1월 10.4.23~5.22
4	200876	(주)벡켄네트웍스	최명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74 거성타워 2-3층	기준미달 (기술계3,기능계1)	영업정지15일 10.4.23~5.7
5	200849	유씨티시스템즈(주)	최영수	서울 광진구 중곡동 18-22 2층	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1월 10.4.23~5.22
6	200219	(주)엔위즈	이기동	서울 구로구 구로동 222-14 에이스하 이엔드타워2차 5층 501호, 502호	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1월 10.4.23~5.22
7	200283	티온텔레콤(주)	김성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7번지 제일빌딩	기준미달 (자본금)	영업정지1월 10.4.23~5.22
8	200193	씨아이이에스(주)	이범	서울 구로구 구로동 170-5 우림 e-biz센터 12층	대표자	영업정지5일 10.4.23~4.27
9	200799	(주)동방	김형곤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18번지 22층	대표자	영업정지5일 10.4.23~4.27
10	111271	(주)디앤에스테크놀로지	이원우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5 대지빌딩 303호	소재지	영업정지5일 10.4.23~4.27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23조, 제66조제3호, 제5호,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별표8

3. 행정처분 일자 : 2010. 4. 16

※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담당관 (02-6360-499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23호

2010년도 제6차 건축물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가. 심의일시

○ 2010. 4. 16(금) 16:00 ~ 18:07

나. 심의장소 : 별관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7건 10작품(조각 8작품, 회화 2작품)

라. 심의결과

○ 승인 : 6작품(조각 4작품, 회화 2작품)

○ 재심 : 4작품(조각 4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기획담당관 (☎ 02-6361-3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술장식품별 심의결과

【제 6차 심의위원회 - 2010. 4. 16(금)】

연번	건물명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재심	
1-1	농심신대방동 사옥	회화	Pens(연필그림)	○		
1-2		회화	Flower of Clock(시계꽃)	○		
2	길음제8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각	순환계-흐르는江	○		
3	효창파크푸르지오	조각	생명의 요소-아침	○		
4	남산플래티넘	조각	Jubilante-기쁨의 공간	○		
5	미아제10-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각	외출준비		○	예술성·조형성 부족 환경과의 부조화
6-1	종암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각	일출		○	예술성·조형성 부족 환경과의 부조화
6-2		조각	비상		○	예술성·조형성 부족 환경과의 부조화
6-3		조각	관계 -남과 여-		○	예술성·조형성 부족 환경과의 부조화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각	행복한 동행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833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1조의3제4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망에 대하여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10. 4. 22.(목) ~ 2010. 5. 6.(목)

2. 의견 제출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안) 조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민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안)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과 및 각 자치구 도로명주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과

- 전 화 : 02-731-6635 (FAX : 02-3707-8148)

- 주 소 :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9층

-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새주소안내홈페이지(<http://address.seoul.go.kr>)참조

○ 각 자치구 도로명주소업무 담당부서 및 연락처

연번	구분	부 서 명	전화번호	FAX	우편번호	주 소
1	종로구	토지정보과	731-1601	731-1175	110-711	종로구 상봉길 50 (수송동 146-2)
2	중구	토지관리과	2260-1722	2260-1129	100-701	중구 배오개길 76 (예관동 120-1)
3	용산구	지 적 과	2199-6980	2199-8323	140-823	용산구 반포로 239 (이태원동 34-87)
4	성동구	부동산정보과	2286-5394	2286-5921	133-701	성동구 고산자로 10 (행당동 7)
5	광진구	지 적 과	450-7753	2201-1041	143-702	광진구 자양로 150 (자양동 777)
6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2127-4230	3299-2615	130-703	동대문구 하정로 145 (용두동 39-9)
7	중랑구	지 적 과	2094-1512	2094-1469	131-701	중랑구 봉화산길 179 (신내동 662)
8	성북구	지 적 과	920-3745	920-3768	136-706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411)
9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901-6607	901-6583	142-701	강북구 구청길 12 (수유동 192-59)
10	도봉구	부동산관리과	2289-1454	2289-1739	132-701	도봉구 마들길 656 (방학동 720)
11	노원구	자치행정과	2116-3144	2116-4609	139-703	노원구 노해길 183 (상계동 701-1)
12	은평구	지 적 과	350-1594	350-1742	122-702	은평구 은평구청길 8 (녹번동 84)
13	서대문구	지 적 과	330-1094	330-1498	120-703	서대문구 연희로 165 (연희동 168-6)
14	마포구	지 적 과	3153-9545	3153-9549	121-711	마포구 난지도길 30 (성산동 370)
15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2620-3498	2620-4433	158-702	양천구 목동동로 75 (신정동 321-4)
16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2600-6477	2600-6638	157-701	강서구 화곡로 153 (화곡동 980-16)
17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860-3184	860-2626	152-701	구로구 가마산길 340 (구로동 435)
18	금천구	자치행정과	2627-1067	890-2194	153-701	금천구 시흥대로 482 (시흥동 1020)
19	영등포구	지 적 과	2670-3722	2670-3549	150-720	영등포구 당산로 124 (당산로3가 385-1)
20	동작구	지 적 과	820-9168	820-9990	156-701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노량진동 47-2)
21	관악구	지 적 과	880-3635	881-4990	151-701	관악구 관악로 462 (봉천동 1570-1)
22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2155-6925	2155-6929	137-704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1376-3)
23	강남구	지 적 과	2104-1571	2104-2420	135-705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16-1)
24	송파구	토지관리과	2147-2236	424-8222	138-702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천동 29-5)
25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480-1496	471-8005	134-700	강동구 성내동길 27 (성내동 540)

3. 2개이상 자치구에 걸친 광역도로망(안) 조서

관리 번호	도로의길이 (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지점)	예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7	2,200	50~ 100	대로	중구 남대문5가 (서울역 앞)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앞)	별도조서 참조	중구, 종로구	20m	연속부여	세종대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의 묘호를 인용	의견 재수렴
46-3	9,400	25~60	대로, 로	송파구 잠실동 (탄천)	강동구 암사동 (올림픽대로 앞)	별도조서 참조	송파구, 강동구	20m	연속부여	오륜대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는 역사성 반영	의견 재수렴
70	1,000	15	로	종로구 혜화동 (창경궁로)	성북구 성북동 (성북동길)	별도조서 참조	종로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혜화로	주 통과지역의 행정구역 명칭 인용	의견 재수렴
84	5,200	40	대로	용산구 이촌동 372 (한강대교 북단)	중구 봉래동2가 125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20m	연속부여	한강대로	서울의 상징 한강 및 한강대교를 인용	
85	8,300	30~40	로	서초구 양재동 (양재대로)	성동구 옥수동 487(강변북로)	별도조서 참조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20m	연속부여	논현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86	8,800	35	로	성북구 월계동 (종암사거리)	노원구 공릉동(시경계)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노원구	20m	연속부여	화랑로	경유지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의미를 반영	
87	3,300	15	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강동구 성내동 (방아다리길)	별도조서 참조	송파구, 강동구	20m	연속부여	풍성로	풍납동과 성내동명을 혼용	
88	2,700	25	로	동대문구 장안동(한천길)	종량구 망우3동 (용마산길)	별도조서 참조	동대문구, 종량구	20m	연속부여	겸재로	구간에 있는 겸재교량명 인용	
89	700	8	길	마포구 아현동 709(아현교차로앞)	중구 만리동2가 32(만리재길)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중구	20m	연속부여	손기정로	손기정 기념공원의 의미를 인용	
90	2,400	20	로	강남구 자곡동 (밤고개길)	송파구 문정동 (평화교회앞)	별도조서 참조	강남구, 송파	20m	연속부여	새말로	인근지역의 옛 지역명 인용	

관리 번호	도로의길이 (m)	폭	위계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도로관할 행정구역	기초 간격	기초번호 (재시작시점)	예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비 고
91	800	8	길	마포구 마포동 (마포대로)	용산구 산천동 65-1(한강수아파 트앞)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용산구	20m	연속부여	삼개로	옛날 삼개고개라 불리우던 지역명을 인용	
92	2,600	8~15	길	용산구 원효로4가 151-3(원효로)	마포구 서계동 270(만리재로)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마포구	20m	연속부여	효창원로	조선 정조의 장남인 문효세자의 묘인 효창원의 역사성 인용	
93	6,900	6~10	대로	용산구 이촌동 372 (한강대교 북단)	중구 봉래동2가 125	별도조서 참조	용산구, 중구	20m	연속부여	남산 공원길	남산공원에 위치한 지역특성 반영	
94	2,900	15	로	마포구 망원동 (망원빌딩앞프장앞)	서대문구 연남동 (성산로)	별도조서 참조	마포구, 서대문구	20m	연속부여	동교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95	1,778	25	로	동대문구 신설동53-3	성북구 종암동 29-47	별도조서 참조	동대문구, 성북구	20m	연속부여	안암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96	763	12	로	성북구 길음동 1125-3	강북구 미아동 1261-358	별도조서 참조	성북구, 강북구	20m	연속부여	송인로	행정구역명칭 인용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0-6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수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속	서울메트로		직위	사 장		성명	김상돈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183,902	0	0	183,902	
본인	임야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산 67번지 26,380.00㎡ 중 4,397.00㎡	55,402	0	0	55,402	가액변동 없음
본인	임야	충남 천안시 북면 상동리 산 28번지 89,950.00㎡ 중 12,850.00㎡	128,500	0	0	128,500	가액변동 없음
▶ 건물(소계)			424,000	0	0	424,000	
본인	아파트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림경동아파트 건물 155.55㎡	424,000	0	0	424,000	가액변동없음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2,530	0	470	12,060	
본인	자동차	2003년식, SM502, 배기량(1998CC)	6,430	-	-	6,430	가액변동 없음
장녀	자동차	2004년식, 아반떼, 배기량(1495CC)	6,100	0	470	5,630	가액변동

▶ 예금(소계)			902,808	88,497	65,182	926,123	
본인		농협 50,000, 우리은행 398,010(13,188 증가), 대한생명보험 22,440(2,913 감소), LIG손해보험 41,974(560 증가)	501,589	24,148	13,313	512,424	본인 및 자녀 급여소득 (1,2월), 본인연금, 본인 및 가족예금 이자소 득, 자녀 명절축하금 등 으로 증가
배우자		농협 50,000, 대한생명보험 19,534(421 증가), 우리은행 91,845(653 감소)	161,611	10,421	10,653	161,379	
장녀		국민은행 38,000(1,500 증가), 외환은행 16,233(7,452 증가), LIG손해보험 4,320(120 증가), 삼성생명보험 9,000(500 증가), 우리은행 54,031(1,043 감소), 농 협 50,000, 대한생명보험 20,209(862 증가)	182,402	40,607	31,216	191,793	
장남		농협 30,000, 대한생명보험 13,226(334 증가), 우리은행 16,995(2,681 증가), 국민은 행 306(306 증가)	57,206	13,321	10,000	60,527	
▶ 채무(소계)			710	0	710	0	
본인	금융기관채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0(710 감소)	710	0	710	0	대출 학자금 전액 상환
총 계			1,522,530	88,497	64,942	1,546,085	증 감 액 : 23,555천원 (가액변동: -470천원)

구 고 시

◆ 중구고시 제2010-24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실시 계획 인가 정정 고시

1.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22(2010.4.14)호의 고시 사항 중 누락된 건축물 조서의 건축물 및 소유자 현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중 구 청 장

가. 정정내용 :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0-22(2010.4.14)호 건축물 조서 중 아래내용

연번	소재지 (신당2동)	구조	용도	건축년도	규모		소유자		비고
					층수 (지상/지하)	연면적(㎡)	성명	주소	
합계	20동					1,250,821			
15	432-620	벽돌조	주택		지상1층	62,8102	손영철	서울.중구.신당동 826-24	기존무 허가

※ 나머지 사항은 기고시 내용 참조

◆ 용산구고시 제2010-1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시고시 제2007-365호(2007.10.0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된 『단국대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토목과(☎2199-7850)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단국대 이전부지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의 위치 : 한남동 707의31~60의73간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결정(변경)조서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금회구간)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1	변경	대로	3	21	25 (28.5)	보조 간선	연장: 113.0m	행당동333 (한남동 37-3)	한남로 72-1 (한남동4-7)	일반 도로	
2	신설	중로	1	431	15~30	국지 도로	연장: 31.0m	대로 3-21 (독서당길)	한남동 60-12	일반 도로	
3	신설	중로	3	449	12	국지 도로	연장: 70.0m	대로 3-21 (독서당길)	한남동 51-3	일반 도로	
4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연장: 120.0m	중로3-449	중로1-431	일반 도로	
5	신설	소로	3	2	6	국지 도로	연장: 32.0m	중로3-449	한남동50-12	일반 도로	
6	신설	소로	3	3	6	국지 도로	연장: 293.0m	대로3-21 (독서당길)	소로1-	일반 도로	
7	신설	소로	3	4	4	국지 도로	연장: 52.0m	광로1-45	한남동707-31	일반 도로	
계	7개 노선				4~30		연장: 711.0m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58-13호

2) 성 명 : 한스자람(주) 대표 문종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첨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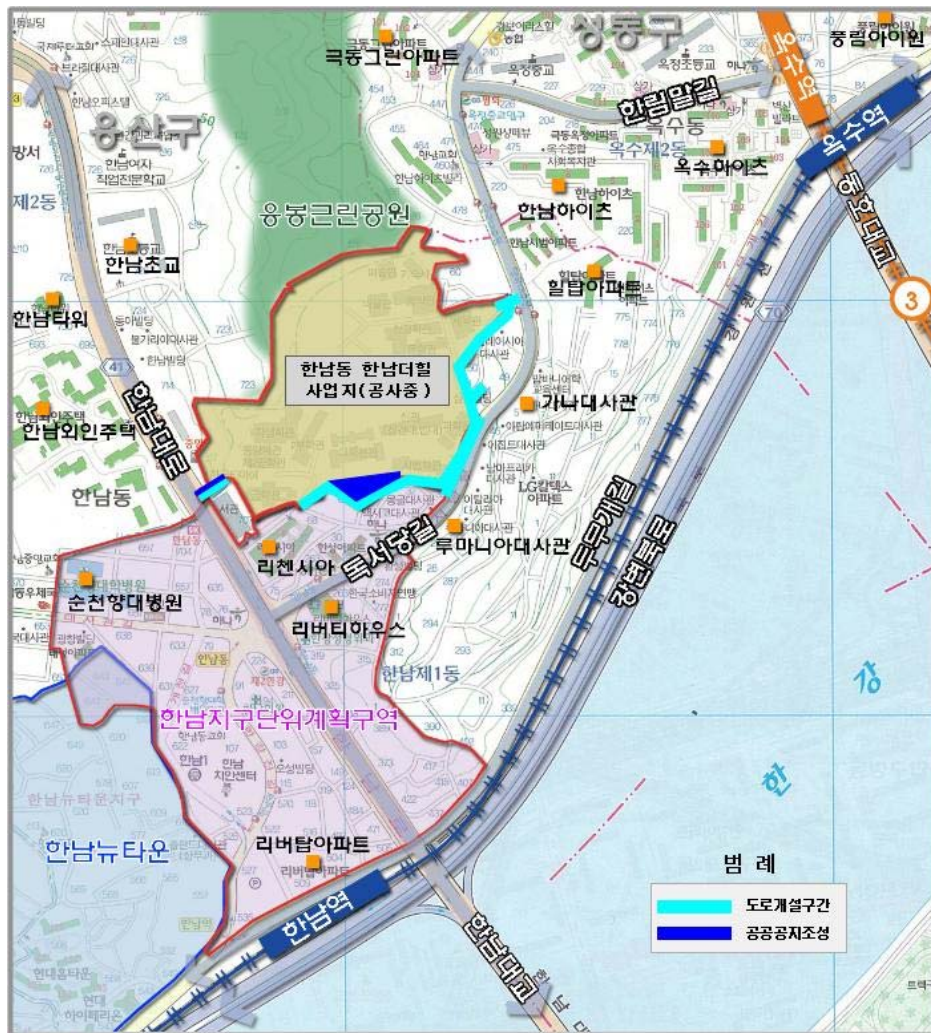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산구청 토목과(☎2199-78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주 소	성 명	권리구분	주 소	권리자
1	한남동	707-31	대	680	542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508호	한스자람주식회사			
2	한남동	60	학	72,260	5,038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508호	한스자람주식회사			
3	한남동	41-2	구	95	47		용산구			
4	한남동	40-7	대	92	36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508호	한스자람주식회사			
5	한남동	33-2	도	665	598		국(건설부)			
6	한남동	1-116	도	324	7		국(재무부)			
7	한남동	5-1	도	4,805	51		국(건설부)			
8	한남동	50-12	도	3,412	154		용산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주소	성명	권리구분	주소	권리자
9	한남동	60-38	구	63	43		용산구			
10	한남동	60-47	도	193	100		국(건설부)			
11	한남동	60-73	도	3,412	116		국(건설교통부)			
12	한남동	60-12	대	3,689	525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508호	한스자람주식회사			
13	한남동	4-23	대	268	268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508호	한스자람주식회사			
14	한남동	4-24	대	79	54	서초구 잠원동 8-12 금원빌딩 508호	한스자람주식회사			
15	한남동	37-5	도	107	1		서울특별시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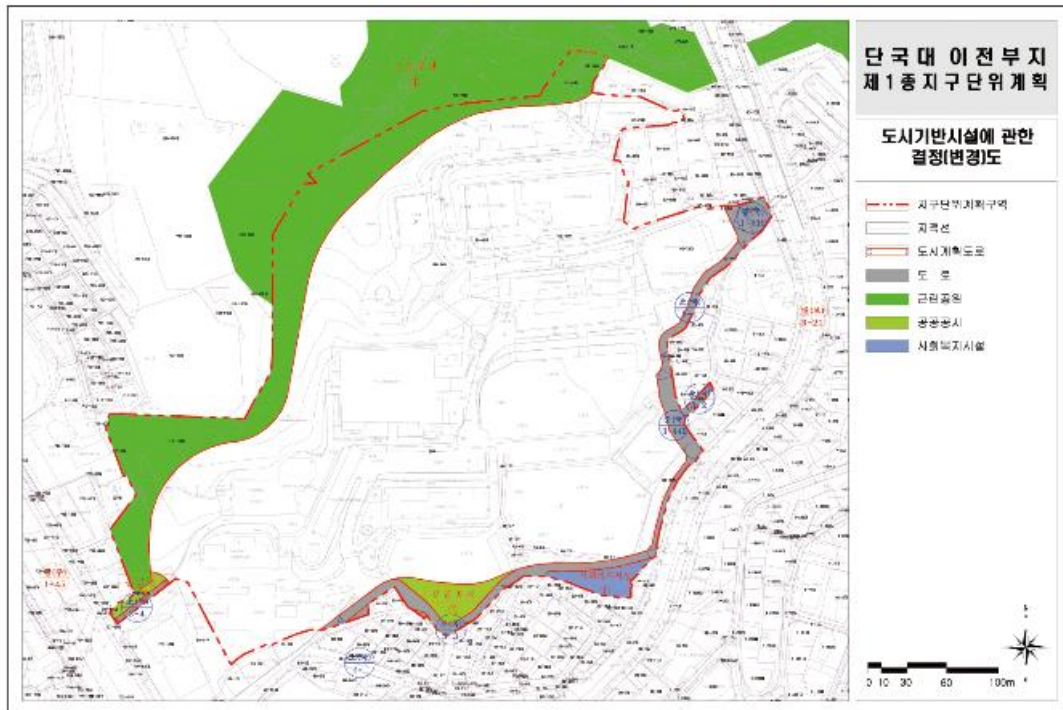
위 치 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용산구고시 2010-11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9호(1993.3.2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88호(2009.12.3.)로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호 일대 학교법인 숙명학원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률시행령 제9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391~5)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2) 명 칭 : 숙명여자대학교 건설사업

나.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청파동 2가 53-12호외 20필지

다.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장 이용태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3-12호

라. 사업기간 : 2001. 1. ~ 2010. 12. 31.

마.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사업면적 (㎡)	시 설 계 획				비고
		건축면적 (건폐율)	연 면 적 (용적률)	층 수 (지하/지상)	기타	
당 초	79,111.6	23,825.95 (30.12%)	197,126.86㎡ (163.98%)	3/10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38면), 주민보행통로, 공원조성, 주차장, 백주년기념관 신축, 학생회관·르네상스프라자(연주홀)·지하주차장·서관·도서관 증축, 대학원관, 생물자원보존실·약대수위실·도서관·과학관 증축 및 변경	
변 경	79,111.6	23,379.84 (29.55%)	196,364.84㎡ (163.20%)	3/10	지하차도, 주민이용주차장(38면), 주민보행통로, 공원조성, 주차장, 백주년기념관 신축, 학생회관·르네상스프라자(연주홀)·지하주차장·서관·도서관 증축, 대학원관, 약대수위실·도서관·과학관 증축 및 변경	
증감	-	감446.11㎡ (감0.57%)	감762.02㎡ (감0.78%)	-	· 창업지원센터(1),(2) 멸실 · 생물자원보존실 계획취소 · 경비초소 외 3개동 증축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조서 등 : 별첨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지하철도(폭9m, 연장140m), 주민이용주차장(38면) 시설 후 용산구에 기부채납
- 자. 기타사항
-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보행통로(폭 4m, 연장 181m) 조성
- 차. 관계도서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 광진구고시 제2010-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진구 능동 36-2~능동 65-1(구의동 80-25)번지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일부폐지 및 신설)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광진구청장

가. 변경 및 신설 취지

2007.8.10 서울특별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폐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일부폐지 및 신설)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380	능동 36-2	능동 65-4	일반 도로	'75. 4.23	
변경	소로	3	-	6	국지 도로	230	구의동 613-1	구의동 619-26	일반 도로		연장축소
신설	소로	3	-	4~6	국지 도로	30	구의동 80-25	구의동 620-16	일반 도로	-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디자인과(450-7682) 및 광진구청 도로과(450-785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고시 제2010-28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43-27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변경사유

- 동대문구 휘경동 산6-75중 학교용지 편입구간의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 결과 실제편입 면적 감소 (74㎡→65㎡)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학교	고등학교	동대문구 휘경동43-277일대	12,827	감) 9	12,818	'08.11.06	서고398

- 건축물의 범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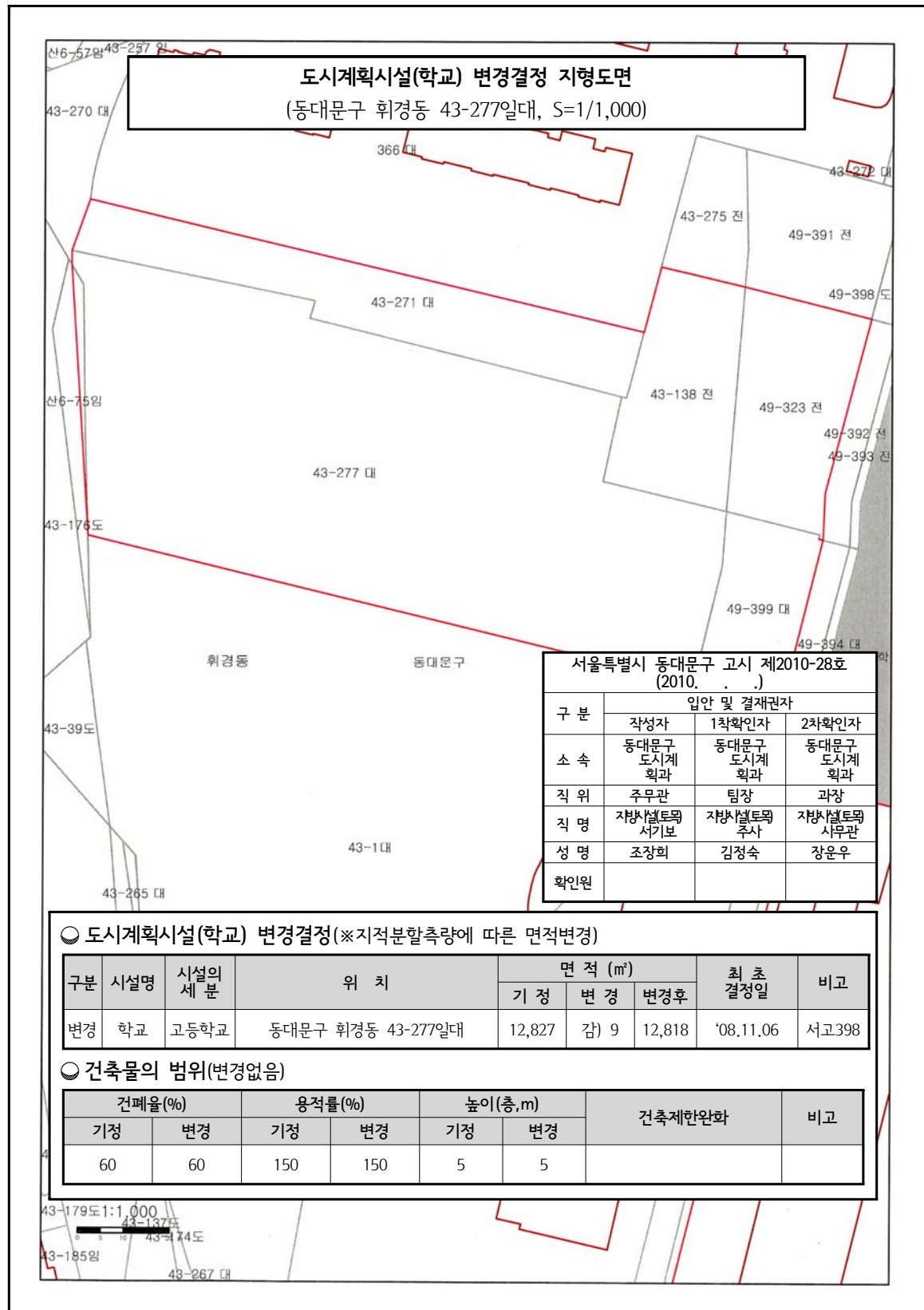
건 폐 율 (%)		용 적 률 (%)		높 이 (층, m)		건축제한 완화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60	60	150	150	5	5	-	-

- 변경결정 사유서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학교	○시설면적감소(12,827㎡→12,818㎡[감9㎡])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근소한 면적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은평구고시 제2010-22호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8호(2007. 3. 8)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된 응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02-351-740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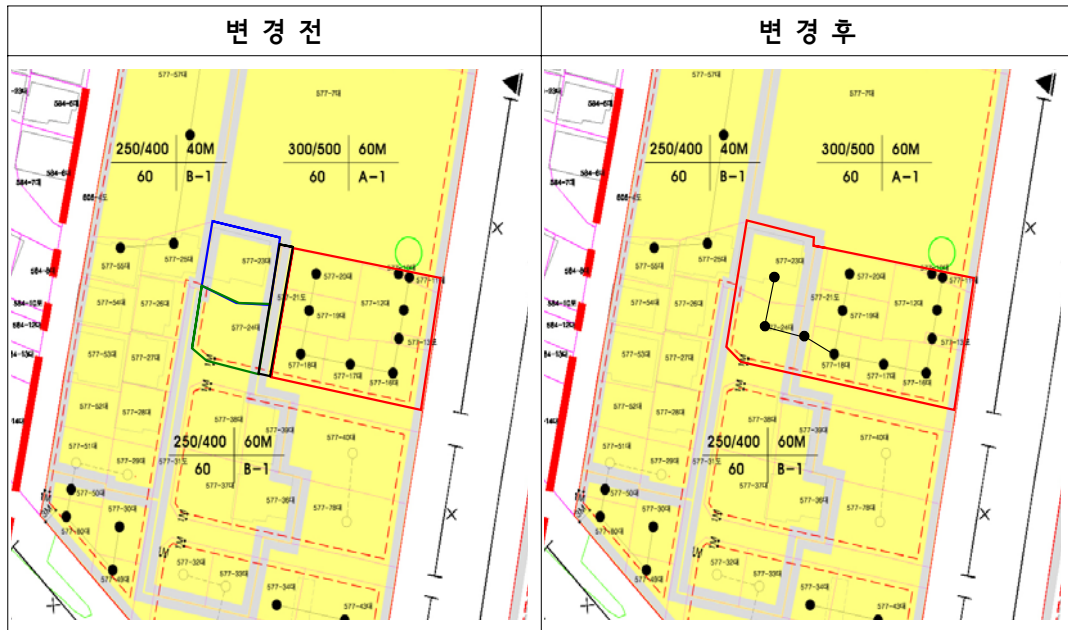
○ 획지계획변경

구역명	가구번호	위 치	획지계획		획지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응암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①	응암동 577-16	공동개발	공동개발	758.9	1,192.7	획지의 조성 계획 변경
		응암동 577-21	도 로		65.5		
		응암동 577-23	단독개발		190.4		
		응암동 577-24	단독개발		177.9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서 지형도면 작성 승인·고시에 갈음합니다.

다. 관계도면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은평구고시 제2010-2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23-22호외 1필지 및 구산동 17-33호외 5필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을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회복지시설	역촌동 23-22호외 1필지	-	385.8	385.8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신설	사회복지시설	구산동 17-33호외 5필지	-	670	670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비고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역촌동 23-22호외 1필지
60%이하	200%이하	7층이하	구산동 17-33호외 5필지

나. 결정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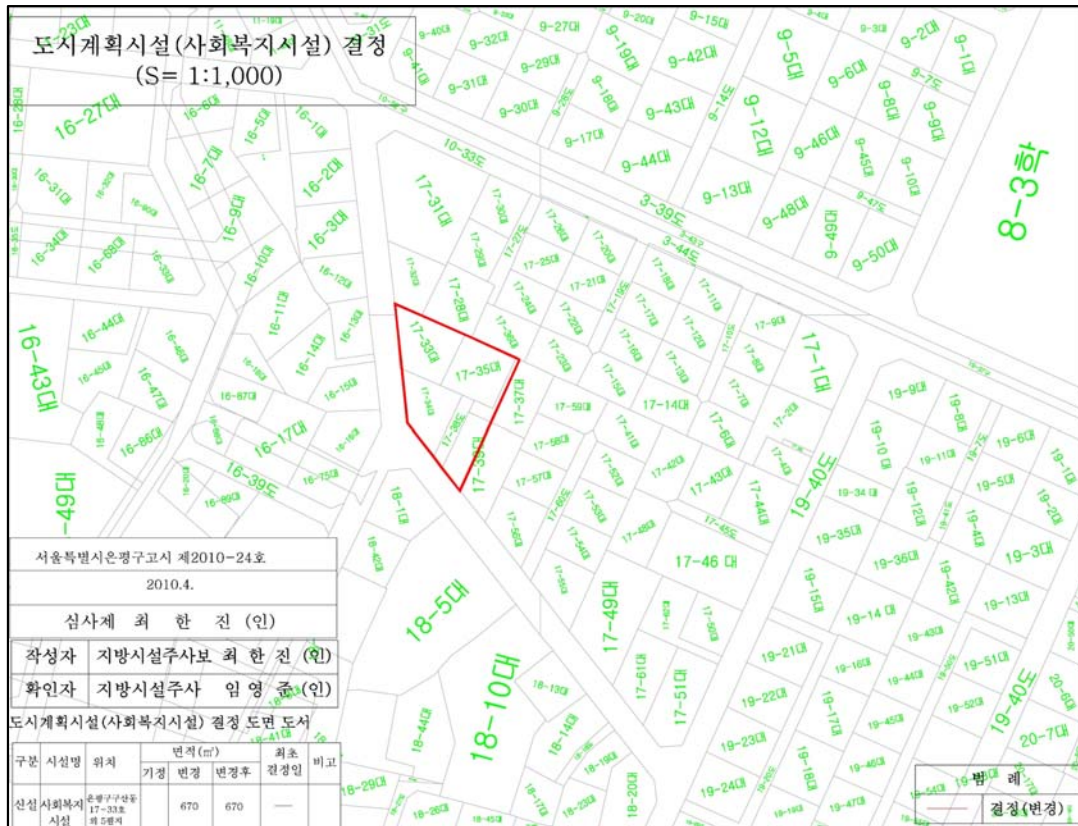
- 고령화 사회 및 동통합등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여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역촌동23-22호 일대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추가로 건립하여 노인여가 활동의 수요 충족 및 지역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구산동 17-33호 일대에 건립하여 노인복지 수요변화에 대응코자 함.

다.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0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마포구고시 제2010-18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84-729 (1984. 12. 4)호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10-177(2010. 3. 18)호로 열람공고한 마포구 도화동 55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교통행정과(☎3153-961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마포구 도화동 557 외 1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주차장)
- 2) 명 칭 : 도화공영주차장

다. 사업의 규모

- 1) 부지면적 : 929.26㎡, 연면적 4,488.56㎡
- 2) 주차면수 : 77면
- 3) 건립개요 : 지하4층 공영주차장, 지상3층 복합청사(부대시설)

라. 사업의 시행자 : 마포구청장

마. 사업의 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2년

바.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비치도면 참조

◆ 구로구고시 제2010-1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조성) 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5호(2005.6.23)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푸른수목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0호(2005.11.1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4호(2005.12.15)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실시계획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8-97호(2008.3.6)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08-18호(2008.4.3)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구로구 향동 10-1번지 일대 공원(수목원)조성 사업기간 변경사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푸른수목원)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구로구청장

1.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구로구 향동 10-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푸른수목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변경없음) : 100,809㎡

라. 사업시행자 등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ㄱ 성명 : 서울특별시청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 사업(보상)대행자 ㄱ 성명 : 구로구청장
-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길340(구로본동 435)

마. 사업 착수·준공 예정일

- 당 초 : 2005. 12. 15 ~ 2010. 4. 3
- 변 경 : 2005. 12. 15 ~ 2011. 12. 31까지

바. 본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조서(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사용·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15-7595) 및 구로구 푸른도시과(☎02)860-2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구분	지 번 (구로구 항동)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유권 이전일)
						성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41,511	100,809						
1	변경없음	9-1	전	4,142	3,22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7.27
2	변경없음	10-1	전	602	60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11
3	변경없음	10-2	전	132	13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8.1.10
4	변경없음	10-3	전	3,365	3,36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0.26
5	변경없음	11	전	4,112	4,11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17
6	변경없음	11-1	전	3,620	3,62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17
7	변경없음	12-27	답	2,931	1,70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0.26
8	변경없음	12-15	도	71	71	이한원	항동 산8-1	-			
9	변경없음	12-28	잡	1,065	19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10	변경없음	31	유	780	78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10.3.23
11	변경없음	31-1	제	1,914	1,914	온수영농 조합법인	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			
12	변경없음	31-2	답	116	116	온수영농 조합법인	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			
13	변경없음	31-3	답	128	12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10.3.23
14	변경없음	31-4	답	242	242	온수영농 조합법인	서울 구로구 항동 100-13	-			
15	변경없음	33	유	15,081	15,08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10.3.23
16	변경없음	33-1	유	316	31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17	변경없음	33-2	유	3,189	3,189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009.4.27

연번	구분	지 번 (구로구 항동)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유권 이전일)
						성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31번지				
18	변경없음	33-3	유	3,085	3,08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19	변경없음	33-4	유	3,756	3,75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20	변경없음	33-5	유	224	22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9.4.27
21	변경없음	43	답	1,111	1,11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2	변경없음	44-1	답	3,395	3,39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3	변경없음	45	답	489	489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4	변경없음	46	답	4,846	4,84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5	변경없음	47-1	답	1,114	1,11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26	변경없음	48-1	답	2,962	2,96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3
27	변경없음	48-2	답	2,542	2,542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28	변경없음	49	전	1,785	1,785	송은규	항동 42-3	-			
29	변경없음	50-2	전	1,435	1,435	박명서 외1인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A 43동 1203호	-			
30	변경없음	50-3	전	1,345	1,34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2.26
31	변경없음	51-1	전	975	975	송은규	항동 51-1	-			
32	변경없음	51-2	철	7	7	황용자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 713	-			
33	변경없음	51-3	철	221	221	황용자	김포군 양촌면 구래리 713	-			
34	변경없음	52-1	전	1,613	1,613	설중복	오류동 14-99 동부골든A 206-1006	박옥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 77-2	근저당권 설정	
35	변경없음	52-4	철	274	125	원영옥	인천시 남구 송의동 2-158	-			
36	변경없음	52-3	철	625	625	원영옥	인천시 남구 송의동 2-158	-			

연번	구분	지 번 (구로구 항동)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유권 이전일)
						성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37	변경없음	55-3	전	810	810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4
38	변경없음	56-3	철	413	7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9
39	변경없음	57-1	철	205	205	국 (건설교통부)		-			
40	변경없음	57-4	철	2,539	1,181	국 (건설교통부)		-			
41	변경없음	58-3	철	294	24	심옥순	고양군 용인면 공덕리 301	-			
42	변경없음	81-1	전	188	18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43	변경없음	81-2	전	595	59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에스케이(주)	서울 종로구 서린동 99	근저당권 부질권	2007.3.15
44	변경없음	81-6	철	314	49	국 (건설교통부)		-			
45	변경없음	81-7	철	850	10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1.8
46	변경없음	92-1	전	1,448	1,44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47	변경없음	92-4	철	942	221	국 (건설교통부)		-			
48	변경없음	93	전	3,271	3,27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49	변경없음	94	전	1,428	1,42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0	변경없음	95	전	1,124	1,124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1	변경없음	96-1	답	417	417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2	변경없음	96-2	답	2,555	2,555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3.15
53	변경없음	96-3	전	598	598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54	변경없음	96-4	전	921	921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12.28
55	변경없음	97	전	1,546	1,54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7.4.27

연번	구분	지 번 (구로구 항동)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소유권 이전일)
						성명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 관리명세	
56	변경없음	221-1	도	397	24	국 (건설교통부)		-			
57	변경없음	222-45	구	7,713	3,699	국(건설부)		-			
58	변경없음	222-48	철	6,182	962	국 (건설교통부)		-			
59	변경없음	222-49	철		52	국 (건설교통부)		-			
60	변경없음	222-52	철		681	국 (건설교통부)		-			
61	변경없음	222-46	구	5,035	1,719	국(건설부)		-			
62	변경없음	224-1	도	6,595	19	국 (건설교통부)		-			
63	변경없음	산18-3	임	3,273	823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6.9.4
64	변경없음	산19-1	임	5,653	3,189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8.1.10
65	변경없음	산20-1	임	9,917	2,156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2008.1.10
66	변경없음	산23-5	철	2,678	279	대한민국 (철도청)		-			

◆ 구로구고시 제2010-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3.1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 2009-51(2009.6.4)호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 2010-212(2010.3.25)호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된 『오류동 1-25번지 가각정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25번지 주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오류동 1-25번지 가각정비사업
- 다. 사업규모
 - 가각정비 폭 2.5m, 연장 6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가마산길 340(구로본동 435번지)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도로건설과(☎860-3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오류동 1-25번지 가각정비사업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비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구 오류동1-154	대	3	도로	최기춘	오류동 1-25				오류동 1-25
			8	대지						
2	구로구 오류동1-155	대	1	도로	김호영	오류동 1-43				오류동 1-43
			3	대지						

물 건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관리내용 (모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구로구 오류동 1-154	담장	조적식 L=5m,H=2m	1식	담장	최기춘	오류동 1-25			오류동 1-25
		축대	석축 L=3m,H=1.7m	1식	축대					
		수목	목련,드릅나무,연 산홍 사철나무등	1식	조경					
2	구로구 오류동 1-155	담장	블록식 L=3.5m,H=1.5m	1식	담장	김호영	오류동 1-43			오류동 1-43
		차고지 출입문	셔터문	1식	주차장 출입문					

◆ 영등포구고시 제2010-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6호('70.8.31)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었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2010-223호('10.3.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하여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2구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인가고시 하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시설결정일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2구간)	신길동 417-103~433-80, 신길동 442-104~442-107	B= 6m L=190m	인가일로 부터 3년	□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 서고시 제36호('70.8.31)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4(당산동3가 385-1)

라.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바.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사.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에 관계도면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번지 영등포구청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 업 시 행 위 치 :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2구간)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신길동 417-103	답	223	223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지분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2	신길동 417-85	도	325	325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3	신길동 417-102	대	57	57		김춘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73 샘터마을 111-1802				
4	신길동 435-35	답	8	8		전재봉	서울 구로구 오류동 336 동부아파트 102-901				
5	신길동 433-80	답	245	245		빈대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669				
6	신길동 442-104	답	162	162	200/407	고도봉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 방배롯데캐슬헤론 102-902				
					207/407	조정숙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 방배롯데캐슬헤론 102-902				
7	신길동 442-106	도	42	42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8	신길동 442-107	답	203	203	21600/82621	고도봉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 방배롯데캐슬헤론 102-902				
					22356/82621	조정숙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4-1 방배롯데캐슬헤론 102-902				
					38665/82621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물 건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번지 영등포구청장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 업 시 행 위 치 :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2구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신길동 417-94	답장		1식	신진섭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70 브라운스톤 공덕@ 102-1901				
		나무		2주	신다예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70 브라운스톤 공덕@ 102-1901				
					정진숙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32-22				
		대문	철재	1식	김상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707 현대@ 102-2004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2	신길동 417-63	2층베란다		2㎡	권처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7-63				
		담장	적벽돌	1식						
		나무	대추나무	1식						
		대문	철재	1식						
		화단		1식						
3	신길동 433-80	창고	슬라브벽돌 (1500*30mm)	1식	신명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7-3				
		담장	철재웁스	1식						
		간판		1EA						
		가설물	원형철파이프	1식						
		대문	철재	1식						
4	신길동 433-11	저울	30 t	1식	빈석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17-35				
		담장	적벽돌	1식						
		담장	철파이프	1식						
		간판		4EA						
		적벽돌샘플		5EA						
		호이스트	철재	일부						
		자바라문	레일포함	1식						

영 업 권 조 서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4번지 영등포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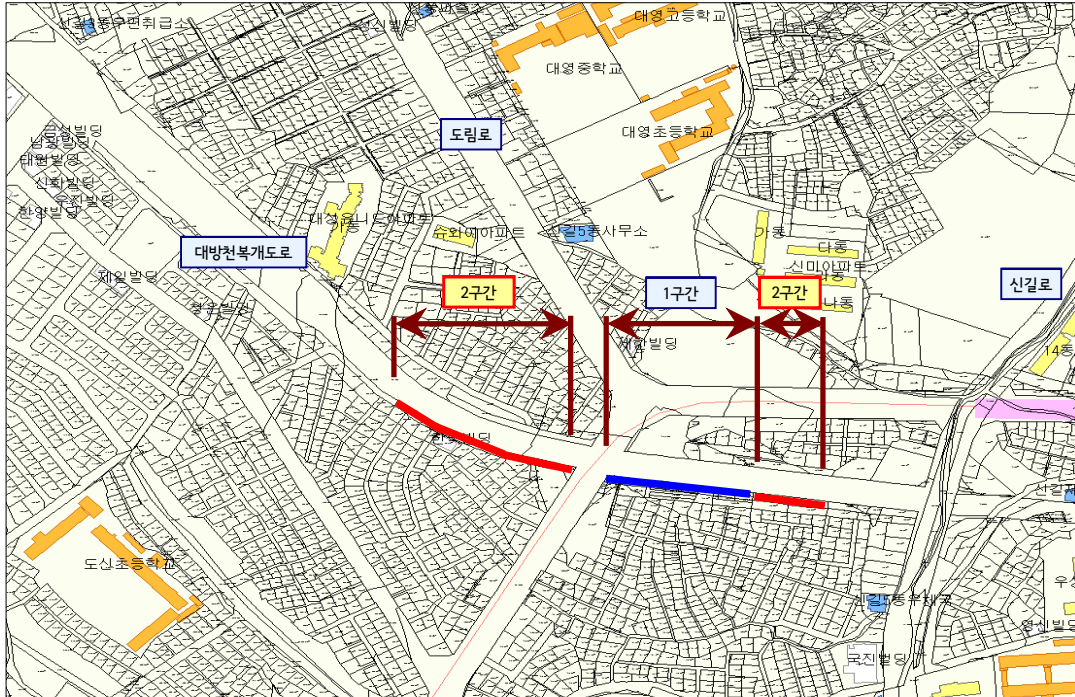
사 업 의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 업 시 행 위 치 :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2구간)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상 호 명	업 종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433-80	영업권	대복자원		신명식	신길동 417-3				
2	신길동 433-11	영업권	신길철강(주)		빈석우	신길동 417-35				

【공사명 : 대방천변 도로개설공사】

□ 위 치 도



□ 현황사진



◆ 동작구고시 제2010-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90.10.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0-191호(2010.3.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상도4동 248-11~247-1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같은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820-9905)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상도4동 248-11~247-1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 상도4동 248-11~247-1간 도로개설공사
 라. 면적 또는 규모 : B=4m, L=92m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길16)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16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상도4동 248-11 ~ 247-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명세	성명	주 소	
1	상도동 248-48	대	18	18	조선행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17-1				
2	상도동 248-50	대	10	10	허종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86 한양아파트 43동 1005호	근저당권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3	상도동 248-51	대	18	18	신애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48-18				
4	상도동 248-49	대	1	1	장명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7 은하마을 510동 1202호				
5	상도동 248-52	대	13	13	신경호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8-10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16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상도4동 248-11 ~ 247-1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명세	성 명		주 소
1	상도동 248-13	대문	철재	1식	대문	장명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7 은하마을 510등 1202호				
2	상도동 248-18	대문	철재	2식	대문	신애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8-18				
		담장	블럭조	1식	담장						
3	상도동 248-19	대문	철재	1식	대문	신경호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48-10				
		담장	블럭조	2식	담장						
		보일러 실	블럭조	1㎡	보일러실						
		슬라브	철근 콘크리트	3㎡	처마						
4	상도동 248-21	대문	철재	1식	대문	홍경표	서울 동작구 상도동 248-21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주차장 출입문	철재	1식	주차장 출입문						
		담장	블럭조	1식	담장						

◆ 동작구고시 제2010-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54호(1973.4.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 제2010-214호(2010.3.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한 “사당1동 431~426-6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같은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의거 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토목과(☎820-9907)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당1동 431~426-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 사당1동 431~426-6간 도로개설공사
 라. 면적 또는 규모 : B=6m, L=120m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동작구 장승배기길16)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사업의 종류 : 사당1동 431~426-6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소유권외 권리의명세	성 명	주 소
1	사당동 429-34	대지	142	5	소인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29-34			
2	사당동 427-7	대지	169	12	백명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27-7			
3	사당동 427-24	대지	99	2	황홍량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31			
4	사당동 425-11	대지	7	1	양명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8-30, 502호			
					최운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8-30, 502호			
5	사당동 425-3	도로	7	7	김난경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39-1			현황 도로
6	사당동 426-12	전	3	3	이종선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553-33			현황 도로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 사업의 종류 : 사당1동 431~426-6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	실제 이용 사항	소 유 자		이해 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의명세	성 명	주 소	
1	사당동 431-4	계량기 박스		1식	수도계량기 박스	진용순	서울 동작구 사당동 431-4	가압류	지정숙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6-6	
		대문	철재	1식	대문			근저당권	국민은행 (안산서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담장	콘크리트	1식	담장			근저당권	사당1동 새마을금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33-36	
2	사당동4 31-2	문 담장	철재 벽돌	1식 1식	문 담장	현인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429-35	없음			
3	사당동4 32-7	차고문	콘크리트 샤시	1식	차고지문	이재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24 천우빌라 203호	근저당권	국민은행 (방배 서지점)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4	사당동 429-34	담장	벽돌	1식	담장	소인호	서울 동작구 사당동 429-34	없음			
5	사당동 432-6	계단	콘크리트 철재	2식	계단	박진상	서울 동작구 사당동 432-6	없음			
6	사당동4 29-44	대문	철재	1식	대문	정일환	서울 동작구 사당동 429-44	없음			
		담장	벽돌	1식	담장						
7	사당동 437-3	차고문	콘크리트 샤시	1식	차고지문	김영환	서울 동작구 사당동 437-3	없음			
8	사당동 427-7	보일러실		1	보일러실	백명현	서울 동작구 사당동 427-7	없음			
		1층 벽돌조		4	베란다						
		1층 벽돌조		1	계단						
		2층 벽돌조		7	베란다						
		옥상		7	추녀						
		담장 벽돌	1식	담장							
		대문 철재	1식	대문							
9	사당동 427-24	수도 계량기		1식	수도 계량기	황홍량	서울 동작구 사당동 431	없음			
		담장 벽돌		1식	담장						
		문 철재		1식	문						
10	사당동 427-19	차고문	철재	1식	차고문	안효진	서울 동작구 사당동 427-19	근저당권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마사회 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담장 콘크리트		1식	담장						
		대문 철재		1식	대문						
11	사당동4 25-2	담장 벽돌 대문 철재		1식 1식	담장 대문	김약수	서울 동작구 사당동 425	없음			
12	사당동 425-6	담장 벽돌		1식	담장	양명호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30, 502호	없음			
		대문 철재		1식	대문	최윤숙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8-30, 502호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동작구청장
-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길 16
- 사업의 종류 : 사당1동 431~426-6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 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사당동 431-4	영업권	사당목욕탕	1식	목욕탕	진용순	서울 동작구 사당동 431-4

◆ 관악구고시 제2010-30호**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변경(경미한변경)**

1.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9-47호(1999.3.4)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되고,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2-12호(2002.2.25)로 정비계획수립 고시되어 관악구 고시 제 2003-13호(2003.2.10)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4-5호(2004.2.5)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5-11호(2005.2.21)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5-44호(2005.6.24)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7-20호(2007.6.28)로 정비계획 변경, 관악구 고시 제2008-13호(2008.4.3)로 정비계획 변경, 2008.6.5 건축허가, 제2009-32호(2009.6.5)로 정비계획 변경, 2009.8.6 건축허가(설계변경)된 봉천8-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도시개발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봉천8-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시행구역의 위치 : 관악구 봉천동 1522-1 번지
 - 시행구역의 면적 : 5,018.3㎡
-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주택개량 및 정비기반시설설치는 주민시행)
- 정비계획 변경 내용
 - 1) 정비구역 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적 (㎡)	시 행 자	사업기간	시행방법
봉천8-1 주거환경개선지구	관악구 봉천동 1522-1	5,018.3	관악구청장 (주택개량 정비기반 시설설치는 주민시행)	2002.02.25 ~ 2010.12.31	환지방식 현지개량

2) 토지이용계획 변경결정 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5,018.3	-	5,018.3	100		-	
주 택 용 지		3,895.9	-	3,895.9	77.63	-	-	
정비기반 시설	계	1,122.4	-	1,122.4	22.37	-	-	
	도 로	1,122.4	-	1,122.4	22.37	-	-	기부채납
	기 타	-	-	-	-	-	-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용도지역) 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5,018.3	-	-	1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5,018.3	-	-	100	10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변경사항 없음)

연번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최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1	기정	소로	3	1	8	국지 도로	92	1522-1번지 (A-1블럭)	1522-1번지 (A-3블럭)	
2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53	1522-1번지 (B-6블럭)	1522-1번지 (A-3블럭)	
3	기정	소로	3	3	8	국지 도로	53	1522-1번지 (B-4블럭)	1522-1번지 (A-1블럭)	
4	기정	소로	3	4	10	국지 도로	89	1522-1번지 (A-1블럭)	1522-1번지 (A-3블럭)	
계							287			

4) 용도지역(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변경사항 없음)

구 분	용도지역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	평균 층수	비 고
용도지역내 층수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018.3	60	250	10층	

○ 공공시설(도로) 기부채납 변경내용 (변경사항 없음)

구 분	시설의 종 류	획지계획 (기정)		도로 (기정)	도로 (변경)	도로면적 증 · 감현황	비고
		구 분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도시 계획 시설	도로	합 계		5,018.3	1,122.4	-	-
		A블럭 3필지	소계	2,400.8	559.2	-	-
			A-1	859.3	209.5	-	-
			A-2	675.9	133.0	-	-
			A-3	865.6	216.7	-	-
		B블럭 3필지	소계	2,617.5	563.2	-	-
			B-4	924.6	211.6	-	-
			B-5	786.5	142.8	-	-
			B-6	906.4	208.8	-	-

5) 건축물 정비 변경계획 (변경사항 없음)

구 분	가구(획지)구분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세대수	비고
	획 지	기정 면적(㎡)	변경 면적(㎡)	기정 (㎡)	변경 (㎡)						
건축물 정비계획	2개블럭 6개필지	3,895.9	-	11,125.8	-	공동주택 근린생활 (편의시설)	60	250	10	107 (주거)	편의시설 (주민공동 이용시설)

6) 환지계획 변경내역

○ 사업부지내 변경내용 (변경사항 없음)

구 분	필지수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소계	주택용지	공공용지	소계	주택용지	공공용지	소계	주택용지	공공용지	
합 계	6	5,018.3	3,895.9	1,122.4	-	-	-	-	-	-	
A블럭 (3필지)	소계	3	2,400.8	1,841.6	559.2	-	-	-	-	-	
	A-1	1	859.3	649.8	209.5	-	-	-	-	-	
	A-2	1	675.9	542.9	133.0	-	-	-	-	-	
	A-3	1	865.6	648.9	216.7	-	-	-	-	-	
B블럭 (3필지)	소계	3	2,617.5	2,054.3	563.2	-	-	-	-	-	
	B-4	1	924.6	713.0	211.6	-	-	-	-	-	
	B-5	1	786.5	643.7	142.8	-	-	-	-	-	
	B-6	1	906.4	697.6	208.8	-	-	-	-	-	

○ 각 필지별 변경내용

블록 /필지	블록 면적	번 호			지적측량 면적	관리자	기정			관리자	변경			기부채납	환지 면적 증감	비고
		호수	호	지적측량			환지면적(㎡)				환지면적(㎡)					
							소계	택지	도로		소계	택지	도로			
계	3,895.9				4,020.0			5,018.3	3895.9	1122.4		3895.9	3895.9	1122.4	-1122.4	
	도로									관악구	1122.4	-	1122.4			
	소계				688.4			859.3	649.8	209.5		649.8	649.8	209.5	-209.5	
A-1	649.8	902	14	93	80.8	이기원	35.8	35.8	-	이기원	35.8	35.8			-	
		602	42	94	52.2	이향화	65.7	35.8	29.9	이향화	35.8	35.8			-29.9	
		501	43	96	119.0	김영호	35.8	35.8	-	김영호	35.8	35.8			-	
		401	92	29 112	47.0	박동원 안기식 배준희	59.2	35.8	23.4	박동원 안기식 배준희	35.8	35.8			-23.4	
		301	93	69 111	37.1	윤성룡	46.7	35.8	10.9	윤성룡	35.8	35.8			-10.9	
		701	94	70	36.1	윤명란	45.5	35.8	9.7	윤명란	35.8	35.8			-9.7	
		302	95	83	33.3	박은숙	42.0	35.8	6.2	박은숙	35.8	35.8			-6.2	
		801	96	84 110	37.3	나진호	47.0	35.8	11.2	나진호	35.8	35.8			-11.2	
		901	97	85 109	34.6	최진원	43.6	35.8	7.8	최진원	35.8	35.8			-7.8	
		601	98	86	37.6	오정임	47.4	35.8	11.6	오정임	35.8	35.8			-11.6	
A-1	649.8	502	99	97	39.1	최복규	49.3	35.8	13.5	최복규	35.8	35.8			-13.5	
		802	100	98 106 108	38.1	최상두	48.0	35.8	12.2	최상두	35.8	35.8			-12.2	
		402	101	30 113	96.2	이기원 최용기 이수용 홍성길 노남수 김용재 손병혁	108.9	35.8	73.1	이기원 최용기 이수용 홍성길 노남수 김용재 손병혁	35.8	35.8			-73.1	
		702				이영목	35.8	35.8	-	이영목	35.8	35.8			-	변경
		201				박성현	35.8	35.8	-	이재순	35.8	35.8			-	변경
		202				김성희	35.8	35.8	-	임창국	35.8	35.8			-	변경
		1001				황병득	43.5	43.5	-	이선영	43.5	43.5			-	변경
		근생				이기원	33.5	33.5	-	이기원	33.5	33.5			-	

블록 /필지	블록 면적	번 호			지적측량 면 적	기정				변경				환지 면적 증감	비고	
		호수	호	지적측량		권리자	환지면적(㎡)			권리자	환지면적(㎡)					기부채납
							소계	택지	도로		소계	택지	도로			
A-2	542.9	소계			555.9		675.9	542.9	133.0		542.9	542.9	133.0	-133.0		
		901	61	36	36.2	임순덕	43.9	33.9	10.0	임순덕	33.9	33.9	기 부 채 납	-10.0		
		202	62	44	38.2	정영자	46.3	33.9	12.4	정영자	33.9	33.9		-12.4		
		902	63	47	35.6	강재호	43.1	33.9	9.2	강재호	33.9	33.9		-9.2		
		501	64	56	33.8	정현아	40.9	33.9	7.0	정현아	33.9	33.9		-7.0		
		402	65	59	37.1	성재화	44.9	33.9	11.0	성재화	33.9	33.9		-11.0		
		601	66	67	34.1	박임이	41.3	33.9	7.4	박임이	33.9	33.9		-7.4		
		301	67	72	37.9	변상운	40.6	33.9	6.7	변상운	33.9	33.9		-6.7		
		801	73	82	34.8	홍관의	42.2	33.9	8.3	홍관의	33.9	33.9		-8.3		
		701	74	71	35.0	최사라	42.4	33.9	8.5	최사라	33.9	33.9		-8.5		
		302	75	68	33.6	방천환	40.7	33.9	6.8	방천환	33.9	33.9		-6.8		
		401	76	58	37.5	김민영	45.4	33.9	11.5	김민영	33.9	33.9		-11.5		
		502	77	57	34.9	김길화	42.3	33.9	8.4	김길화	33.9	33.9		-8.4		
		702	78	46	37.1	전용승	44.9	33.9	11.0	전용승	33.9	33.9		-11.0		
		802	79	45	49.9	채송희	33.9	33.9	-	채송희	33.9	33.9		-		
		602	80	35	40.2	김선미	48.7	33.9	14.8	김선미	33.9	33.9		-14.8		
		201				김현숙	34.4	34.4	-	이기원	34.4	34.4		-	변경	
		A-3	648.9	소계			709.7		865.6	648.9	216.7			648.9	648.9	216.7
802	57			4	35.4	진유경	43.5	35.9	7.6	진유경	35.9	35.9	기 부 채 납	-7.6		
902	58			12	34.4	장미숙	42.2	35.9	6.3	장미숙	35.9	35.9		-6.3		
702	81			3	37.0	최춘자	45.5	35.9	9.6	최춘자	35.9	35.9		-9.6		
202	82			13	34.5	황준호	42.4	35.9	6.5	황준호	35.9	35.9		-6.5		
무	83			14	36.4	김중진	44.7	35.9	8.8	김중진	35.9	35.9		-8.8		
501	84			2	42.4	허선영	52.1	35.9	16.2	허선영	35.9	35.9		-16.2		
801	85			1 119	36.2	김순기	44.5	35.9	8.6	김순기	35.9	35.9		-8.6		
701	86			15 118	35.6	유원식	43.8	35.9	7.9	유원식	35.9	35.9		-7.9		
301	87			16 117	44.7	최정운	55.0	35.9	19.1	최정운	35.9	35.9		-19.1		
402	88			17	36.6	심은이	45.0	35.9	9.1	심은이	35.9	35.9		-9.1		
601	89			18	36.8	김혜민	45.2	35.9	9.3	김혜민	35.9	35.9		-9.3		
401	91			31 114	40.3	이수용	39.5	35.9	3.6	이수용	35.9	35.9		-3.6		
무	102			32 115	116.3	이창형	35.9	35.9	-	이창형	35.9	35.9		-		
602	103			34	82.3	표막예	101.1	35.9	65.2	표막예	35.9	35.9		-65.2		
302	104			33 116	60.8	김주태	74.8	35.9	38.9	김주태	35.9	35.9		-38.9		
201						김제현	35.9	35.9	-	이기원	35.9	35.9		-	변경	
1001						이연주	43.1	43.1	-	이연주	43.1	43.1		-		
근생				이기원	31.4	31.4	-	이기원	31.4	31.4	-					

블록 /필지	블록 면적	번 호			지적측량 면 적	기정				변경				환지 면적 증감	비고	
		호수	호	지적측량		권리자	환지면적(㎡)			권리자	환지면적(㎡)					기부채납
							소계	택지	도로		소계	택지	도로			
B-4	713.0	소계			716.4		924.6	713.0	211.6		713.0	713.0	211.6	-211.6		
		402	10	64	35.6	홍성길	44.2	37.2	7.0	홍성길	37.2	37.2	기 부 채 납	-7.0		
		601	11	76	37.2	이원영	46.2	37.2	9.0	이원영	37.2	37.2		-9.0		
		501	12	77	39.2	유도현	48.7	37.2	11.5	유도현	37.2	37.2		-11.5		
		102	13	92	46.7	임상운	58.0	37.2	20.8	임상운	37.2	37.2		-20.8		
		201	16	91	42.2	최순자	52.4	37.2	15.2	최순자	37.2	37.2		-15.2		
		101	17	78	36.0	노남수	79.6	37.2	42.4	노남수	37.2	37.2		-42.4		
		202	18	75	35.0	김정현	43.4	37.2	6.2	김정현	37.2	37.2		-6.2		
		702	19	65	68.8	김영자	42.1	37.2	4.9	김영자	37.2	37.2		-4.9		
		901	39	74	40.6	정재완	50.4	37.2	13.2	정재완	37.2	37.2		-13.2		
		902	40	79	40.4	김창석	50.2	37.2	13.0	김창석	37.2	37.2		-13.0		
		801	41	90	42.5	박영은	52.8	37.2	15.6	박영은	37.2	37.2		-15.6		
		401	44	89	40.3	임동재	50.1	37.2	12.9	임동재	37.2	37.2		-12.9		
		301	45	80	37.3	오옥자	46.3	37.2	9.1	오옥자	37.2	37.2		-9.1		
		602	46	73	38.4	심재홍	47.7	37.2	10.5	심재홍	37.2	37.2		-10.5		
		302	47	66	34.1	최종대 박태숙	42.4	37.2	5.2	최종대 박태숙	37.2	37.2		-5.2		
		502	68	81	34.9	이명숙	43.3	37.2	6.1	이명숙	37.2	37.2		-6.1		
		802	69	88	34.5	정진호	42.8	37.2	5.6	정진호	37.2	37.2		-5.6		
		701	72	87	32.7	김선홍	40.6	37.2	3.4	김선홍	37.2	37.2		-3.4		
		1001				김춘희	43.4	43.4	-	김춘희	43.4	43.4		-		
B-5	643.7	소계			642.3		786.5	643.7	142.8		643.7	643.7		142.8	-142.8	
		602	5	40	35.8	박완숙	33.6	33.6	-	박완숙	33.6	33.6	기 부 채 납	-		
		501	6	41	37.6	김정수	33.6	33.6	-	김정수	33.6	33.6		-		
		802	7	51	37.0	박동원	46.3	33.6	12.7	박동원	33.6	33.6		-12.7		
		902	8	52	35.5	이정희	44.4	33.6	10.8	이정희	33.6	33.6		-10.8		
		202	9	63	37.4	이영재	46.7	33.6	13.1	이영재	33.6	33.6		-13.1		
		401	20	62	33.7	김진국	42.1	33.6	8.5	김진국	33.6	33.6		-8.5		
		302	21	53	35.3	김용재	33.6	33.6	-	김용재	33.6	33.6		-		
		402	22	50	37.6	지성덕	33.6	33.6	-	지성덕	33.6	33.6		-		
		702	24	39	34.5	이채환	43.2	33.6	9.6	이채환	33.6	33.6		-9.6		
		901	35	49	36.3	이슬기	45.4	33.6	11.8	이슬기	33.6	33.6		-11.8		
		601	36	54	35.0	김말출	43.8	33.6	10.2	김말출	33.6	33.6		-10.2		
		801	37	61	37.5	이귀임	46.9	33.6	13.3	이귀임	33.6	33.6		-13.3		
		102	48	60	35.2	이재명	44.0	33.6	10.4	이재명	33.6	33.6		-10.4		
		201	49	55	34.1	임경심	35.6	33.6	2.0	임경심	33.6	33.6		-2.0		
		502	50	48	35.8	김희수	44.8	33.6	11.2	김희수	33.6	33.6		-11.2		
		701	51	43	33.8	이명호	42.2	33.6	8.6	이명호	33.6	33.6		-8.6		
		301	52	37	34.1	김정태	42.7	33.6	9.1	김정태	33.6	33.6		-9.1		
		101	60	28	36.1	김희임	45.1	33.6	11.5	김희임	33.6	33.6		-11.5		
		1001				이경환	38.9	38.9	-	이경환	38.9	38.9		-		

블록 /필지	블록 면적	번 호			지적측량 면 적	기정			변경			환지 면적 증감	비고			
		호수	호	지적측량		관리자	환지면적(㎡)			관리자	환지면적(㎡)			기부채납		
							소계	택지	도로		소계				택지	도로
B-6	697.6	소계			707.3		906.4	697.6	208.8		697.6	697.6	208.8	-208.8		
			401	1	8 104	40.0	안은정	51.6	36.4	15.2	안은정	36.4	36.4		-15.2	
			201	2	8	37.5	김병남	48.4	36.4	12.0	김병남	36.4	36.4		-12.0	
			402	3	23	38.2	임순진	49.3	36.4	12.9	임순진	36.4	36.4		-12.9	
			901	25	25	34.9	김부국	45.0	36.4	8.6	김부국	36.4	36.4		-8.6	
			302	26	22	34.8	장문수	44.9	36.4	8.5	장문수	36.4	36.4		-8.5	
			202	27	9	34.6	손명근	44.6	36.4	8.2	손명근	36.4	36.4		-8.2	
			902	28	7 103	35.9	김지현	46.3	36.4	9.9	김지현	36.4	36.4		-9.9	
			601	29	6	35.7	김미경	46.0	36.4	9.6	김미경	36.4	36.4		-9.6	
			502	30	10	34.7	조서형	44.8	36.4	8.4	조서형	36.4	36.4	기 부 채 납	-8.4	
			101	31	21	33.2	안홍주	42.8	36.4	6.4	박숙옥	36.4	36.4		-6.4	변경
			802	32	26	35.7	이기원 최용기 이수용 홍성길 노남수 김용재 손병혁	46.0	36.4	9.6	박춘자	36.4	36.4		-9.6	변경
			501	33	38	35.0	정홍교	45.1	36.4	8.7	정홍교	36.4	36.4		-8.7	
			602	34	42	67.4	김복진	86.9	36.4	50.5	김복진	36.4	36.4		-50.5	
			102	53	27	36.8	김철호	47.5	36.4	11.1	김철호	36.4	36.4		-11.1	
			801	54	20	33.8	조태석	43.6	36.4	7.2	조태석	36.4	36.4		-7.2	
			301	55	11	33.8	이춘정	37.8	36.4	1.4	이춘정	36.4	36.4		-1.4	
			701	56	5	34.0	조복희	43.8	36.4	7.4	조복희	36.4	36.4		-7.4	
			702	59	19	35.3	김시연	45.5	36.4	9.1	김시연	36.4	36.4		-9.1	
			1001				이창우	46.5	42.4	4.1	이창우	42.4	42.4	-4.1		

※ 기타 관련 자료는 관악구 도시계획과에 비치

◆ 관악구고시 제2010-31호

신림2 재정비 촉진 구역 내 공원 조성 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된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 삼성산생태수변공원 등 4개소 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가. 결정 취지 : 본 공원은 “신림2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 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녹지 공간 창출로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정서 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위 치

- 새 짝 소 공 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808-633번지 일대
- 청향원수변공원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3-6번지 일대
- 은하수수변공원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04-1번지 일대
- 삼성산생태수변공원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19번지 일대

다. 면 적 : 총 22,566㎡

- 새 짝 소 공 원 : 255㎡
- 청향원수변공원 : 669㎡
- 은하수수변공원 : 1,485㎡
- 삼성산생태수변공원 : 20,157㎡

라. 조성계획결정 조서 : 열람 장소에 비치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승인고시는 본 고시로 갈음함

바.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02-880-3681, -3684

도시계획시설 (새짝소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808-633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시설면적(㎡)	시설면적(㎡)		
계	255	45.29				30	시설율 17.76%
기 반 시 설	소계	16.87					
	광장						
	도로	16.87					
조경시설	15.49	15.49				18	
휴양시설	12.52	12.52				7	
관리시설	0.41	0.41				5	
녹지 및 기타	209.71	209.71					녹지율 82.24%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255	45.29					30	
기 반 시 설	소계			16.87	16.87						
	도로	산-1	부지내	16.78	16.87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소계			15.49	15.49					18	
	목재데크	①	부지내	(9.0)	(9.0)					3	
	트램리스	②	부지내	13.50	13.50					6	
	경관석	③	부지내	1.03	1.03					3	
	디딤석	④	부지내	0.96	0.96					6	
휴양 시설	소계			12.52	12.52					7	
	휴게소	가-1	부지내	3.0	3.0						
	휴게소	가-2	부지내	3.0	3.0						
	휴게소	가-3	부지내	3.0	3.0						
	등의자	⑤	부지내	3.52	3.52					7	
관리 시설	소계			0.41	0.41					5	
	공원등	⑥	부지내	0.26	0.26					2	
	잔디등	⑦	부지내	0.15	0.15					3	
녹지 및 기타			부지내	209.71	209.7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0	16.87	16.87	진입로			
신설	소계			1.0	16.87	16.87				
	산책로		1	1.0	16.87	16.87	진입로	인접보도	인접보도	

도시계획시설 (청향원 수변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43-6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시설면적(㎡)	시설면적(㎡)		
계	669.00	241.47				51	시설율 36.09%
기반 시설	소계	176.18					
	광장	41.64					
	도로	134.54					
조경시설	33.76	33.76				1	
휴양시설	30.98	26.77				31	
운동시설	3.11	3.11				4	
관리시설	1.65	1.65				12	
녹지 및 기타	427.53	427.53					녹지율 63.91%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669.00	241.47					48	
기반 시설	소계			176.18	176.18						
	광장	가	부지내	41.64	41.64						
	도로		부지내	134.54	134.54						
조경 시설	소계			33.76	33.76					1	
	전망데크	①	부지내	33.76	33.76					1	
휴양 시설	소계			30.98	26.77					31	
	파고라	②	부지내	14.74	14.74					1	
	등의자A	③	부지내	7.08	4.70					8	
	등의자B	④	부지내	6.12	6.12					7	
	통석의자	⑤	부지내	3.04	1.21					15	
운동 시설	소계			3.11	3.11					4	
	등·허리지압운동	⑥	부지내	3.11	3.11					1	
	온몸근육풀기운동									1	
	공중견기운동									1	
	허리돌리기운동									1	
관리 시설	소계			1.65	1.65					12	
	안내판	⑦	부지내	0.27	0.27					1	
	공원등	⑧	부지내	1.38	1.38					11	
녹지 및 기타			부지내	427.53	427.53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5.0	86.11	134.54	진입로 산책로			
신설	소계			5.0	86.11	134.54				
	산책로	1	1~1.5	60.61	96.07	주진입로	인접도로	인접보도		
	산책로	2	1~1.5	16.30	21.42	진입로	인접도로	산 - 1		
	산책로	3	1~2.5	9.20	17.05	산책로	인접도로	산 - 1		

도시계획시설 (온하수 수변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 조서

가. 총괄표(위치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304-1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1,485.00	518.25				68	시설율 34.90%
기반 시설	소계	373.40					
	광장	108.21					
	도로	265.19					
조경시설	81.56	67.56				27	
휴양시설	80.05	71.20				18	
유희시설							
운동시설	4.17	4.17				6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1.92	1.92				17	
녹지 및 기타	966.75	-					녹지율 65.10%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1,485	518.25					64	
기반 시설	소계			373.40	373.40						
	광장	가	부지내	87.19	87.19						
	광장	나	부지내	21.02	21.02						
	도로		부지내	265.19	265.19						
조경 시설	소계			81.56	67.56					27	
	수경시설	①	부지내	14.00	(14.00)					1	
	전망데크-1	②	부지내	21.66	21.66					1	
	전망데크-2	③	부지내	20.13	20.13					1	
	전망스텐드	④	부지내	7.20	7.20					1	
	트램리스	⑤	부지내	16.59	16.59					12	
	디딤석	⑥	부지내	1.98	1.98					11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7)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계			80.05	71.20					18	
	휴게소-1	⑦	부지내	13.31	13.31					1	
	휴게소-2	⑧	부지내	13.40	13.40					1	
	파고라-A	⑨	부지내	13.25	13.25					1	
	파고라-B	⑩	부지내	21.42	21.42					1	
	파고라-C	⑪	부지내	9.82	9.82					4	
	등의자	⑫	부지내	8.85	(8.85)					10	
운동 시설	소계			4.17	4.17					6	
	온몸근육풀기운동	⑬	부지내	4.17	4.17					1	
	달리기운동									1	
	공중건기운동									1	
	윗몸일으키기운동									1	
	등,허리지압운동									1	
	파도타기운동									1	
관리 시설	소계			1.92	1.92					18	
	안내판	⑭	부지내	0.27	0.27					1	
	공원등	⑮	부지내	1.38	1.38					10	
	잔디등	⑯	부지내	0.27	0.27					6	
녹지 및 기타			부지내	966.75	966.75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4.45	165.28	265.19	주진입로 산책로			
신설	소계			14.45	165.28	265.19				
	산책로		1	1~3	53.7	82.83	진입로	산 - 3	광장-가	
	산책로		2	1.1~2.2	40.7	77.76	진입로	광장-나	광장-가	
	산책로		3	2	16.5	32.92	진입로	인접보도	인접보도	
	산책로		4	0.8	14.8	12.56	산책로	산 - 1	산 - 1	
	산책로		5	0.8	15.0	12.62	산책로	산 - 1	산 - 1	
	산책로		6	1.5	2.7	4.11	진입로	인접단지	광장-가	
	산책로		7	2.2~5	3.1	14.42	진입로	인접보도	광장-가	
	산책로		8	1.8	4.9	9.17	진입로	인접보도	산 - 2	
	산책로		9	1.9	4.4	9.32	진입로	인접보도	산 - 2	
	산책로		10	1	6.01	6.01	진입로	인접보도	산 - 1	
	산책로		11	1	3.47	3.47	산책로	산 -10	산 - 1	

도시계획시설 (삼성산생태공원) 조성계획(최초) 결정 조서

가. 총괄표(위치 : 관악구 신림동 319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시설면적 (㎡)	시설면적 (㎡)		
계	20,157.00	4,570.73				179	시설율 22.68%
기 반 시 설	소계	2,929.15					
	광장	426.53					
	도로	2,502.62					
조경시설	206.80	196.66				13	
휴양시설	268.06	256.48				58	
유희시설	582.11	582.11				6	
운동시설	30.78	30.78				6	
교양시설	6.16	(6.16)				6	
편익시설	441.49	441.49					
관리시설	224.91	224.26		217.35	217.35	90	
녹지 및 기타		15,586.27					녹지율 77.32%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계				20,157.00	4,570.73					179	
기 반 시 설	소계			2,929.15	2,838.95						
	광장	가-1	부지내	262.89	185.26						
	광장	가-2	부지내	83.68	71.11						
	광장	가-3	부지내	79.96	79.96						
	도로		부지내	2,502.62	2,502.62						
조 경 시 설	소계			206.80	196.66					13	
	전망데크	1-1	부지내	25.28	25.28						
	목재계단	1-2	부지내	5.39	5.39						
	목재데크	1-3	부지내	27.10	27.10						
	탐방데크	1-4	부지내	116.84	116.84						
	트래버스	1-5	부지내	20.31	10.17					9	
	돌무더기	1-6	부지내	11.88	11.88					4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 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계			268.06	256.48					58	
	휴게소	나-1	부지내	35.74	35.74						
	휴게소	나-2	부지내	25.31	25.31						
	휴게소	나-3	부지내	19.29	19.29						
	휴게소	나-4	부지내	21.12	21.12						
	휴게소	나-5	부지내	18.68	18.68						
	휴게소	나-6	부지내	18.63	18.63						
	휴게소	나-7	부지내	49.89	49.89						
	파고라B	2-1	부지내	32.00	32.00					2	
	등의자A	2-2	부지내	29.40	17.82					33	
	파고라D	2-3	부지내	(17.36)	(17.36)					2	
	등의자B	2-4	부지내	(6.99)	(6.99)					8	
	평상	2-5	부지내	(27.00)	(27.00)					3	
	파고라E	2-6	부지내	(18.55)	(18.55)					1	
	파고라C	2-7	부지내	18.00	18.00					5	
	파고라F	2-8	부지내	(63.32)	(63.32)					2	
	파고라A	2-9	부지내	(26.51)	(26.51)					2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397.07	2,502.62				
신설	소계				1397.07	2,502.62				
	소로		소-1	3	403.3	1,194.06	주진입로	소로 2	인접단지	
	소로		소-2	6.0~9.5	25.42	185.72	주진입로 차량진입로	동측진입구	주차장	
	산책로		산-1	1	66.77	66.77	산책로	광장 1	소로 1	
	산책로		산-2	0.7	15.21	6.49	산책로	산책로 1	인접단지	
	산책로		산-3	1	24.54	24.54	산책로	산책로4	인접단지	
	산책로		산-4	1.5	12.36	18.54	산책로	전망데크	소로 1	
	산책로		산-5	1.5	12.08	18.14	산책로	소로 1	전망데크	
	산책로		산-6	1	88.04	88.04	산책로	광장 2	산책로 7	
	산책로		산-7	1	70.78	70.78	산책로	광장 2	소로 1	
	산책로		산-8	1.1	15.06	17.92	산책로	산책로 9	인접단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산책로		산-9	1.5	212.13	317.92	산책로	광장 3	광장 2	
	산책로		산-10	1	46.35	46.35	산책로	소로 1	소로 1	
	산책로		산-11	3.5~4.0	4.23	13.41	산책로	산책로 9	인접도로	
	산책로		산-12	0.6~1.1	11.89	7.77	산책로	산책로 9	인접도로	
	산책로		산-13	1	68.89	68.89	산책로	산책로 9	산책로 9	
	산책로		산-14	1	18.33	18.33	산책로	소로 1	인접단지	
	산책로		산-15	1.1	118.52	130.41	산책로	소로 1	소로 1	
	산책로		산-16	1.1	36.88	40.46	산책로	산책로 15	소로 1	
	산책로		산-17	1.6~2.8	26.68	48.47	산책로	인접단지	소로1	
	산책로		산-18	1	119.61	119.61	산책로	소로 1	소로 1	

◆ 강남구고시 제2010-21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우리구 역삼동 735-16, -17, -19, -20호외 1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되어 고시하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조서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지구단위계획 내용
1	기정	테헤란로 제2지구 (B8-2)	역삼동 735-16호	1735.3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1m
			역삼동 735-17호		
			역삼동 735-19호		
			역삼동 735-20호		
	변경	테헤란로 제2지구 (B8-2)	역삼동 735-16호	873.8	공동개발(지정), 건축한계선 1m
			역삼동 735-17호		
			역삼동 735-19호	430.7	단독개발, 건축한계선 2m
			역삼동 735-20호	430.8	단독개발, 건축한계선 2m

연번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지구단위계획 내용
2	기정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E9)	삼성동 153-30, -34, -35호	494.2	공동개발(권장), 주차출입구 - 삼성동 153-35호
			삼성동 153-36, -37, -42호	534.4	공동개발(권장) 주차출입구 - 삼성동 153-36호
	변경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E9)	삼성동 153-30, -34호	313.7	공동개발(권장) 주차출입구 - 삼성동 153-34호
			삼성동 153-35, -36, -37, -42호	714.9	공동개발(권장) 주차출입구 - 삼성동 153-35호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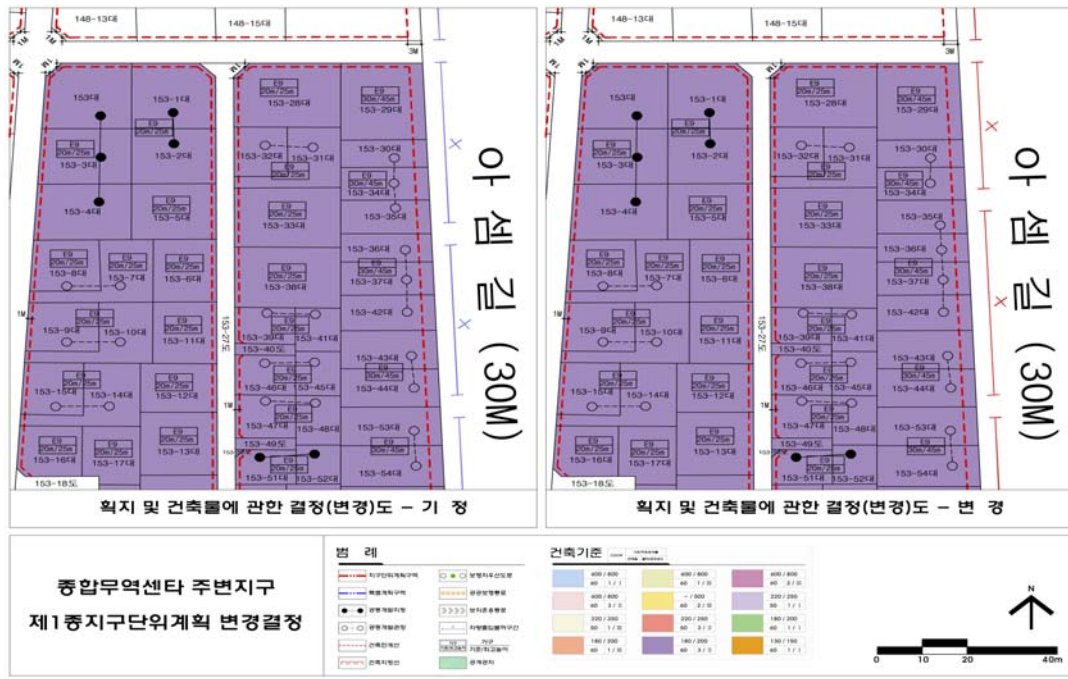
□ 관계도면

1.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02-2104-1836)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0-2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강남구 공고 제2010-365호(2010.3.25.)로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한 강남구 일원동 산56번지 일대 대모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내용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4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

-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산56번지 일대
 - 2) 사업시행자 : 강남구청장(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조성
 - 4) 사업의 내용 및 규모
 - 면 적 : 10,545㎡
 - 내 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2. 12. 31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 따로붙임
- 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공원녹지과(☎2104-19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강남구 일원동 246-3	전							241	241	김인화	서울 서초구 반포4동 96-10 삼성아트빌라 101호					
2	강남구 일원동 246-4	전							139	139	김준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메일러가 22330-38					
3	강남구 일원동 246-5	전							298	298	김봉화	서울서초구 반포동 2-1 신반포아파트 16동 207호					
4	강남구 일원동 246-6	전							321	321	김석화	미국 일리노이주 옥크부룩 스트븐 그린가 813					
5	강남구 일원동 246-9	전							651	651	석현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519-1					
											석지인	미합중국 뉴저지주 페닝톤 코번가 122					
											석혜인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519-1					
											석상범	미합중국 뉴저지주 페닝톤 코번가 122					
6	강남구 일원동 246-15	전							1,104	1,104	김준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토렌스 메일러가 22330-38					
7	강남구 일원동 246-16	답							159	159	김봉화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신반포아파트 16동 207호					
8	강남구 일원동 246-17	전							251	251	이인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강형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강형석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9	강남구 일원동 246-18	전							367	367	김봉화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신반포아파트 16동 207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지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지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0	강남구 일원동 246-19	전							397	397	김봉화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신반포아파트 16동 207호				
11	강남구 일원동 246-20	전							367	367	김석화	미국 일리노이주 옥크부룩 스트븐 그린가 813				
12	강남구 일원동 246-21	전							188	188	김석화	미국 일리노이주 옥크부룩스트븐 그린가 813				
13	강남구 일원동 246-22	전							235	235	김석화	미국 일리노이주 옥크부룩 스트븐 그린가 813				
14	강남구 일원동 246-23	전							179	179	이인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강형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강형석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 116				
15	강남구 일원동 산56	임야	3,648	3,648	백경삼	서초구 서초동 1444-7 서초 자이아파트 102동 1005호			3,648	3,648	백경삼	서초구 서초동 1444-7 서초 자이아파트 102동 1005호				
					정승명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 영등포 푸르지오 212동 1601호					정승명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1 영등포 푸르지오 212동 1601호				
16	강남구 일원동 산63-35	임야	5,332	2,600	이인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116			5,332	2,000	이인옥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116				
					강형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116					강형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116				
					강형석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116					강형석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그랜데일시 428 하톤스트리트116				

구 공 고

◆ 중랑구공고 제2010-277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9-24호(2009. 6.18)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0번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며,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열람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묵1 치안센터 신축공사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120번지

다.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0번지 동일빌딩 3층 (주)부광피앤디 공동대표 홍순국, 육동현
- 서울시 중랑구 묵동 170-1번지 중랑빌딩 3층 (주)한부디앤에스 대표이사 이동근

라.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면적 : 227㎡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34.42㎡

마.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0.10

바.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개발과(☎2094-2173)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주)한부디앤에스, (주)부광피앤디

□ 사 업 명 칭 : 묵1 치안센터 신축공사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 외의권리
1	묵동 120번지	대	227	227	전주리씨 소강공파종중	서울시 중랑구 묵동 120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주)한부디앤에스, (주)부광피앤디

□ 사 업 명 칭 : 목1 치안센터 신축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건물 층수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의 종류	
1	목동 120번지	화장실	1	2.42	김애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692번지				

◆ **은평구공고 제2010-3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82호(1973.11.26)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96호(1989.8.18)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불광동186-3~2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시보 및 구보에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은평구청 토목과에 비치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 열람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된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미수령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2) 사업의 명칭 : 불광동 184의5~진관동 산109의20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위치 : 불광동 184의5~26
- 4) 사 업 규 모 : 폭 8m, 연장 130m

나.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주 소 :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 2)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다.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라.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에 따른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조서 참조

마.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 조서 참조

바.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토목과

아.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자. 기타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02-351-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명 : 불광동 184-5~진관동 산109-2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실제 이용 상황	편입 면적 (㎡)	소유자 지 분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종류	
1	불광동	184-5	대	238	도로	17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84-5	함석원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96-25	연신내새마을금고	근저당	
										서울시 은평구 불광 동 479-96 201호	정삼웅	근저당	
										서울시 은평구 구파발동 83-6	최기용	근저당	
2	불광동	189	대	215	도로	11	1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89 4층	박종길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연서지점)		
3	불광동	193-1	구	443	도로	333	1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청길 8	은평구				
4	불광동	186-5	전	39	도로	20	1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43	재단법인 팀선교회				
5	불광동	20-6	대	159	도로 대지	29	1/2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0-1	문호섭				
							6	서울시 불광동 20-1	문종섭				
6	불광동	28-17	도	89	도로	66	1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9-31	이무지				
7	불광동	28-18	도	47	도로	3	1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9-31	이무지				
8	불광동	30-2	구	2849	도로	2409	1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청길 8	은평구				
9	불광동	27-3	답	3	도로 대지	3	1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43	재단법인 팀선교회				

물 건 조 서

사업명 : 불광동 184-5~진관동 산109-2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규격	수 량 (㎡)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1	불광동 20-6	건물	연와조	7㎡	건물	문호섭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0-1	
						문종섭	서울시 불광동 20-1	
2	불광동 20-6	울타리	스테인리스	1식	울타리	문호섭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20-1	
						문종섭	서울시 불광동 20-1	
3	불광동 27-1	담장	벽돌조 철제	1식	울타리	재단법인 팀선교회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32-43	

영 업 권 조 서

사업명 : 불광동 184-5~진관동 산109-2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용도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1	불광동 20-6	영업권	골목집	음식점	1식	배일환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89-4	

◆ 서대문구공고 제2010-292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 · 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76-12호 지상 도시계획시설 【공공업무시설(서대문소방서)】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을 청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공람 ·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대문구청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일시 : 2010.04.13 ~ 2010.05.04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건축과

다. 공람내용

사 업 명	대지위치	사 업 내 용	사업 시행자	비 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공공업무시설- 서대문소방서』	서대문구 연희동 76-12호	서대문소방서 증축 증축규모 : 지상1층 31.17㎡ 지상2층 31.17㎡ 지상3층 35.61㎡	서울특별시	

라. 의견제출처 : 서대문구청 건축과(전화:330-1657)

◆ 양천구공고 제2010-2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84호('79.11.23)로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로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64호('84.6.25)로 도시계획시설(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양천구 고시 제2009-30호('09.06.16)로 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 및 도면은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도서는 서울시 양천구 균형개발과(☎2620-3519~21)비치】

2010년 4월 22일
양 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 양천구 신정동 743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 서부트럭터미널
3. 면적 및 규모 : 변경없음
 - 시행면적 : 112,11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주 소 : 양천구 신정동 812
 - 성 명 : (주)서부트럭터미널 대표이사 승만호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0. 6. 25
6. 인가도서 : 변경없음
7.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 : 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별첨
9.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별첨
10. 허가조건 변경내역
 - 토지의 수용 또는 토지의 사용여부
 - 당초 : 수용
 - 변경 : 수용 또는 사용
 - 보도육교 설치 제외(B=2m, H=5.5m, L=95m)

토 지 및 시 설 물 조 서

가.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구분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정동 735-4	답	수용	227	227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2	신정동 735-6	"	"	348	348	"	"				
3	신정동 735-10	잡	"	81	81	"	"				
4	신정동 735-11	"	"	550	550	"	"				
5	신정동 735-12	답	"	38	38	"	"				
6	신정동 735-13	"	"	8	8	"	"				
7	신정동 735-14	"	"	42	42	"	"				
8	신정동 735-15	잡	"	268	268	"	"				
9	신정동 736-3	"	"	11	11	"	"				
10	신정동 742	"	"	390	390	"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구분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	신정동 743	답	"	1,429	1,429	"	"				
12	신정동 743-19	잡	"	51	51	"	"				
13	신정동 743-20	"	"	1,048	1,048	"	"				
14	신정동 743-21	"	"	142	142	"	"				
15	신정동 744	답	"	1,760	1,760	"	"				
16	신정동 744-2	"	"	61	61	"	"				
17	신정동 744-3	잡	"	286	286	"	"				
18	신정동 745-1	전	"	641	641	"	"				
19	신정동 745-2	전	수용	175	175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20	신정동 745-3	"	"	1,091	1,091	"	"				
21	신정동 745-4	잡	"	221	221	"	"				
22	신정동 746	답	"	754	754	"	"				
23	신정동 746-1	잡	"	59	59	"	"				
24	신정동 747	답	"	1,874	1,874	"	"				
25	신정동 747-1	도	"	1,058	1,058	"	"				
26	신정동 747-2	답	"	564	564	"	"				
27	신정동 748-1	대	"	225	225	"	"				
28	신정동 748-2	답	"	278	278	"	"				
29	신정동 748-3	"	"	79	79	"	"				
30	신정동 748-5	대	"	172	172	"	"				
31	신정동 748-6	"	"	139	139	"	"				
32	신정동 748-7	전	"	99	99	"	"				
33	신정동 749-1	대	"	179	179	"	"				
34	신정동 749-2	"	"	347	347	"	"				
35	신정동 749-3	"	"	145	145	"	"				
36	신정동 749-4	"	"	179	179	"	"				
37	신정동 749-5	"	"	165	165	"	"				
38	신정동 749-6	전	"	119	119	"	"				
39	신정동 749-7	대	"	145	145	"	"				
40	신정동 750	답	"	218	218	"	"				
41	신정동 751-2	답	수용	574	574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42	신정동 751-19	"	"	870	870	"	"				
43	신정동 752	"	"	1,572	1,572	"	"				
44	신정동 752-4	"	"	124	124	"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구분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5	신정동 752-5	도	도로	86	86	양 천 구	서울 양천 목동 동로 75				
46	신정동 752-28	답	수용	389	389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47	신정동 752-29	"	"	7	7	"	"				
48	신정동 752-30	"	"	4	4	"	"				
49	신정동 752-31	도	"	26	26	"	"				
50	신정동 752-32	답	"	17	17	"	"				
51	신정동 754	"	"	1,676	1,676	"	"				
52	신정동 754-8	"	"	183	183	"	"				
53	신정동 754-9	답	수용	181	181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54	신정동 755-2	"	"	147	147	"	"				
55	신정동 755-8	"	"	146	146	"	"				
56	신정동 756-5	"	"	499	499	"	"				
57	신정동 756-10	"	"	83	83	"	"				
58	신정동 756-11	"	"	25	25	"	"				
59	신정동 804-4	도	도로	658	658	양 천 구	서울 양천 목동 동로 75				
60	신정동 805-1	답	수용	2,506	2,506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61	신정동 805-2	"	"	2,142	2,142	"	"				
62	신정동 805-5	임	"	1,394	1,394	"	"				
63	신정동 805-6	답	"	511	511	"	"				
64	신정동 805-7	임	"	638	638	"	"				
65	신정동 805-8	"	"	898	898	"	"				
66	신정동 805-9	잡	"	330	330	"	"				
67	신정동 806-4	답	"	5,187	5,187	"	"				
68	신정동 806-5	"	"	890	890	"	"				
69	신정동 806-17	"	"	535	535	"	"				
70	신정동 806-18	"	"	1,732	1,732	"	"				
71	신정동 806-22	"	"	24	24	"	"				
72	신정동 806-24	"	"	190	190	"	"				
73	신정동 806-26	"	"	19	19	"	"				
74	신정동 807-1	"	"	4,968	4,968	"	"				
75	신정동 807-2	"	"	1,808	1,808	"	"				
76	신정동 807-3	"	"	731	731	"	"				
77	신정동 807-4	"	"	550	550	"	"				
78	신정동 807-5	"	"	49	49	"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구분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9	신정동 807-6	"	"	173	173	"	"				
80	신정동 807-7	"	"	59	59	"	"				
81	신정동 808	"	"	162	162	"	"				
82	신정동 808-1	"	"	49	49	"	"				
83	신정동 808-2	"	"	305	305	"	"				
84	신정동 808-3	답	수용	132	132	서부터미날	서울 양천 신정 812				
85	신정동 808-4	"	"	704	704	"	"				
86	신정동 808-5	"	"	6	6	"	"				
87	신정동 808-6	"	"	95	95	"	"				
88	신정동 808-7	"	"	131	131	"	"				
89	신정동 808-8	"	"	107	107	"	"				
90	신정동 808-9	"	"	411	411	"	"				
91	신정동 809	전	"	1,067	1,067	"	"				
92	신정동 809-1	"	"	885	885	"	"				
93	신정동 809-2	"	"	588	588	"	"				
94	신정동 809-3	"	"	521	521	"	"				
95	신정동 810	"	"	2,244	2,244	"	"				
96	신정동 810-1	"	"	301	301	"	"				
97	신정동 810-2	"	"	11	11	"	"				
98	신정동 810-3	"	"	3	3	"	"				
99	신정동 811	잡	"	431	431	"	"				
100	신정동 811-1	"	"	111	111	"	"				
101	신정동 811-2	"	"	1,051	1,051	"	"				
102	신정동 812	대	"	3,117	3,117	"	"				
103	신정동 812-1	잡	"	10,492	10,492	"	"				
104	신정동 812-2	"	"	10,433	10,433	"	"				
105	신정동 812-4	"	"	1,074	1,074	"	"				
106	신정동 812-5	대	"	786	786	"	"				
107	신정동 812-6	잡	"	135	135	"	"				
108	신정동 812-7	"	"	1,396	1,396	"	"				
109	신정동 812-8	"	"	1,346	1,346	"	"				
110	신정동 812-9	"	"	2	2	"	"				
111	신정동 812-10	"	"	43	43	"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구분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12	신정동 812-18	〃	사용	5,413	5,413	서 울 시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13	신정동 813	대	수용	101	101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114	신정동 813-3	잡	〃	939	939	〃	〃				
115	신정동 813-4	대	〃	1	1	〃	〃				
116	신정동 815-1	잡	〃	270	270	〃	〃				
117	신정동 818	답	〃	533	533	〃	〃				
118	신정동 818-2	〃	〃	135	135	〃	〃				
119	신정동 819	〃	〃	1,452	1,452	〃	〃				
120	신정동 819-2	〃	〃	146	146	〃	〃				
121	신정동 820	〃	〃	2,921	2,921	〃	〃				
122	신정동 820-2	〃	〃	158	158	〃	〃				
123	신정동 820-3	〃	〃	238	238	〃	〃				
124	신정동 820-4	〃	〃	43	43	〃	〃				
125	신정동 857	천	〃	1,978	1,978	국(건설부)	경기 과천 관문로 88				
126	신정동 857-6	잡	〃	346	346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127	신정동 857-7	잡	수용	310	310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128	신정동 857-8	〃	〃	53	53	〃	〃				
129	신정동 857-11	천	도로	2,044	2,044	국(건설부)	경기 과천 관문로 88				
130	신정동 857-12	〃	수용	77	77	〃	〃				
131	신정동 857-13	〃	〃	472	472	〃	〃				
132	신정동 857-14	〃	도로	43	43	〃	〃				
133	신정동 857-29	〃	수용	2,585	2,585	〃	〃				
134	신정동 857-30	〃	도로	359	359	〃	〃				
135	신정동 857-33	차	수용	656	656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136	신정동 857-34	천	〃	590	590	국(건설부)	경기 과천 관문로 88				
137	신정동 857-35	차	〃	226	226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138	신정동 858-37	도	도로	44	44	국(건설부)	경기 과천 관문로 88				
139	신정동 858-38	〃	수용	101	101	〃	〃				
140	신정동 860	〃	〃	648	648	〃	〃				
141	신정동 860-2	〃	도로	126	126	〃	〃				
142	신정동 860-3	〃	수용	253	253	〃	〃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구분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3	신정동 860-4	"	"	55	55	"	"				
144	신정동 860-5	차	"	78	78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145	신정동 860-6	도	"	74	74	국(건설부)	경기 과천 관문로 88				
146	신정동 861	"	"	615	615	"	"				
147	신정동 861-1	"	"	42	42	"	"				
148	신정동 861-2	"	"	380	380	"	"				
149	신정동 861-3	차	"	36	36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150	신정동 862	도	"	522	522	국(건설부)	경기 과천 관문로 88				
151	신정동 863	"	"	617	617	"	"				
152	신정동 863-1	"	도로	25	25	"	"				
계	152필지			112,111	112,111						

나. 고시지역외 도로편입 토지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정동 804-1	답	81	81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2	신정동 804-2	"	1	1	"	"				
3	신정동 804-3	"	11	11	"	"				
4	신정동 805-3	"	379	379	"	"				
5	신정동 806-13	"	552	552	"	"				
6	신정동 806-21	"	132	132	"	"				
7	신정동 산157-3	임	69	69	"	"				
계	7필지		1,225	1,225						

다.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1) 귀속대상토지 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관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정동 735-4	답	227	227	서부터미널	서울 양천 신정 812				
2	신정동 735-10	잡	81	81	〃	〃				
3	신정동 735-13	답	8	8	〃	〃				
4	신정동 735-14	답	42	42	〃	〃				
5	신정동 735-15	잡	268	268	〃	〃				
6	신정동 751-19	답	870	870	〃	〃				
7	신정동 752-4	답	124	124	〃	〃				
8	신정동 752-28	답	389	389	〃	〃				
9	신정동 754-8	답	183	183	〃	〃				
10	신정동 754-9	답	181	181	〃	〃				
11	신정동 755-8	답	146	146	〃	〃				
12	신정동 756-5	답	499	499	〃	〃				
13	신정동 756-11	답	25	25	〃	〃				
14	신정동 804-1	답	81	81	〃	〃				
15	신정동 804-2	답	1	1	〃	〃				
16	신정동 804-3	답	11	11	〃	〃				
17	신정동 805-3	답	379	379	〃	〃				
18	신정동 805-8	임	898	898	〃	〃				
19	신정동 806-13	답	552	552	〃	〃				
20	신정동 806-21	답	132	132	〃	〃				
21	신정동 806-22	답	24	24	〃	〃				
22	신정동 806-24	답	190	190	〃	〃				
23	신정동 806-26	답	19	19	〃	〃				
24	신정동 818-2	답	135	135	〃	〃				
25	신정동 819-2	답	146	146	〃	〃				
26	신정동 820-3	답	238	238	〃	〃				
27	신정동 820-4	답	43	43	〃	〃				
28	신정동 산157-3	임	69	69	〃	〃				
계	28필지		5,961	5,961						

2) 귀속대상 시설물 조서

- 공공하수도 : 흡관(D=1,100mm) L=104m, 암거(1.5m×1.5m) L=308m, 암거(3.0m×2.5m×2
런) L=637m

3) 양도대상토지 조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주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 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정동 857	천	1,978	1,978	국(건설부)	경기 과천 관문로 88				
2	신정동 857-12	천	77	77	"	"				
3	신정동 857-13	천	472	472	"	"				
4	신정동 857-29	천	2,585	2,585	"	"				
5	신정동 857-34	천	590	590	"	"				
6	신정동 858-38	도	101	101	"	"				
7	신정동 860	도	648	648	"	"				
8	신정동 860-3	도	253	253	"	"				
9	신정동 860-4	도	55	55	"	"				
10	신정동 860-6	도	74	74	"	"				
11	신정동 861	도	615	615	"	"				
12	신정동 861-1	도	42	42	"	"				
13	신정동 861-2	도	380	380	"	"				
14	신정동 862	도	522	522	"	"				
15	신정동 863	도	617	617	"	"				
계	15필지		9,009	9,009						

◆ 구로구공고 제2010-284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공사완료

1. 구로구고시 제2008-19호(2008.4.1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어 지형도면 승인되고,
2. 구로구고시 제2009-87호(2009.9.1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결정되고, 구로구공고 제2009-785호(2009.10.29)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하여, 구로구고시 제2009-109호(2009.11.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 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317-2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구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사업시행자 : (주)다울종합건설 대표 강영길
- 2)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션타워

다. 공사완료(준공)현황

- 1) 사업의 명칭 : 구로2동 317-210번지 일대 소공원 조성사업
- 2)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317-210번지
- 3) 사업의 규모 : 243.4㎡
- 4) 사업기간 : 2009. 11 ~ 2010. 4. 7 까지
- 5) 공사완료 : 2010. 4. 7.

라. 기타 관련도서는 구로구청 푸른도시과(☎860-3084, 2395~7)에 비치

◆ 영등포구공고 제2010-32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건고시 제561호('85.12.23)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고시 제19호('86.01.16)로 지적고시된 『도림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의견 제출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조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지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 고
도림로 확장공사	신길동363-14~ 신길동355-652	B=25m→35m, L=130m	인가일로 부터 3년	•시설결정 : 건고시 제561호('85.12.23) •지적고시 : 서고시 제19호('86.01.16)
	신길동342-420~ 신길동400-19	B=25m→35m, L=90m		

-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3)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시장
 - 4) 사용 및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 붙임
- 나. 문의처 :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6)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장
- 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사업시행 위치 : 도림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 지분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모지번)
						성 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363-14	대	77	77	1/4	이기창	서울시 중구 신당동 185				신길동 363-6
					1/4	조천현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8-32				
					1/4	윤안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2-16				
					1/4	양진석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5 삼익A 1-207				
2	신길동 363-15	전	138	138	1/4	이기창	서울시 중구 신당동 185				신길동 363-4
					1/4	조천현	서울시 종로구 이화동 28-32				
					1/4	윤안자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42-16				
					1/4	양진석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3가 135 삼익A 1-207				
3	신길동 363-13	대	192	192		동서건설(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125-8				
4	신길동 355-646	대	151	151		김병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55-1				
5	신길동 355-696	잡	15	15	49/112	박주학	서울시 동대문구 보문동5가 205-2				신길동 355-189
					56/112	윤중구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				
					7/112	이효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9-7				
6	신길동 355-697	대	88	88		양명식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07-2001				신길동 355-535
7	신길동 355-652	도	85	85		영등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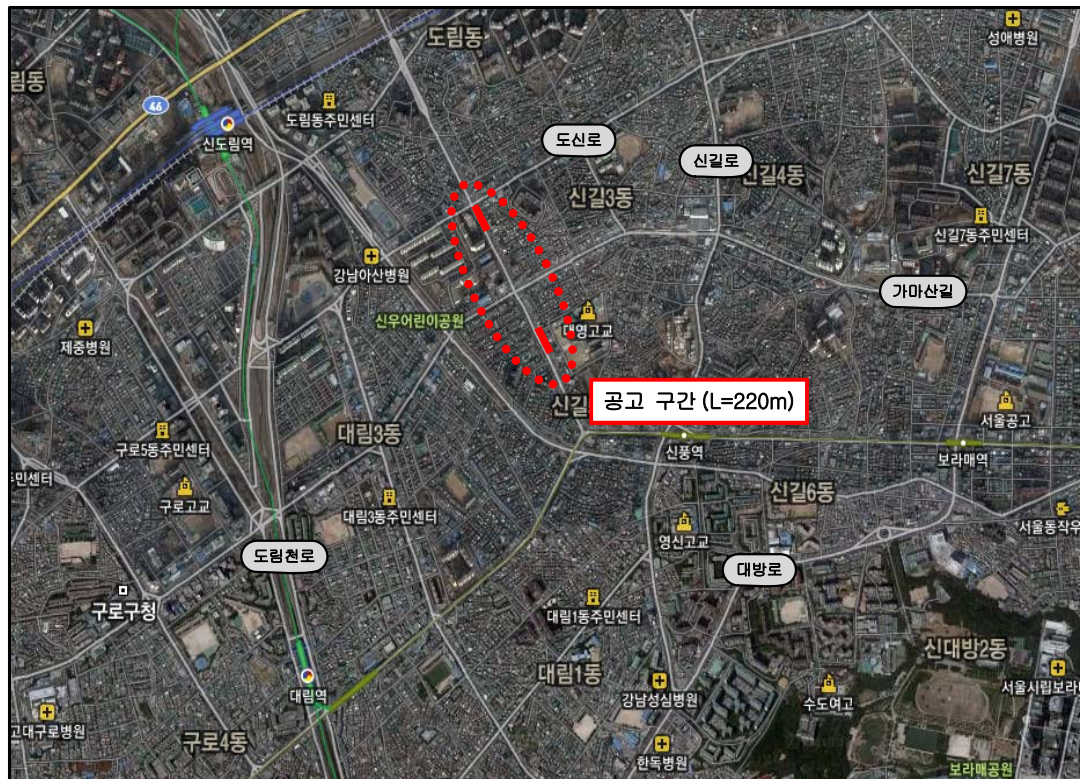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외 권리종류 및 내용			비 고 (모지번)
					성명	주 소	권리종류	성 명	주 소	
8	신길동 342-420	도	12	12	이휘승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567 광나루현대A 101-705				신길동 342-142
9	신길동 342-421	대	73	73	백남웅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42-134	근저당권	(주)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신길동 342-134
10	신길동 342-422	대	77	77	김창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99-45				신길동 342-135
11	신길동 342-423	잡	75	75	허광학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549-11				신길동 342-107
12	신길동 342-424	대	74	74	윤은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1549-3				신길동 342-108
13	신길동 342-425	잡	21	21	김명신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70-1				신길동 342-150
14	신길동 342-343	잡	4	4	심재익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3 우성A 501-805				
15	신길동 400-19	대	83	83	심재익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933 우성A 501-805	근저당권	신길3,5동 새마을금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장
- 사업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사업시행 위치 : 도림로 확장공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 고 (모지번)
					성명	주 소	관리종류	성 명	주 소	
1	신길동 355-697	간판	철재	1식	양영식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46 신도림4차e-편한세상 1107-2001				
2	신길동 400-19	창고	철재	1식	임승웅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251 (한승빌딩)				
3	신길동 400-19	창고	철재	1식	조병진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55-111				
4	신길동 400-19	창고	철재	1식	이창호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887-1				

● 위 치 도



● 현황사진



◆ 관악구공고 제2010-4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9-43호(2009.9.3)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 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 고자 합니다.
2.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880-3877)에 비치하며,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내 열람장 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83-1 ~ 1083-6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남현동 남현길 도로 확장공사

다. 총사업규모 : 폭원 8→12m, 연장 11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관악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봉천4동 1570-1)

마.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 별첨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봉천4동 1570-1) 관악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사업시행 위치 : 관악구 남현동 1083-1 ~ 1083-6간 (남현길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내 용	비고 (공유 지분)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남현동 1083-1	공	1,509.3	178	공	관악구청					
2	남현동 1083-38	도	24.4	24.4	도	전정원	관악구 남현동 1083-2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 2가 120	근저당	1/2
						김연화	관악구 남현동 1083-2				1/2
3	남현동 1083-40	대	23.6	23.6	대	진홍길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352 뉴서울@101-902				1/2
						민현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2-13	낙성대 새마을금고	관악구 봉천동 1647-10	근저당	1/2
4	남현동 1083-2	대	436.5	263.7	대	전정원	관악구 남현동 1083-2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 2가 120(사당역지점)	근저당	1/2
						김연화	관악구 남현동 1083-2				1/2
5	남현동 1083-3	대	114.2	43.4	대	이오일	동작구 사당동 1015-14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 1가 203(남현동지점)	근저당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 리 내 용	비고 (공유 지분)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6	남현동 1083-4	대	192.1	18.5	대	이태수	관악구 남현동 1083-4 201호	남부농업 협동조합	서초구 양재동11-1 (남현지소)	근저당	
7	남현동 1083-8	대	162.5	2.5	대	김진영	관악구 남현동 1084-40				
8	남현동 1083-6	대	103.2	17.6	대	이정석	관악구 남현동 1135 우림루미@ 103-903호	남부농업 협동조합	서초구 양재동11-1 (남현지소)	근저당	
9	남현동 1083-36	도	325	6.8	도	관악구청					
10	남현동 1134-1	도	35.9	3.2	도	관악구청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봉천4동 1570-1) 관악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사업시행 위치 : 관악구 남현동 1083-1 ~ 1083-6간 (남현길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 유 권 이 외 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남현동 1083-2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	141		김연화	관악구 남현동 1083-2	신한은행	중구 태평로 2가120 (사당역지점)	근저당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141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141		전정원	관악구 남현동 1083-2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	141							
3	남현동 1083-3	건물(지층)	철근콘크리트	25.3		이오일	동작구 사당동 1015-14	우리은행	중구 회현동 1가 203 (남현동지점)	근저당	
		건물(1층)	철근콘크리트	25.3							
		건물(2층)	철근콘크리트	25.3							
		건물(3층)	철근콘크리트	25.3							
4	남현동 1083-4	건물(1층)	연와조	27.3		이태수	관악구 남현동 1083-4 201호	남부농업 협동조합	서초구 양재동11-1 (남현지소)	근저당	
		건물(2층)	연와조	27.3							
		건물(3층)	연와조	5.3							
		옥탑	연와조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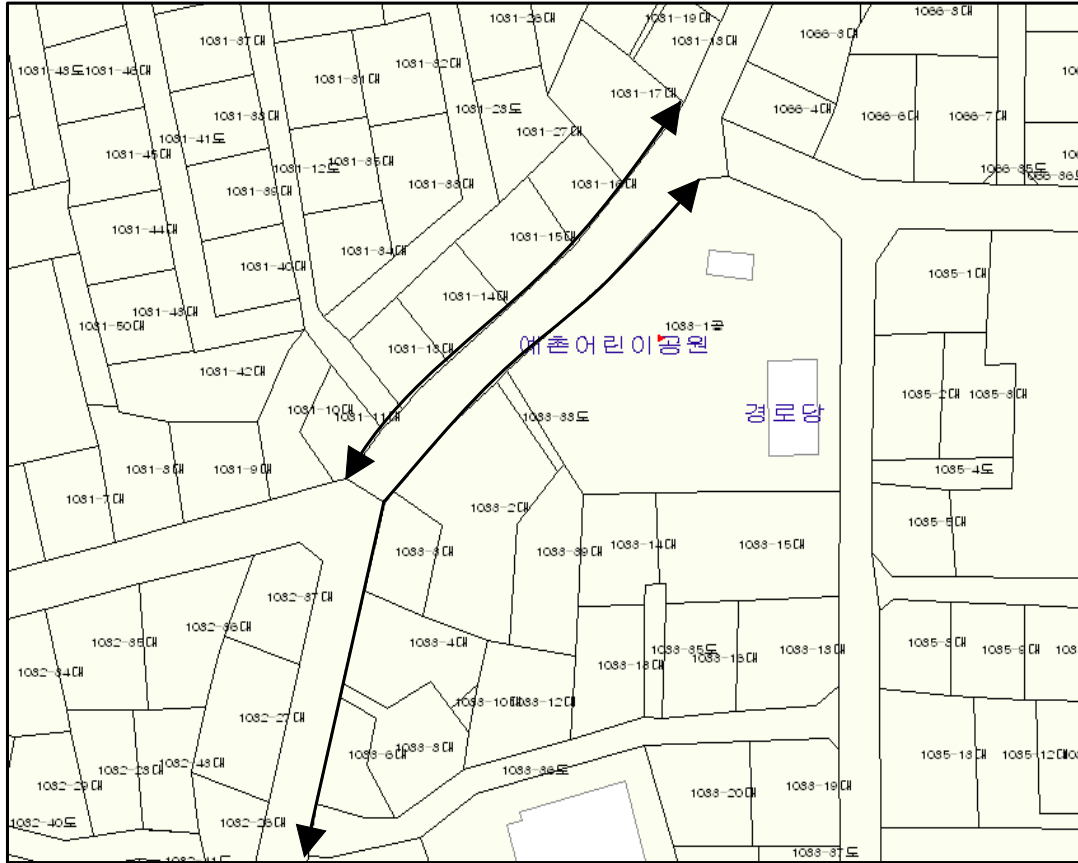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 유 권 이 외 의 관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	남현동 1083-8	대문	철문	1식		김진영	관악구 남현동 1083-8 2층				
6	남현동 1083-6	건물(1층)	연와조	27.7		이정석	관악구 남현동 1135 우림루미@ 103-903호	남부농업 협동조합	서초구 양재동11-1 (남현지소)	근저당	
		건물(2층)	연와조	27.7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봉천4동 1570-1) 관악구청장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사업시행 위치 : 관악구 남현동 1083-1 ~ 1083-6간 (남현길 도로확장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상 호	수량	영업권의 종 류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남현동 1083-2	건물		1식	극단 연습실	송재일	관악구 남현동 1083-2(지하 1층)	011-260-8482
		건물	일보교회	1식	교회	황충원	관악구 남현동 1083-2(지하 1층)	011-9617-7314
		건물	아이스월드	1식	판매업	박인숙	관악구 남현동 1083-2(1층)	010-3899-2030
		건물	문구사랑 모닝아트	1식	판매업	기경도	관악구 남현동 1083-2(1층)	010-7540-6282
		건물	즉석두부와 각종반찬	1식	음식료업	이병철	관악구 남현동 1083-2(1층)	010-91976970
		건물	성신지물	1식	판매업	김종성	관악구 남현동 1083-2(1층)	011-9754-4660
		건물	아름다운 교회	1식	교회	강해원	관악구 남현동 1083-2(2층)	010-5609-1465
2	남현동 1083-3	건물	창조설비	1식	설비,인테리어	김후자	관악구 남현동 1083-3(1층)	011-784-2501
		건물	백합헤어샵	1식	미용업	이겸자	관악구 남현동 1083-3(1층)	010-2956-4338
		건물	과천 야채	1식	과일야채	이승원	관악구 남현동 1083-3(1층)	019-427-0290
		건물	TMS음악원	1식	학원	이인하	관악구 남현동 1083-3(2층)	010-3559-5105
3	남현동 1083-4	건물	디기조아	1식	음식업	최은미	관악구 남현동 1083-4(1층)	02-588-3353
		건물	덕원떡집	1식	판매업	정순동	관악구 남현동 1083-4(1층)	011-9443-2821
4	남현동 1083-6	건물	옷수선	1식	수선업	강송죽	관악구 남현동 1083-6(1층)	010-7709-5449
		건물	부침너저기있니 동동주 나 여기있지	1식	음식업	정영화	관악구 남현동 1083-6(1층)	016-465-4092
		건물	선양부동산	1식	부동산중개	송인순	관악구 남현동 1083-6(1층)	011-9725-2008

위 치 도



◆ 관악구공고 제2010-41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369호(1980.11.1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231(2005.8.4)」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조성)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관악구고시 제2009-10호(2009.2.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었던 사항의 변경인가를 위해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880-3682)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을 허용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2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업 명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청룡산지구 조성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462

다. 사업내용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산175-6 등 일대
- 면 적 : 당초 46,124㎡ → 변경 46,159㎡
- 내 용 : 공원조성 및 토지보상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2012.12.31(변경없음)

마. 변경인가사유 : 지적분할에 의한 지번 및 면적변경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따로붙임

사. 열람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	당초				46,124							
	변경				46,159							증 35㎡
1	변경없음											
2	당초	봉천동 산173-6	임야	6,056	1,634	이상곤 등 4인		서울시 강남구 성내동 37-44				
	변경	봉천동 산173-10	임야	1,669	1,669	전국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547 월봉일성아파트 504-1007	안영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14-5	근저당권설정	지적분할
						최재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밀포드 나일로드 18 에이				
						최준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마이랑기베이 센토리안 드라이버 2				
						최예정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알바니 위예오크 드라이버 3				
						이상갑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2605				
						최홍		부산직할시 동래구 수민동 172 동래맨션 3동1001호				
3	당초	봉천동 산173-8	임야	7,342	7,342	허영수 등 5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498-2				
	변경	봉천동 산173-8	임야	5,584	5,584	허영수 등 5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498-2				지적분할
		봉천동 산173-9	임야	1,758	1,758	서울 특별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	당초	봉천동 556-89	전	754	754	이상곤 등 4인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행원리 2605				
	변경	봉천동 556-89	전	754	754	전국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547 월봉일성아파트 504-1007	안영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14-5	근저당권설정	
						최재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밀포드 나일로드 18 에이				
						최준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마이랑기베이 센토리안 드라이버 2				
						최예정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알바니 위에오크 드라이버 3				
						서울특별 시						
5	당초	봉천동 556-90	전	1,170	1,170	이상곤 등 4인		서울 강남구 방배동 757-3 삼호아파트13동801호				
	변경	봉천동 556-90	전	1,170	1,170	전국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547 월봉일성아파트 504-1007	안영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14-5	근저당권설정	
						최재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밀포드 나일로드 18 에이				
						최준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마이랑기베이 센토리안 드라이버 2				
						최예정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알바니 위에오크 드라이버 3				
						서울 특별시						
6	당초	봉천동 556-91	전	1,051	1,051	이상곤 등 4인		서울 강남구 성내동 37-44				
	변경	봉천동 556-91	전	1,051	1,051	전국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547 월봉일성아파트 504-1007	안영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14-5	근저당권설정	
						최재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밀포드 나일로드 18 에이				
						최준호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마이랑기베이 센토리안 드라이버 2				
						최예정		뉴질랜드국 오클랜드 알바니 위에오크 드라이버 3				
						서울 특별시						
7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8	당초	봉천동 산175-16	임야	3,934	3,934	이진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3차401				지적분할
	변경	봉천동 산175-16	임야	3,340	3,340	이진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3차401				
		봉천동 산175-43	임야	594	594	서울특별 시						
9~ 10	변경없음											
11	당초	봉천동 산175-6	임야	107,84 8	10,284	이진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3차-401				지적분할
	변경	봉천동 산175-6	임야	105,91 2	8,348	이진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3차-401				
		봉천동 산175-39	임야	1,936	1,936	서울특별 시						
12~ 15	변경없음											
16	당초	봉천동 산175-10	임야	2,777	2,777	이길주 등 5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23-15 대방2단지주공아파트202-1301				지적분할
	변경	봉천동 산175-10	임야	2,291	2,291	이길주 등 5인		서울 동작구 대방동 23-15 대방2단지주공아파트 202-1301				
		봉천동 산175-41	임야	486	486	서울특별 시						
17	당초	봉천동 392-1	전	824	824	이진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3차-401				
	변경	봉천동 392-1	전	824	824	서울특별 시						
18	당초	봉천동 산175-9	임야	4,568	4,568	이진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3차-401				지적분할
	변경	봉천동 산175-9	임야	3,460	3,460	이진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 27-2 형우베스트빌3차-401				
		봉천동 산175-40	임야	1,108	1,108	서울특별 시						
19	변경없음											
20	당초	봉천동 산175-14	임야	2,773	2,773	한석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560-1 우진빌라 에이-101				지적분할
	변경	봉천동 산175-14	임야	1,161	1,161	한석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560-1 우진빌라 에이-101				
		봉천동 산175-42	임야	1,612	1,612	서울특별 시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당초	봉천동 392	전	30	30	김주희 등 2인		충북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76				
	변경	봉천동 392	전	30	30	서울특별 시						
22~23	변경없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0-82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위치)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마리나아리수 (대표 강기훈)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427-7	한 강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하류 1km지점까지)	[선박1척,기구4대] 모터보트 1척, 수상스키 1대, 웨이크보드 1대, 워터슬래드 1대 윈드서핑 1대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행위	2010. 4.15 ~ 2010.10.31	2010. 4. 12

사업소공고

◆ 광진소방서공고 제2010-8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광진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소방시설 관리업	제광진2010-1호 (2010.04.14)	(주)비우방재 (110111-1847677)	정창해 (58.02.24)	서울 광진구 자양동 74-14 한강프라자504호	02)2254 -339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02-452-3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소방서공고 제2010-8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마포소방서장

연번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등록일자
1	제마포 2010-6호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주식회사 엠비씨 미디어텍	최 천 (531124-1****)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엠씨첨단산업센터 A동 201호	2010 04.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701-3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소방서공고 제2010-10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하였기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구로소방서장

업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적용법조항
소방시설관리업 [제구로 2010-03호] (2010. 4. 13.)	지양산업 주식회사	이숙영 (661225-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36-62 구로유통상가 A - 413호 (☎ 2645-711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18-3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0-9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초소방서장

등록번호	업종(분야)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제서초 2010-7호	일반소방 시설설계업 (기계·전기분야)	주식회사 태메이앤씨기술사무소 (110111-1358509)	이만섭 (570112-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92-8	2010. 4.1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소방서공고 제2010-10호

소방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 초 소 방 서 장

등록번호	업 종(분야)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재 지	등록일자
제서초 2010-8호	전문소방 공사감리업	주식회사 진화이앤씨 (110111-0286892)	박 양 원 (450630-1*****)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50-4 진화빌딩	2010.4.19.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02-594-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종량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동부수도사업소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문화원길 16(행당1동 142-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동 727-106번지 외 2필지
 - 면 적 : 145.9㎡(영구: 9.9㎡, 일시: 13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유량계함 및 연결전선관 설치
 - 개 요 : 유량계함 1개소, 연결전선관 2개소 설치
5. 점용기간 : 2010.03.16 ~ 2015.03.15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현대건설(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건설빌딩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일원
 - 면 적 : 1,0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강변북로(양화대교~원효대교) 확장공사 관련 시추조사

- 개 요 : 토질조사 70개소
5. 점용기간 : 2010.03.18 ~ 2010.06.1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8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길 544(성수1가 685-12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강서구 가양동 439-1번지	용산구 서빙고동 287-4번지 등 6필지	성동구 성수1가 642-1번지 등 10필지
면적	942,684㎡	1303,171㎡	939,446㎡
개요	보행데크 1개소 (B=4.0m, L=53.7m)	보행데크 1개소 (B=4.5~7.5m L=127.55m)	보행데크 1개소 (B=4.0m, L=109.17m)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 수변 경관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전망보행데크 설치
 - 개 요 :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8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 가양동 일원
- 면 적 : 262,949㎡(영구: 50,613㎡, 일시: 212,336㎡)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마곡 워터프론트 조성에 따른 기존 올림픽대로 입체화
 - 개 요 :
 - 지하차도 1.32km
 - Box 구간 : L=710m/1개소
 - U-Type : L=612.5m/2개소
 - 접속도로 : L=420m
 - 교통우회도로
 - 가도(축조) : L=1,990m(8차로)
 - 저수호안 제체사석 및 강널말뚝 : L=1,530m
 - 부대공 1식
-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9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서영엔지니어링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1. 두산벤처다임 B10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92번지
 - 면 적 : 24.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시추조사
 - 개 요 : 토질조사 2개소
5. 점용기간 : 2010.03.31 ~ 2010.05.3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9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길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1-86번지 일원
 - 면 적 : 747㎡(영구: 222㎡, 일시: 5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배수펌프장 토출관로 설치
 - 개 요 : · 토출관로(D=3,400mm, 압입시공) : L=29m
 - 토출구(B=5.0m, H=6.8m) : L=6.8m
 - 토출조 웅벽(H=2.0~3.5m) : L=21m
 - ※ 일시점용시설물 : 추진기지(L=9.6m, B=7.6m, sheet pile)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9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435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 초)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1번지 일원
(변 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31-2번지 일원
 - 면 적 : (당 초) 6,526㎡ → (변 경) 11,594㎡(영구: 8,677㎡, 일시: 2,9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배수펌프장 설치
 - 개 요 : (당 초) 빗물펌프장 1식, 철근콘크리트박스 1식, 부대시설 1식
(변 경) · 빗물펌프장 확장(12.8m×14.6m)
 - 토출관로(D=1,800mm, 2열) L=17.0m
 - 도수로(B=12.9m, H=3.36m) L=17.5m
 - 진입로 설치(B=4.0m, 콘크리트포장) L=61.3m
5. 점용기간 : 영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0-9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번지 일원
 - 면 적 : (당 초) 1,880㎡ → (변 경) 3,650㎡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2010년 트라이애슬론대회 개최
 - 개 요 : (당 초) 바꿈터(85m×20m), 관람석(60m×3m) 등 1식
(변 경) · 바꿈터(85m×15m, 100m×20m)
· 관람석(50m×5m, 20m×5m(2개소)) 등 1식
5. 점용기간 : 2010.05.03 ~ 2010.05.11

정 정

◆ 정 정

서울시보 제2972호(2010.4.15.목) 220페이지 동작구공고 제2010-17호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정 정 전	정 정 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